

關稅還給制度의 經濟的 效果와 改編方向

1997. 11

張 槿 鎬
金 珍 洙

序 言

WTO 체제의 출범 이후 각국에서 補助金支給이 규제 내지는 금지되고 각종 非關稅障壁도 점차 철폐됨에 따라서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産業政策으로서의 關稅政策의 役割이 더 강조될 전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關稅還給制度도 산업정책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는 輸出用 原材料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이들 원재료에 부과된 關稅나 內國稅를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만큼 경감하는 정책에 관하여는 WTO체제도 補助金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關稅還給制度는 輸出用 輸入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을 환급함으로써 수출산업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에 도입되어 그 이전에 시행되던 事前免稅制度를 대체하였다. 이 제도는 국내 수출업자가 생산비용 면에서 輸出競爭國의 輸出業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輸出支援策으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당해 제도는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수입원재료 사용에 대한 金融費用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國產財의 使用을 促進하려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이제 關稅還給制度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시점을 맞이하여 이 제도가 실제로 輸出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지와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産業政策으로서의 관세환급제도의 기본방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輸出支援과 中間材의 國產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關稅還給制度는 과거 그 실제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問題點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關稅還給制度는 그 節次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輸出企

業이 환급서류를 준비하고, 政府와 銀行도 환급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人力과 費用을 소모하였다. 둘째, 지나치게 복잡한 還給節次業務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간소화 작업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問題點은 수출기업의 인력과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不確實한 原材料의 國產化를 위하여 企業뿐만 아니라 政府와 銀行도 또한 적지 않은 社會的 費用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최근에 이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本 報告書는 產業政策으로서의 關稅還給制度의 基本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關稅還給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理論的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中間材産業의 輸入依存도와 관세환급제도를 포함한 관세정책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하여 수출지원과 중간재의 국산화를 위한 관세환급제도의 역할을 조명한다. 또한 設問調査를 통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主要 外國의 關聯制度和 비교·분석하여 關稅還給制度의 問題點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97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關稅還給特例法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關稅支援制度의 運營方向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本院의 張槿鎬 博士와 金珍洙 博士의 공동집필로 완성되었다. 著者들은 자료제공을 포함하여 많은 도움을 준 財政經濟院 關稅制度課 朴龍萬 課長과 鄭在完 事務官, 그리고 韓國銀行과 貿易協會 關係者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 전산처리 및 원고정리에 수고한 沈在珍 主任研究員, 金龍大·徐庭珠·金正紘 研究員, 卞敬淑·趙明熙·張貞順 研究助員, 그리고 出版課 직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個人的인 意

見이며 본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年 11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金 仲 秀

目 次

第1章 序 論	19
第2章 關稅還給의 經濟的 意義	21
第1節 關稅還給의 概念	21
1. 關稅還給의 種類	21
2. 關稅還給의 要件	22
第2節 關稅還給의 意義	24
1. 輸出의 支援	24
2. 原材料의 國產化 促進	26
第3節 關稅還給의 理論的 考察	27
1. 概要	27
2. 還給(關稅免除)制度의 經濟的 效果Ⅰ	29
3. 還給(關稅免除)制度의 經濟的 效果Ⅱ	35
4. 還給(關稅免除)制度의 經濟的 效果Ⅲ	40
5. 一般均衡에서의 關稅免除(還給)制度	45
第4節 關稅免除(還給)制度의 經濟的 效果：結論	47
第3章 우리나라 關稅還給制度의 變遷過程 및 現況	50
第1節 關稅還給制度의 實施背景	50
第2節 關稅還給制度의 根據法規	53
第3節 關稅還給制度의 變遷	54
1. 關稅還給特例法의 改正	54
2. 定額還給制度의 改善	56

3. 個別還給制度의 改善	57
4. 其他 制度의 補完	58
第 4 節 現行 關稅還給制度	59
1. 定額還給制度	61
2. 個別還給制度	68
3. 相計制度	73
4. 還給에 같은하는 稅率引下制度	75
第 5 節 關稅還給 類型別 運用現況	76
1. 關稅還給制度의 類型別 還給實績	76
2. 定額還給制度의 運營現況	80
3. 個別還給制度의 運營現況	83
4. 關稅還給制度의 產業別 利用現況	86
5. 相計制度의 運營現況	92
第 4 章 關稅還給制度의 經濟的 效果：資料分析	94
第 1 節 關稅率構造와 還給比重	94
1. 概要	94
2. 關稅率構造	95
第 2 節 貿易依存度의 變化와 關稅支援政策	100
1. 序論	100
2. 輸入依存度와 輸出依存度 現況：1993年	101
3. 貿易依存度의 變化와 關稅還給制度	107
第 3 節 輸出入과 關稅還給制度：產業別 利用度	115
1. 還給率의 變化와 中間材 輸入依存度	115
2. 暫定還給額의 推定	117
第 4 節 關稅還給制度와 貿易政策：結論	131
第 5 章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實態調查 結果	135

第1節 實態調査의 概要	135
1. 實態調査의 目的	135
2. 實態調査의 設計	135
第2節 實態調査 結果分析	138
1. 調査對象企業의 特性	138
2. 關稅還給業務의 電算化 實態	138
3. 輸出現況 및 關稅還給 實態	141
4. 關稅還給 類型別 利用實態	143
5. 關稅還給關聯 所要日數와 經費	145
6. 關稅還給制度의 評價	149
7. 關稅還給制度의 改善方案	157
第3節 實態調査 結果 要約	165
第6章 主要國의 關稅還給制度	167
第1節 WTO協約과 還給制度	167
1. 序論	167
2. WTO 還給制度	167
第2節 臺灣의 還給制度	169
1. 概要	169
2. 沖·退稅制度의 運用現況	171
3. 外銷品沖退原料稅損辦法	174
4. 還給額算定	174
5. 國產源資材의 保護	176
6. 沖稅制度	177
第3節 濠洲의 關稅還給制度	178
1. 概要	178
2. 還給 및 減免制度 利用現況	179
3. 還給制度	181

4. 關稅讓許制度(TEXCO)	182
5. 還給節次	182
第4節 美國의 關稅還給制度	184
1. 概要	184
2. 還給制度 概觀	184
3. 還給節次	189
4. 海外貿易地域(Foreign Trade Zone)	191
第5節 日本의 還給制度	192
1. 概要	192
2. 還給節次	194
第6節 國內·外還給制度 比較	195
第7章 關稅還給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197
第1節 關稅還給制度의 問題點	197
1. 關稅還給制度의 亂立	197
2. 關稅還給節次의 複雜	199
3. 國家에 의한 所要量管理體制 維持	204
第2節 關稅還給制度의 政策目標과 改善方向	207
1. 輸出支援과 國產化	207
2. 1997年 還特法 改正의 改善內容	212
3. 向後 關稅還給制度의 改善方向	217
第8章 要約 및 結論	222
參考文獻	234
<附錄 I>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實態調查 內容	237
<附錄 II>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實態調查 結果	253

表 目 次

<表 2- 1> 輸入原資材에 대한 關稅賦課時 完製品 需給變化(國產原料가 없는 경우).....	32
<表 2- 2> 關稅免除時의 國內價格	33
<表 2- 3> 關稅還給時의 國內價格	39
<表 3- 1> 關稅還給特例法의 改正內容	55
<表 3- 2> 關稅還給制度 類型別 還給實績.....	77
<表 3- 3> 關稅收入 對比 還給實績.....	79
<表 3- 4> 主要國의 關稅收入 對比 還給比率	80
<表 3- 5> 簡易定額還給制度의 運營現況	81
<表 3- 6>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의 運營現況	82
<表 3- 7> 一般個別還給制度의 運營現況	84
<表 3- 8> 先還給·後精算制度의 運營現況.....	85
<表 3- 9> 先支給·後審査制度의 運營現況.....	86
<表 3-10> 關稅還給制度의 產業別 利用現況.....	89
<表 3-11> 定額還給制度의 產業別 利用現況.....	90
<表 3-12> 個別還給制度의 產業別 利用現況.....	91
<表 3-13> 名目關稅率의 變化推移	92
<表 3-14> 相計制度의 運營現況	93
<表 4- 1> 關稅率構造 改編原則	96
<表 4- 2> 우리나라 關稅率構造와 年度別 變化	97
<表 4- 3> 加工段階別 關稅率構造의 國際比較.....	98
<表 4- 4> 平均 實行關稅率과 還給比率의 國際比較	99
<表 4- 5> 우리나라 平均關稅率의 變化推移	100

<表 4- 6> 1993年 主要 交易財產業 輸入依存度 및 輸出, 生産自立度(國內需要 對比)	104
<表 4- 7> 主要 交易財產業 中間材 輸入依存度の 變化推移	108
<表 4- 8> 主要 交易財產業 消費財 輸入依存度の 變化推移	110
<表 4- 9> 主要 交易財產業 輸出寄與度の 變化推移	114
<表 4-10> 主要 交易財產業 還給比率의 變化(輸出額 對比)와 中間材 輸入依存度	116
<表 4-11> 主要 交易財產業 1990年 還給率 (輸出品 基準)	120
<表 4-12> 主要 交易財產業 1993年 還給率 (輸出品 基準)	123
<表 4-13> 主要 交易財產業 關稅率, 還給率, 關稅負擔率의 變化推移(輸入品 基準)	127
<表 4-14> IO75 交易財產業 關稅率, 還給率, 實質關稅 負擔率의 變化推移(輸入品 基準)	129
<表 5- 1> 母集團과 標本의 比較	137
<表 5- 2> 調査對象企業의 現況	139
<表 5- 3> 還給類型別 利用實態	144
<表 5- 4> 個別還給의 所要日數	146
<表 5- 5> 定額還給의 所要日數	147
<表 5- 6> 關稅還給業務關聯 所要經費	148
<表 6- 1> 年度別 臺灣의 輸入規模와 關稅額 比較	170
<表 6- 2> 沖·退稅 規模와 關稅 등 稅入	171
<表 6- 3> 沖·退稅와 輸出額	172
<表 6- 4> 產業別 沖·退稅額	173
<表 6- 5> 沖·退稅 徵收比率과 還給所要日數	173

<表 6- 6> 年度別 關稅還給額	180
<表 6- 7> 制度別 關稅減免額 內譯	180
<表 6- 8> 自動車産業計劃에 의한 關稅減免額	180
<表 6- 9> 類型別 還給額(1995)	186
<表 6-10> 美國 關稅徵收額과 還給額 規模(FY84-86)	187
<表 6-11> 年度別 輸入額과 關稅徵收額	188
<表 6-12> 輸入과 還給件數	188
<表 6-13> 海外貿易地域內에서의 輸出額	191
<表 6-14> 日本 保稅工場 및 戻稅 利用度	193
<表 6-15> 國家別 實效關稅率과 輸出 對比 還給比率	195
<表 7- 1> 還給申請時 具備書類	201
<表 7- 2> 還給申請 所要日數	203
<表 7- 3> 所要量證明書 發給機關	205
<表 7- 4> 基準所要量 告示機關	205
<表 7- 5> 所要量計算書 發給業體	206

附 表 目 次

<附表 1> 關稅還給 專擔部署의 有無	253
<附表 2> 關稅還給業務用 컴퓨터의 種類	254
<附表 3> 關稅還給業務 擔當社員數	255
<附表 4> 還給받지 못한 關稅額(1994)	256
<附表 5> 還給받지 못한 主要 事由	257
<附表 6> 中間原材料 買入額 및 轉嫁稅額(1994)	258
<附表 7> 關稅還給을 위한 各種 證明書 利用件數 및 金額	259

<附表 8>	1994年度 生産製品の 全量輸出 與否	261
<附表 9>	生産製品の 販賣内譯	262
<附表 10>	調査對象企業の 現況(1994)	263
<附表 11>	輸出免狀金額別 輸出件數 比率.....	264
<附表 12>	還給類型別 利用實態	265
<附表 13>	年間 還給申請 頻度數.....	266
<附表 14>	關稅還給申請 擔當者	267
<附表 15>	關稅還給申請書 作成方法	268
<附表 16>	個別還給申請 與否	269
<附表 17>	個別還給의 所要日數	270
<附表 18>	定額還給申請 與否	271
<附表 19>	定額還給의 所要日數	272
<附表 20>	關稅還給時까지의 資金負擔 解決方法.....	273
<附表 21>	關稅還給業務關聯 所要經費	274
<附表 22>	關稅還給制度 중 利用回數가 많은 制度.....	275
<附表 23>	關稅還給時의 隘路事項	276
<附表 24>	相計制度의 資金負擔 緩和 程度	277
<附表 25>	相計制度의 長點	278
<附表 26>	相計制度의 問題點	279
<附表 27>	先還給·後精算制度의 資金負擔 緩和 程度.....	280
<附表 28>	先還給·後精算制度의 問題點.....	281
<附表 29>	簡易定額還給制度의 還給節次 簡素化 程度	282
<附表 30>	簡易定額還給制度의 問題點	283
<附表 31>	簡易定額還給制度 適用對象企業の 選定基準.....	284
<附表 32>	簡易定額還給率表의 單位當 還給金額의 過少還給 比率	285
<附表 33>	定額還給對象品目 중 實際 個別還給을 받고 있는 品目的 有無	286

<附表 34>	定額還給對象이지만 個別還給을 받은 理由	287
<附表 35>	中間材를 輸入하여 使用하는 理由	288
<附表 36>	關稅還給制度로 인한 國產原材料 使用의 증大與否	289
<附表 37>	國產原材料 使用이 증大하지 않는 理由	290
<附表 38>	個別還給金 支給制限制度의 評價	291
<附表 39>	關稅還給制度의 代案	292
<附表 40>	關稅還給制度和 比較한 選特稅率制度의 評價	293
<附表 41>	關稅還給制度和 比較할 때 選特稅率制度가 도움이 되지 않는 理由	294
<附表 42>	保稅工場制度和 比較한 選特稅率制度의 評價	295
<附表 43>	保稅工場制度和 比較할 때 選特稅率制度가 도움이 되지 않는 理由	296
<附表 44>	保稅工場制度의 改善方案	297
<附表 45>	所要量證明制度의 改善方案	298
<附表 46>	自律的인 誠實申告의 補完策	299
<附表 47>	關稅還給 電算시스템 利用에 대한 意見	300
<附表 48>	關稅還給業務가 電算化될 경우 豫想되는 어려움	301
<附表 49>	關稅還給 電算化時 還給業務 分擔方案에 대한 評價	302
<附表 50>	還給業務 分擔方案에 대해 贊成하지 않는 理由	303
<附表 51>	基準所要量和 實際所要量の 差異	304
<附表 52>	過少還給의 處理方法	305
<附表 53>	單位所要量證明書 發給의 改善方案	306
<附表 54>	基礎原材料納稅證明制度의 改善方案	307
<附表 55>	關稅徵收信用猶豫制度에 대한 評價	308
<附表 56>	關稅徵收信用猶豫制度에 대해 贊成하지 않는 理由	309

<附表 57> 關稅還給書類 중 不必要한 書類	310
<附表 58> 關稅還給書類 중 不必要한 書類 및 理由	311
<附表 59> 關稅還給特例法上 不必要한 制度	312
<附表 60> 關稅還給特例法上 不必要한 制度 및 理由	313
<附表 61> 關稅還給制度의 改編을 위한 建議事項	314

圖 目 次

[圖 2- 1]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賦課 (國產原料가 없는 경우)	31
[圖 2- 2]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免除 (國產原料가 없는 경우)	34
[圖 2- 3]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免除 (國產化 比率이 낮은 경우)	36
[圖 2- 4]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還給 (國產化 比率이 낮은 경우)	39
[圖 2- 5]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免除 (國產化 比率이 높은 경우)	41
[圖 2- 6]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還給 (國產化 比率이 높은 경우)	44
[圖 2- 7] 一般均衡下에서의 關稅支援制度의 效果	46
[圖 3- 1]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制度의 種類	60
[圖 3- 2] 一般個別還給金의 算出方法	69
[圖 3- 3] 輕工業의 還給比率 變化推移	87
[圖 3- 4] 重工業의 還給比率 變化推移	87
[圖 5- 1] 關稅還給申請書의 作成方法	141

[圖 5- 2] 生産製品の 販賣内譯	142
[圖 5- 3] 關稅還給制度로 인한 國產原材料 使用의 增大與否	150
[圖 5- 4] 關稅還給時의 隘路事項	151
[圖 5- 5] 簡易定額還給制度의 問題點	153
[圖 5- 6] 先還給·後精算制度의 問題點	155
[圖 5- 7] 相計制度의 問題點	156
[圖 5- 8] 關稅還給制度의 代案	158
[圖 5- 9] 關稅還給 電算시스템 利用에 대한 意見	160
[圖 5-10] 關稅徵收信用猶豫制度에 대한 評價	163
[圖 5-11] 關稅還給書類 중 不必要한 書類	164
[圖 6- 1] DBACS에서의 還給節次	183
[圖 7- 1] 還給節次圖	202

第1章 序 論

關稅還給制度는 1975年 7月 1日 도입된 이래 일종의 輸出支援制度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輸出用 原材料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原材料를 수입할 때 납부한 關稅를 환급해 줌으로써 國內 輸出企業이 생산비용 면에서 輸出競爭國의 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輸出支援策이다. 또한 關稅還給制度는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輸出企業은 原材料를 수입하면 환급시까지 자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가능하면 관세부담이 없는 國產原材料의 사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WTO가 출범하면서 特定性이 있는 補助金을 점차 규제하고 있는데, WTO 협정문에서는 同類商品에 부과되는 關稅나 內國稅를 수출품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만큼 경감하는 것은 補助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關稅還給은 補助金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產業政策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關稅政策의 產業政策으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輸出企業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關稅還給制度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關稅還給制度는 그 還給節次 및 業務가 너무 복잡하다. 이에 따라 輸出企業은 환급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人力과 費用을 소모하고 있으며, 原材料에 대한 관세납부 후 還給金을 수령하는 데 100여일이 소요되어 상당한 資金負擔을 안고 있다. 또한 政府와 銀行도 환급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人力과 費用을 들이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還給業務와 관련된 社會的 費用은 엄청나다.

둘째, 지나치게 복잡한 還給節次 및 業務를 해결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간소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많은 制度가 난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輸出企業은 모든 制度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制度의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은 수출규모가 확대되어 原材料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출기업의 인력과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輸出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還給額의 규모가 감소하고 關稅收入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企業뿐만 아니라 政府와 銀行 등이 그렇게 많은 社會的 費用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還給節次 및 業務를 간소화하고 각종 制度를 단순화하여 輸出企業이 이미 납부한 關稅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方案은 징수한 關稅를 되돌려 주는 政府의 費用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輸出企業이 이미 납부한 關稅를 政府가 정확하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制約條件을 충족시켜야 한다.

本 報告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第1章의 序論에 이어 第2章에서는 關稅還給制度의 經濟的 意義를 살펴보았다. 특히 輸入原材料에 대해 關稅還給의 혜택을 주는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였다. 第3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關稅還給制度를 개관해 보고, 그 利用現況을 살펴보았다. 第4章에서는 關稅還給制度의 產業別 效果를 분석해 보았다. 第5章에서는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實態調查 結果를 요약하였다. 第6章에서는 主要 外國의 關稅還給制度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을 파악해 보았다. 第7章에서는 現行 關稅還給制度의 問題點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改善方向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第8章에서는 本 報告書를 요약하고 結論을 맺었다.

第2章 關稅還給의 經濟的 意義

第1節 關稅還給의 概念

1. 關稅還給의 種類

關稅還給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關稅 등¹⁾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關稅還給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外國으로부터 물품을 輸入하는 때에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관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그 過誤納金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過誤納還給이다²⁾. 이 제도는 關稅還給 計算의 착오, 關稅率 適用의 착오, 또는 관세평가시 課稅價格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費用을 포함시켜 過誤納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둘째, 輸入免許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保稅區域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수입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違約還給이다³⁾.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근거는 輸入免許를 받은 物品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輸入業者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國內에서 소비하지 않고 保稅區域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물품에 대해 消費稅의 일종인 關

1) 여기서 關稅 등이라 함은 輸出品에 부과되는 關稅뿐만 아니라 內國稅로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臨時輸入附加稅, 特別消費稅, 酒稅, 交通稅 그리고 農漁村特別稅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이 制度의 근거법령은 關稅法 第24條 내지 第24條의 3, 同法 施行令 第12條 내지 第12條의 13이다.

3) 이 制度의 근거법령은 關稅法 第35條, 同法 施行令 第42條 내지 第42條의 3이다.

稅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輸出用 原材料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關稅還給이다⁴⁾. 關稅還給特例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關稅障壁을 수출의 경우에는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輸出品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종의 輸出支援策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還給 중에서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이 우리나라 關稅還給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本報告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에 국한하기로 한다.

2. 關稅還給의 要件

關稅還給特例法에 규정된 還給의 정의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關稅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輸出者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⁵⁾. 따라서 關稅還給의 대상이 될 수 있는 原材料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關稅還給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製品을 輸出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還給對象輸出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세환급을 해주는 政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現行 關稅還給特例法에서 다음의 경우를 還給對象輸出로 규정하고 있다⁶⁾.

- ① 對外貿易法 第19條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의 승인을 받은 정상수출은 還給對象輸出이 된다. 그러나 對外貿易法에 의해 輸出의

4) 이 制度의 근거법령은 第3章 第2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5) 關稅還給特例法 第2條 第5項 및 第5條 第1項.

6) 還給對象輸出의 범위에 대해서는 關稅還給特例法 第2條 第2項 및 同法 施行規則 第2條 참조.

승인을 받았더라도 중계무역, 현지인도 수출, 중고물품 수출의 경우에는 還給對象輸出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輸出承認이 면제된 수출 중 총리령으로 따로 정한 것은 還給對象輸出이 된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되는 물품, 해외공사용 재료 및 장비, 외항선용 선용품, 원양어선용 선수품, 위약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輸出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輸出品의 수량부족으로 추가 수출하는 물품과 無換受託加工方式으로 수입한 원자재의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國內에서의 外貨販賣 또는 外貨工事は 還給對象輸出이 된다. 주한미군에 대한 외화판매, 외화공사, 외화판매 국산승용자동차,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자본재의 外貨販賣, 차관자금에 의한 낙찰 물품의 외화판매,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외화판매가 이에 해당한다.
- ④ 保稅工場 등에 대한 物品供給은 還給對象輸出이 된다. 보세공장에의 수출용 원재료 공급,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물품 공급, 輸出自由地域 入住企業體에의 물품공급, 보세창고에의 수출용 원재료 공급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關稅還給特例法 第2條에서는 수출물품 자체도 수출용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製造·加工을 거치지 않고 수입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還給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국내에서 사용하여 수익한 물품은 환급대상이 되지 못한다.

둘째, 關稅還給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關稅 등을 징수한 물품이어야 한다. 輸出用 原材料의 경우 輸入하는 때에 關稅 등을 징수한 물품이라면 有換·無換輸入을 불문하고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시에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 수입물품, 즉 關稅減免 또는 分割納付承認을 받은 物品, 公賣物品 등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라도 환급대상수입에 해당

되지 않는다. 또한 還給에 갈음하는 引下稅率(還特稅率이라고 함)을 적용한 수입물품도 還給對象輸入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關稅還給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輸入免許日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을 輸出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關稅還給特例法 第5條 第1項에서는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 그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입된 물품의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輸出의 基準日은 수출면장의 수출면허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출용 원재료의 輸入免許日로부터 제품의 輸出免許日까지 1년 6개월의 기간이 허용되는 것이다.

第2節 關稅還給의 意義

關稅는 財政收入을 확보하고 國內産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消費稅이며 間接稅이다. 輸出用 原材料는 국내에서 제조·가공 후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기 때문에 關稅賦課는 부당하다는 것이 輸出用 原材料에 대해 關稅還給을 하는 理論的 根據이다.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의 가장 큰 목적은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關稅還給은 事前免稅와는 달리 원재료 수입 후 환급시까지 輸出業體가 자금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原材料의 國産化를 촉진하려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

1. 輸出의 支援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은 국내 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

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함으로써 輸出製品의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하여 輸出競爭力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은 원재료 수입 후 환급시까지의 자금부담을 제외하면 事前免稅와 같은 효과가 있다.

輸出用 原材料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해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가격을 상승시켜서 生産費用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完製品 輸出價格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 만일 輸出競爭國에서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서 수입할 필요가 없다가 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關稅還給을 해 준다면, 국내 수출업자는 수출경쟁국의 수출업자에 비해 價格競爭力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輸出競爭力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수출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출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필요성이 부각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輸出指向 工業化戰略⁷⁾을 사용하여 經濟發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國內 賦存資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原材料를 더 많이 수입해야 했다. 즉,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주로 輸入에 의존하고 이를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經濟成長을 이룩해야 했기 때문에 輸出企業은 필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통해 價格競爭力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국내 수출업자가 수입한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은 국내 수출업자가 생산비용 면에서 수출경쟁국의 수출업자에 비해

7)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부족한 자본, 협소한 시장, 낙후한 기술수준의 여건하에서도 高度成長을 이룩하기 위해 輸出指向 工業化戰略을 채택하였다. 輸出指向 工業化戰略은 주로 국내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저렴한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單純加工型의 輸出工業을 발전시킴으로써 工業化를 이룩하려는 정책이었다. 우리나라는 輸入代替 工業化戰略을 채택한 남미의 開途國들에 비해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 價格競爭力을 유지하도록 하는 輸出支援策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原材料의 國產化 促進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의 가장 큰 목적은 수출에 대한 지원이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⁸⁾. 輸出用 原材料를 輸入하게 되면 수입시에 일단 關稅를 납부하였다가 수출한 후에 이를 환급받으므로 輸出企業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환급시까지 자금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輸出企業은 가능하면 관세부담이 없는 國產 原材料의 사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관세부담이 적은 基礎原材料의 수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은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원재료의 국산화는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기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을 연결시켜 國內 附加價值를 높이며 수출물품의 外貨稼得率을 제고시켜 國際收支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定額還給制度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關稅額과 관계 없이 수출물품별로 평균개념에 의하여 關稅廳長이 정한 일정금액을 환급하므로 수출기업에서는 국산원재료를 많이 사용할 수록 過多還給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輸出企業은 관세부담이 없는 國產原材料나 관세부담이 적은 基礎原材料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게 것이다.

그러나 輸出企業이 관세환급시까지의 資金負擔 때문에 원재료를

8)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이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本章 第3節에서 이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수입하지 않고 國產品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예상과 달리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수출을 위해 原材料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먼저 輸入原材料를 대체할 國產原材料가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불가피하게 수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세환급시까지의 資金負擔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輸入原材料를 대체할 國產原材料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輸出企業은 국산원재료의 價格과 品質이 수입원재료와 동일하다면 國產原材料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산원재료가 가격이나 품질에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輸入原材料에 비해 떨어진다면 수출업자는 무조건 國產原材料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利害得失을 따져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關稅還給이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효과는 미약할 수도 있다.

第3節 關稅還給의 理論的 考察

1. 概要

전술한 바와 같이 關稅還給制度는 관세정책상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환급제도의 정책목표는 첫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을 확대하고 둘째, 원재료 수입 후 환급받을 때까지 수출업체에 대하여 관세납부액에 대한 자금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원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며 셋째, 관세행정의 효율을 증대(事前免稅制度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 7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1995년 현재 총환급액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관세징수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대비 환급액은 1.3%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만의 환급률(수출액 대비)이 1995년에 0.1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환급제도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과거 신속·정확한 환급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수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고, 지난 1996년 7월 1일에는 관세환급특례법의 대폭적인 개선안을 공표한 바 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선안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는 事後精算制度를 도입하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과 수출이 행시 지불하여야 할 환급금을 상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일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자금비용을 제거한 것이다. 원자재 수입후 수출환급금 지급까지 평균 100여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 개정안은 수출기업의 금리비용을 덜어줌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게 할 것이다⁹⁾.

더욱이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환급대상관세 등의 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없애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급제도가 추구하는 원자재 국산화는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 본질은 관세환급제도의 두 가지 목표, 즉 수출지원과 국산화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關稅還給制度의 政策的 實效性을 검토한다. 특히 原資材 또는 中間材의 國內生産函數의 性格에 따라 관세환급제도가 국산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석하고 관세환급제도가 고유의 목적인

9) 금리가 13.6%(1995년 회사채 이자율)이고 원자재 수입후 환급까지 100일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1조 2천억원에 대한 금리비용은 약 447억원이다.

수출지원에 사용되고 국산화는 다른 정책수단에 의존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품에 대한 保稅工場 運用 등 전면적인 관세면제나 환급이 수출보조금과 같아서 原資材의 國產化 比率이 낮은 경우, 수출지원에는 효과가 있지만 국산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산재 보호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關稅賦課로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國產化 比率이 높은 경우 關稅免除은 관세로 인한 국산재 보호를 무효화하며 행정비용에 따른 비생산적인 社會的 費用을 야기하여 관세부과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못하다. 특히 이 경우 關稅還給制度는 국산화에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이는 수출감소를 야기하고 保護效果도 社會的 費用에 正比例하므로 환급비용을 고려하여 원자재에 低率의 關稅率을 부과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선진제국이 원자재에 대하여 低率의 關稅率을 부과하고 保稅工場 中心의 關稅支援制度를 운용하는 이유는 상기의 제도적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관세환급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출업체의 자금비용을 줄이고 관세환급제도의 수출지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關稅支援制度는 성장잠재력이 뛰어나 국산화가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는 현행의 均等關稅率體制를 중심축으로 하고 代替還給制度를 도입하여 國產化를 지향하되 수출용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事後精算制度나 保稅工場, 代替還給制度 등을 이용하여 輸出支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還給(關稅免除)制度의 經濟的 效果 I

가.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賦課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Panagariya 1992). 이는 선진국 대부분이 原資材에 대한 關稅率을

低率 또는 無稅로 하고 保稅工場類의 關稅支援制度를 통하여 수출품에 사용되는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패너가리아는 수출품에 대한 關稅免除가 社會福祉(social welfare)에 미치는 영향을 一般均衡理論(general equilibrium theory)으로 검토하고 면세제도가 일정조건하에서는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¹⁰⁾. 그러나 상기의 분석은 주로 복지증진에 대한 논의일 뿐 관세환급제도의 목적인 輸出支援과 國產化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패너가리아가 논하고 있는 제도는 수출기업에 대한 환급비용의 부과를 통하여 국산화를 추구하는 관세환급제도가 아니라 關稅減免制度이다.

본고에서는 관세환급제도의 효과를 部分均衡의 假定下에 분석하고 國產原材料의 生産函數—구체적으로는 生産費用의 高低—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¹⁾. [圖 2-1]은 이러한 분석의 기본도표로서 본고에서는 패너가리아와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완제품생산에 일정비율로 투입된다고 가정한다(fixed coefficient assumption). 그러나 자본 및 노동 등 기타 생산요소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수입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비탄력적인 우리나라 현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상기의 가정에 수출품에 대한 수급균형은 [圖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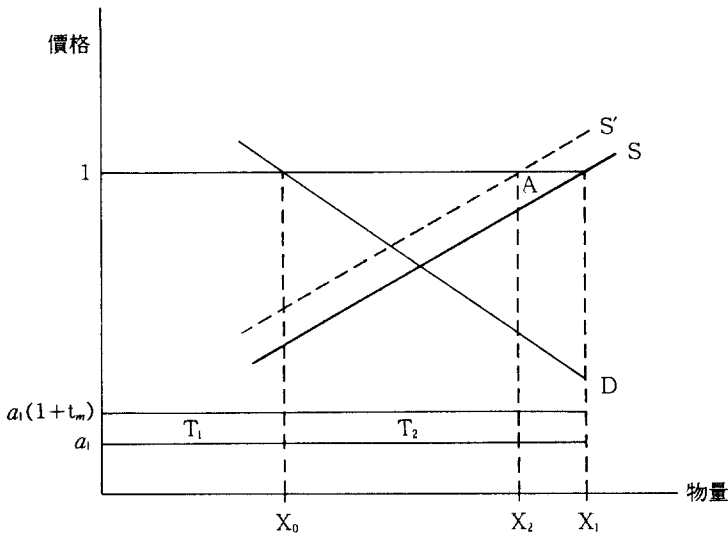
이 도표는 석유나 천연고무 등 輸出品에 投入되는 原材料의 國內生産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적절한 단위의 선택으로 완제품 가격이 1, 원재료가격이 a_1 그리고 수입과 공급곡선이 각각 D와 S인 상황에서 총생산이 X_1 , 국내공급은 X_0 , 그리고 수출은 $X_1 - X_0$

10) 일정조건이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는 최종 수입제품과 수출제품이 대체재일 경우를 말한다.

11) 수출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임을 보여준다. 원재료 수요곡선은 완제품 생산에 일정비율로 투입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완제품 공급곡선과 X_1 사이의 점선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공급은 국제가격 a_1 에서 무한대로 이루어지므로 원자재의 수입량도 X_1 이다.

[圖 2-1]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賦課(國產原料가 없는 경우)



위의 균형에서 원재료수입에 단위당 關稅率 t_m 이 賦課된다면 수출품의 국제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입원재료 국내가격은 $a_1(1+t_m)$ 으로 상승하며 생산비용의 증가로 완제품 공급곡선은 S' 으로 상향 이동한다. 즉, 국산원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수입원료에 부과되는 관세는 生産稅(production tax)와 동일하므로 공급비용이 단위당 t_m 만큼 증가하여 새로운 생산점은 X_2 로 결정되며 수출과 원재료 수입은 감소한다(<表 2-1> 참조).

<表 2-1> 輸入原資材에 대한 關稅賦課時 完製品 需給變化
(國產原料가 없는 경우)

완제품 생산	원재료 수입	국내 소비	수출
$X_2 \downarrow$	$X_2 \downarrow$	X_0	$X_2 - X_0 \downarrow$

이와 같이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T_1 + T_2$ 의 세입을 창출하지만 이들을 원료로 하는 輸出品에 대한 生産稅效果로 인하여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완제품공급에 있어서 A에 해당하는 死重損失(dead-weight loss)을 유발한다. 이러한 수출감소를 저지하면서 동시에 국내소비에 사용되는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관세면제 또는 관세환급제도이다.

나. 關稅免除

수입원료에 적용된 관세로 인한 수출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었을 때 납부된 관세를 면제한다면 이러한 성격의 관세면제는 輸出補助金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완제품 1단위를 수출할 경우 $a_1 t_m$ 만큼 관세를 환급받으므로 생산자는 국내공급을 감소하고 수출을 확대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완제품가격이 $a_1 t_m$ 만큼 상승하여야 국내공급과 수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동시에 이동 가능한 국내 생산요소에게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生産要素市場에서도 균형을 되찾게 된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의 <表 2-2>에서와 같다. 완제품이 수출에 공여되면 그 수입은 1이고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므로 순이익(부가가치)은 중간재비용 a_1 을 차감한 $1 - a_1$ 이다. 그러나 완제품이 국내로 공급되면 수입중간재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생산자는 국내공급을 감량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수출품의 국내가격(α)은 상승하게 되는데 국내가격이 국내공급과 수출 사이에서 市場의 均衡을 이루려면 $1 + a_1 t_m$ 까지 상승하여야 한다.

<表 2-2> 關稅免除時的 國內價格

	완제품 가격	수입원료 가격	부가가치
수 출	1	$a_1(1+t_m)-a_1t_m$	$1-a_1$
국 내 공 급	a	$a_1(1+t_m)$	$1-a_1$

수출용 수입원료에 관한 관세면제하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아래 [圖 2-2]로 설명이 가능하다. 완제품생산과 원재료수입은 X_1 으로 관세부과 이전과 동일하고 수출은 $X_1 - X_3$ 로 관세를 수입원료에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증가한다. 이는 수출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국내소비는 X_3 로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關稅免除(還給)가 輸出補助金과 같은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관세면제(환급)는 輸出補助金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로 하여금 수출을 선호하게 하고 消費稅와 같이 완제품의 국내가격을 인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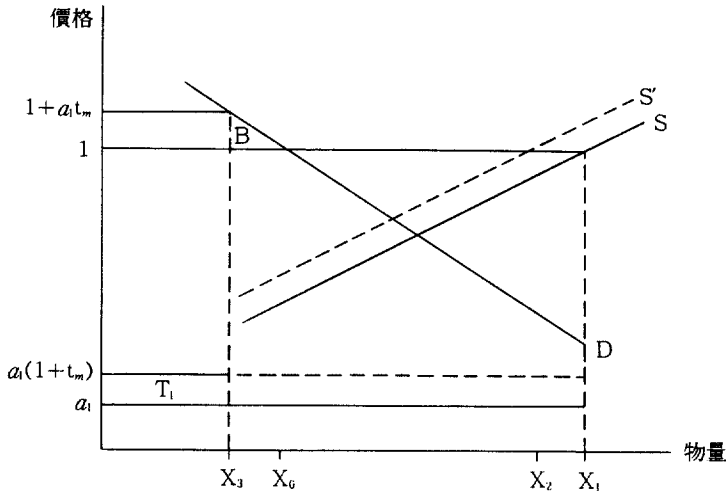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은 생산에 있어서의 死重損失을 방지할 수 있는 반면 완제품의 국내가격이 증가하므로 국내소비가 감소한다. 따라서 소비에 있어서 死重損失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국내수요곡선의 탄력성과 원자재에 부과된 관세율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국내소비가격의 인상으로 원자재에 관한 관세면제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의 所得移轉(income transfer)을 조장하고 관세감면으로 인하여 정부세입을 T_1 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¹²⁾.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면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과와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는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소비를 감소시키는 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국내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자로의 소득이전과 국산소비에 사용된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만

12) 관세감면에 따른 소비 및 생산감소에 대한 死重損失의 相對的 規模는 국내수요 및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변화한다.

크의 재정수입을 유발한다.

[圖 2-2]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免除(國產原料가 없는 경우)



다. 關稅還給

한편 關稅還給制度란 수출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돌려줌으로써 자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關稅의 部分免除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자금비용 및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포함한 만큼의 수출용 수입원자재의 국내가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완제품의 국내가격도 $1 + a_1 t_m$ 보다는 낮게 증가하며 총생산과 수출도 적게 증대하고 국내소비도 적게 감소한다. 따라서 관세면제제도의 보조금효과도 관세환급제도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아래에서 제시된 국산원자재가 있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므로 따로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3. 還給(關稅免除)制度的 經濟的 效果II

가. 關稅免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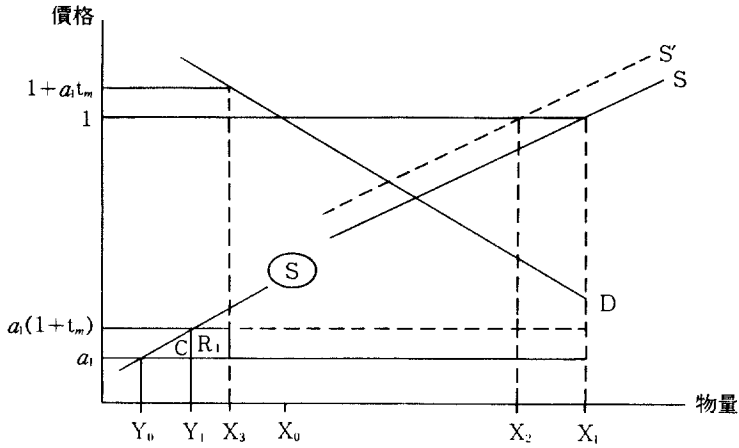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國產原材料가 존재하지만 生産費用函數에 따라 國產化 程度가 낮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還給效果를 분석한다. 이는 국산화 정도에 의하여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國產化 比率이 낮은 경우, 즉 원자재 생산비용이 생산량에 비하여 빨리 증가하여 국제가격으로는 완제품의 국내소비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도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圖 2-3]에서 국산원재료 공급곡선이 ⑤라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부과 이후 국산원재료 가격도 $a_1(1+t_m)$ 까지 상승하여 국산원재료 생산이 Y_0 에서 Y_1 으로 증가한다. 완제품생산은 생산비용의 인상으로 [圖 2-1]에서와 마찬가지로 X_2 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소비도 X_0 에 달하여 생산비용의 증가로 수출과 국내생산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¹³⁾. 이는 해외로부터의 완제품수입이 가능하므로 완제품 국내가격도 1로 고정되어 관세는 生産稅로 작용하면서 국내생산의 감소와 이에 상응한 수출감소가 나타나며 국내소비는 관세부과 이전과 동일하다.

이제 輸出品에 투입된 輸入原料의 關稅를 免除하면 완제품의 국내가격은 위에서 논한 이유로 $1+a_1t_m$ 까지 상승하게 된다. 즉, 생산품이 수출에 공여되면 관세면제로 인하여 부가가치 또는 순이익이 $1-a_1$ 만큼 창출되므로 생산자가 수출에 주력함에 따라서 국내공급

13) 國產原料 供給曲線이 右上向하도록 한 假定의 裏面에는 完제품 供給곡선이 國內 輸出品(exportable)을 그리고 國產原料 供給곡선이 國產原料 産業을 代表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輸出品이 原料價格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國內의 일개 産業이라면 原料 供給이 a_1 과 $a_1(1+t_m)$ 사이에서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關稅面稅(환급)로 인하여 國內공급에는 國產原料지만 쓰여지고 輸出品에는 輸入재만 사용되는 단순한 모형으로 轉락하고 轉락한다.

[圖 2-3]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免除(國產化 比率이 낮은 경우)



이 감소하면서 국내가격은 상승한다¹⁴⁾. 그리고 생산규모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공제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X_1 으로 증가한다. 국내소비는 완제품의 국내가격 상승효과로 $X_0 - X_3$ 만큼 감소하여 수출로 전환되어 총수출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당시의 수출보다 더욱 증가한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關稅免除의 輸出補助金과 같은 정책효과이다. 이 밖에도 원재료수입은 수출증대로 $X_1 - X_2$ 만큼 증가하고 국산소비에 쓰여진 수입원재료의 규모는 $X_3 - Y_1$ 이다¹⁵⁾.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관세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국산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동일함을 보여주고

14) 국산원재료 가격이 $a_1(1 + t_m)$ 까지 상승할 조건은 국산원재료 한계생산 비용이 X_3 에서 $a_1(1 + t_m)$ 보다 큰 경우이다.

15) 국산원재료가 존재하는 경우 관세수입은 R_1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국산재가 없을 경우의 관세수입 T_1 은 R_1 이외에 C 라는 원자재생산에 있어서의 死重損失과 生産者剩餘로 전환된다.

있는데, 과연 관세면제 또는 환급이 원재료 국산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면제인 경우 국산원자재의 생산은 관세가 부과된 이후의 생산량 Y_1 에서 변화가 없음을 [圖 2-3]에서 알 수 있다. 즉, 國內原材料의 生産增加는 輸入原材料의 關稅賦課로 야기되었을 뿐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관세환급제도에 존재하는 자금부담에 따른 국산화를 표면적으로 다룬 분석이 아니므로 아래의 분석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國產原資材의 生産增加는 이에 대한 關稅賦課로 발생하며, 國產財價格이 이미 關稅를 포함한 價格으로 상승한 후에 이루어지는 關稅還給制度의 導入은 國產財의 限界需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국산원자재 보호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 關稅還給

1996年 還特法 改編 이전 당시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특징은 還給金을 돌려 받을 때까지 수출업체가 자금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국산원자재를 선호하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야기되는 金利費用은 수입재를 사용하는 수출업체에게 실제적으로는 部分還給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아래의 분석에 의하면 원료의 국제가격에서는 국산재의 생산비용이 높아 국내소비에 투입되는 원료만큼도 국내생산이 안될 경우 資金負擔으로 인하여 국산재의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原料의 國內價格이 이미 $a_1(1+t_m)$ 으로 增加하였고 輸入財에 대하여만 還給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資金負擔과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未還給額 등 각종 還給費用으로 관세환급제도는 차후에 정부가 관세납부액 전부를 돌려준다고 하여도 실제 환급금은 관세납부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환급이 部分的으로 이루

어저 전체 관세부담액의 일부인 $\beta(0 < \beta < 1)$ 만큼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그 효과는 [圖 2-4]와 같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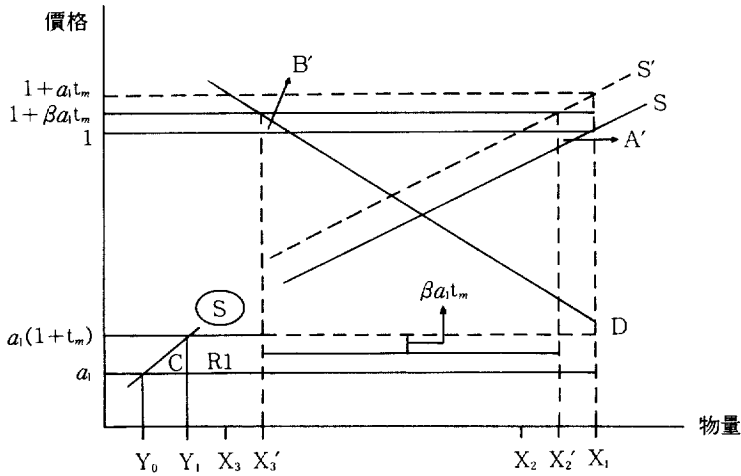
국산원재료 가격이 $a_1(1+t_m)$ 인 까닭은 국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입재를 $a_1(1+t_m)$ 으로 매입하거나 국산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관세를 제외한 국산원자재 가격이 a_1 이하에서 유지되면 超過需要가 발생하여 그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격의 인상은 [圖 2-4]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완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산업이 관세를 포함한 수입가격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없다면 國產中間材의 價格은 $a_1(1+t_m)$ 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完製品의 國內價格은 같은 폭으로 인상되지 않고 $\beta a_1 t_m$ 만큼만 증가한다. 이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수출과 국내공급을 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같아지는 선에서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수출가격은 1로 정해져 있고 수입원료의 가격은 $a_1[1+(1-\beta)t_m]$ 이므로 생산자의 입장에서 국내외 공급의 변화를 통하여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한다면 완제품의 국내가격이 $\beta a_1 t_m$ 만큼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표로 설명한 것이 아래의 <表 2-3>이다.

따라서 완제품의 총생산과 수출은 각각 X'_2 , $X'_2 - X'_3$ 에 달하는데 이는 관세면제에 비하여 생산과 수출의 증가폭이 적은 편이며 다만 국내가격의 소규모 인상으로 국내소비가 감소하는 규모도 작은 편이다. 原資材에 대한 關稅還給으로 輸出이 關稅賦課 以前보다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환급률 β 의 크기와 공급·수요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消費 및 生産에 있어서의 死重損失(welfare loss)도 상술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關稅

16) 우리나라의 경우 $1-\beta$ 를 수입원자재 1원당 소요된 金利費用 및 資金負擔을 포함한 資金費用과 行政費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未還給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去來費用으로 해석할 수 있다.

[圖 2-4]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還給(國產化 比率이 낮은 경우)



<表 2-3> 關稅還給時的 國內價格

	완제품가격	수입원료 가격	부가가치
수 출	1	$a_1 + t_m a_1 - \beta t_m a_1$	$1 - a_1 [1 + (1 - \beta) t_m]$
국내공급	a	$a_1 (1 + t_m)$	$1 - a_1 [1 + (1 - \beta) t_m]$

減免制度에서는 감면되지 않는 부분이 정부세입으로 나타나지만 關稅還給制度에 있어서는 金融費用이 정부의 이자수입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관세환급제도에서 야기되는 자금부담이나 환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은 비생산적인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에 社會的 費用으로 간주된다¹⁷⁾.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國產化 比率이 적은 中間材産業에서는 관세환급제도가 국산화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輸出用 輸入原料'에 관한 關稅의 事前免除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상기의 분석은 환급률 β 의 조정으로 국산원자재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17) 환급비용만큼 관세를 사전에 경감하는 제도도 사실 관세환급제도보다 행정비용이 적으리라는 보장은 물론 없다.

없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수출도 관세면제시보다 감소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國產原資材의 保護程度는 관세환급제도가 아니라 原料에 적용되는 關稅率의 高低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原資材의 國內價格이 關稅를 포함한 價格으로 이미 增加하였고 輸入財에 대하여만 還給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產化 比率이 작은 輸入中間材에 대하여 1996년 關稅還給制度 改編案과 같은 事後精算制度가 적용된다면 국산원자재 생산이 축소되지 않으면서 완제품수출은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中間材와 完製品에 대하여 均等關稅率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관세율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關稅還給制度를 簡素化한 本 改編案은 국산화의 미명하에 야기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하면서 수출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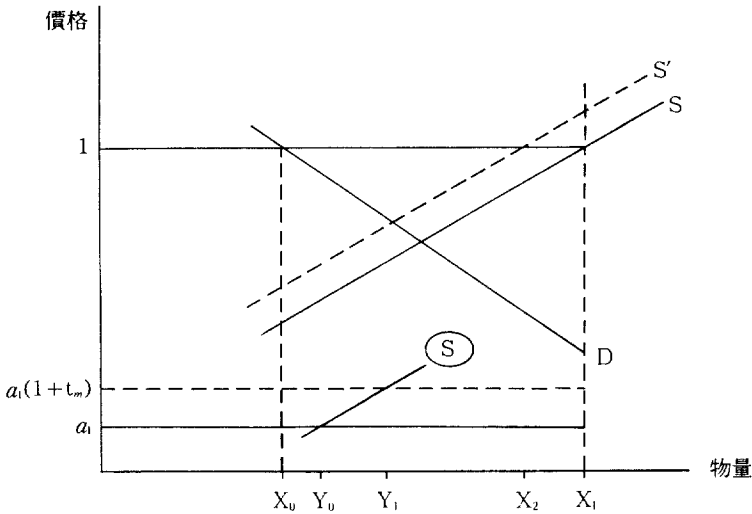
4. 還給(關稅免除)制度의 經濟的 效果Ⅲ

가. 關稅免除

국산원재료의 생산비용이 낮아 수출품 제조에도 국산원재료 일부가 수입재와 함께 투입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경우,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국내경쟁력이 미약한 경우의 분석결과와 相異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圖 2-5]를 살펴보면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로 국내원자재 생산이 Y_0 에서 Y_1 으로 증가할 것이다(완제품생산은 X_2). 이후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실행된다면 輸入財로의 대체가 이루어져 국산원자재 가격은 $a_1(1+t_m)$ 에서 유지될 수 없고 a_1 으로 하락하게 된다.

18) 다만 이 경우 사후정산제도의 실제운영 비용이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할 때보다 과중한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면 사후정산제도는 관세환급제도보다 열등한 제도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圖 2-5]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免除(國產化 比率이 높은 경우)



그 이유는 關稅免除가 허용되면 輸出部問에서 輸入財로의 代替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국산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그 가격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소비에 쓰여지는 완제품의 경우, 수입재투입에 따른 비용은 $a_1(1+t_m)$ 이고 국산재에 대한 비용은 a_1 이어서 국산원자재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지만 한계생산비용이 낮아 이러한 초과수요가 국산원재료 가격을 상승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수입도 $Y_1 - Y_0$ 만큼 늘어나게 되어 완제품과 원재료의 생산 및 수출규모는 關稅賦課 以前과 똑같은 點에서 균형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關稅免除制度는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뜻에서 輸出用 輸入原料뿐만 아니라 ‘全體 輸入原材料’에 대한 關稅의 零稅率 適用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¹⁹⁾.

19) 이와 같이 원자재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미약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關稅還給制度는 환급비용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關稅減免制度가 우월한 제도이다. 그러나 前者의 경우 관세면제는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減免이고 後者は 全體 輸入原料에 대한 減免이라는 점에서 분석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품에 사용한 수입원료에 부과된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국산원료는 관세부과로 국산화 비율에 따라 그 가격이 인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산재를 수입품에 사용할 경우 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논리상 국산원료는 국내소비에 사용되는 완제품에만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행정당국이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輸入原資材가 輸出品에 體化(physically incorporated)되어 있어야 한다면 수입원료는 국내소비에 이용되는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수출품생산에 투입되어 환급이 되고 국산원료는 국내소비를 위한 완제품에만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서류상으로만 원재료수입과 수출을 연계하여 환급한다면 국내소비에 사용되는 완제품과 수출품 생산시 국산재와 수입재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 즉, 정부가 수출품에 수입재가 체화되어 있는지 조사하지 않고 다만 수출을 이행하였다는 사실과 원자재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한다면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 이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WTO 협약이 美國 등의 주장으로 輸入財 대신 國產財를 사용하여도 關稅還給을 적용하는 代替還給制度(substitution drawback)를 인정한 이유는 當該 制度를 통한 國產化 促進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검토를 통한 還給 등 還給行政의 簡素化가 대체환급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⁰⁾.

20) WTO 補助金協定上 代替還給制度가 해당 원재료수입시 납부된 關稅額 以內에서 國產原材料 투입에 대한 補助金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성격의 보조금은 원자재에 대한 一定한 輸入額을 가 정하면 關稅率과 輸出品에 대한 國產投入係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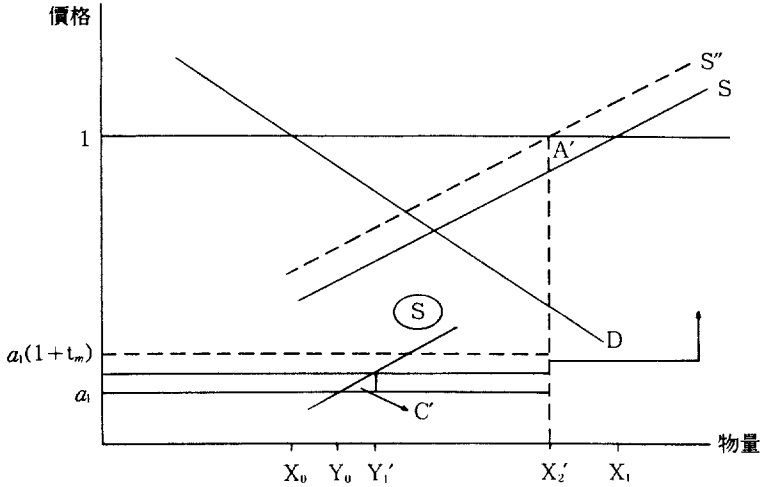
나. 關稅還給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부과 이후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하면 그 경제적 효과는 상술한 바와 같이 關稅의 部分免除(β 만큼)와 같다. 따라서 수입재의 국내가격은 수입재 1단위당 환급비용을 포함한 가격, 즉 $a_i[1+(1-\beta)t_m]$ 로 증가하고 국산재가격과 그 생산도 이러한 價格引上에 相應하는 增加率을 보이는데 그 크기는 물론 供給彈力性에 의하여 결정된다²¹⁾. 따라서 關稅還給制度가 完全免稅에 비하여 原資材의 國產化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國產化 比率이 낮은 경우에는 輸出減少를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하며, 특히 國產化 效果는 社會的 費用 또는 還給費用에 正比例한다. 즉, 환급절차가 간소화되면 될수록 환급되는 비율 β 는 증가하므로 환급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국산화되는 효과도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關稅還給制度의 實效性도 약화된다. 그리고 같은 관세의 부분면제이지만 원자재의 국내가격은 국산화비율이 낮은 경우보다 βat_m 만큼 적게 상승한다 ([圖 2-4]와 [圖 2-6] 참조). 그러므로 공급탄력성이 동일하다면 원자재의 국내생산도 국산화비율이 낮은 경우보다 증가하는 규모가 작다.

요컨대 國內生産費用이 높은 경우에는 國產化가 輸入財에 대한 關稅 引上으로 결정되고 輸出에 따른 關稅免除나 還給은 국산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國產化가 어느 정도 진척된 산업의 경우 原資材에 대한 關稅免除는 애초에 수입원료에 부과된 關稅가 目的으로 하는 國產財保護를 無效化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혹자는 關稅還給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圖 2-6]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자재에 대하여 t_m 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환급하는 경우와 전체 수입재에 대한 관세율을 경감하여 $(1-\beta)t_m$ 으로 하는 정책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없다. 오히려 환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등 社會的 費用

21) β 의 값이 1이라면 이는 앞 절에서 논의한 관세의 완전면제에 해당된다.

[圖 2-6]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還給(國產化 比率이 높은 경우)



을 유발하여 經濟的 效率性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남게 된다²²⁾.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경쟁력이 취약한 원자재산업에서는 關稅還給制度가 아닌 關稅가 國產化를 증진하고 관세환급제도는 輸出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의 事前免除로 환급에 따른 社會的 費用을 절약할 수 있다면 事後精算制度와 같은 관세유예제도가 바람직하다. 반면 국내산업이 상당 수준 기반을 이룬 원자재의 경우 關稅免除는 關稅로 인한 保護效果를 無效化하고 다만 關稅還給制度로 인한 國產化 效果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보호효과가 환급비용과 正比例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輸入原料(全體)에 대한 關稅를 처음부터 輕減하는 制度가 재정적인 고려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우월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선진제국이 原資材에 대하여 低關稅率을 유

22) 국산재보호와 수출감소에 따른 死重損失도 각각 C' , A' 으로 관세율인 하와 그 효과가 동일하다.

지하고 關稅還給制度보다는 保稅工場類의 輸出支援制度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국산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경제 수준에 도달하면 수출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과와 환급이 원료의 국산화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관세환급제도보다는 보세공장이나 수출자유지역을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保稅工場은 관세환급제도에 비하여 輸出産業의 附加價値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즉, 수출품가격은 국제가격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각종 환급비용을 해외로 이전할 수가 없어 국내 수출산업이 환급부담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세공장의 선별적 시행으로 야기되는 행정비용이 적다면 후자가 더 우수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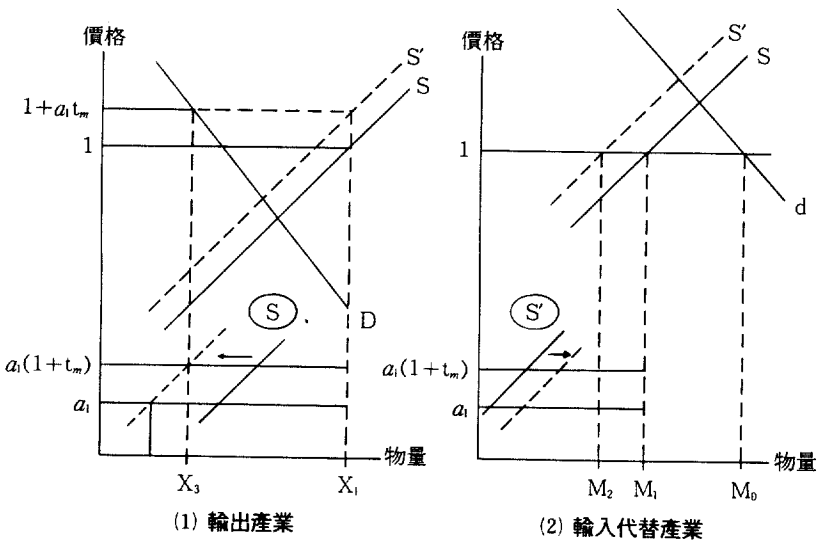
5. 一般均衡에서의 關稅免除(還給)制度

지금까지의 논의가 一般均衡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안정성(robustness)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균형에서는 非交易財나 輸入消費財가 있고 수입원재료가 이들 제품에 각각 투입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데 非交易財의 경우 貿易收支의 變化와 이에 따른 換率變動을 포함한 完製品의 相對價格의 變化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분석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일반균형에서는 關稅支援政策으로 인한 二次的 波及效果, 즉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이동 그리고 무역수지의 변화와 환율변동 등을 고려하면서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분석은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질에서는 관세환급제도의 시행에 따른 國產原資材의 超過供給이 原料의 價格下落을 誘發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일반균형분석 결과를 간단히 논의한다. 한 예로서 수입원료와 국산원료가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를 고려하

는데 국산화율이 높고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의 완전면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분석하면 [圖 2-7]과 같다²³⁾. 우선 수입원료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은 $a_1(1+t_m)$ 로 증가하게 된다.

[圖 2-7] 一般均衡下에서의 關稅支援制度의 效果



이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가 허용된다면 수출산업에서는 수입원료를 선호하게 되며 이에 따라 國產原料에 대한 超過供給이 발생하여 價格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산 원료산업은 수입대체산업으로 공급을 이전하게 되는데 만약 수입대체산업의 규모가 커서 이러한 초과공급을 원료의 가격인하를 수반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면 국산 원재료가격은 그대로 $a_1(1+t_m)$ 에서 유지하게 된다²⁴⁾.

23) 아래에서 논의되는 일반균형의 이면에는 비교역제도 존재한다.

24) 이밖에 수출품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소비가 감소하는 동시에 수입재가 이에 대한 소비의 대체재라면 수입은 증가하는 등 이차적 파급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部分均衡과는 달리 一般均衡下에서는 國產化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關稅免除가 國產原材料의 生産增大에 逆效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수입경쟁재에서의 당해 원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서 국산원료의 초과공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²⁵⁾.

이러한 결과는 국산화율이 낮은 경우와 유사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國產財保護의 效果는 關稅賦課로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이며 關稅還給制度가 國產化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입경쟁재산업이 국산 원재료가격의 하락이 없이 초과공급을 수용할 수 없으면 국산재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여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전과 같이 될 수도 있다²⁶⁾. 이밖에도 産業間 生産要素의 價格(附加價値)의 變化로 生産要素가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른 소비 및 공급행태의 변화 그리고 貿易收支 變化에 따른 換率變動 등이 巨視的으로 關稅還給政策에 이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본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향후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과제이다.

第4節 關稅免除(還給)制度의 經濟的 效果: 結論

여태까지 關稅免除(還給)制度의 經濟的 效果에 대하여 理論的으로 分析하고 論議하였다. 關稅還給制度는 輸出補助金과 같이 輸出支援效果가 있다. 그러나 國內原料産業이 非效率的이어서 원자재의 수입가격에서 완제품의 국내소비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경우 國產財의 保護效果는 原材料에 대한 關稅賦課로 야기되

25) 만약 국산원료의 공급곡선, ⑤'의 이동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 M_2 와 $a_1(1+t_m)$ 가 만나는 점의 아래로 이동하면 다른 결론이 유도될 것이다.

26) 국산화율이 낮은 경우는 그 뜻대로 수출품에서의 초과공급이 수입경쟁재 산업으로 이동하여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이 적다.

고 還給率의 增減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관세환급제도의 消費稅的 役割로 완제품 국내가격이 증가하여 국내소비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보다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輸出은 關稅賦課 以前보다 더욱 增加하는 輸出支援效果가 있다. 그러므로 국내산업이 유약한 원자재산업의 경우 당해 수입재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하여 관세를 事前免除하는 제도는 환급에 따른 社會的 費用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事後精算制度和 같은 관세유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原料生産의 國產化率이 상당한 경우에는 關稅와 輸出用 輸入原料의 免除로 인하여 輸出과 國內生産은 변화하지 않고 원재료에 대한 關稅賦課 以前과 경제적 효과가 同一하다. 關稅還給制度는 原料의 國產化에 效果가 있으나 이는 輸出減少를 동반하며 保護效果는 還給費用과 正比例한다. 또한 이러한 보호효과는 환급비용 외에도 행정비용 등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결국 국산화는 직접적인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全體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를 처음부터 輕減하는 制度가 금융 및 행정비용 등 각종 社會費用을 국가재정으로 환수하고 국내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세환급제도보다 우월한 제도이다²⁷⁾. 一般均衡下에서도 이러한 결론이 대체로 적용되며 구체적으로는 관세환급이나 면제로 야기되는 국산원료에 대한 需給變化가 국내 원료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이다.

선진제국이 原資材에 대하여 低率의 關稅率을 부과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保稅工場을 도입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에서는 中間材의 國產化가 상당히 진척된 데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간재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닌 경우, 관세환급제도는 국산화보다 수출감소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선진국은 관

27) 이와 같은 결과는 원자재 생산비용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constant return to scale production)에도 적용된다.

세환급으로 인한 각종 비용의 절약과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보세공장 등 관세면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성장잠재력의 강화를 위하여 국산화가 꼭 필요한 전략산업 등은 代替還給制度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근에 事後精算制度의 導入과 還給節次의 簡素化를 통하여 輸出業體의 資金費用을 줄이고 관세환급제도의 고유목적인 輸出支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본고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정책변화이다. 나아가서 향후 우리나라 關稅政策은 國產化가 저조한 中間材는 現行의 關稅率을 유지하고 代替還給制度를 도입하여 中間材의 國產化를 지향하되 輸出用 輸入原材料에 대하여는 保稅工場의 擴充과 事後精算制度 등 각종 關稅猶豫制度를 施行함으로써 최대한의 輸出支援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第3章 우리나라 關稅還給制度의 變遷過程 및 現況

第1節 關稅還給制度의 實施背景

우리나라의 關稅還給制度는 1975년에 도입된 일종의 輸出支援策으로서 그 이전까지 시행되어 오던 事前免稅制度를 대체한 제도이다. 事前免稅制度는 輸出用 原材料에 대해서 關稅를 면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輸出競爭力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1949年 關稅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되어 왔다. 事前免稅制度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輸出用 原材料를 輸入할 때에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1년 동안 조건부로 關稅를 免稅措置하였다가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 등에 제공하면 免稅處分한 關稅를 징수하지 않는 반면, 수출 등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輸入時에 免稅處分한 關稅를 징수하는 制度이다¹⁾.

事前免稅制度는 무역규모가 작고 국내산업의 對外競爭力이 극히 미약하여 단순가공무역단계에 있던 1960年代 우리나라의 輸出增大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²⁾. 그러나 事前免稅制度는 무역량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국내산

1) 1975年 이전의 關稅法 第32條 참조.

2) 김종호·김중선(1996)은 國內 賦存資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증대를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原材料 輸入이 불가피하였으며, 기술과 자본력이 부족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만약 輸出用 原材料를 수입할 때에 關稅를 부과하였다면 輸出原價의 상승요인이 되어 국제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事前免稅制度는 시기적으로 최선의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이 발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야기하였다.

첫째, 中間原材料의 國內거래가 다단계로 복잡해짐에 따라 事後管理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면세수입된 원재료는 수출을 조건으로 면세되었기 때문에 輸出履行 與否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재료를 면세수입하여 수출할 때까지 가공단계별, 거래단계별로 일일이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事前免稅制度는 면세받은 원자재를 輸出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면세금액을 징수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間原材料의 國內거래가 다단계로 복잡해짐에 따라 수출이행 확인을 위한 實物管理 節次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輸出履行 確認을 위한 行政需要가 증가하고 수출업체의 인력과 자금부담이 가중되어 生産原價 上昇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더구나 産業構造가 고도화되고 國內산업이 발전하여 수출·내수 겸용공장이 일반화됨에 따라 다단계화된 國內거래단계에서의 輸出履行 여부에 대한 事後管理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高加工原材料의 수입이 촉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産業構造가 單純加工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事前免稅制度는 수입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國內生産 與否나 加工度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면세제도였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原材料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中間材의 수입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은 單純加工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外貨稼得率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결국 事前免稅制度下에서는 수출이 신장되어도 國際收支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原材料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면서 自立經濟體制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셋째, 輸出用 原材料를 內需用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國內産業의 발전에 따라 수출·내수 겸용공장이 일반화되면서 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수출용 원재료와 내수용 원재료의 완전한 구분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輸出用 原材料의 수입시부터 제품수출시까지의 對應輸出履行義務期間이 비교적 長期인 것을 악용하여 輸出用 原材料를 內需用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내수용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對應輸出履行義務를 행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事前免稅制度의 문제점은 1973년에 석유과동과 국제원재료과동이 일어나면서 부각되었다. 당시 사회에는 單純加工 形態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단순가공 형태에 머물러 있게 한 요인 중의 하나로 事前免稅制度가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事前免稅制度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마침내 1975年 7月 1日부터 사전면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關稅還給制度를 시행하게 되었다.

關稅還給制度가 사전면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환급제도가 事前免稅制度에 비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關稅還給制度는 事前免稅制度에 비해 세관과 수출업체의 업무가 대폭 감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事前免稅制度는 면세수입된 輸出用 原材料의 대용수출이행확인을 위한 복잡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關稅還給制度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에 關稅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후관리가 필요 없다.

특히 定額還給制度의 경우 輸出品目別로 還給金額을 미리 책정해 두고 수출 후에 定額還給率表에 따라 미리 책정된 關稅가 환급되기 때문에 事後管理가 매우 간단하고 人力과 費用이 절약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個別還給制度의 경우는 定額還給方式과는 달리 事後管理가 복잡한 특징을 갖는다. 輸出品의 製造·加工에 소요된 輸出用 原材料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요량증명제도를 두고 있으며, 원재료수입시의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

서, 수입면장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을 還給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個別還給制度도 사전면세제도에 비해 事後管理가 간단한 편이다.

둘째, 關稅還給制度는 사전면세제도에는 없는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事前免稅制度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國內產業 保護效果는 없고 輸出支援效果만 갖고 있다. 반면 關稅還給制度는 수출지원 효과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환급시까지 자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가능하면 관세부담이 없는 國產原材料를 사용하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第2節 關稅還給制度의 根據法規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근거법규는 關稅法 第32條이다. 이 조문은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關稅額의 범위 안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關稅法에는 관세환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1975年 7月 1日부터 시행되고 있는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 還給에 관한 特例法(이하 關稅還給特例法이라 함)’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關稅還給特例法은 15개 條文의 法, 38개 條文의 施行令, 13개 條文의 施行規則, 15개 條文의 施行細則으로 구성된다.

關稅還給特例法 第1條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關稅法·臨時輸入附加稅法·特別消費稅法·酒稅法·交通稅法·農漁村特別稅法(이하 關稅法 등이라 함)과 國稅基本法 및 國稅徵收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關稅還給特例法은 다른 일반세법에 대한 특례법이므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一般稅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特例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輸出用 原材料의 수입시에 부과되는 輸入諸稅 중에서 관세 환급특례법에서 특례사항을 정하지 않은 附加價値稅는 당해 법령에 의해서 還給하여야 한다.

第3節 關稅還給制度의 變遷

1. 關稅還給特例法の 改正

關稅還給特例法은 1974年 12月 12日에 法律 第2675號로 제정되어 1975年 7月 1日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³⁾. 이는 關稅還給制度를 운용해 오는 동안 문제점으로 부각된 過多·過少還給의 발생소지, 具備書類 및 還給節次의 複雜性, 환급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業體의 資金負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었다.

1975년에는 <表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還給對象을 확대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第1次 改正이 있었다. 수입 당시에 關稅 등을 납부하였거나 徵收猶豫를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상태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에도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保稅工場이나 輸出自由地域 入住業體 등에 반입한 물품의 경우에도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附加價値稅制가 실시됨에 따라 1976년에는 關稅還給特例法の 第2次 改正이 이루어졌다. 제2차 개정안에서는 직물류세, 물품세, 석유류세를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로 바꾸는 등 內國消費稅와 관련된 용어 및 규정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內需用物品 製造用 原材料의 수입시에 세관장이 징수하던 내국소비세에 대한 內國稅額控制制度를 폐지하였다.

3) 關稅還給特例法 施行令, 同法 施行規則, 同法 施行細則 등은 거의 매년 개정되었다.

1977年 7月 23日에는 환급에 갈음하는 稅率 引下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第3次 改正이 있었다.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關稅還給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급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關稅還給特例法の 第4次 改正은 1984년에 있었다. 제4차 개정에서는 예전에 수입일로부터 1年 6個月 이내에 수출에 제공된 경우에만 환급해 주던 것을 內國信用狀에 의한 거래가 그 직전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年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이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平均稅額證明制度, 先還給·後精算制度, 相計制度 등을 도입하여 환급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을 하게 된 이

<表 3-1> 關稅還給特例法の 改正內容

	改正日字	主 要 內 容
1次 改正	1975.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한 상태대로 수출한 물품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세공장,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 반입한 물품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次 改正	1976.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소비세와 관련된 용어 및 규정내용을 정리함(직물류세, 물품세, 석유류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내수용 물품에 대한 내국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
3次 改正	1977.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특세율제도를 실시하여 수출용에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여 환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4次 改正	1984.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거래가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그 기간과 1년 6월을 합산한 기간으로 조정함. ○ 평균세액증명제도, 선환급·후정산제도, 상계제도를 신설함.

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 동안의 환급제도가 모든 輸出品에 대한 定額還給化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定額還給率 策定方法上的의 문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쳐 個別還給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점을 시정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1980年代 初 국제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國際競爭力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還給節次를 簡素化하고 수출업체의 資金負擔을 緩和하려는 것이었다.

2. 定額還給制度의 改善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制度를 도입하면서 1975년부터 실시된 定額還給制度는 모든 수출품에 대한 정액환급화를 목표로 시행되었으나 10년이 경과한 1985년에 접어들어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주로 個別還給制度가 이용되었다. 수출업체가 간편한 정액환급제도의 이용을 기피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인 平均概念에 의해 산출된 定額還給額이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된 세액과 일치하지 않아 過多·過少還給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85년부터 정액환급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簡易定額還給制度와 副材料定額還給制度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簡易定額還給制度는 그 적용대상을 少額輸出物品⁴⁾에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소액수출물품의 경우 관세환급액이 많지 않아 定額還給을 실시하더라도 過多·過少還給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개별환급 허용여부 결정기준인 20% 이상의 過少還給 確認方法도 종전에는 환급신청시마다 건별로 확인하던 것을 수출업체별로 매년 1회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還給節次를 簡素化하였다.

4) 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輸出免狀上的 輸出金額이 미화 2만달러 이하인 輸出物品에 한해서 적용되었다.

簡易定額還給制度와 동시에 도입된 副材料定額還給制度는 과다·과소환급액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환급액이 많으면서도 품목수가 적은 主材料는 個別還給으로 정확한 환급을 기하고 환급액이 적으면서도 품목수가 많은 副材料에 대해서만 定額還給을 실시하는 제도였다. 수출물품의 主材料와 副材料는 수출물품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전년도의 平均還給額을 기초로 하여 평균환급액이 많은 것부터 합산한다. 그래서 전체 평균환급액의 80%를 초과할 때 이에 합산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輸出用 原材料를 主材料로 하고 그 나머지를 副材料로 구분하여 부재료에 대한 定額還給額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1990년부터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가 도입되면서 副材料定額還給制度는 1991年 末 關稅還給特例法 施行令의 개정시에 폐지되었다.⁵⁾ 副材料定額還給制度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主材料와 副材料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過少還給이 발생함에 따라 업계의 호응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副材料定額還給制度를 대체한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전년도 6個月 이상의 기간 동안 업체가 수입 또는 구매한 수출용 원재료의 平均納付稅額을 기초로 업체별·품목별로 수출물품별 정액환급액을 산정하여 관세청장이 定額還給率表를 고시하고 輸出業體로 하여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定額還給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還給節次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3. 個別還給制度의 改善

個別還給制度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별로 개별적으로 수입될 때의 納付稅額을 확인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구비서류와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還給金을 지급하는 데 장기간이

5) 1991年 關稅還給特例法 施行令 第20次 改正(대통령령 제13552호)에 따라 第14條 第3項 副材料定額還給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4年 관세환급특례법의 개정시에 平均稅額證明制度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관세율표상의 품명단위로 통합한 平均稅額證明書를 발급하여 輸入免狀 대신에 환급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세환급신청시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기업체의 資金負擔을 시정하고자 1984年 관세환급제도의 전면 개편시 先還給·後精算制度를 도입하여 1985年 4月 23日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 制度는 수출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輸出免狀 등 수출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우선 환급해 주고 3個月 이내에 個別還給申請書類를 작성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先還給·後精算制度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출업체에 신속한 환급을 하기 위하여 1991年부터 세관장이 인정하는 성실수출업체에서 환급신청한 個別還給申請書類에 대해서는 還給申請金額을 신청서 접수 즉시 우선 지급한 후 還給額의 적정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先支給·後審査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4. 其他 制度의 補完

定額還給制度 및 個別還給制度의 개선 이외에도 지금까지의 관세 환급제도 실시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제도의 변천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還給에 갈음하는 稅率引下制度의 도입으로써 1977年 7月 23日 關稅還給特例法 第6條 第2項에 새로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주로 輸出品 製造用으로 輸入되는 물품에 대해 처음부터 내수용 해당분만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시에 환급하지 않음으로써 還給節次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相計制度의 도입이 있었다. 事前免稅制度에서 關稅還給

制度로의 전환기에 수출업체가 갖게 되는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年間만 실시하고자 했던 徵收猶豫制度가 계속 시행됨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업자에게만 그 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輸出用 原材料의 국내 거래자에게도 수입업자와 같이 關稅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가 다단계화 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國內 附加價値의 증대를 통해 수출물품의 外貨稼得率을 제고하기 위해 1984年 關稅還給特例法의 개정시에 相計制度를 도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相計制度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輸出業體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輸入免許日로부터 1年 6個月 내에 수출에 제공한 후 상계할 것을 조건으로 關稅 등을 納稅告知猶豫하는 제도이다.

한편 1986년부터 나타난 3低 現象에 힘입어 貿易收支가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업체의 對外競爭力이 제고됨에 따라 수출지원 일변도로 운영되어 오던 經濟政策에 커다란 전환이 있었다. 그 중 하나로 당초 關稅還給制度의 시행시 3年間 時限附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수출업체의 반발로 계속 시행해 온 關稅徵收猶豫制度⁶⁾의 적용을 1988年 10月 1일에 중지함으로써 關稅還給制度의 시행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第4節 現行 關稅還給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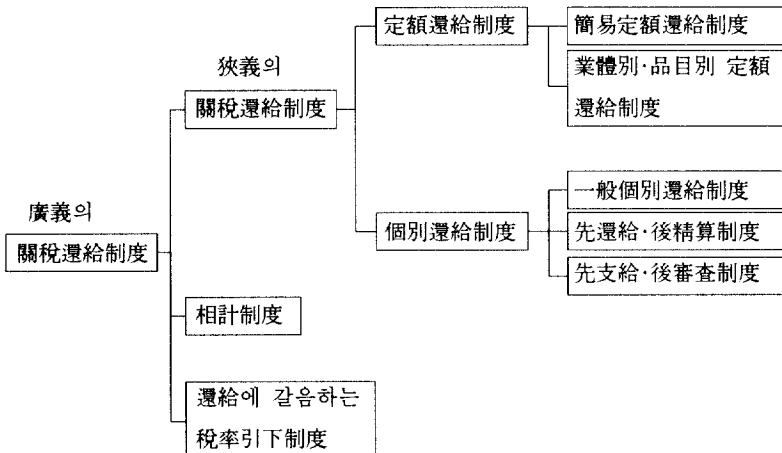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關稅還給制度는 [圖 3-1]에서

6) 關稅徵收猶豫制度란 수출업체의 자금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납부해야 할 關稅 등을 이 수출용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關稅를 환급받을 때까지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關稅還給制度로의 전환기인 1975년부터 1978년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시행령 부칙개정 등을 통하여 1988년까지 계속 운용되어 왔다.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輸出用 原材料를 製造·加工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좁은 의미의 關稅還給制度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相計制度和 還給에 갈음하는 稅率引下制度까지 포함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相計制度는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될 때 부과되는 관세를 납세고지유예하고 수출이 이행된 후 납세고지를 취소하는 제도이며, 還給에 갈음하는 稅率引下制度는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내수용으로 제공되는 비율만큼만 관세를 납부토록 함으로써 관세납부와 관세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좁은 의미의 關稅還給制度는 환급액의 산출주체에 따라 크게 定額還給制度和 個別還給制度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定額還給制度는 관세청장이 미리 정하여 놓은 定額還給率表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을 소요원재료 수입시의 納付稅額으로 간주하여 환급하는 제도이다. 반면 個別還給制度는 수출업체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받은 관세를 所要量證明書 및 輸入免狀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환급받는 제도이다.

[圖 3-1]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制度의 種類



1. 定額還給制度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事前免稅制度가 關稅還給制度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수입 원재료의 수출이행 확인을 위한 복잡한 事後管理節次는 생략되었지만 환금액 산출에 따른 환급절차의 복잡함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定額還給制度는 환금액 산출에 따른 환급절차의 복잡함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적용범위에 따라 簡易定額還給制度和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로 나누어진다.

가. 簡易定額還給制度

簡易定額還給制度는 소액수출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輸出 및 國內供給을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절차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료의 미비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中小企業者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1) 適用對象業體 및 適用對象物品

簡易定額還給率表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 및 同法 施行令 第2條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전년도 총환급실적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總還給實績은 定額還給과 個別還給을 모두 포함한 환급액과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의 발급실적을 합한 금액이다. 中小企業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환급신청시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從業員數 및 대차대조표상의 資產總額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簡易定額適用對象物品은 수출면허일에 시행되는 簡易定額還給率表에 계기된 HS 10단위 수출물품이다. 간이정액적용대상물품의 확인은 輸出免狀에 적혀 있는 세번부호가 간이정액환급률표상에 계기되어 있는 HS부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그러나 簡易定額還給率表에 계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물품은 간이정액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相計原材料로 제조된 輸出物品
- ② 原狀態輸出物品
- ③ 非適用業體로 승인받은 輸出業體에서 제조한 輸出物品

2) 簡易定額還給率의 策定

簡易定額還給率表는 수출물품의 HS 10단위를 기준으로 前年度 平均還給額을 기초로 하고 輸出構造, 原材料輸入構造, 關稅率 및 換率 등 원재료 납부세액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때 前年度 平均還給額은 個別還給實績에 한한다. 그 이유는 個別還給 이외의 방법에 의한 還給實績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納付稅額을 확인하는 데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簡易定額還給率表는 從價還給으로서 FOB가격기준 수출금액 10 달러당 환급액이 원화로 표시된다.

3) 簡易定額還給率表의 非適用

過少還給業體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과소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거하여 簡易定額還給率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還給實績申告書上的 平均還給額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산출한 환급액보다 20% 이상 많아야 한다⁷⁾. 또한 簡易定額還給率表의 비적용 신청은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事業者登錄番號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簡易定額還給率表의 非適用 申請에 대한 承認은 수출물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출업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

7) 關稅還給特例法 施行細則 第7-3條 第2項.

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경우에도 簡易定額還給을 신청할 수 없다⁸⁾.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簡易定額適用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簡易定額還給金の 算出方法

還給申請의 경우에는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을 10으로 나눈 뒤 간이정액환급률을 곱하여 還給額을 산출한다.

$$\text{還給額} = \frac{\text{輸出價格 (FOB US\$)}}{10} \times \text{簡易定額還給率}$$

이에 비해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 發給申請의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의 國內去來金額에는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그 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거래증명서류상에 物品代金과 轉嫁稅額이 구분 표시된 때에는 基礎原材料納稅證明稅額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공급금액에서 전가세액을 공제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簡易定額還給率을 적용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세액을 산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內去來證明書類上에 물품대금과 전가세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았거나 轉嫁稅額의 포함여부가 확실치 않을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거하여 物品代金을 산출하여야 한다.

$$\text{物品代金} = \frac{\text{國內去來證明書類上の 金額(FOB US\$)}}{1 + \frac{\text{적용할 簡易定額還給金額}}{10 \times \text{國內去來日의 課稅換率}}}$$

8) 關稅還給特例法 施行細則 第7-3條 第6項.

5) 簡易定額還給制度의 長短點

簡易定額還給制度는 크게 두 가지 長點이 있다. 첫째, 輸出物品 別로 還給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簡易定額還給率表에 기재하여 놓고 그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이 표에 의하여 還給하기 때문에 환급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簡易定額還給制度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급에 따르는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하고 특히 인력부족으로 所要量證明의 절차를 밟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中小企業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簡易定額還給制度下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輸出物品의 製造·加工에 소요된 輸出用 原材料의 가공단계나 국내 생산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평균개념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급해주므로 관세부담이 적은 低加工의 基礎原材料를 수입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것이 수출업체에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簡易定額還給制度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短點도 가지고 있다. 첫째, 政府가 고시한 簡易定額還給率은 품목별 평균환급실적을 기초로 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개별수출업체에 따라 過多 또는 過少還給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개별수출업체가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수입시점에 따라 원재료의 輸入價格, 關稅率, 換率 등이 다를 수 있으며, 技術革新의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원재료가 다르거나 원재료의 所要量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輸出業體의 簡易定額還給率을 잘못 책정할 경우 過多 過少還給의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나.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

定額還給制度가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定額還給率이 원재료의 납부세액과 일치하여 수출업체가 납부한 세액만큼 정확하게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액환급제도하에서 납부세액은 원재료의

수입가격에 換率과 關稅率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원재료가 동일하더라도 그 納付稅額은 수입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過多 또는 過少還給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定額還給率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출용 원재료의 輸入價格과 關稅率, 換率 등의 변동으로 인한 납부세액의 변화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簡易定額還給制度를 개선한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를 도입한 이유는 個別還給制度 위주로 운영되고 있던 관세환급제도가 定額還給制度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왜냐하면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가 개별환급제도에 비해 환급신청서류의 작성 및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개별환급제도에 비해 관세환급과 관련한 社會的 費用이 적게 소요되므로 보다 바람직한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1) 適用對象業體 및 適用對象物品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이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輸出業體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輸出物品의 製造業者와 제조장 또는 주소지 관할 稅關長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의 적용을 받으려는 수출업자는 매년 1月 20日 또는 7月 20日까지 제조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定額還給對象品目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 업체가 두 개 이상의 製造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조장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從量還給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輸出品이 規格化되고 所要原材料가 標準化된 물품, 輸出品이 重量·넓이·부피 단위로 거래되고 所要原材料가 重量·넓이·부피

단위로 일정하게 소요되는 물품, 製品全量을 수출하는 업체의 물품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 적합한 品目들이다. 반면 還給申請件數가 적은 업체, 輸出品目的 변동이 심한 업체, 技術革新 등의 사유로 원재료의 변동이 심한 업체, 原材料 購買方法의 변동이 심하여 原材料 納付稅額의 변동이 심한 업체 등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부적합하다.

2)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率의 策定

稅關長으로부터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對象物品으로 적합하다고 지정받은 수출기업은 定額還給의 策定資料⁹⁾를 제조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稅關長에게 매년 3月 15日 또는 9月 15日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후 稅關長의 검토를 거쳐 關稅廳長은 각 제조장의 輸出物品別 定額還給率을 책정하여 고시한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率을 책정하는 방법은 平均還給實績을 이용하는 방법과 平均納付稅額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平均還給實績을 이용하는 방법은 최근 6개월간의 수출물품 HS 10단위별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定額還給率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平均納付稅額을 이용하는 방법은 個別還給方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두 방법 중에서 平均納付稅額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로 平均納付稅額을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率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정해진다¹⁰⁾.

$$\text{定額還給率} = \text{原材料 1單位當 平均納付稅額} \times \text{調整率} \times \text{輸出品 1單位當 原材料別 所要量}$$

9) 최근 6개월간의 平均還給率 또는 최근 6개월간의 所要 原材料別 平均納付稅額과 소용량증명서류 및 수출물품의 생산과 판매현황 등 關稅廳長과 稅關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10) 調整率은 輸入量을 總所要量으로 나누어 구한다.

3)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率表의 非適用

해당업체가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요원재료의 關稅率 및 輸入價格의 급격한 변동, 製造工程 또는 所要原材料의 변동 등으로 개별환급액이 정액환급액보다 20% 이상 많은 경우에는 關稅廳長에게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個別還給이 가능하다¹¹⁾.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率表의 非適用 承認을 받은 때에는 비적용 승인 시점의 원재료에 대하여 제조장 관할 관세장에게 在庫申告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¹²⁾. 왜냐하면 비적용 승인에 의해 정액환급업체가 平均納付稅額이 아닌 輸入稅額으로 환급을 받게 될 경우 제한조치를 하지 않으면 過多 또는 過少還給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환급가능한 모든 원재료를 實物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金의 算出方法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率表에 계기된 정액환급률에 수출물품의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簡易定額還給은 수출물품의 가격에 정액환급률을 곱한 從價還給이지만,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은 從量還給이다.

5) 簡易定額還給制度와의 差異點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간이정액환급제도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簡易定額還給制度가 전년도 평균환급실적을 기초로 정액환급률을 책정하여 동일한 輸出物品에 대해서는 수출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환급하는 반면,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輸出用原材料의 최근 일정기간의 平均納付稅額을 기준으로 하여 업체별·품목별로 다른 定額還給率을 책정하고 있다. 둘째, 簡易定額還給制度가 從價還給을 하고 있는 반면, 業體別·品目

11) 關稅還給特例法 施行細則 第7-1-10條 第1項.

12) 關稅還給特例法 施行細則 第7-1-10條 第3項.

別 定額還給制度는 從量還給을 하고 있다. 셋째, 簡易定額還給制度는 簡易定額還給率을 1년마다 책정하고 있으나,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6개월마다 업체의 수출용 원재료 평균납부세액의 신고를 바탕으로 定額還給率을 개정하고 있다.

2. 個別還給制度

個別還給制度란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을 製造·加工하는 데 소요되는 輸出用 原材料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받은 關稅를 일일이 所要量證明書와 輸入免狀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個別還給方法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還給額 計算이 정확하여 過多·過少還給 問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關稅還給額을 계산할 때 확인사항 등이 많아 還給額 計算業務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個別還給制度에는 一般個別還給制度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先還給·後精算制度, 先支給·後審査制度 등이 있다.

가. 一般個別還給制度

1) 一般個別還給額의 算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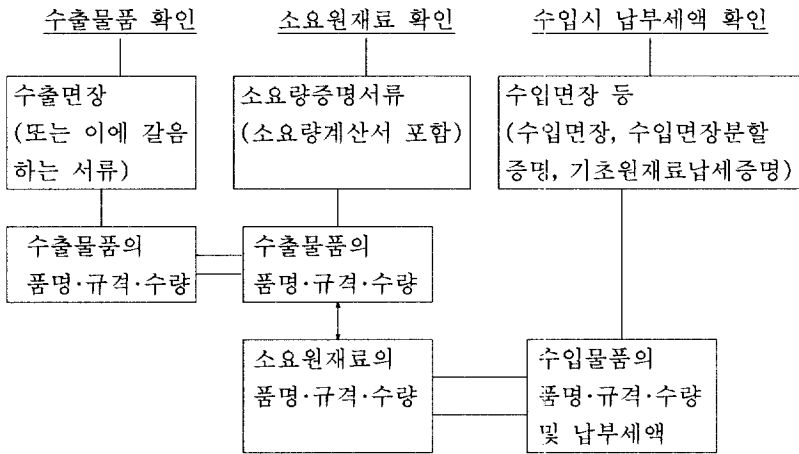
一般個別還給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輸出 등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¹³⁾ 외에 관세환급액 산출에 필요한 所要量證明書와 輸入免狀 등을 관세환급신청서에 첨부하여 환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還給機關은 [圖 3-2]와 같이 輸出免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의해 수출물품의 品名·規格·數量을 확인하고 所要量證明書類에 의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을

13) 還給對象輸出 類型別로 輸出 등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는 關稅還給特例法 施行細則 第8-4條 참조.

확인해야 한다. 所要原材料로 확인된 원재료의 HS부호·품명·규격·수량과 수입면장상의 세번부호·품명·규격·수량이 일치하면 수입시 납부세액이 關稅還給額이 된다.

一般個別還給에서는 同一性の 확인이 필요하다. 同一性은 수출면에 기재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원재료가 환급신청된 輸入免狀의 原材料와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輸出免狀과 所要量證明書間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이 서로 일치하고 소요량증명서상의 所要原材料와 수입면에 나타난 수입물품의 品名·規格이 서로 일치하면 해당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인정한다.

[圖 3-2] 一般個別還給額의 算出方法



2) 還給金 支給의 制限

一般個別還給은 원재료 수입시의 納付稅額 全額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상 還給金 支給을 일부 제한하는 制度도 운영하고 있다.

첫째, 個別還給金 支給制限制度가 있다. 이 제도는 輸出用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

료의 수입시 납부한 關稅 등을 환급할 때 財政經濟院 長官이 정하는 原材料에 대해서는 財政經濟院 長官이 정하는 비율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둘째, 副產物控除制度가 있다.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經濟的 價値가 있는 副產物이 발생하는 경우 損耗率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副產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요된 輸入原材料의 納付稅額 전부를 환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또한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副產物의 제조에 사용된 原材料에 대하여도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關稅 등의 金額에서 副產物의 價値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 殘額을 환급하는 副產物控除制度가 시행되고 있다.

나. 先還給·後精算制度

一般個別還給制度下에서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關稅還給申請書類가 완전히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 還給額金 算出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所要量證明書를 발급받아야 하며 輸入免狀등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품명·규격별로 확인하고 輸入時 納付稅額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一般個別還給制度는 關稅還給申請書를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킨다.

先還給·後精算制度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概算先還給制度라고도 한다. 즉, 수출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輸出免狀 등 수출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확인되면 關稅廳長이 정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3個月¹⁴⁾ 이내에 個別

14) 既納證을 한 장이라도 첨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先還給·後精算 期間이 3개월로서 國內去來 原材料를 사용한 경우 동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간축박으로 인한 還給不能事例가 발생하지 않도록 1990년부터는 이 기간을 4개월로, 1992년부터는 6개월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關稅廳, 『稅關年鑑』, 1991, 1993.

還給申請書類를 작성하여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1) 適用對象業體

先還給·後精算制度에서는 개산환급률표에 계기된 輸出物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輸出業體가 還給申請件別로 임의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두 번의 還給節次를 밟아야 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概算還給率의 策定

先還給 申請時에 우선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것이 概算還給率表이다. 概算還給率의 告示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월 말까지 輸出物品 HS 10단위별로 개산환급률의 고시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 동안에 환급결정을 받은 還給實績을 첨부하여 關稅廳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關稅廳長은 그 물품에 대한 최근 1년간의 환급실적을 기준으로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概算還給率로 책정하여 3월 31일까지 告示한다. 개산환급률표에 계기되지 아니한 수출업체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先還給·後精算制度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청장은 輸出構造, 原材料 輸入構造, 關稅率 및 換率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산환급률표상의 概算還給額이 너무 많거나 적어서 이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概算還給率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¹⁵⁾.

3) 概算還給金의 精算

概算還給金을 우선 지급받은 자는 概算還給申請日로부터 3개월(기납증 제출시 6개월) 내에 個別還給에 필요한 諸般書類를 구비하여 지정된 還給機關에 還給金 精算申請을 하여야 한다. 환급금 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환급한 概算還給金과 加算稅 10%

15) 關稅還給特例法 施行細則 第11-2條.

를 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概算還給申請을 다시 할 수 없으나, 概算還給金を 징수한 輸出免狀 등에 대하여는 一般個別還給을 신청할 수 있다.

다. 先支給·後審査制度

先支給·後審査制度는 선환급·후정산제도의 보완제도로써 신속한 還給金の 지급으로 성실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先支給業體에서 신청한 還給申請書에 대하여 간략한 形式要件만을 審査한 후 신청 당일에 還給金を 지급하고 事後에 書類를 審査하는 제도이다.

1) 適用對象業體

先支給業體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還給金 先支給·後審査對象業體 指定申請書를 관할 稅關長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일정요건을 구비한 업체 중에서 세관장이 적용대상업체를 지정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업체가 신청하면 모두 先支給業體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업체가 대폭 확대되었다.

2) 先支給業體의 還給節次

관세장은 先支給業體의 환급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의 요건만 확인하고 신청서에 '還給金 先支給'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즉시 전산입력한 후 支給指示書를 발급하여 還給金を 지급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事後審査토록 한다.

선지급한 還給申請書類에 대하여는 申請日로부터 민원사무처리기간 내에 審査를 완료하여야 한다. 還給申請書를 심사한 결과, 선지급한 환급액이 확정된 還給額을 超過(不足)한 경우에는 關稅還給特例法 施行令 第26條 및 同法 施行細則 第8-7條 第3項의 규정을 준용하여 즉시 徵收(追加還給)하여야 한다. 또한 先支給業體의 還給申請書類를 심사한 결과, 過多 또는 過少還給이 빈번히 발생하여 同制度에 의한 還給業務 運營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一定期間 또는 特定品目を 정하여 同制度의 適用을 제한할 수 있다.

3) 先還給·後精算制度와의 差異點

先還給·後精算制度和 先支給·後審査制度는 모두 個別還給制度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先支給·後審査制度는 환급신청인이 個別還給申請書類를 작성하여 還給機關에 제출한 때에만 적용되는 반면, 先還給·後精算制度는 個別還給申請書類를 작성할 필요 없이 概算還給申請書에 수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輸出免狀 등)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先還給이 가능하다.

둘째, 先支給·後審査制度에서는 個別還給申請金額을 先支給額으로 우선 지급하는 반면, 先還給·後精算制度에서는 概算還給率表上的의 금액을 지급한다.

셋째, 先支給·後審査制度에서는 個別還給申請書類가 모두 구비된 후에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還給機關의 심사결과 잘못이 없으면 그대로 종결되는 반면, 先還給·後精算制度에서는 還給申請書類가 제출되지 않고 輸出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輸出免狀 등)만 제출된 상태에서 先還給되므로 精算을 하기 위해서는 個別還給申請書가 작성되어야 한다.

3. 相計制度

相計制度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처음부터 關稅를 납부하지 않는 제도로서 넓은 의미에서 關稅還給制度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相計制度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업자에게만 資金負擔 緩和의 혜택을 주게 되는 關稅徵收猶豫制度¹⁶⁾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 關稅徵收猶豫制度는 1975년 事前免稅制度로부터 關稅還給制度로 전환되면서 수출업자에게 주는 資金負擔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서 3년 예정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제도였다. 그러나 資金調達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인들이 이 제도의 존속을 선호함에 따라 계속 유지되었고, 그 결과 輸出用 原材料의 수입업자에게만 資金緩和의 혜택이 주어져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을 촉진하게 되었다.

1984年 關稅還給特例法の 개정시에 도입되었다.

상계제도는 輸出用 原材料의 수입시에 부과되는 관세를 輸入免許 日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을 수출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納稅告知猶豫한 후 그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유예된 납세고지를 취소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납세고지유예된 關稅와 그 금액의 25%를 加算稅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相計制度의 장점은 원재료 수입에 따른 關稅 등의 資金負擔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반면 輸出用 原材料의 國產化를 저해하고 실물관리에 따른 管理費用이 많이 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가. 適用對象業體

相計制度의 適用對象業體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 자기가 수입한 원재료의 製造·加工施設을 保有(賃借契約에 의한 시설의 임차 포함)한 수출업체 ② 貿易業登錄을 하고 최근 3년간 輸出入實績이 있는 수출업체 ③ 關稅廳長이 상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인정하는 수출업체 ④ 直輸出業體 등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방대한 輸出入物量에 대해 정부가 事後管理를 철저히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의 성실한 相計義務 履行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① 相計業體指定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② 保稅工場 設營人 ③ 輸出自由地域 入住企業體 등은 상계업체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나. 相計原材料의 指定

相計原材料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 상계업체가 直輸出할 物品製造用 原材料 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③ 상계업체의 輸出物品製造用 主材料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相計原材料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당시 財政經濟院

長官이 정하는 還給 및 納稅告知猶豫 制限物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이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相計制度가 實物管理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管理費用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 納稅告知猶豫 承認

관세청장으로부터 相計業體로 지정된 수출업체에서 지정된 상계 원재료를 輸入通關하는 경우 納稅告知猶豫申請書와 納稅告知猶豫額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납세고지유예의 승인이 가능하다. 擔保物을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納稅告知를 유예하기 때문이다.

4. 還給에 갈음하는 稅率引下 制度

還給에 갈음하는 稅率引下 制度는 輸出用 原材料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이 수입되고 內需用으로 사용되는 것이 거의 없는 物品에 대해서 내수용으로 제공되는 비율만큼만 關稅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還給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때 내수용으로 제공되는 비율만큼만 關稅가 납부되도록 정한 稅率을 還給에 갈음하는 引下稅率(‘還特稅率’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이 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物品은 수입원재료의 대부분이 輸出用으로 사용되고 內需用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작아야 하며, 輸入原材料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당분간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國內産業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77年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적용물품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수출의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還特稅率은 名目關稅率에 총수입 대비 내수용 수입의 비율을 곱한 세율이다. 따라서 이 세율을 적용할 경우 內

需用 輸入은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을 輸出用 原材料로 사용하는 업체는 關稅還給制度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第5節 關稅還給 類型別 運用現況

1. 關稅還給制度의 類型別 還給實績

현행 關稅還給制度의 유형별 환급실적은 <表 3-2>와 같다. 關稅還給이 처음 시행된 1975년에 614억원에 불과하였던 關稅還給額은 1976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7년 1조 9,850억 원으로 最高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후 關稅還給額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4년에는 최고치 대비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조 59억 원에 머물렀다. 原材料 輸入의 증가와 完製品 輸出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關稅還給額이 減少趨勢를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關稅引下豫示制에 의해 원재료의 關稅率이 큰 폭으로 계속 引下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關稅還給額의 감소추세는 1994년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가 끝난 후 현재까지 더 이상 基本關稅率을 인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지 않고 있다. 基本關稅率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輸出額이 증가함에 따라 關稅還給額도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1996년에는 1조 4,357억 원을 기록하였다.

현행 關稅還給制度의 類型別 還給實績을 살펴보면 政府가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定額還給制度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定額還給制度의 확대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1996년의 경우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전체 환급액의 5.4%에 불과하며 전체 환급액의 대부분인 94.6%가 個別還給制度에 의해 환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定額還給

<表 3-2> 關稅還給制度 類型別 還給實績

(單位:億圓)

	關 稅 還 給									合 計
	定 額 還 給					個 別 還 給				
	簡 易 定 額	部 材 料 定 額	從 前 定 額 ¹⁾	業 體 別 品 目 別 定 額	小 計	一 般 個 別	先 支 給 後 審 査	先 還 給 後 精 算	小 計	
1975	—	—	100	—	100	514	—	—	514	614
1976	—	—	1,083	—	1,083	3,132	—	—	3,132	4,215
1977	—	—	1,120	—	1,120	3,306	—	—	3,306	4,426
1978	—	—	802	—	802	3,356	—	—	3,356	4,158
1979	—	—	774	—	774	3,754	—	—	3,754	4,528
1980	—	—	838	—	838	5,153	—	—	5,153	5,991
1981	—	—	2,397	—	2,397	5,779	—	—	5,779	8,176
1982	—	—	2,842	—	2,842	5,160	—	—	5,160	8,002
1983	—	—	3,567	—	3,567	5,906	—	—	5,906	9,473
1984	—	—	4,143	—	4,143	7,301	—	—	7,301	11,444
1985	348	57	4,665	—	5,070	5,738	—	548	6,286	11,356
1986	644	539	271	—	1,454	10,058	—	2,274	12,332	13,786
1987	536	1,054	—	—	1,590	14,346	—	3,914	18,260	19,850
1988	235	449	—	—	684	14,288	—	3,665	17,953	18,637
1989	104	206	—	—	310	12,160	—	3,024	15,184	15,494
1990	77	150	—	15	242	9,459	—	2,538	11,997	12,239
1991	92	67	—	148	307	7,794	274	2,557	10,625	10,932
1992	141	—	—	201	342	5,280	1,620	2,703	9,603	9,945
1993	264	—	—	129	393	3,795	2,564	2,925	9,284	9,677
1994	533	—	—	106	639	3,681	2,596	3,143	9,420	10,059
1995	701	—	—	116	817	4,756	3,339	3,285	11,380	12,197
1996	688	—	—	89	777	6,779	3,371	3,430	13,580	14,357

註: 1) 從前定額이란 환급제도 개선에 따른 定額還給率表를 시행하기 이전 (1985年 8月 31日 이전의 수출면허분)의 定額還給率表에 의한 환급실적임.

資料: 關稅廳.

制度에 의한 還給實績 777억원 중에서 簡易定額還給制度에 의한 환급액은 688억원으로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환급액 89억원보다 훨씬 많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의 도입목적이 簡易定額還給制度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定額還給制度를 확대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1996年에도 그 실적이 簡易定額還給制度에 의한 실적의 12.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個別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을 살펴보면 一般個別還給制度에 의한 환급실적이 아직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환급절차를 간소화한 先還給·後精算制度和 先支給·後審査制度가 一般個別還給制度를 상당부분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1996年의 一般個別還給制度에 의한 환급실적은 6,779억원으로 전체 個別還給實績 1조 3,580억원의 49.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985年부터 시행된 先還給·後精算制度에 의한 환급실적이 3,430억원으로 25.3%를 차지하였다. 先支給·後審査制度에 의한 환급실적은 전체 個別還給實績의 24.8%인 3,371억원으로 개별환급제도 중에서 이용실적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先支給·後審査制度가 1991年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利用實績이 저조하다기보다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關稅收入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율은 <表 3-3>과 같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76年 關稅收入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율은 무려 153%였으나, 197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급격히 낮아져 1995년에는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關稅收入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原材料의 關稅率이 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關稅收入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율은 <表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主要外國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表 3-3> 關稅收入 對比 還給實績

(單位：億圓, %)

	關稅收入 (A)	還給額 (B)	還給比率 (B/A)	還給比率 (B/A+B)
1975	1,810	614	33.9	25.3
1976	2,755	4,215	153.0	60.5
1977	3,858	4,426	114.7	53.4
1978	6,464	4,158	64.3	39.1
1979	7,322	4,528	61.8	38.2
1980	7,660	5,991	78.2	43.9
1981	8,906	8,176	91.8	47.9
1982	10,126	8,002	79.0	44.1
1983	14,632	9,473	64.7	39.3
1984	15,939	11,444	71.8	41.8
1985	15,661	11,356	72.5	42.0
1986	19,426	13,786	71.0	41.5
1987	26,965	19,850	73.6	42.4
1988	25,736	18,637	72.4	42.0
1989	21,176	15,494	73.2	42.3
1990	27,654	12,239	44.3	30.7
1991	34,355	10,932	31.8	24.1
1992	31,532	9,945	31.5	24.0
1993	28,859	9,677	33.5	25.1
1994	34,489	10,059	29.2	22.6
1995	46,332	12,197	26.3	20.8
1996	53,905	14,357	27.0	21.3

資料：關稅廳.

의 關稅收入에 대비한 還給額의 比率 29.2%는 日本의 0.003%는 물론이고 美國의 2.3%나 臺灣의 2.3%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數值이다.

<表 3-4> 主要國의 關稅收入 對比 還給比率

(單位：%)

韓 國 (1994)	臺 灣 (1994)	日 本 (1993)	美 國 (1995)
29.2	2.3	0.003	2.3

資料：關稅廳.

關稅收入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음에 따라 關稅還給을 하기 전의 全體 關稅徵收額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에 20.8%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關稅徵收額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율이 20.8%나 된다는 것은 관세 업무 중에서 상당부분을 還給業務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人力과 費用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定額還給制度의 運營現況

定額還給制度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輸出用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政府는 이 제도의 확대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환급액이 總還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계속 10%를 밑돌아 업계의 호응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簡易定額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을 살펴보면 <表 3-5>와 같다. 1985년 도입된 簡易定額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1986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1990년에 簡易定額還給의 대상으로 고시된 품목은 965개였으며, 簡易定額還給額은 77억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후 簡易定額還給制度의 이용실적은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 그 결과 1996년에 簡易定額還給의 대상으로 고시된 품목은 1,398개에 이르고 있으며, 還給實績은 건수기준으로 1만 6,758건, 금액기준으로 688억원을 기록

하였다. 이에 따라 簡易定額還給額이 總還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年 최저치인 0.6%에서 1996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 또한 簡易定額還給額이 定額還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年代에 들어와 계속 증가하여 1996년에는 무려 88.5%에 달하였다.

簡易定額還給實績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輸出免狀만으로 즉시 還給金이 지급되는 簡易定額還給制度的 이용실적이 總還給額에 대비하여 금액기준으로 아직도 4.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社會的 費用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실이라고 볼 수 없다. 簡易定額還給制度的 이용이 저조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定額還給率을 책정함에 있어서 定額還給制度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過少 還給을 받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表 3-5> 簡易定額還給制度的 運營現況

(單位：個, 件, 億圓, %)

告示日字	品目數	簡易定額還給		定額還給額 (B)	總還給額 (C)	A/B	A/C
		件數	金額(A)				
1985. 9. 1	1,086	n.a.	348	5,070	11,356	6.9	3.1
1985.11. 4	1,038						
1986. 2. 3	506	n.a.	644	1,454	13,786	44.3	4.7
1987.12.15	745	n.a.	536	1,590	19,850	33.7	2.7
1988. 6. 1	819	n.a.	235	684	18,637	34.4	1.3
1988. 9.20	821						
1989. 3. 1	825	n.a.	104	310	15,494	33.5	0.7
1989. 9. 1	876						
1990. 3. 1	965	4,380	77	242	12,239	31.8	0.6
1991. 4. 1	970	4,392	92	307	10,932	30.0	0.8
1992. 2. 1	1,002	6,383	141	342	9,945	41.2	1.4
1993. 2. 1	1,196	9,707	264	393	9,677	67.2	2.7
1994. 2. 1	1,341	13,945	533	639	10,059	83.4	5.3
1995. 2. 1	1,140	16,548	701	817	12,197	85.8	5.7
1996. 3. 1	1,398	16,758	688	777	14,357	88.5	4.8

資料：關稅廳, 『稅關年鑑』, 各 年度.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각 업체마다 輸出物品의 품질, 使用原材料의 등급, 去來行態, 輸出價格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용하고 있는 簡易定額還給制度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個別還給制度 위주로 운영되고 있던 關稅還給制度가 定額還給制度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1990년에 도입된 이후 <表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積은 1992년에 20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總還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 후 환급실적은 계속 감소하여 1996년에는 89억원으로 정액환급액 대비는 11.5%, 총환급액 대비로는 0.6%에 머물고 있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는 1990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품목수도 대체로 30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1996年 平均利用實績은 2억 7천만원이었다.

<表 3-6>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의 運營現況

(單位: 個, 億원, %)

	業體數 (A)	品目數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額(B)	定額還給額 (C)	總還給額 (D)	B/A	B/C	B/D
1990	32	144	15	242	12,239	0.5	6.2	0.1
1991	43	287	148	307	10,932	3.4	48.2	1.4
1992	39	317	201	342	9,944	5.2	58.8	2.0
1993	36	321	129	393	9,677	3.6	32.8	1.3
1994	34	311	106	639	10,059	3.1	16.6	1.1
1995	33	311	116	817	12,197	3.5	14.2	1.0
1996	33	333	89	777	14,357	2.7	11.5	0.6

資料: 關稅廳, 『稅關年鑑』, 各年度.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각 업체의 제조장 단위로 그 업

체가 수입한 원재료의 平均納付稅額과 수출물품에 사용한 原材料所要量에 의하여 定額還給率을 책정하므로 매우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原材料別 平均稅額算出內譯書 등 복잡한 정액환급률 산출자료를 연 2회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제도하에서도 여전히 過少還給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個別還給制度의 運營現況

一般個別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表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關稅還給이 처음 시행된 1975年 514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에는 1조 4,346억원으로 最高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一般個別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비록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1994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一般個別還給額이 總還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年 86%에서 1994年 36.6%로 감소하였으며, 個別還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4년에 39.1%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一般個別還給制度에 의한 還給額의 비중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구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환급금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同 制度의 단점을 보완한 先還給·後精算制度和 先支給·後審査制度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先還給·後精算制度의 운영현황은 <表 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90年代 초반 전체 환급액이 감소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先還給·後精算制度의 이용실적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6년에 先還給·後精算制度에 의한 還給額이 個別還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 總還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를 기록하였다. 先還給·後精算制度가 선호되는

이유는 수출이 이루어진 후 輸出免狀만 환급기관에 제시하면 즉시 概算還給率表에 의해 수출업체에 概算還給金이 지급되므로 장시간 이 소요되는 환급절차로 인한 資金負擔이 緩和될 수 있기 때문이다.

<表 3-7> 一般個別還給制度의 運營現況

(單位: 億원, %)

	一般個別 還給額(A)	個別還給額 (B)	總還給額 (C)	A/B	A/C
1975	514	514	614	100.0	83.7
1976	3,132	3,132	4,215	100.0	74.3
1977	3,306	3,306	4,426	100.0	74.7
1978	3,356	3,356	4,158	100.0	80.7
1979	3,754	3,754	4,528	100.0	82.9
1980	5,153	5,153	5,991	100.0	86.0
1981	5,779	5,779	8,176	100.0	70.7
1982	5,160	5,160	8,002	100.0	64.5
1983	5,906	5,906	9,473	100.0	62.3
1984	7,301	7,301	11,444	100.0	63.8
1985	5,738	6,286	11,356	91.3	50.5
1986	10,058	12,332	13,786	81.6	73.0
1987	14,346	18,260	19,850	78.6	72.3
1988	14,288	17,953	18,637	79.6	76.7
1989	12,160	15,184	15,494	80.1	78.5
1990	9,459	11,997	12,239	78.8	77.3
1991	7,794	10,625	10,932	73.4	71.3
1992	5,280	9,603	9,945	55.0	53.1
1993	3,795	9,284	9,677	40.9	39.2
1994	3,681	9,420	10,059	39.1	36.6
1995	4,756	11,380	12,197	41.8	39.0
1996	6,779	13,580	14,357	49.9	47.2

資料: 關稅廳, 『稅關年鑑』, 各 年度.

<表 3-8> 先還給·後精算制度의 運營現況

(單位: 個, 億圓, %)

	業體數	品目數	還給額 (A)	個別還給額 (B)	總還給額 (C)	A/B	A/C
1985	88	732	548	6,286	11,356	8.7	4.8
1986	43	606	2,274	12,332	13,786	18.4	16.5
1987	41	647	3,914	18,260	19,850	21.4	19.7
1988	42	315	3,665	17,953	18,637	20.4	19.7
1989	53	540	3,024	15,184	15,494	19.9	19.5
1990	129	987	2,538	11,997	12,239	21.2	20.7
1991	199	1,186	2,557	10,625	10,932	24.1	23.4
1992	185	n.a.	2,703	9,603	9,945	28.1	27.2
1993	125	n.a.	2,925	9,284	9,677	31.5	30.2
1994	100	n.a.	3,143	9,420	10,059	33.4	31.2
1995	97	804	3,285	11,380	12,197	28.9	26.9
1996	66	670	3,430	13,580	14,357	25.3	23.9

資料: 關稅廳, 『稅關年鑑』, 各年度.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先支給·後審査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단기간 내에 상당히 높아졌다. <表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도에 의한 還給額은 시행 첫 해인 1991년에 274억원으로 個別還給額의 2.6%와 總還給額의 2.5%를 차지하는 데 그쳤으나, 1996년에는 3,371억원을 기록하여 개별환급액의 24.8%와 總還給額의 23.5%를 차지하였다.

先支給·後審査制度의 이용도가 단기간에 높아진 이유는 輸出業體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還給申請을 한 즉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후 還給書類에 대한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還給節次가 그대로 종결되므로 一般個別還給制度에 비해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3-9> 先支給·後審査制度의 運營現況

(單位: 個, 億원, %)

	還給實績		個別還給額 (C)	總還給實績		A/D	B/C	B/E
	業體數 (A)	金額 (B)		業體數 (D)	金額 (E)			
1991	554	274	10,625	13,367	10,932	4.1	2.6	2.5
1992	614	1,620	9,603	11,651	9,945	5.3	16.9	16.3
1993	1,311	2,564	9,284	11,728	9,677	11.2	27.6	26.5
1994	1,767	2,596	9,420	9,979	10,059	17.7	27.6	25.8
1995	n.a.	3,339	11,380	12,187	12,197	-	29.3	27.4
1996	n.a.	3,371	13,580	n.a.	14,357	-	24.8	23.5

資料: 關稅廳, 『稅關年鑑』, 各 年度.

4. 關稅還給制度의 產業別 利用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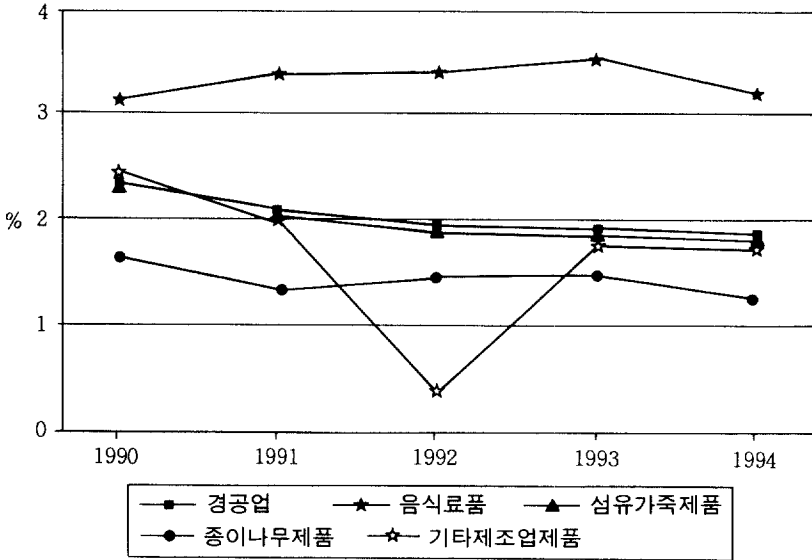
關稅還給制度의 產業別 利用現況은 <表 3-10>과 같다. 還給額의 規模를 살펴보면 重工業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輕工業보다 훨씬 많은 關稅환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業種別로는 1994년을 제외하면 4년 모두 섬유·가죽제품업의 還給額이 가장 많았으며, 1994년에는 電氣 및 電子器機業의 환급액이 2,4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關稅還給對象 輸出額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율은 1990년과 1991년에는 重工業이 더 높았으며, 1992~1994년에는 輕工業이 더 높았다. 業種別로는 5년 모두 農林水産業의 환급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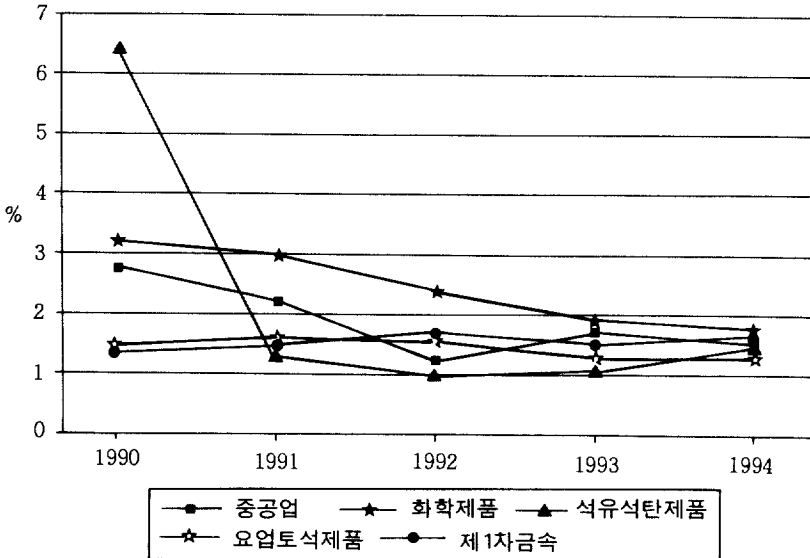
製造業을 輕工業과 重工業으로 나누어 還給比率의 變化推移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圖 3-3] 및 [圖 3-4]와 같이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 환급비율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輕工業보다는 重工業에서 감소추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圖 3-3]에서 1994年の 還給比率을 1990年の 還給比率과 비교해 보면 음식료품업을 제외한 輕工業의 모든 업종에 있어서 환급비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圖 3-4]에서 1994年の 환급비율을 1990年の

환급비율과 비교해 보면 第1次金屬業을 제외한 중공업의 모든 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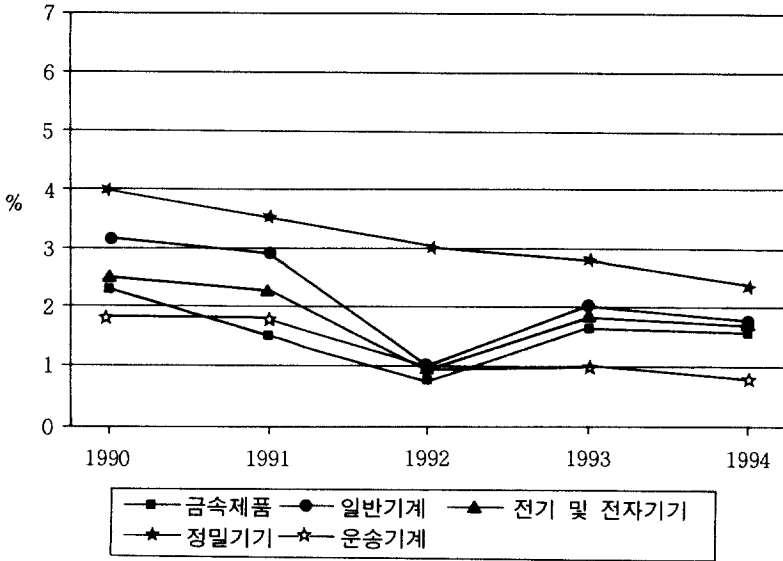
[圖 3-3] 輕工業의 還給比率 變化推移



[圖 3-4] 重工業의 還給比率 變化推移



[圖 3-4]의 繼續



種에 있어서 還給比率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關稅還給對象 輸出額에 대비한 還給額의 比重이 낮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輸出品을 제조함에 있어서 매년 동일한 비율의 輸入原材料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수입원재료에 대한 關稅率이 인하되면 關稅還給對象 輸出額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 <表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關稅還給對象 輸出額에 대비한 還給額의 비율은 1990年 2.59%에서 1994年 1.66%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35.9%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名目關稅率은 <表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年 13.39%에서 1994年 8.95%로 감소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33.2%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1990~1994年 동안의 關稅還給對象 輸出額에 대비한 還給額 比重의 감소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의 名目關稅率의 감소비율과 거의 일치하므로 輸入原材料에 대한 關稅率의 인하가 輸出額에 대한 還給額의 비중을 낮추는 주요한 要因이었다고 볼 수 있다.

<表 3-10> 關稅還給制度의 產業別 利用現況

(單位: 億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농 립 수 산 업	501	37	7.40	573	43	7.49	677	59	8.68	639	59	9.19	973	89	9.10
광 산 업	40	0.3	0.78	45	0.3	0.73	145	0.1	0.09	40	0.2	0.38	131	0.4	0.27
제 조 업	318,383	8,212	2.58	421,928	9,137	2.17	479,406	7,010	1.46	533,663	9,397	1.76	591,444	9,736	1.65
(경 공 업)	133,503	3,136	2.35	144,469	2,998	2.08	152,325	2,959	1.94	149,104	2,836	1.90	151,564	2,805	1.85
음 · 식 료 품	4,082	128	3.13	4,753	161	3.38	5,247	178	3.40	4,990	177	3.54	5,509	177	3.21
섬 유 · 가 죽 제 품	116,453	2,721	2.34	125,641	2,579	2.05	132,538	2,524	1.90	129,351	2,409	1.86	130,505	2,381	1.82
종 이 · 나 무 제 품	3,130	51	1.63	3,297	44	1.33	3,549	51	1.44	4,047	60	1.48	5,379	68	1.26
기 타 제 조 업 제 품	9,837	235	2.39	10,775	215	2.00	10,992	40	0.36	10,711	190	1.77	10,168	179	1.76
(중 공 업)	184,880	5,077	2.75	277,460	6,139	2.21	327,081	4,051	1.24	384,559	6,561	1.71	439,881	6,931	1.58
화 학 제 품	29,340	936	3.19	37,027	1,093	2.95	47,149	1,130	2.40	64,960	1,231	1.90	73,804	1,293	1.75
식 유 · 석 탄 제 품	11,149	711	6.38	15,842	202	1.27	23,839	232	0.98	20,032	215	1.07	25,941	395	1.52
요 업 · 토 석 제 품	1,984	28	1.41	1,813	28	1.56	1,996	32	1.60	1,803	24	1.30	1,677	22	1.32
세 1 차 금 속	28,073	379	1.35	34,359	498	1.45	40,004	658	1.64	47,157	702	1.49	44,998	755	1.68
금 속 제 품	12,270	286	2.33	18,679	293	1.57	22,446	180	0.80	18,001	307	1.70	17,317	289	1.67
일 반 기 계	21,906	696	3.18	33,559	988	2.94	37,784	338	0.90	50,287	1,046	2.08	56,654	988	1.74
전 기 및 전 자 기 기	62,859	1,570	2.50	107,954	2,474	2.29	110,833	1,121	1.01	126,940	2,381	1.88	139,491	2,439	1.75
정 밀 기 기	2,178	87	3.98	3,157	111	3.53	3,670	110	2.98	4,672	132	2.82	4,900	116	2.38
운 송 기 계	15,122	284	1.88	25,069	452	1.80	39,360	251	1.01	50,706	524	1.03	75,099	633	0.84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업	196	2	0.88	292	2	0.73	329	2	3.14	473	2	0.44	815	4	0.46
전 체	319,114	8,251	2.59	412,955	9,183	2.22	480,527	9,475	1.97	534,818	9,458	1.77	593,364	9,829	1.66

註: 1. 수출액은 關稅還給對象 輸出額임.

2. 1990년과 1991년 동계에는 副材料定額還給額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자료의 미비로 제외됨.

3. 還給比率 = 還給額 ÷ 輸出額 × 100

<表 3-11> 定額還給制度의 産業別 利用現況

(單位: 億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농림수산업	2	0.1	6.14	1	0.03	2.44	0.8	0.2	2.56	0.8	0	0.00	0.09	0.0009	1.00
광산업	2	0.001	0.66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제조업	3,731	76	2.03	10,981	189	1.72	18,257	336	1.84	29,330	394	1.34	53,534	637	1.19
(경공업)	2,208	36	1.62	3,642	49	1.33	9,077	100	1.10	18,286	189	1.03	36,525	369	1.01
음식료품	55	0.6	1.15	103	0.5	0.48	47	0.3	0.72	70	0.3	0.47	116	0.4	0.36
섬유·가죽제품	1,321	23	1.76	2,283	33	1.45	7,127	76	1.06	14,908	139	0.94	31,007	289	0.93
종이·나무제품	117	1	0.87	181	2	0.92	187	2	1.24	406	4	0.94	716	9	1.25
기타제조업	715	11	1.51	1,075	13	1.25	1,715	21	1.23	2,896	45	1.55	4,687	71	1.51
(중공업)	1,522	40	2.63	7,339	140	1.91	9,181	237	2.58	11,044	205	1.86	17,008	268	1.57
화학제품	280	12	4.36	1,014	29	2.85	1,208	33	2.71	1,775	35	1.98	2,881	53	1.83
석유·석탄제품	0.4	0.03	7.89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요업·토석제품	47	0.4	0.90	33	0.2	0.70	69	0.8	1.11	238	2	1.03	241	3	1.43
제1차금속	105	4	3.45	2,488	45	1.80	3,307	133	4.03	2,109	68	3.22	2,024	40	1.97
금속제품	210	4	1.73	357	7	2.03	537	8	1.53	1,594	23	1.43	3,542	45	1.27
일반기계	14	0.2	1.61	84	2	2.28	126	3	2.00	236	3	1.22	841	9	1.08
전기및전자기기	577	16	2.78	2,854	51	1.78	3,240	48	1.48	3,961	58	1.45	5,723	92	1.60
정밀기기	287	4	1.32	507	6	1.16	685	11	1.62	1,075	16	1.48	1,686	25	1.46
운송기계	1	0.005	0.44	1	0.02	1.90	9	0.2	2.20	55	0.8	1.44	71	1	1.77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	0.008	0.52	0	0	0.00	5	0.01	0.20	92	0.2	0.25	447	1	0.25
전체	3,736	76	2.03	10,982	189	1.72	18,263	336	1.84	29,425	394	1.34	53,981	638	1.18

註: 1. 수출액은 關稅還給對象 輸出額임.

2. 1990년과 1991년 통계에는 副材料定額還給額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자료의 미비로 제외됨.

3. 還給比率 = 還給額 ÷ 輸出額 × 100

<表 3-12> 個別還給制度의 産業別 利用現況

(單位: 億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수출액	환급액	환급비율
농림수산업	499	37	7.41	572	43	7.50	677	59	8.69	639	59	9.19	973	89	9.10
광산업	38	0.3	0.79	45	0.3	0.73	145	0.1	0.09	40	0.2	0.38	131	0.4	0.27
제조업	314,653	8,137	2.59	410,947	8,949	2.18	461,149	6,674	1.45	504,333	9,003	1.79	537,911	9,099	1.69
(경공업)	131,295	3,100	2.36	140,826	2,950	2.09	143,248	2,859	2.00	130,819	2,647	2.00	115,038	2,435	2.12
음·식료품	4,028	127	3.16	4,651	160	3.44	5,200	178	3.43	4,921	177	3.59	5,394	176	3.27
섬유·가죽제품	115,132	2,699	2.34	123,359	2,546	2.06	125,410	2,448	1.95	114,443	2,270	1.90	99,498	2,092	2.10
종이·나무제품	3,013	50	1.66	3,116	42	1.35	3,361	49	1.45	3,640	56	1.54	4,663	59	1.26
기타제조업제품	9,122	224	2.45	9,701	202	2.08	9,277	19	2.00	7,815	145	1.86	5,481	108	1.97
(중공업)	183,358	5,037	2.75	270,121	5,999	2.22	317,900	3,815	1.20	373,515	6,355	1.70	422,872	6,663	1.58
화학제품	29,059	924	3.18	36,013	1,064	2.96	45,941	1,097	2.39	63,185	1,196	1.89	70,923	1,241	1.75
석유·석탄제품	11,148	711	6.38	15,842	202	1.27	23,839	233	0.98	20,032	215	1.07	25,941	395	1.52
요업·토석제품	1,938	28	1.42	1,781	28	1.57	1,928	31	1.62	1,565	21	1.35	1,436	19	1.31
제1차금속	27,968	376	1.34	31,870	453	1.42	36,697	524	1.43	45,048	634	1.41	42,974	716	1.66
금속제품	12,060	282	2.34	18,322	286	1.56	21,909	171	0.78	16,407	284	1.73	13,775	244	1.77
일반기계	21,891	696	3.18	33,475	986	2.95	37,658	336	0.89	50,051	1,043	2.08	55,813	979	1.75
전기및전자기기	62,281	1,554	2.50	105,100	2,423	2.31	107,593	1,073	1.00	122,979	2,324	1.89	133,768	2,348	1.76
정밀기기	1,891	83	4.39	2,650	106	3.98	2,986	98	3.30	3,597	116	3.22	3,214	92	2.86
운송기계	15,121	284	1.88	25,068	452	1.80	39,350	251	1.01	50,650	523	1.03	75,028	632	0.84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94	2	0.88	292	2	0.73	324	2	0.72	381	1	0.48	369	3	0.70
전체	315,384	8,176	2.59	411,856	8,994	2.18	462,294	9,138	1.98	505,393	9,064	1.79	539,383	9,190	1.70

註: 1. 수출액은 關稅還給對象 輸出額임.

2. 還給比率 = 還給額 ÷ 輸出額 × 100

둘째, 原材料의 國産化가 촉진되어도 關稅還給對象 輸出額에 대한 還給額의 비중이 낮아진다. 이 문제는 第4章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表 3-13> 名目關稅率의 變化推移

(單位: %)

	1990/1991	1992	1993	1994
농 산 품	21.28	20.01	19.36	16.35
공 산 품	12.08	10.30	8.47	7.40
전 산 업	13.39	11.67	10.02	8.95

資料: 金珍洙·安鍾錫(1994).

5. 相計制度의 運營現況

1985년에 도입된 相計制度는 <表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활성화되어 1987년에는 相計額이 3,491억원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그 후 利用實績이 점차 감소하여 1996년의 상계액은 238억원에 불과하였다. 1996년에 相計制度를 이용한 업체수는 49개사로 1986년의 158개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相計制度의 適用對象이 되는 品目數도 1996년에는 257개로 1987년의 2,264개에 비해 11.4%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相計制度의 利用實績이 저조하게 된 이유는 이 제도가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事前免稅와 비슷해서 國産原材料의 사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相計制度의 管理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가 번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表 3-14> 相計制度의 運營現況

(單位: 個, 億원)

	業體數	品目數 ¹⁾	納稅告知 猶豫額	相計額	納稅告知 猶豫中
1985	117	824	631	33	598
	127	926			
1986	138	1,098	2,095	890	1,803
	152	1,159			
	158	1,275			
1987	136	1,047	2,904	3,491	1,216
	130	2,264			
1988	116	431	2,021	2,663	574
1989	84	299	760	1,076	332
1990	59	209	526	642	264
1991	51	193	334	401	202
1992	47	189	241	333	110
1993	40	174	158	199	68
1994	26	110	159	157	79
1995	24	106	200	184	83
1996	49	257	312	238	158

註: 1) 1987년 상반기 指定品目(1,047개)까지는 CCCN 4단위, 1987년 하반기 指定品目(2,264개)은 HS 6단위, 1988년 이후 指定品目は HS 10단위임.

資料: 關稅廳, 『稅關年鑑』, 各年度.

第4章 關稅還給制度의 經濟的 效果： 資料分析

第1節 關稅率構造와 還給比重

1. 概要

주지하다시피 關稅還給制度의 주요 목적은 輸出用 輸入源材料에 대한 관세 등의 자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원재료 수입 후 환급까지 金利 등 還給費用을 유발하여 國產財 使用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¹⁾. 그런데 관세환급제도의 정책목표—수출지원과 국산화—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려면 수출과 原資材 國產化 比率 그리고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가령 각종 輸出支援金과 國產化 支援金, 實行關稅率²⁾을 비롯한 關稅率構造, 輸出入 物價指數, 金利費用 등을 이용한 實證分析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실증분석에서 국산화나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정의 偏倚로 인하여 올바른 결론을 유도하기가 어렵다³⁾.

이러한 성격의 분석은 방대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추정이여서 본고에서는 이를 시도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허용하는 선

1) 關稅還給制度가 資金費用의 賦課를 통하여 국산화를 촉진한다는 논리는 關稅免除制度和 비교할 때 성립되며 관세환급제도의 시행이 輸入依存을 촉진함은 물론이다.

2) 여기서 實行關稅率이란 法定關稅率이 아닌 調整關稅, 關稅減免 등을 감안한 수입품에 실제로 적용된 關稅率을 의미한다.

3) 특히 관세환급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75년을 전후하여 국산화와 수출증대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에서 산업별로 우리나라 輸入依存度(中間材)와 輸出寄與度の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關稅引下豫示制에 따른 關稅率構造의 변화와 關稅還給制度의 역할을 비교·검토한다. 다음으로 1990~1994年 資料를 활용하여 수출산업의 환급비중과 연도별 변화추이를 제시한다. 이밖에도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의 『産業聯關標』와 關稅廳 電算資料를 이용하여 還給比率(輸出·輸入基準)를 추정하고 이를 産業別 還給現況(輸出基準)과 비교하고 輸入産業의 關稅還給制度의 利用度를 추정한다. 또한 각종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未還給額과 輸入産業에서의 實質 關稅負擔率를 예측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세환급제도 실제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 關稅還給制度와의 聯關性을 논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關稅率構造

가. 最近 關稅率構造 改編原則

産業別 關稅還給制度의 이용현황과 國產化 比率 또는 輸入依存度를 논하기 앞서서 우선 우리나라 關稅率構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특정산업의 國產化 比率는 당해산업에 적용된 實行關稅率과 기타 非關稅障壁 등의 保護程度가 높을수록 그 비율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산업의 수입의존도와 환급비중은 당해 산업의 對外競爭力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적용된 實行關稅率 등의 貿易障壁 그리고 해당제품의 각종 中間材 比重과 이에 대한 保護程度에 따라 결정되는 實質的 保護, 즉 實效保護率 또는 關稅率體系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 관세율체제는 지난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친 第 1, 2次 關稅率引下豫示制를 통하여 平均關稅率은 引下하고 均等關稅率體制(uniform tariff system)로 이행된 바 있다. 개편목적은 輸入財에 대한 關稅率 引下를 통하여 內需産業의 競爭力을 향상시키고

정부주도의 산업보호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資源配分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表 4-1>에 나타나 있듯이 中心關稅率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994년까지 8%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산화가 곤란한 非競爭 一次加工品은 관세율 5%를 적용하고 非競爭 輸入源材料는 1%, 競爭 輸入源材料는 3%로 한다는 것이었다(농산물은 별도로 관세율을 조정함).

<表 4-1> 關稅率構造 改編原則

(單位: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원료	비경쟁원료	5	1~2	1~2	1~2	1~2	1~2
	경쟁원료	10	5	5	5	4	3
중간재 및 완제품	중심세율	20	15	13	11	9	8
	경쟁력 확립 및 국산화 곤란 품목 (1차 가공품)	10~20 (10~20)	10 (10)	10 (10)	10 (9)	9 (7)	8 (5)
	사치성 소비재	30~50	20	16	13	10	8
	자동차	50	25	20	17	15	10 (*95협8)

資料: 김진수·안종석,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4.

재정경제원 내부자료.

나. 關稅率構造 現況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시행으로 豫示制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2년도에는 平均 名目關稅率이 23.7%였으나 1994년에는 7.9%로 대폭 인하되었다(<表 4-2> 참조). 농산물의 경우 農家保護라는 명목하에 아직도 16.6%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工產品 最終財, 中間材 및 原資材의 平均關稅率은 각각 7.1%, 7.0%, 2.8%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최종재의 관세율은 무려 26%나 인하되었으며 중간재와 원자재는 각각 18.4%, 12.7%만큼 하락하여 최종재와 원자

재(중간재)의 관세율격차는 17.6%(7.7%)에서 4.3%(0.1%)로 줄어들었고 따라서 加工度別 關稅率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實效關稅率도 상당 수준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간재(7.1%)와 최종재(7.0%)의 관세율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밖에도 차후에 논의하겠지만 均등관세율체제의 이행으로 産業間 關稅率은 基本關稅率 8%를 축으로 하여 산업별로, 특히 중공업에서 상당한 中立性을 유지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關稅率構造의 特徵이다.

<表 4-2> 우리나라 關稅率構造와 年度別 變化

(單位：%)

	1982	1984	1988	1989	1990/1991	1992	1993	1994
평균관세율	23.7	21.9	18.1	12.7	11.4	10.1	8.9	7.9
농산물	31.4	29.6	25.2	20.6	19.9	18.5	17.8	16.6
공산품	22.6	20.6	16.9	11.2	9.7	8.4	7.1	6.2
원자재	15.5	11.9	10.6	3.9	3.9	3.3	3.2	2.8
중간재	25.4	21.5	18.7	11.7	10.7	9.3	7.8	7.0
최종재	33.1	26.4	24.7	13.3	11.2	9.4	7.9	7.1

資料：한홍열,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1993.

다. 加工度別 關稅率과 還給比率의 國際比較

<表 4-3>을 보면 우리나라의 原材料 平均 名目關稅率은 2.8%로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약 1% 내외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源材料와 中間材(完製品)와의 關稅率 隔差가 4.2%(0.1%)로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작고 특히 중간재와 완제품과의 격차는 0.1%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완제품 관세율이 선진국보다 약간 높지만 평균적인 실질보호, 즉 平均 實效關稅率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지만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關稅還給制度의 改正으로 인하여 수출용 중간재에 대한 관세 부담은 金利費用과 行政費用에 불과하고 향후에는 금리비용도 최대

한 6개월간 면제될 예정이다.

한편 <表 4-4>에 제시되었듯이 우리나라 平均 實行關稅率(關稅徵收額/輸入額)은 1995년 당시 4.4%이며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높은 수치는 아니다. 다만 선진국은 자국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重工業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 그리고 輕工業은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장근호, 1997). 우리나라 실행관세율이 중심관세율인 7.9%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소비재보다 低率의 關稅率이 적용되는 원재료와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많기 때문이며 이 밖에 關稅減免制度和 割當關稅 등 각종 彈力關稅의 運用으로 실제 관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이다.

<表 4-3> 加工段階別 關稅率構造의 國際比較

(單位：%)

	韓 國	美 國	日 本	E C	캐 나 다
원재료	2.8	1.8	1.4	1.6	2.6
중간재	7.0(4.2)	6.1(4.3)	6.3(4.9)	6.2(4.6)	6.6(4.0)
완제품	7.1(4.3)	6.9(5.1)	6.4(5.0)	7.0(5.4)	8.1(5.5)

註：() 안의 수치는 원재료와의 관세율 격차를 의미함.

資料：통상산업부 내부자료, 1997.

우리나라 還給比重(輸出額 對比)은 1995년 당시 1.2%로 일본(0.003%), 대만(0.11%)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높은 관세율과 낮은 국산화비중 때문이며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保稅工場類의 關稅猶豫制度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第6章에서 논의하겠지만 1988년 이후 관세율 5% 이하의 수입재에 대한 환급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환급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선회는 수출을 희생하더라도 중간재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로 해석되는데 이는 물론 대만이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表 4-4> 平均 實行關稅率과 還給比率의 國際比較

(單位: %)

	韓 國(1995)	美 國(1995)	日 本(1993)	臺 灣(1994)
실행관세율	4.4	3.1	3.6	4.9
환급비율	1.2	0.09	0.003	0.11

註: 환급비율은 수출액 대비 비율임.

資料: 제6장 참조.

關稅徵收額에서 還給金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을 기준하면 관세징수액의 27.3%에 달하고 있고 이는 수입액의 1.2%에 해당한다. 1983년 당시 환급비율이 수입액의 4.5%에 이른 것에 비교하면 수입중간재로 인한 관세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점진적인 국산화로 환급비중이 점차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환급제도와 관세감면을 감안할 경우 국내산업의 평균 실질관세부담은 1995년 현재 약 3.2%에 불과하며 1983년의 2.5%와 비교할 때 實質 關稅負擔率은 약 0.7% 증가한 것이다⁴⁾. 원래 관세인하로 관세부담률도 감소되어야 하지만 환급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한 수입자유화로 인한 輸入財의 增加, 특히 환급대상이 아닌 消費財의 輸入增加로 관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 부담률은 1991년 4.1%에서 절정을 이루고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關稅率構造는 輸入財의 성격과 國產化 可能性에 따라 差等化되어 왔었다. 지금도 비경쟁원료는 1%, 경쟁원료는 3% 그리고 국산화 곤란 품목 중 1차가공품은 5%, 이외 공산품은 8%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輸入依存度는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공단계, 수출입용 여부에 의하여 변화되는 關稅率構造와 기타 貿易障壁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밖에도

4) 물론 產業別 關稅負擔은 당해산업에 적용된 關稅率, 輸入財 比重 그리고 輸出規模에 따라 상당히 변화한다.

우리나라가 일찍이 수출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關稅免除制度와 1975년 이후에는 關稅還給制度를 운용해 왔으므로 完製品の 輸入依存度는 낮고 原資材와 中間材의 輸入依存度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消費財에 대한 非關稅障壁으로 소비의 수입의존은 낮은 편이다.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을 촉진하고 국산화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나라 수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관한 관세환급제도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表 4-5> 우리나라 平均關稅率의 變化推移

(單位: %)

	1983	1988	1991	1992	1993	1994	1995
법정관세율	23.7	18.1	11.4	10.1	8.9	7.9	7.9
실행관세율	7.0	6.8	5.7	4.9	4.3	4.2	4.4
관세환급률	4.5	4.9	1.6	1.5	1.4	1.2	1.2

註: 법정관세율은 품목별 법정관세율을 단순평균한 수치이며 실행관세율과 환급률은 각각 수입액 대비 관세징수액과 환급액임.

資料: 김진수·안종석(1994).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第2節 貿易依存度の 變化와 關稅支援政策

1. 序論

關稅還給과 輸出 그리고 國産化의 聯關性을 논하려면 우선 수출과 국산화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국산제품의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면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이외에도 환율과 海外 競爭財, 源材料의 國際價格, 각종 輸出補助金 등이 수출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에 의

한 輸出增大效果를 살펴보려면 이들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고에서는 이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 대신 관세환급제도와 국산화를 논함에 있어서 國產化 比率(國內生産/總需要)의 변화를 검토하기보다는 輸入依存度, 그 중에서도 中間需要 輸入依存度(中間材 輸入額/中間材 國內需要)의 변화를 논한다. 그 이유는 관세환급이 中間材 수입에 대한 관세 등 輸入稅의 면제이므로 소비와 투자재의 국산화는 관세환급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關稅還給制度가 輸出補助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분석(第1章 第3節)에 착안하여 지난 13년간(1980~1993년) 産業別 輸出依存度(輸出額/國內需要)의 변화를 제시한다. 관세환급제도는 국내 생산자로 하여금 內需充足보다는 수출을 선호하게 하는 輸出支援金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출액의 증가보다는 수출의존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⁵⁾.

2. 輸入依存度와 輸出依存度 現況 : 1993年

가. 輸入依存度の 概念과 現況

俞正鎬(1995)에서 논의되었듯이 특정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아래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Y + E = X + M \text{ 또는 } 1 + E/Y = X/Y + M/Y \dots\dots\dots (1)$$

여기서 Y, E, M, X는 각각 總需要, 輸出, 輸入, 國內生産을 의미하는데 상기 균형식은 Y와 E, 즉 國內需要와 輸出의 합친 總需要가 수입이나 국내생산으로 공급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재화 j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있어서의 輸入依存度を MD_j라 하면, MD_j는

5) 실제 수출증대규모는 물론 還給率과 함께 國內需要曲線 및 供給曲線의 價格彈力性에 의하여 결정된다(第2章 참조).

다음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MD_i = \frac{M_i}{Y_i} = \frac{M_i}{X_i + M_i - E_i}, \quad 0 < MD_i < 1 \quad \dots\dots\dots (2)$$

만약 국내수요가 모두 수입으로 충족된다면 수입의존도는 1의 값을 갖게 되며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이는 0의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關稅 등 産業保護政策을 무시한다면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입에 대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낮고, 반대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방식으로 작성된 수입의존도는 産業內貿易(intra-industry trade)이 증가하면 그 수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과 수출·수입액을 國內通貨로 산정할 때 환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⁶⁾.

식 (1), (2)에 의하여 산출된 1993년도 우리나라 수입 및 수출의 국내생산 자급도는 다음 <表 4-6>에 나타나 있다. 이 표는 韓國銀行의 『1993년 産業聯關表』에 나타난 국내생산과 수입액 등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수입의존도 등을 계산하기 앞서서 關稅와 其他 輸入附加稅를 輸入과 國內需要에서 제거하였다. 이는 물론 수입과 국내수요에 각각 동일한 크기의 관세가 포함되면 수입의존도가 인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 등의 무역장벽으로 수입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은 수입의존도에 반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表 4-6>의 수입의존도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서 0의 값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강력한 保護政策으로 인하여 수입이 억제될 수도 있으므로 보호정책의 강약을 고려하면서 수입의존도를 해석하여야 한다.

6) 한편 산업내무역의 증가는 수입의존도뿐만 아니라 수출기여도의 상승도 유발한다. 수입의존도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유정호(199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表 4-6>을 살펴보면 산업별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알 수 있다. 한 예로 농림수산품의 경우 국내수요 대비 수출기여도가 약 2.7%로서 총수요는 국내수요의 102.7%에 달하는데 국내생산은 89.2%에 불과하므로 그 차이를 수입(13.7%)으로 보충하여야 한다(이 때 약 0.2%의 재고가 증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출의존도에 100%를 합치면 국내수요에 대비한 총수요비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총수요의 몇 퍼센트가 국내생산 또는 수입으로 충족되는지를 <表 4-6>이 보여주고 있다.

수입의존도를 논하기 앞서서 産業別 生産自立度, 즉 國內需要 對比 國內生産比率를 대략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一次産業, 특히 鑛山品(22.5%)에서 수입의존형임을 알 수 있다. 輕工業의 경우 생산이 국내수요보다 약 11.6% 정도 많아 수출지향적이지만 종이 및 나무제품(87.9%)에서는 국내수요의 상당비중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렇듯 광산품을 포함한 原資材産業이 대외의존적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천연자원이 빈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重工業은 최근 자급자족형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精密機械와 一般機械의 국내생산 의존도는 각각 59.1%, 82.5%에 불과하여 기계산업은 아직 수입에 편향되어 있다. 生産自立도가 높을수록 輸出寄與度(輸出額/國內需要)도 높아서 섬유·가죽제품은 75.2%, 전기·전자기기는 50%, 수송기계는 27% 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생산자립도가 100%에 미치지 못하여도 수출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 특히 重工業에 많아 수출입을 통한 가공무역이 발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部門別 輸入依存度

특정산업의 輸入依存도가 높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해당산업의 對外競爭力이 낮아 수입에 의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의존도가 輸入自由化 政策의 결과일 수 있다. 즉, 수입

의존도는 특정산업의 대외경쟁력뿐만 아니라 해당산업에 적용된 名目關稅率 등의 무역장벽 그리고 해당제품의 각종 中間材比重과 이

<表 4-6> 1993年 主要 交易財產業 輸入依存度 및
輸出, 生産自立度(國內需要 對比)

(單位: %)

產 業	依存度				輸出	國內 生産	實行 關稅率
	輸入	中間 需要	消費	投資			
농림수산물	13.7	18.5	4.8	3.2	2.7	89.2	5.5
광산물	79.0	79.1	-0.3	-	0.5	22.5	1.3
경공업	11.8	16.8	5.9	7.7	23.1	111.6	9.3
음·식료품	7.9	14.8	4.2	-	3.4	96.1	11.1
섬유·가죽제품	16.3	20.6	7.2	9.0	75.2	158.6	9.1
종이·나무제품	16.9	19.5	6.8	0.9	4.2	87.9	7.6
기타제조업	11.0	6.4	17.0	29.2	22.3	111.3	7.7
중공업	20.8	20.3	6.8	30.8	21.0	100.2	5.9
화학제품	19.6	21.9	5.5	-	15.5	95.7	7.6
석유·석유제품	17.4	18.1	11.0	-	10.1	91.8	2.3
요업·토석제품	5.8	5.2	20.9	-	3.8	98.3	8.6
제1차 금속제품	17.4	16.5	-	-	13.9	95.7	5.9
금속제품	7.4	7.6	9.6	4.4	21.5	114.6	7.0
일반기계	31.7	22.6	13.5	40.8	14.9	82.5	6.8
전기·전자기기	29.9	37.9	7.4	15.2	50.0	121.6	5.9
정밀기계	59.1	40.2	31.7	85.1	17.2	59.1	6.0
수송기계	12.2	16.5	0.7	13.6	27.2	115.2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3	7.7	0.6	-	1.2	96.9	5.4
사회 및 개인서비스	7.1	3.0	8.9	-	7.7	100.6	6.2
기타	1.9	4.2	1.1	-	5.9	104.1	0.7
교역재(서비스산업 제외)	20.4	23.1	6.1	29.7	19.0	98.7	5.6
전산업	12.3	17.2	3.4	10.3	12.6	100.5	5.6

註: 1. 상기의 수치는 재고증감을 제외한 국내수요 대비 의존도임.

2. 실행관세율은 관세징수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실제 부담률을 의미함.

資料: 한국은행, 『1993년 산업연관표』.
관세청 전산자료, 1996.

에 대한 保護程度에 따라 결정되는 실질적 보호—實效保護率 또는 關稅率體系—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관세율체제는 輸入財가 쓰여지는 용도, 즉 原料와 消費財 혹은 輸出用과 內需用 原料에 따라 關稅率과 關稅負擔이 크게 차이가 났고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조차 아직 그 차이가 존재한다. 수입원료에 대하여 低關稅率이, 수출용 수입원료에는 還給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중간수요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소비에 있어서 수입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환금제도와 국산화를 논하려면 중간재의 수입의존도와 그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國內需要를 中間需要, 消費, 投資로 나누어 수요부문별로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總輸入依存度 MD와 부문별 輸入依存度와의 관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國內需要 Y_j 는, 在庫增減을 무시하면 중간수요, 소비와 투자의 합이므로 이를 각각 N_j , C_j , I_j 로 표시하면, 식(2)에서의 수입의존도 MD_j 는

$$MD_j = \frac{M_j}{Y_j} = \frac{M_j}{N_j + C_j + I_j} \dots\dots\dots (3)$$

으로 다시 쓸 수 있다. 兪正鎬와 마찬가지로 중간수요, 소비, 투자 가운데 국내공급에 의해 충족되는 부분과 직접 수입에 의해 충족되는 부분을 각각 d 와 m 의 상첨자로 구별하면,

$$\begin{aligned} N_j &= N_j^d + N_j^m, \\ C_j &= C_j^d + C_j^m, \dots\dots\dots (4) \\ I_j &= I_j^d + I_j^m \end{aligned}$$

으로 쓸 수 있으며, $M_j = N_j^m + C_j^m + I_j^m$ 이므로,

$$MD_j = \frac{N_j^m + C_j^m + I_j^m}{N_j + C_j + I_j} = \frac{N_j^m}{N_j} \frac{N_j}{Y_j} + \frac{C_j^m}{C_j} \frac{C_j}{Y_j} + \frac{I_j^m}{I_j} \frac{I_j}{Y_j} \dots\dots\dots (5)$$

이다. N_j^m/N_j , C_j^m/C_j , I_j^m/I_j 는 中間需要, 消費, 投資의 直接 輸入 依存度이고 N_j^m/Y_j , C_j^m/Y_j , I_j^m/Y_j 는 각 부문이 국내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이들의 합은 1이다. 따라서 總輸入依存度 MD는 이 세개의 수입의존도의 加重平均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특정산업의 수입의존도는 부문별 수입의존도와 함께 당해 산업 생산품의 소비성향에 따라 결정된다⁷⁾.

상기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表 4-6>의 부문별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교역재의 수입의존도는 20.4%이며 산업별로는 광산품(79%), 중공업(20.8%) 그리고 농수산물(13.7%)과 경공업(11.8%)의 순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중간수요의 수입의존(23.1%)은 소비재(6.1%)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서비스를 제외한 交易財産業의 경우 그 비율이 약 3.8배에 달한다. 투자에서는 그 의존도가 더욱 심한데 이는 주로 중공업(30.8%)에서 야기된 결과이다. 輕工業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11.8%로 重工業(20.8%)보다 9% 정도 낮으나 중간재에서는 중공업의 수입의존도가 경공업보다 약 3.5% 정도만 높아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소비의 수입의존도는 경공업과 중공업이 크게 차이가 없으나 투자에서는 중공업의 수입의존이 심하여 중공업의 전체 수입의존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30.8%).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수출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상기할 때 경공업에서의 높은 중간재 수입의존(16.8%)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 경공업의 국내생산이 국내수요의 92.7%에 못 미치지만 총수입의존도는 8.9%에 불과하며 중간수요의 수입의존도는 이보다 낮은 7.8%이다

7) 단, 중고품이 소비에서 반입되는 경우(광산품) 등 특수한 경우 부문별 수입의존도의 가중평균이 총수입의존도와 다를 수 있다.

(소비수요는 10.33%).

3. 貿易依存度の 變化와 關稅還給制度

가. 中間材 輸入依存度の 變化

<表 4-7>은 韓國銀行의 『80-85-90年 接續不變產業聯關表 作成概要』와 『1993年 產業聯關表』를 이용하여 중간수요부문에서의 수입의존도(중간수요 수입액/국내수요)의 변화추이를 제시한 표이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不變價格으로 중간수요의 수입의존도를 산출한 것이며 1993년은 經常價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1990년과 1993년의 수치는 당해연도 환율과 제품가격으로 환산된 수치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

交易財 全體로 보면 中間材에서의 輸入依存度는 1980년 당시 24.2%에서 1993년 23.1%로 1.1% 감소하여 수입의존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第1次 產業과 輕工業의 輸入依存度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타 제조업 제외). 이러한 현상은 소비재 수입의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張槿鎬, 1997). 특히 섬유·가죽제품의 중간재수입이 국내수요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여 1993년 당시 수입의존도가 21%에 달하여 경공업에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나타냈고 농림수산물과 종이·나무제품의 수입의존도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重工業에서는 中間材의 輸入依存度가 같은 기간에 4.8%나 감소하였다(1990년까지는 2.7%)⁸⁾. 이로써 경공업과의 격차가 1980년에는 약 12.5%에 달하던 것이 1990년에는 7.4%(불변가격 기준), 1993년은 3.4%(경상가격 기준)로 줄어들었다. 특히 일반기계, 정밀기기, 수송기계 등 機械類 產業에 있어서의 中間材 輸入依存度

8) 석유·석탄제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데 당해산업은 원유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에 의하여 수입가격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 평균 20%가 넘는 비약적 감소가 이루어져 技術集約的인 産業에서 中間材의 國產化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속제품의 수입의존도도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화학제품 그리고 요업·토석 및 제1차금속과 같은 一次加工品の

<表 4-7> 主要 交易財産業에 대한 中間材 輸入依存度の 變化推移

(單位: %)

IO25産業	中間材 輸入依存度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14.8	15.1	18.3	18.5
광산물	71.5	73.1	76.3	79.1
경공업	12.6	13.4	15.0	16.9
음·식료품	13.9	11.9	15.2	14.8
섬유·가죽	10.8	13.6	15.9	20.6
종이·나무제품	14.1	16.2	17.7	19.5
기타제조업 제품	14.3	9.9	4.5	6.4
중공업	25.1	24.5	22.4	20.3
화학제품	24.9	26.1	23.9	21.8
석유·석탄제품	10.8	15.5	23.0	18.1
요업·토석 제품	6.0	7.4	7.2	5.2
제1차 금속	21.6	19.4	19.5	16.5
금속제품	19.0	15.6	8.6	7.6
일반기계	51.4	33.1	27.8	22.5
전기·전자 기기	41.8	44.4	38.6	37.9
정밀기기	63.4	55.3	40.2	40.2
수송기계	52.1	30.3	14.2	16.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	1.0	4.6	7.7
사회 및 개인서비스	11.4	7.7	1.8	3.0
기타	8.9	6.5	4.2	4.2
교역재 전체	24.2	23.8	23.4	23.1
전산업	19.7	18.7	17.7	17.2

註: 중간재 수입의존도 = 중간재 수입액/중간재 국내수요.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지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 1996.

輸入依存도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國內生産이 중공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輕工業의 産業比重과 自給도가 감소하고 동시에 輕工業의 輸入依存도도 消費와 中間需要 양 부분에서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중공업에서는 국내생산의 자급도가 향상하면서 그 일부분이 수출증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수입의존도의 감소, 특히 중간수요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技術集約的인 가공조립산업(일반기계, 수송기계, 전기기기)에서 中間材 輸入依存도가 감소하고 輕工業에서는 輸入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자원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나. 中間材 輸入依存도와 關稅政策의 役割

重工業에서 중간재산업 발전은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행 關稅率政策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關稅率引下豫示制의 施行으로 완제품과 중간재산업의 관세율 격차가 1982년에 각각 25.4%, 33.1%로 7.7%였으나, 1993년 이후에는 7.0%, 7.1%로 0.1% 차이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중간재산업의 절대적 보호수준이 18.4%로 떨어진 반면 완제품산업의 보호는 26%로 더욱 크게 감소하여 국내자원이 완제품산업에서 중간재산업으로 유입될 동기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國內資源의 배분에 있어서는 絶對的 保護規模뿐만 아니라 相對的 保護規模도 중요하다. 환언하면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원칙적으로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높일 것이지만 완제품에 관한 同時間的 關稅率引下는 소비재의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자원의 중간재산업 유입을 촉발하여 관세율이 떨어지기 전보다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⁹⁾.

물론 중간재의 관세율인하는 그 자체와 함께 수출산업에서 환급

으로 인하여 수입원자재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어주므로 당해산업의 수입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表 4-8>에 나타나 있듯이 관세율인하에시제가 완료된 1993년에는 소비의 수입의존도는 중공업과 경공업을 막론하고 증가한 반면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중공업만이 감소하여 자원이 중공업의 중간재산업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재 수입에 관한 관세율인하 등으로 수입이 한결 자유화되고 관세부담의 감소로 還給費用도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重工業 中間材産業은 완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큰 폭의 관세율인하로 國內自給度を 높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중공업이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음을 감안하여야 하지만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일조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表 4-8> 主要 交易財産業 消費財 輸入依存度の 變化推移

(單位：%)

IO25産業	消費財 輸入依存度			
	1980	1985	1990	1995
농림수산물	3.5	1.9	3.5	4.8
광 산 품	0.0	0.8	-0.2	-0.3
경 공 업	2.5	1.7	5.2	5.9
중 공 업	3.3	6.7	8.5	6.7
교 역 재	2.8	2.6	6.1	6.1

註：소비재 수입의존도=소비재 수입액/소비재 국내수요

資料：한국은행, 『80-85-90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 1996.

- 9) 이에 관한 명확한 결론은 각 産業 生産函數의 代替彈力性과 關稅率 引下 程度 그리고 需要函數의 變化를 고려한 一般均衡分析에 의하여 유도될 것이나 완제품의 관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完製品 生産函數가 彈力的이면 중간재산업은 상대적으로 팽창할 것이다(특히 長期的으로 더욱 그러하다).

앞 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비의 수입의존도(6.1%)는 낮으나 중간수요(23.1%)와 투자(29.7%)의 수입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경공업과 중공업을 막론하고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이 높은 이유는 관세환급제도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으로 야기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過去 中間材와 源材料에 대한 의도적인 低關稅率(完製品 對比) 政策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消費에 있어서도 消費財生産을 위한 中間材 輸入, 즉 間接的인 輸入依存度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높다(兪正鎬, 1995). 그 결과, 兪正鎬(1995)가 주장한 바와 같이 소비재 수입억제와 국산 소비재산업의 육성은 값싼 수입제품을 활용하여 여유의 국내자원이 중간재산업과 수출산업에 투입되지 못한 機會費用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행 關稅率體系가 中間材와 완제품에 대한 關稅率差等化를 적용하지 않고 1997년 關稅還給制度의 改編을 통하여 事後精算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수출산업의 관세 등 수입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전의 관세환급제도가 원자재 수입후 환급금의 지급까지 수출업자에게 자금부담을 유발시킴으로써 국산화 증진을 꾀하는 것은 사실 이들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가하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또한 中間材 國產化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도 상당히 불투명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값싼 수입중간재를 이용하여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수출업자에게 이러한 자금비용을 부과하는 관세환급제도는 더욱 부당하다.

따라서 향후 關稅還給制度의 改善으로 還給政策이 輸出增大라는 고유목적에 충실하도록 한 정책선회는 올바른 선택이며 中間材의 國產化는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이 중간재와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 차이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市場機能에 의하여 국내자원이 消費財産業보다는 中間材産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臺灣의 경우에는 關稅率 5% 이하의 수출용 輸入財에 대

하여 관세환급을 불허함으로써 수출을 희생하더라도 중간재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세환급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關稅率引下豫示制 施行 이후 우리나라 중공업에서 중간재 국산화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關稅還給制度를 포함한 현행 관세정책은 그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 輸入依存度와 對外競爭力: 評價

우리나라에서 中間 및 投資需要의 輸入依存도가 높은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지향적 가공산업으로 발전하여 온 우리나라 산업특성상 原資材에 대한 보호정도가 낮고 輸出用 輸入財에 대하여 關稅還給制度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산업기반이 허약한 기계산업과 광산품 등 기초원료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인 섬유, 화학, 전기기기산업 등에서도 높은 수입의존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이를 지양해야 할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國產中間材에 비하여 값싸고 효율적인 輸入中間材를 사용함으로써 生産性과 국산제품의 對外競爭力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성격의 經濟的 特化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무역정책이란 제한된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그 정당성이 존재한다.

經濟成長의 動因을 분석하는 成長論에서도 輸入代替的인 產業政策보다는 산업의 특화와 이에 따른 필연적인 무역확대가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한 요인이 되며 높은 수입의존을 억제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원의 효율적 운용 방법으로서 값싼 수입재가 국산재를 대체할 수 있다면 한정된 국내 자원이 생산적인 산업활동, 특히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생산활동에

투입됨으로써 경제발전이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關稅還給制度는 輸入財를 활용하여 절약된 국내자원을 輸出品 生産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貿易構造는 俞正鎬가 제시한 臺灣의 例에서 잘 드러난다. 대만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 이유는 中間需要에서 대만의 수입의존도가 높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소비에서 臺灣의 수입의존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비하여 臺灣 소비의 輸入依存度는 1989년 당시 경공업과 중공업에서 각각 17.1%, 43.5%로서 中間需要의 輸入依存度 16.4%, 31.0%보다도 소비의 輸入依存이 오히려 더 심하다. 이는 소비수입에서 대만이 우리보다 좀더 관대한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인데, 한편 관세율 5% 이하의 수출용 수입재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을 불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요인 중에는 수입으로 대체된 국내자원이 比較優位가 있는 輸出産業에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俞正鎬). 대만에서는 수출용 중간재수입에 대한 還給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중간재 수입의존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여 수출을 희생하더라도 국산중간재를 보호하겠다는 대만의 정책이 매우 특이하다고 하겠다.

라. 輸出寄與度의 變化

우리나라 産業構造는 최근 輕工業의 産業比重과 自給度가 떨어지는 반면 重工業에서는 自給度가 향상되고 동시에 수출증가와 함께 重工業의 中間需要에서는 輸入依存度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輸出寄與度(輸出額/國內需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1985년 이후 경공업의 수출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다. 다만 중공업에서는 수출이 1985년을 정점으로 국내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다가 199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일반기계와 전기·전자기

기에서 그 추세가 뚜렷하다. 수송기계 등에서는 國內需要가 1985년 을 전후로 대폭 증가하면서 수출기여도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반전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속제품과 1차금속은 국내수요에 투입 되면서 輸出寄與도가 떨어지고 있다.

<表 4-9> 主要 交易財産業 輸出寄與度の 變化推移

(單位: %)

IO25産業	輸出寄與度			
	1980	1985	1990	1993
농림수산물	4.4	3.5	3.5	2.7
광산물	1.1	0.7	0.8	0.5
경공업	24.8	29.0	27.3	23.1
음·식료품	2.5	3.0	4.0	3.4
섬유·가죽	68.4	85.2	76.4	75.2
종이·나무제품	17.4	6.6	5.8	4.2
기타제조업 제품	46.2	46.4	33.4	22.3
중공업	17.2	21.5	18.0	21.0
화학제품	12.8	12.2	12.1	15.5
석유·석탄제품	1.0	8.2	7.9	10.1
요업·토석 제품	17.4	8.8	5.0	3.8
제1차 금속	21.1	15.6	12.3	13.9
금속제품	58.2	64.5	26.6	21.5
일반기계	5.8	9.2	14.6	14.9
전기·전자기기	34.4	40.3	46.1	50.0
정밀기기	21.8	18.0	19.6	17.2
수송기계	33.1	61.4	16.0	27.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2	1.2	1.3	1.2
사회 및 개인서비스	4.9	7.4	7.1	7.7
기타	7.1	7.4	6.2	5.9
교역재 전체	16.3	19.8	18.2	19.0
전산업	11.8	14.0	12.7	12.6

註: 수출기여도 = 수출액 / 국내수요.

資料: 한국은행, 『80-85-90년 집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개요』, 1994.
 _____, 『1993년 산업연관표』, 1996.

전술한 바와 같이 關稅還給制度는 수출에 투입된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수입세부담을 덜어주고 국내소비에 대하여 소비세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수요에 대비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환급제도가 수출증대에 기여하여 왔다는 결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용된 輸入中間材 比重과 이에 적용된 關稅率에 따라 產業別 還給比重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출을 촉진하는 정도도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다음절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第3節 輸出入과 關稅還給制度: 產業別 利用度

1. 還給率의 變化와 中間材 輸入依存度

關稅還給制度가 中間材에 대한 관세 등 수입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므로 中間材 輸入依存도와 還給比重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즉, 관세율이 일정하다면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환급비중도 떨어질 것이다. <表 4-10>은 韓國銀行의 『產業聯關表』와 關稅廳 資料를 이용하여 1990년과 1993년 우리나라 주요 교역재산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실제 환급비율(수출액 기준)을 대비한 표이다. 만약 수출품과 국내에서 소비된 제품의 수입재 사용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산업연관표에 기준한 수입의존도와 환급률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국내출하와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재의 규모를 한국은행이 따로 발표하지 않으므로 上記의 假定하에 환급액과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交易財 전체로 볼 때 환급비중은 1990년 당시 수출액의 2.6%였는데 그 비율이 1993년에는 1.8%로 감소하였다. 수출품의 중간재 수입의존도(23.4%→23.1%)는 동 기간에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급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關稅率 引下(7.3%→5.6%)에 기

인한 듯 하다. 그러나 産業別로 살펴보면 輕工業製品의 輸入依存度는 증가하였고 경공업의 關稅率도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반면 重工業에서의 수입의존도(22.4%→20.3%)는 감소하였고 또한 이들 제품의 관세율(7.8%→5.9%)이 많이 인하되어 전체 환급비중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중공업 환급비중이 2.8%에서 1.7%

<表 4-10> 主要 交易財産業 還給比率의 變化(輸出額 對比)와 中間材 輸入依存度

(單位：%)

IO25産業	1990			1993		
	中間材 輸入依存度	關稅率	還給額/ 輸出額	中間材 輸入依存度	關稅率	還給額/ 輸出額
농림수산물	18.3	4.1	7.4	18.5	5.5	9.2
광산물	76.3	4.1	0.8	79.1	1.3	0.4
경공업	15.0	9.6	2.4	16.9	9.2	1.9
음·식료품	15.2	9.5	3.1	14.8	11.1	3.5
섬유·가죽	15.9	11.1	2.3	20.6	9.1	1.9
종이·나무제품	17.7	7.2	1.6	19.5	7.6	1.5
기타제조업 제품	4.5	10.5	2.4	6.4	7.7	1.8
중공업	22.4	7.8	2.8	20.3	5.9	1.7
화학제품	23.9	9.9	3.2	21.8	7.6	1.9
석유·석탄제품	23.0	3.2	6.4	18.1	2.3	1.1
요업·투석 제품	7.2	10.1	1.4	5.2	8.6	1.3
제1차 금속	19.5	5.6	1.4	16.5	5.0	1.5
금속제품	8.6	10.4	2.3	7.6	7.0	1.7
일반기계	27.8	10.6	3.2	22.5	6.8	2.1
전기·전자기기	38.6	6.1	2.5	37.9	5.9	1.9
정밀기기	40.2	9.2	4.0	40.2	6.0	2.8
수송기계	14.2	4.1	2.5	16.5	3.1	1.0
교역재 전체	23.4	7.3	2.6	23.1	5.6	1.8

註：환급률 산정에 사용된 수출액은 환급을 위하여 신고된 수출액 기준임.

資料：한국은행 및 관세청 전산자료.

로 1.1%나 감소한 반면 경공업은 2.4%에서 1.9%로 0.5%만 떨어졌던 것이다¹⁰⁾. 이밖에도 농림수산품은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고 관세율도 올라 환급비율도 높는데 그 규모가 무려 9.2%(1993년)에 달한다¹¹⁾. 따라서 농림수산품의 경우 환급제도로 인하여 收益性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농림수산품 다음으로 환급비중이 큰 산업은 음식료품으로 높은 관세율로 환급비율도 높다. 중공업에서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관세율 인하(4.9%→1.3%)로 석유석탄제품의 환급비중이 상당히 떨어진 것이 특이하며 정밀기기의 환급비중도 2.8%로 음식료품에 이어 세번째로 그 비율이 높다¹²⁾.

2. 暫定還給額의 推定

가. 概要

본 절에서는 韓國銀行의 1990年, 1993年 産業聯關表를 사용하여 산업별 관세환급액을 추정하고 이를 實際 還給額(輸出基準)과 비교한다. 관세환급제도가 1975년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과 1년 6개월로 제한된 수출 이행기한 등 각종 현실적 제약으로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각종 제도 및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미환급액을 산업별로 추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1997년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輸入基準으로도 産業別 還給

-
- 10) 환급액은 수출품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공여된 수입증간재와 이에 적용된 관세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특정산업의 환급액은 다른 산업의 관세율에 따라 변화한다. 다만 IO25산업기준에서는 당해산업내 수입재가 주로 당해산업에 사용되리라는 가정하에 논의한다.
- 11) 농림수산품에서도 특히 임산물(7.0%)과 수산물(10.0%)의 환급비중이 매우 높다.
- 12) 이러한 추세는 1994년에도 지속되어 <表 3-12>에도 나타나 있듯이 관세율 인가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 하락으로 수출액에 대비한 환급비율은 1.7%로 감소한다.

額을 추정하는데 이는 關稅廳의 협조로 輸出品目別 還給額 등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지만 輸入額을 기준으로 한 還給資料는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輸入産業을 기준으로 한 關稅負擔率을 추산함으로써 當該 産業의 國産化가 관세환급제도로 얼마만한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여 본다.

산업별 환급액추정을 위하여 산업연관표상의 각종 생산품의 수급 방정식을 살펴보면 아래의 식 (6)과 같다.

$$AX+Y-M=X \dots\dots\dots (6)$$

여기에서 A는 中間材 投入係數行列이며 X는 産出벡터, Y는 最終 需要벡터 그리고 M은 輸入벡터이다. 따라서 상기의 변수를 풀어서 보면 아래의 식 (7)과 같은데 a_{ij} 는 물품 j 1단위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 i의 규모, 즉 投入係數를 의미한다.

$$A = \begin{bmatrix} a_{11} & a_{12} & \dots & a_{1n} \\ a_{21} & a_{22} & \dots & a_{2n} \\ \vdots & \vdots & & \vdots \\ a_{n1} & a_{n2} & \dots & a_{nn} \end{bmatrix}, X = \begin{bmatrix} X_1 \\ X_2 \\ \vdots \\ X_n \end{bmatrix}, Y = \begin{bmatrix} Y_1 \\ Y_2 \\ \vdots \\ Y_n \end{bmatrix}, M = \begin{bmatrix} M_1 \\ M_2 \\ \vdots \\ M_n \end{bmatrix} \dots\dots\dots (7)$$

원재료수입에 따른 환급액, 수입비율 등을 추산하려면 수입거래표가 필요하다. 즉, 식 (6)을 國産과 輸入財의 需給方程式으로 나누면 아래의 식 (8), (9)로 표시할 수 있는데,

$$A^dX+Y^d=X \dots\dots\dots (8)$$

$$A^mX+Y^m=M \dots\dots\dots (9)$$

여기에서 A^d 는 國産投入係數行列, A^m 은 輸入投入係數行列, Y^d 는

국산품에 대한 最終需要벡터, Y^m 은 수입품에 대한 最終需要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식 (8)을 이용하여 國內生産벡터 X 에 대하여 풀면 $X=(I-A^d)^{-1}Y^m$ 가 되어 $(I-A^d)^{-1}$ 의 生産誘發計數表를 얻게 되어 최종수요 1단위 생산을 위하여 直·間接으로 誘發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産出額을 알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Y^m)가 외생변수로 주어질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총산출액, X 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변수는 수출로 인한 수입유발이므로 다음의 식 $X=(I-A^d)^{-1}Y^m$ 를 식 (9)에 대입하면 식 (10)을 얻을 수 있다.

$$A^m(I-A^d)^{-1}Y^d+Y^m=M \dots\dots\dots (10)$$

여기서 $\Gamma=A^m(I-A^d)^{-1}$ 은 輸入誘發係數로서 최종수요의 일부분인 수출이 주어지면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액을 구할 수 있다.

나. 産業別 還給額 推定: 輸出品 基準

輸入誘發係數表의 한 要素, Γ_{ij} 를 풀면 $\sum_k^n a^m_{ik} a_k$ 로서 a_{ij} 는 생산유발계수이다. 그러므로 Γ_{ij} 는 j 를 생산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각종 산출물 k 에 투입된 수입재 I 의 규모를 나타낸다. 만약 수출액벡터를 Y^e 라고 하면 수출품목별 환급액벡터 $D=t\#\Gamma\#Y^e$ 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 는 수입유발계수표 Γ 의 列을 實行關稅率벡터와 輸出額벡터로 곱한 후 列로 合算하는 절차를 의미한다¹³⁾. 이러한 절차를 충족시킨 뒤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별 환급액과 수출대비 비율을 구한 것이 <表 4-11>과 <表 4-12>로서 이 표를 통하여 교역재산업의 潛在還給額을 추산하고 實際還給額과 비

13) 따라서 환급액벡터의 한 요소는 수출품 j 에 직간접으로 투입된 각종 수입재에 부과된 관세액, $\sum_i \sum_k^n t_i a^m_{ik} a_{kj} Y^e_j$ 와 같다.

<表 4-11> 主要 交易財産業 1990年 還給率(輸出品 基準)

(單位: 億圓, %)

IO25産業	輸出 (A)	還給 對象輸出 (B)	還給率 (B/A)	實際 還給額 (C)	還給率 (C/B)	推定 還給額 I (D)	還給率 (D/B)	推定 還給額 II (E)
농림수산물	8,196	501	6.1	37	7.4	3	0.6	60
광산물	820	40	4.8	0.3	0.8	0.3	0.7	5
경공업	174,279	133,502	76.6	3,136	2.4	3,934	3.0	4,955
음·식료품	9,694	4,082	42.1	128	3.1	75	1.8	168
섬유·가죽제품	141,093	116,453	82.5	2,722	2.3	3,606	3.1	4,327
종이·나무제품	5,187	3,130	60.4	51	1.6	67	2.2	115
기타제조업 제품	18,305	9,837	53.7	235	2.4	186	1.9	345
중공업	278,306	184,877	66.4	5,078	2.8	4,432	2.4	6,596
화학제품	37,780	29,336	77.7	936	3.2	931	3.2	1,199
석유·석탄제품	4,704	11,149	237.0	711	6.4	433	3.9	177
요업·토석제품	4,212	1,984	47.1	28	1.4	23	1.1	55
제1차 금속제품	31,335	28,073	89.6	380	1.4	464	1.7	533
금속제품	17,460	12,270	70.3	286	2.3	205	1.7	291
일반기계	29,048	21,906	75.4	696	3.2	620	2.8	786
전기·전자기기	105,814	62,859	59.4	1,570	2.5	1,409	2.2	2,498
정밀기기	5,954	2,178	36.6	87	4.0	55	2.5	151
수송기기	41,999	15,122	36.0	384	2.5	292	1.9	906
교역재 전체	461,601	318,924	69.1	8,250	2.6	8,367	2.6	11,614

註: 1. 추정환급액I은 환급을 신청한 수출기준이며 추정환급액II는 총수출기준 환급액임.

2. 교역재 중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추정치임.

資料: 한국은행 및 관세청 전산자료.

할 수 있다¹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를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행 자료는 內需와 輸

14)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연관표』상의 수입계수표는 관세환급을 제외한 관세등 수입세를 포함하여 산출된 계수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수입계수는 실제 투입계수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한 수치인데 본 연구의 목적 이 잠재환급액을 '추정'하는 데 있으므로 상기의 오차는 무시한다.

出産業의 平均 輸入依存度를 의미하며 수출제품에 수입재가 편중투입되는 한, 본 추정치는 實質還給額을 과소평가한다. 한편 <表 4-11>과 <表 4-12>에도 나타나 있듯이 환급신청시 그 대상이 되는 수출액, 즉 還給對象輸出은 당해연도 總輸出額과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첫째, 실제 輸出時期와 還給申請時期가 다를 수 있고 둘째, 수출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입재가 같은 산업 내에서도 『산업연관표』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특정품목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으며 셋째, 각종 제도적 그리고 현실적 이유로 未還給되는 輸出이 있기 때문이다. 미환급되는 이유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미환급액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廢棄物이나 燃料, 飲·食料品과 같은 消耗品은 수출재에 體化되지 않아 환급이 源泉的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환급을 不許하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實際還給額, 實質還給額, 推定還給額이 서로 다르기 마련이며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환급대상수출과 총수출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따로 추산한다. 전술한 몇가지 이유로 실질환급액의 규모는 환급수출을 기준으로 한 추정환급액(I)보다 크고 총수출기준 환급액(II)에 비하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본고의 추정환급액은 폐기물과 소모품 등 수출품 생산활동에서 완전히 소비된 수입재까지 환급한다는 ‘理想的’ 還給制度를 가정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서 交易財 全産業의 推定還給率을 보면 1990년 2.6%와 1993년 1.9%로 實際還給率 2.6%, 1.8%와 차이가 없다¹⁶⁾. 다만 환급대상수출을 기준한 환급액(I)과 총수출기준 환급액(II)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表 4-11>과 <表 4-12>에서 보듯이 환급대상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약 69%(1990년)와 81%(199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격차는 1990년과

15) WTO체제에서는 연료에 대한 환급도 허용하고 있다.

16) 사용된 관세율과 수입유발계수가 같으므로 수출액대비 환급률은 환급대상 수출액과 총수출액이 동일하다.

1993년 사이에 12%나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實際還給額과 總輸出에 기준한 '理想的인' 推定還給額(Ⅱ)의 差額도 1990년 당시 약 3,400억원에서 1993년에는 2,600억원으로 약 800억원 감소하였다.

한편 환급대상수출을 기준으로 하면 그 격차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가하여 실제 미환급액은 1990년에 100억원과 3,400억원 사이에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1993년에는 미환급액의 분포가 500억원 내지 2,600억원 사이로 줄어든다. 그런데 未還給額의 最大値는 연료와 음식료품 등 還給하지 않은 額數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이들 수입제품은 수출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따라 증가하는 消耗財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還給額 隔差의 감소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제도적 제약에 의한 미환급액과 미환급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된 원인은 물론 환급절차의 간소화, 기타 환급비용의 감소 등으로 환급신청을 하는 수출이 증가하였고 實際所要量에 바탕한 還給制度의 運營이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급대상 수출신청의 증가는 특히 重工業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1990년 당시 수출액의 66%가 환급신청되었는데 그 비율이 3년 뒤에는 83%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공업의 경우 1990년 당시 실제환급률(2.8%)이 추정환급률(2.4%)보다 높아 추정환급액(Ⅰ)도 실제 환급액보다 600억원 정도 적었으나 그 비율이 1993년에는 동일한 1.7%에 이르러 두 환급액의 규모가 거의 같다. 한편 중공업에서 實質還給額의 理想的 上限線이라고 할 수 있는 推定額(Ⅱ)와 實際還給額을 비교하면 1990년 未還給額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데 그 액수가 1993년에는 1,2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환급수출을 기준한 환급액과 실제환급액은 1993년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실제 미환급액은 1990년에 -600억원~1,500억원 사이에 있었는데 1993년에는 0~1,200억원으로 줄어들어 중공업에서는 환급제도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공업 내에서도 산업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수출시기와 환급

시기의 차이, 각종 사유에 따른 미환급 등으로 인한 것이며 환급대상수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환급액과 추정환급액이 1993년에는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表 4-12>에서 알 수 있다.

<表 4-12> 主要 交易財產業 1993年 還給率(輸出品 基準)

(單位：億圓，%)

1025産業	輸出 (A)	還給 對象輸出 (B)	還給率 (B/A)	實際 還給額 (C)	還給率 (C/B)	推定 還給額 I (D)	還給率 (D/B)	推定 還給額 II (E)
농림수산물	8,248	639	7.8	59	9.2	3	0.4	34
광산물	777	34	5.1	0.2	0.4	0.2	0.4	2
경공업	191,354	149,014	77.9	2,836	1.9	3,444	2.3	4,727
음·식료품	11,906	4,990	41.9	177	3.5	93	1.9	210
섬유·가죽제품	155,342	129,356	83.3	2,409	1.9	3,121	2.4	3,688
종이·나무제품	6,220	4,047	65.1	60	1.5	71	1.8	111
기타제조업 제품	17,886	10,711	59.9	190	1.8	159	1.5	263
중공업	462,895	384,559	83.1	6,562	1.7	6,556	1.7	7,744
화학제품	66,427	64,960	97.8	1,231	1.9	1,355	2.1	1,356
석유·석탄제품	14,589	20,032	137.3	215	1.1	176	0.9	128
요업·토석제품	5,111	1,803	35.3	24	1.3	14	0.8	37
제1차 금속제품	47,238	47,157	99.8	702	1.5	553	1.2	555
금속제품	26,474	18,001	68.0	307	1.7	191	1.1	281
일반기계	48,980	50,287	102.7	1,046	2.1	1,171	2.3	963
전기·전자기기	164,656	126,940	77.1	2,381	1.9	2,294	1.8	3,057
정밀기기	8,633	4,673	54.1	132	2.8	82	1.8	152
수송기기	80,787	50,706	62.8	524	1.0	720	1.4	1,215
교역재 전체	663,273	534,343	80.6	9,456	1.8	10,004	1.9	12,055

註：1. 추정환급액I은 환급을 신청한 수출기준이며 추정환급액II는 총수출기준 환급액임.

2. 교역재 중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추정치임.

資料：한국은행 및 관세청 전산자료.

輕工業을 살펴보면 중공업에 비하여 實際還給率은 推定還給率보다 작다. 1993년에 그 비율은 1.9%로서 추정치 2.3%보다 0.4% 정도 작은데 다만 그 격차는 1990년 당시 0.6%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서 환급대상수출을 기준한 추정환급액과 실제환급액의 차이도 1990년 800억원에서 1993년에는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중공업의 실제환급규모가 환급대상수출을 기준한 추정치보다 크거나 비슷한 것을 고려할 때 경공업에서의 미환급액은 상대적으로 많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섬유·가죽제품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한편으로는 당해 산업의 환급대상 수출비율은 83%에 달하여 다른 경공업에 비하면 그 비율이 높다. 따라서 당해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환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未還給額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消耗品까지 고려한 총수출기준 환급액과 실제환급액을 비교하면 1990년 당시 그 차이가 약 1,800억원에 달하던 것이 1993년에는 1,400억원으로 감소한다. 그러므로 실제 미환급액은 1990년에 800~1,800억원 사이에 있었으나 1993년에는 600~1,400억원 사이에 걸쳐 있어, 경공업에서도 환급제도 개선으로 미환급액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공업에서의 미환급액 추정치(600~1,400억원)와 중공업 미환급액(0~1,200억원)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반면 중공업 수출 규모가 1993년 당시 경공업의 약 2.4배임을 감안할 때 경공업에서 미환급액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수출품을 기준으로 한 미환급액의 산업별 현황과 변화를 추정·논의하였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가 내수와 수출을 구별하여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발표하지 않으므로 본 추정은 사실 國內生産에 대한 平均的 還給比重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수출품에 수입중간재가 내수제품보다 더 많이 투입된다면 추정된 환급률은 실질환급률보다 낮을 것이다. 실제로 교역재 전체로 보면 實際還給

率과 推定還給率이 거의 같지만 산업별로는 섬유·가죽제품과 종이·나무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1990년 당시 추정환급률이 실제환급률보다 낮다. 1993년에는 위의 경공업제품과 화학, 일반기계 그리고 수송기기를 제외한 산업의 추정환급률이 실제보다 낮다. 또한 『산업연관표』가 환급이 불가능한 연료와 음식료품 등 소모품과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산업에서 실제환급률이 추정치보다 높다는 사실은 내수제품에 비하여 수출품에 수입중간재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역재 전체로 볼 때 실제환급액과 추정환급액(총수출기준)의 격차가 줄어들어 미환급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공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물리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거나 환급을 불허하는 完全消費財의 輸入比重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절대액이 수출과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하지만 아직도 섬유·가죽, 종이·나무제품에서 추정환급률이 실제치보다 높고 따라서 추정된 환급액도 실제보다 많은 것은 輕工業에서 關稅還給制度가 생각보다 유용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중공업의 수출규모가 경공업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상기할 때 수출액에 대비한 輕工業의 還給負擔率은 重工業보다 더 크리라고 예상되므로 이를 정책당국이 감안하여 중소기업과 경공업에 대한 환급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환급제도 개선으로 事後精算과 企業自律의 所要量 管理가 가능한데 이를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미환급액을 포함하는 실질환급액의 규모는 알 수 없고 위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추정도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還給對象인 輸出과 總輸出을 기준으로 未還給額을 추산하고 이를 實際還給額과 비교하였다. 총수출의 경우는 실제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수출과 함께 원천적으로 환급하지 않는 消費品을

포함하므로 이 추정치는 이상적 최대치이다. 그러나 환급신청수출의 경우 추정된 환급액이 위의 표에서 보듯이 실제환급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IO75 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實際와 推定値의 相關關係가 1990, 1993년에 각각 0.95, 0.97에 달하여 본 추정이 실제환급액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¹⁷⁾. 이러한 이유로 환급대상수출을 기준으로 한 환급비중이 총수출기준보다 실질환급액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상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 輸入産業別 還給額과 實質 關稅負擔率을 還給申請輸出에 기준하여 추정한다.

다. 産業別 還給額 推定: 輸入品 基準

特定産業의 輸入中間材가 각종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연관표』상 輸入誘發係數行列의 行을 검토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산업의 수입중간재, 가령 수입재 1이 수출에 공여되어 수입으로 야기된 관세 등이 환급되는 규모를 當該 輸入産業을 基準하여 추정하려면 아래의 식이 필요하다.

$$d_i = t_i \cdot \Gamma \cdot Y^e = t_i \sum_j^n \sum_k^n a_{jk}^m \alpha_{kj} Y_j^e, \dots\dots\dots (11)$$

여기서 d_i 은 각종 수출품에 투입된 수입재 1의 합과 해당 수입재의 실행관세율을 곱한 수치로서 식 (11)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關稅率下에서는 당해 중간재의 輸入係數와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輸出品의 相關關係가 높을수록 還給比重도 높다¹⁸⁾. 환급액 d_i 을 당해산업의 관세징수액으로 나누면 實質 關稅負擔率이 되는데 이 비율이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을 위한 직간접 수입중간재 투입액과

17) 총수출을 기준한 추정치와 실제치와의 상관계수는 각 연도에 0.83, 0.80에 달하는데 환급대상수출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18) 실제로는 중간재 k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관관계이나 이러한 간접적 투입비중은 작을 것이다.

<表 4-13> 主要 交易財產業 關稅率, 還給率, 關稅負擔率의 變化推移(輸入品 基準)

(單位: 億圓, %)

IO25產業	1990					1993				
	關稅 徵收額	關稅 還給率	推定 還給額	還給率	實質 關稅 負擔率	關稅 徵收額	關稅率	推定 還給額	還給率	實質 關稅 負擔率
농림수산물	1,319	4.1	296	0.9	3.2	2,168	5.5	394	1.0	4.5
광산품	2,680	4.1	804	1.2	2.9	1,445	1.3	380	0.3	1.0
경공업	6,014	9.6	2,911	4.6	5.0	8,282	9.2	2,358	2.6	6.6
음·식료품	2,128	9.5	619	2.8	6.7	3,086	11.1	685	2.5	8.6
섬유·가죽제품	2,467	11.1	1,490	6.7	4.4	2,905	9.1	1,425	4.5	4.6
종이·나무제품	1,047	7.2	145	1.0	6.2	1,771	7.6	199	0.9	6.7
기타제조업 제품	372	10.5	39	1.1	9.4	520	7.7	49	0.7	7.0
중공업	25,896	7.8	4,975	1.5	6.3	25,569	5.9	6,872	1.6	4.3
화학제품	6,197	9.9	2,249	3.6	6.3	6,053	7.6	2,397	3.0	4.6
석유·석탄제품	644	3.2	93	0.5	2.7	605	2.3	194	0.7	1.6
요업·토석제품	667	10.1	121	1.8	8.3	604	8.6	149	2.1	6.5
제1차 금속제품	2,594	5.6	691	1.5	4.1	2,794	5.0	901	1.6	3.4
금속제품	599	10.4	64	1.1	9.3	568	7.0	92	1.1	5.9
일반기계	8,505	10.6	551	0.7	9.9	6,629	6.8	522	0.5	6.3
전기·전자기기	3,992	6.1	1,040	1.6	4.5	5,444	5.9	2,250	2.4	3.5
정밀기기	1,641	9.2	92	0.5	8.7	1,666	6.0	124	0.4	5.6
수송기기	1,056	4.1	75	0.3	3.8	1,208	3.1	244	0.6	2.5
교역재 전체	35,909	7.3	8,986	1.8	5.5	37,464	5.6	10,004	1.5	4.1

註: 1. 추정환급액은 환급을 신청한 수출기준이며 교역재 중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추정치임.

資料: 한국은행 및 관세청 진산자료.

총수입액의 비율도 된다¹⁹⁾. 위의 <表 4-13>은 식 (11)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의 IO25 輸入產業의 關稅負擔額과 推定還給額 그리고 實質 關

19) 이러한 주장에는 물론 전술한 대로 수출품과 내수제품의 수입재 투입 계수가 동일하다는 실제와 다른 가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환급대상수출을 바탕으로 수입산업기준의 환급액을 추정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실제환급액(수출기준)과 추정환급액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다.

稅負擔率을 나타낸 表이다²⁰⁾.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交易財에서 1990년 당시 輸入額 對比 關稅率(實行關稅率)은 7.3%에 달하였고 推定還給率은 1.8%로 실제로 우리나라 수입산업이 관세를 부담한 비율은 5.5%였다. 그 후 관세율 인하로 실행관세율이 5.6%로 감소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환급률도 1.5%로 인하여 實際負擔率은 4.1%에 불과하다. 그러나 輕工業에서는 실제부담률이 5%에서 6.6%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첫째로 음식료품과 종이·나무제품의 관세율이 인상되었고 둘째는 추정환급률, 특히 환급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섬유·가죽제품에서 환급비중이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6.7%→4.5%).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공업에서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消費財의 輸入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서 輸入額에 대비한 還給率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實質負擔率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重工業의 實際負擔率은 1990년 당시 6.3%였으나 1993년에는 4.3%로 감소, 경공업의 부담률 변화(5%→6.6%)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같은 기간에 중공업 실행관세율이 7.8%에서 6.6%로 인하여되었고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도 경공업은 증가한 반면 중공업은 8.5%에서 6.7%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表 4-8>참조). 중공업에서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감소하고 관세율도 인하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률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는 환급비중이 큰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의 환급률이 1.6%에서 2.4%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還給額은 약 1,200억 원 증가).

본고에서 추정된 환급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實質 關稅負擔率은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輕工業과 農林水產品의 경우는 증가하였고 重工業은 全產業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관세부담률이 감소한 산업에서 실행관세율이 감소하였고 섬유·가죽제품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는 실행관세율이 증가하면서 관세부담률도 같이 증가하여 실질적 관세부담에는 실행

20) IO75 輸入產業에서의 推定還給額에 바탕한 實質關稅負擔率은 <表 4-14>에 나타나 있다.

관세율의 영향이 환급률보다 크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한편 關稅還給까지 감안한 絶對的 保護水準으로 볼 때 본고의 추정결과는 輕工業의 關稅保護率(6.6%)이 重工業(4.3%)보다 1993년 당시 약 2.3% 정도 높아 實行關稅率의 差異인 3.3%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還給比率이 輕工業이 2.6%로 重工業 1.6%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1990년 당시에는 중공업의 實質保護(6.3%)가 경공업(5%)보다 높는데 주된 이유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관세율(9.6%, 7.8%)이 차이가 별로 없었고 경공업의 환급률(4.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다.

<表 4-14> IO75 交易財產業에 대한 關稅率, 還給率, 實質關稅負擔率의 變化推移(輸出品 基準)

(單位: 億원, %)

IO75 産業	1990					1993				
	關稅 徵收額	關稅率	推定	·	實質 關稅 負擔率	關稅 徵收額	關稅率	推定 還給額	還給率	實質 關稅 負擔率
농림수산물	1,319	4.1	296	0.9	3.2	2,168	5.5	394	1.0	4.5
작물	822	4.0	210	1.0	2.9	1,397	5.9	278	1.2	4.7
축산 및 양잠	133	5.8	46	2.0	3.8	150	6.1	70	2.8	3.2
농업 서비스	0	0.0	0	-	-	0	0.0	0	-	-
임산물	185	2.5	20	0.3	2.2	281	2.8	21	0.2	2.5
수산물	179	10.6	19	1.1	9.5	339	11.3	24	0.8	10.5
광산품	2,680	4.1	804	1.2	2.9	1,445	1.3	380	0.3	1.0
석탄	51	1.0	15	0.3	0.7	138	1.0	30	0.2	0.8
원유 및 천연가스	2,449	5.0	733	1.5	3.5	1,078	1.3	270	0.3	1.0
금속광석	87	1.0	35	0.4	0.6	115	1.0	50	0.4	0.6
비금속광물	93	3.5	21	0.8	2.7	114	3.6	30	0.9	2.6
경공업	6,014	9.6	2,911	4.6	5.0	8,282	9.2	2,358	2.6	6.6
육류 및 낙농품	986	8.0	506	4.1	3.9	1,141	9.4	530	4.4	5.0
수산물가공품	76	10.0	2	0.3	9.7	165	11.7	6	0.4	11.3
정곡 및 제분	17	5.2	1	0.2	5.0	19	5.4	1	0.3	5.1
제당	98	3.4	23	0.8	2.6	151	5.3	22	0.8	4.5
빵, 과자 및 국수류	53	13.9	2	0.6	13.3	123	17.1	3	0.4	16.7

<表 4-14>의 繼續

(單位: 億원, %)

K05 産業	1990					1993				
	關稅 徵收額	關稅率	推定 還給額	還給率	實質 關稅 負擔率	關稅 徵收額	關稅率	推定 還給額	還給率	實質 關稅 負擔率
기타 식료품	53	13.9	2	0.6	13.3	123	17.1	3	0.4	16.7
음료품	359	37.2	60	6.2	31.0	501	32.8	73	4.8	28.1
담배	0.2	0.0	0	0.0	0.0	0	0	0	0.0	0.0
섬유사	555	9.2	423	7.0	2.2	713	7.8	496	5.4	2.4
섬유직물	917	12.6	595	8.1	4.4	1,136	11.1	527	5.1	5.9
섬유제품	328	13.1	89	3.6	9.6	383	10.0	89	2.3	7.7
의복 및 장신품	91	14.8	2	0.2	14.5	149	9.6	2	0.1	9.5
가죽 및 모피제품	576	9.8	381	6.5	3.3	524	7.4	310	4.3	3.0
제재 및 목제품	563	12.3	40	0.9	11.5	1,203	10.5	86	0.7	9.7
가구	30	10.4	0.6	0.2	10.2	52	9.0	0	0.0	9.0
펄프 및 종이	454	4.7	105	1.1	3.6	516	4.7	113	1.0	3.6
인쇄출판	13	2.2	1	0.2	2.0	13	1.4	3	0.3	1.1
기타 제조업 제품	358	12.1	37	1.3	10.9	507	8.7	47	0.8	7.9
중공업	25,896	7.8	4,975	1.5	6.3	25,569	5.9	6,872	1.6	4.3
유기화학 기초·중간제품	2,096	8.5	935	3.8	4.7	1,871	7.5	972	3.9	3.6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902	11.5	343	4.4	7.1	798	8.3	348	3.6	4.7
무기화학 기초제품	444	9.0	128	2.6	6.4	464	6.9	169	2.5	4.4
화학섬유	144	9.1	82	5.2	3.9	120	7.1	72	4.3	2.8
화학비료 및 농약	39	4.6	2	0.3	4.3	50	4.0	5	0.4	3.5
의약품 및 화장품	407	12.0	34	1.0	11.0	495	8.1	32	0.5	7.5
기타 화학제품	1,604	11.1	599	4.2	7.0	1,655	7.6	623	2.9	4.7
석유제품	637	3.2	90	0.5	2.7	593	2.2	189	0.7	1.5
석탄제품	7	4.7	2	1.5	3.2	12	4.9	5	1.9	3.0
고무제품	160	11.4	26	1.8	9.6	152	8.0	37	1.9	6.0
플라스틱제품	401	11.9	101	3.0	8.9	449	8.5	139	2.6	5.8
유리 및 도자기	389	12.8	74	2.4	10.4	393	9.1	105	2.4	6.7
시멘트 및 시멘트제품	23	1.5	0.5	0.0	1.5	29	5.6	0.5	0.1	5.5
기타 요업 및 토석제품	256	12.3	47	2.3	10.0	182	8.5	44	2.0	6.4
제철 및 제강	191	2.0	75	0.8	1.2	435	2.7	183	1.1	1.6
제강 1차제품	1,234	6.7	263	1.4	5.3	1,109	7.3	151	1.7	5.7

<表 4-14>의 繼續

(單位: 億圓, %)

1075産業	1990					1993				
	關稅 徵收額	關稅率	推定 還給額	還給率	實質 關稅 負擔率	關稅 徵收額	關稅率	推定 還給額	還給率	實質 關稅 負擔率
비철금속 및 1차제품	1,169	6.2	353	1.9	4.3	1,251	5.0	467	1.9	3.1
금속제품	599	10.4	64	1.1	9.2	568	7.0	92	1.1	5.9
일반산업용기계	2,716	10.4	232	0.9	9.5	2,246	6.3	255	0.7	5.6
특수산업용기계	4,818	10.6	128	0.3	10.3	3,417	6.8	102	0.2	6.5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972	11.0	191	2.2	8.8	966	8.0	165	1.4	6.7
전기기계 및 장치	1,489	10.3	264	1.8	8.5	1,513	7.0	352	1.6	5.4
가정용전기전자기기	289	8.2	58	1.6	6.5	333	8.8	73	1.9	6.9
통신기기	250	6.5	11	0.3	6.3	412	6.5	28	0.4	6.1
전자기기부분품	1,965	4.5	708	1.6	2.9	3,186	5.2	798	1.3	3.9
정밀기기	1,641	9.2	92	0.5	8.7	1,666	6.0	124	0.4	5.6
자동차	897	11.2	74	0.9	10.2	1,017	8.9	243	2.1	6.8
기타 수송기계	159	0.9	0.7	0.0	0.9	191	0.7	2	0.0	0.7
교역재 전체	35,909	7.3	8,986	1.8	5.5	37,464	5.6	10,004	1.5	4.1

註: 추정환급액은 환급을 신청한 수출기준이며 교역재 중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추정치임.

資料: 한국은행 및 관세청 전산자료.

第4節 關稅還給制度와 貿易政策: 結論

1997年 改編 以前 關稅還給制度下에서는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하면 관세 등을 환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5년의 경우 수출산업은 약 1조 2천억 원에 상당하는 자금부담을 안게 되었고 금융비용 및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환급으로 인한 비용은 상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많은 환급비용을 지불하는 주원인은 수입원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장에서는 關稅還給制度의 운용현황 및 우리나라 中間材 輸入依存度의 變化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關稅免除 및 還給制度가 輸出補助金과 같은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수출지원에 기여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이는 관세환급제도가 수입원료에 부과된 관세로 인한 生産費用 引上效果를 제지할 뿐만 아니라 國內消費에 대하여 消費稅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업체의 收益性을 증가시키는 물론 생산증대와 內需代替로 수출을 증대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은 輸出額 對比 還給比重이 1990년 당시에 2.59%에 달하였고 이후 關稅率引下豫示制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1995년에는 1.28%에 상당하여 수출증대에 따른 수익성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원자재 국산화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많다. 이는 第2章에서 논의하였듯이 국산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산재의 생산증대는 이미 이에 대한 관세부과로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산화가 진척된 산업에서는 환급에 따른 금융비용 등에 상당한 수준까지만 국산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中間材 輸入依存度の 變化를 보면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행된 이래 수입의존도는 1980년 당시 24.2%에서 1993년 23.1%로 약 1.1%만 감소하였다. 경공업에서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4.3% 증가한 것에 비하면 중공업의 中間材 輸入依存度は 동 기간에 4.8%나 떨어져서 1993년 현재 20.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中間材 輸入(國內需要 對比)의 감소는 물론 정부와 민간경제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국산화 노력에 기인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關稅率引下豫示制 施行으로 中間材와 完製品의 關稅率 隔差를 0.1%로 축소함으로써 1985년 이후 국내자원이 소비재보다는 중간재산업으로 유입되어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많이 감소한 때문이다.

물론 중간재의 관세율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완제품 관세율은 더 많이 인하되었고 이에 따라서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는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均等關稅率體制로 인한 相對的 保護隔差의 완화가 국내자원의 이동에 있어서 중간재산업이 선호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밖에도 1975년 이후 關稅還給制度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또한 還給節次의 간소화로 還給費用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關稅還給制度보다도 關稅率引下豫示制로 인한 中間材 國產化 效果가 더 크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균등관세율 체제를 유지하여 중간재의 국산화를 증대하고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산업에서 지불하는 자금 및 환급비용을 축소하는 쪽으로 개선하여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未還給額의 규모는 1993년에 상당히 감소하여 還給對象輸出을 기준으로 한 미환급액은 약 5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수출품에 體化되지 않아 WTO 協定上 환급이 不許된 연료와 음식료품 등의 輸入財와 消耗品을 포함하고 總輸出을 기준으로 한다면 未還給額은 2,6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1990년에 비하면 약 800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還給不許額이 固定的 費用이고 또한 그 규모도 수출증대와 함께 증가함을 고려하면 1993년의 미환급액은 還給對象輸出에 의거한 未還給額에 근접하리라는 추측과 함께 미환급액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본고의 계산에 따르면 중공업에 비하여 경공업에서의 未還給額이 많고 수출과 대비한 未還給率은 경공업이 더욱 높으므로 환급으로 인한 당해 산업의 부담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경공업 특히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제도를 개선하고 우선적으로 환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산화가 정착되지 않은 산업에서는 관세환급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고 국산화가 진척된 경우라도 관세환급제도는 관세부과 이후 면제에 따른 금융 및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국산화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貿易自由化를 통하여 輸出 爲主의 經濟成長政策을 유지하는 한 수출원료에 대한 輸入依存度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값싸고 품질 좋은 輸入中間材를 통하여 수출이 증대하고 수입을 통하여 여분의 국내자원이 成長潛在力이 있는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關稅還給制度를 통하여 수출산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원재료 및 중간재의 국산화를 달성한다는 政策目標은 사실 輸出支援과 서로 相沖되는 목표가 아닐 수 없다. 臺灣의 경우에는 1988년 이후 관세율 5% 이하의 輸入財에 대한 還給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대만이 지속적인 貿易黑字를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정책변화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당 규모의 무역적자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關稅還給制度 개편은 국산화보다 輸出競爭力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中間材와 投資財의 국산화는 關稅率引下豫示制 이후 技術集約的인 機械 및 機機産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均等關稅率體制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이들 中間材産業에 지속적으로 자원이 유도되도록 國家政策이 전개되어야 한다.

第5章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實態調查 結果

第1節 實態調查의 概要

1. 實態調查의 目的

本 調査는 國內産業의 보호육성과 輸出産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75년부터 시행되어 온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實態調查이다. 본 조사의 목적은 關稅還給制度가 실제로 輸出과 原材料 國産化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해결되어야 할 問題點과 그 改善策은 무엇인지를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 輸出企業을 대상으로 직접 파악함으로써 향후 關稅還給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2. 實態調查의 設計

가. 標本의 抽出

본 조사의 對象企業 選定過程은 다음과 같다. 우선 關稅還給을 받고 있는 전국의 수출기업을 母集團으로 하여 각 稅關으로부터 關稅還給實績이 비교적 상위에 있으며 關稅還給制度의 現況과 問題點에 대해 評價基準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1,875개의 輸出企業을 추천받았다. 추천된 1,875개의 수출기업 중에서 體系的인 無作爲 抽出方法으로 標本企業 500개를 선정하였다. 추출된 기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調査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企業數만큼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추출하여 標本企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500개 標本企業에 대한 調査書의 수집이 끝난 후 이를 검

또하여 輸出用 原材料의 HS 10단위 분류번호를 답하지 않은 4개 기업, 還給額을 답하지 않은 15개 기업, 還給額과 輸出額을 동시에 답하지 않은 14개 기업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33개 기업을 標本에서 제외한 이유는 實態調査 結果를 분석하기 위해 業種, 還給額의 규모, 그리고 輸出額의 규모에 따라 표본을 여러 그룹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의 문항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기업은 가능한 한 標本の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標本에서 제외하지 않았다¹⁾. 이러한 과정을 거쳐 本 調査에서는 467개 기업을 最終標本으로 선정하였다.

나. 資料蒐集 方法 및 期間

標本企業에 대한 資料蒐集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행해졌다. 먼저 선정된 標本調査企業에 전화를 하여 關稅還給 혹은 輸出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實務者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는 面接員이 직접 찾아가 調査書와 公文을 배포하면서 기재요령을 설명하였으며, 기재완료된 調査書는 그 기업을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된 담당자 앞으로 調査書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기재완료된 調査書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회수하였다.

本 調査가 수행된 기간은 1996年 2月 8일부터 3月 9일까지 30日間이었다.

다. 本 調査의 限界點

本 調査의 母集團은 關稅還給을 받고 있는 전국의 輸出企業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標本選定은 각 지역 稅關이 추천한 기업 명단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각 稅關이 선정한 기업은 그 지역에서 關稅還

1) 本 調査書는 문항이 49개나 되었기 때문에 수집완료된 조사서 대부분에서 문항에 따라 답을 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 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給實績이 상위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 조사의 표본은 輸出用 原材料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의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標本이 母集團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限界點은 본 조사의 母集團과 標本을 비교한 <表 5-1>에서 잘 나타난다. 1994년에 關稅還給을 받은 輸出企業의 수는 9,979개사였으며, 이들 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1조 59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본 조사의 標本企業의 數는 467개사로 母集團의 4.7%에 불과하지만, 標本企業의 關稅還給額은 4,811억원으로 母集團의 關稅還給額 1조 59억원의 47.8%에 해당한다.

<表 5-1> 母集團과 標本の 比較

(單位: 個, 億원, %)

母集團		標本		C/A	D/B
企業數(A)	關稅還給額(B)	企業數(C)	關稅還給額(D)		
9,979	10,059	467	4,811	4.7	47.8

本 調查의 標本이 母集團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調查의 結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본 조사는 關稅還給制度의 利用現況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기보다는 現行 關稅還給制度의 問題點을 파악하고 그 改善策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성격상 輸出用 原材料를 주로 사용하는 企業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實態調查 內容

實態調查書는 크게 ① 회사의 事業 性格과 關稅還給實態 ② 輸出 現況과 還給類型別 利用實態 ③ 관세 환급 관련 所要日數와 經費 ④

현행 관세환급제도의 利用現況과 問題點 ⑤ 현행 관세환급제도의 改善方案 등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4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第2節 實態調查 結果分析²⁾

1. 調查對象企業의 特性

調查對象企業의 현황은 <表 5-2>와 같다³⁾. 1994년 기준으로 467개 조사대상기업의 平均賣出額은 2,603억원, 平均純利益은 49억원, 平均輸出額은 1억 4,800만달러, 平均輸入額은 5,300만달러, 平均還給額은 10억원이었다. 調查對象企業인 132개의 大企業과 335개의 中小企業은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大企業의 平均賣出額은 8,458억원, 平均純利益은 138억원, 平均輸出額은 4억 8,500만달러, 平均輸入額은 1억 5,500만달러, 平均還給額은 27억원으로 전체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반면 中小企業의 平均賣出額은 334억원, 平均純利益은 13억원, 平均輸出額은 1,500만달러, 平均輸入額은 1천만달러, 平均還給額은 3억원에 불과하였다.

2. 關稅還給業務의 電算化 實態

關稅還給 專擔部署의 유무, 關稅還給業務 專擔人力의 구성, 관세환급업무용 컴퓨터의 유무 및 종류 그리고 關稅還給申請書의 作成方法 등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關稅還給業務 電算化 程度

2) 本 調查書의 문항이 49개로 너무 많기 때문에 本文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한 답을 表나 圖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附錄에서 모든 문항에 대한 답을 表로 요약하여 보여주었다.

3) 467개 조사대상기업은 모두 輸出額과 還給額을 밝혔으나, 賣出額, 純利益, 輸入額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表 5-2> 調查對象企業의 現況

(單位：個, 百萬원, 百萬달러)

	賣出額		純利益		輸出額 ¹⁾		輸入額 ¹⁾		還給額	
	企業數	平均	企業數	平均	企業數	平均	企業數	平均	企業數	平均
전 체	462	260,252	461	4,862	467	148	416	53	467	999
기업규모별										
대 기업	129	845,767	130	13,838	132	485	123	155	132	2,718
중소기업	333	33,431	331	1,337	335	15	293	10	335	322
업종별 ²⁾										
경공업	179	175,886	180	2,499	181	53	157	36	181	388
중공업	280	316,794	280	6,424	283	210	256	64	283	1,278
수출액규모별										
250만달러 미만	89	28,092	88	544	90	1	80	10	90	163
250만~500만	73	65,759	73	363	73	3	62	12	73	135
500만~1,000만	70	20,036	70	885	71	7	61	5	71	187
1,000만~2,500만	106	77,654	106	4,817	107	17	95	21	107	393
2,500만~5,000만	41	184,744	41	2,689	41	35	39	54	41	486
5,000만~1억달러	32	169,350	32	2,601	32	72	31	27	32	1,141
1억달러 이상	51	1,770,755	51	27,471	53	1,185	48	318	53	6,234
환급액규모별										
1천만원 미만	36	36,475	36	660	36	3	31	4	36	4
1천만~5천만원	119	75,584	118	3,571	121	10	104	27	121	27
5천만~1억원	60	23,050	60	888	60	11	52	8	60	73
1억~10억원	176	100,952	176	2,285	177	41	160	25	177	324
10억원 이상	71	1,278,570	71	18,885	73	822	69	211	73	5,500

註：1) 輸出額과 輸入額의 단위는 백만달러임.

2) 農林水産業 2개 企業과 不動產 및 事業서비스業 1개 企業을 제외함.

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關稅還給業務의 담당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調查對象企業의 93.8%가 대부분 회사가 직접 신청·처리한다고 답했다. 關稅還給業務를

대부분 직접 신청·처리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大企業이 99.2%로 中小企業의 91.6%보다 더 높았으며, 重工業이 95.1%로 輕工業의 92.2%보다 높았다. 대부분 關稅士에 의뢰하여 관세업무 처리하는 경우는 輸出額의 규모나 還給額의 규모가 작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關稅還給 專擔部署가 있는 기업은 調查對象企業의 9%에 불과하였다. 관세환급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大企業(22.7%)이 中小企業(3.6%)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重工業(9.9%)이 輕工業(7.7%)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으며, 業種別로는 운송기계(13.3%), 화학제품(12.2%), 전기 및 전자기기(11%)의 순으로 나타났다. 業體規模別로는 輸出額이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還給額이 많은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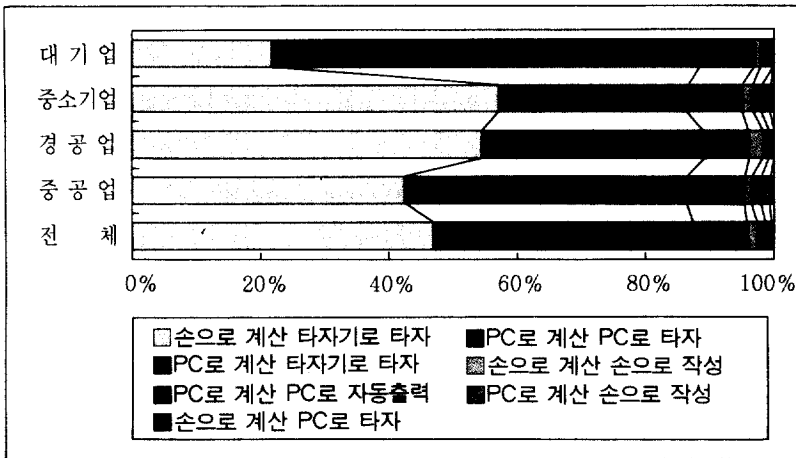
關稅還給業務 專擔人力의 구성을 살펴보아도 關稅還給業務의 電算化 程度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調查對象企業의 관세환급업무 전담인력의 수는 평균 1.7명이었다. 그 중에서 電算職 社員은 0.2명으로 一般職 社員 1.5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輸出額이 많을수록 또한 還給額이 많을수록 전산직 사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還給額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도 專擔人力 2.8명 중에서 전산직 사원은 0.6명에 불과하였다.

關稅還給業務用 컴퓨터가 있는 기업은 調查對象企業의 84.6%였다. 컴퓨터의 종류로는 PC급이 57.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형컴퓨터가 15.2%, 대형컴퓨터가 11.6%였다. 그러나 관세환급업무용 컴퓨터가 없는 기업도 15.4%나 되었다. 특이한 점은 輸出額과 還給額의 규모가 큰 기업에서도 PC급 컴퓨터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輸出額이 1천만달러 이상인 233개 기업 중에서 16개 기업이 그리고 還給額이 1억원 이상인 250개 기업 중에서 22개 기업이 PC급 컴퓨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關稅還給申請書의 作成方法을 살펴보아도 조사대상기업의 關稅還

給業務 電算化 程度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圖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關稅還給額을 손으로 계산하고 타자기로 타자해서 신청한다는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關稅還給額을 신청하는 기업은 中小企業의 경우 57.4%였으며 大企業의 경우도 22%나 되었다. 그 다음이 PC로 계산해서 PC로 타자(40.4%), PC로 계산해서 타자기로 타자(8.2%), 손으로 계산해서 손으로 작성(1.6%), 컴퓨터로 계산해서 컴퓨터로 자동출력(1.5%), PC로 계산해서 손으로 작성(0.9%), 손으로 계산해서 PC로 타자(0.4%)의 순이었다.

[圖 5-1] 關稅還給申請書의 作成方法



3. 輸出現況 및 關稅還給 實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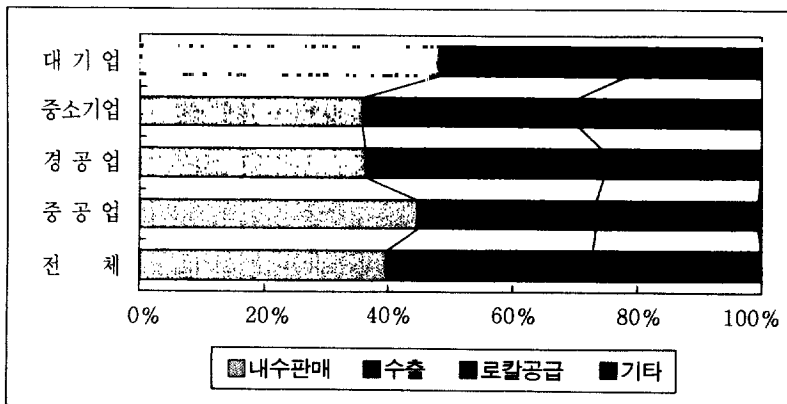
조사대상기업의 平均輸出額은 앞의 <表 5-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억 4,800만달러에 달한다. 이를 大企業과 中小企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기업의 平均輸出額은 4억 8,500만달러이고 중소기업은 1,500만달러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還給額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기업의 平均還給額은 27억 1,800만원으로 全體 平均還給額 9억 9,900만

원을 크게 상회한 데 비해 중소기업은 3억 2,200만원으로 평균치를 훨씬 밑돌았다.

한편 조사대상기업의 82.9%가 輸出과 內需販賣를 동시에 하였으며, 17.1%만이 生産製品을 全量輸出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내수판매를 동시에 하는 기업의 비중은 대체로 輸出額이나 還給額의 규모가 클수록 높으며, 전량수출하는 기업의 비중은 中小企業이 大企業보다, 輕工業이 重工業보다 훨씬 높았다.

1994년에 생산한 제품을 전량수출하지 않았다는 企業만을 대상으로 生産製品의 販賣內譯을 조사해 본 결과 [圖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內需販賣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輸出 32.8%, 로칼供給 26.6%의 순이었다. 大企業의 경우는 내수판매가 수출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양자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業種, 輸出額規模, 還給額規模에

[圖 5-2] 生産製品의 販賣內譯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1994년에 關稅還給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企業의 數는 조사대상기업의 54.4%인 254개사나 되었다. 이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關稅還給을 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는 117억 8,640만원으로 한 기업당 평균 4,6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關稅還給을 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는 全體 調查對象企業이 수출 후 돌려받은 關稅還給額 4,667억 5,500만원의 2.5%에 해당한다. 大企業이 1994년에 환급받지 못한 關稅額의 평균은 9,590만원으로 中小企業의 평균 2,940만원보다 훨씬 많았으며, 重工業의 평균은 5,470만원으로 輕工業의 평균 3,580만원보다 많았다. 業種別로는 一般機械가 평균 1억 5,730만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業體規模別로는 輸出額 1억달러 이상의 기업과 還給額 10억원 이상의 기업이 全體 平均보다 환급받지 못한 關稅額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還給을 받지 못한 사유를 살펴보면 關稅還給制度에도 문제가 있지만 關稅還給을 받지 못한 기업에도 귀책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關稅還給을 받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 것 중에서는 節次複雜으로 인한 時效期間의 經過(19.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人力不足(3.7%), 基準所要量 過小/過大(3.5%), 免狀記入의 잘못(3.2%), 免狀未回收(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中小企業, 輕工業, 1천만달러 이하의 수출기업과 1억달러 이상의 수출기업, 還給額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기업 등의 경우가 時效期間이 경과해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4. 關稅還給 類型別 利用實態

關稅還給 類型別 利用實態는 <表 5-3>에 요약되어 있다. 個別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전체 환급건수의 80.9%, 전체 환

금액의 98.5%였으며,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전체 환급건수의 19.1%, 전체 환급액의 1.7%였다⁴⁾. 건수를 기준으로 보다 세분된 환급유형별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一般個別還給이 57.4%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先支給·後審査가 19.1%,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이 14.6%, 簡易定額還給이 4.5%, 先還給·後精算이 4.3%를 차지하였다.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一般個別還給이 72.9%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先還給·後精算이 16.9%로 두번째를 기록하고 있는데, 건수에 비해 금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件當 還給額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先支給·後審査(11.6%),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1.3%), 簡易定額還給(0.4%)의 순이었다⁵⁾.

<表 5-3> 還給類型別 利用實態

(單位：件，百萬元，%)

		還給申請件數	還給金額
定額還給	간이정액환급	1,922 (4.5)	1,974 (0.4)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6,154 (14.6)	5,868 (1.2)
	소 계	8,076 (19.1)	7,842 (1.6)
個別還給	선환급·후정산	1,838 (4.3)	79,075 (16.4)
	선지급·후심사	8,083 (19.1)	54,012 (11.2)
	일반개별환급	24,295 (57.4)	340,169 (70.7)
	소 계	34,216 (80.9)	473,256 (98.4)
합 계		42,292 (100.0)	481,098 (100.0)

- 4) 第3章 第5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 실제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전체 환급액의 6.4%였으며, 個別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전체 환급액의 93.6%였다. 이와 같이 본 조사의 標本이 母集團에 비해 個別還給制度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의 한계점이다.
- 5) 第3章 第5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의 실제 關稅還給制度 유형별 還給實績은 一般個別還給(36.6%), 先還給·後精算(31.2%), 先支給·後審査(25.8%), 簡易定額還給(5.3%),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1.1%)의 순이었다.

調査對象企業 중에서 個別還給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企業의 경우 이 비율은 99.2%로 대부분이 個別還給 申請經驗을 갖고 있었으며, 中小企業의 경우에도 88.4%나 個別還給制度를 이용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輕工業(93.4%)이 重工業(90.1%)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으며, 業體規模別로는 輸出額이나 還給額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환급의 申請經驗이 증가하였다. 특히 輸出額이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과 還給額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100%가 個別還給 申請經驗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定額還給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調査對象企業의 26.3%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기업의 91.4%가 個別還給 申請經驗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簡易定額還給制度가 정액환급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小企業의 31.9%만이 정액환급 신청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定額還給制度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重工業(29.3%)이 輕工業(22.1%)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으며, 業體規模別로는 輸出額이나 還給額의 규모가 작을수록 定額還給의 申請經驗이 많았다.

5. 關稅還給關聯 所要日數와 經費

關稅還給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각종 證明書의 利用件數를 보면 輸入免狀이 13만 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基礎原材料 納入證明書가 12만 1,275건이었으며, 平均稅額證明書는 4,377건으로 그다지 이용이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關稅還給을 받기 위해서 이용한 각종 증명서의 業體當 平均利用件數⁶⁾는 輸

6) 關稅還給을 받기 위해서 이용한 각종 증명서의 수를 그 증명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기업의 수로 나누어 구한 平均利用件數를 말한다.

入免狀이 350건, 基礎原材料納入證明書가 349건, 平均稅額證明書가 274건의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大企業은 中小企業에 비해 모든 證明書의 업체당 평균이용건수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중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輸入免狀과 基礎原材料納入證明書의 업체당 평균이용건수가 많았으며, 경공업은 중공업에 비해 平均稅額證明書의 업체당 평균이용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個別還給의 申請經驗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個別還給을 받기까지의 所要日數를 조사한 결과는 <表 5-4>와 같다. 이에 따르면 原材料를 輸入하여 製造하고 輸出할 때까지의 기간은 48.9일, 수출을 하고 還給申請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45.5일, 환급신청을 한 후 還給金을 受領하기까지의 기간은 9.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關稅를 납부한 후 還給金을 수령할 때까지 걸리는 全體 所要日數는 103.9일이 된다. 이를 還給類型別로 살펴보면 先還給·後精算制度가 70.3일로 가장 짧았으며, 다음이 先支給·後審査制度로 100.8일이었고 一般個別還給制度가 105.8일로 가

<表 5-4> 個別還給의 所要日數

(單位：個，日)

	企業數	原材料 輸入	製造 및 輸出	還給申請	製造 및 輸出	原材料 輸入
		製造 및 輸出	還給申請	還給金 受領	還給金 受領	還給金 受領
전 체	426	48.9	45.5	9.8	55.2	103.9
기업규모별						
대 기업	130	64.5	47.8	8.3	55.8	119.8
중소기업	296	42.0	44.5	10.5	54.9	96.9
업 종 별 ¹⁾						
경 공 업	168	49.0	43.0	8.1	49.7	98.3
중 공 업	255	49.0	47.2	8.3	58.8	107.9
환 급 유 형 별						
선환급·후정산	14	35.4	29.7	5.2	34.9	70.3
선지급·후심사	39	55.2	37.3	8.3	45.6	100.8
일반개별환급	373	48.7	47.0	10.1	56.9	105.8

註：1) 農林水産業 2개 企業과 不動產 및 事業서비스業 1개 企業을 제외함.

장 오래 걸렸다. 또한 大企業은 中小企業에 비해, 重工業은 輕工業에 비해 소요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定額還給의 申請經驗이 있는 企業을 대상으로 정액환급을 받기까지의 所要日數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表 5-5>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原材料를 輸入하여 製造하고 輸出할 때까지의 기간은 46.4일, 輸出을 하고 還給申請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39.3일, 환급신청을 한 후 還給金을 受領하기까지의 기간은 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原材料를 輸入하여 關稅를 납부한 후 還給金을 수령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소요일수는 93.7일이 된다. 이를 還給類型別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簡易定額還給制度가 88.3일로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의 106.8일보다 적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액환급의 소요일수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重工業과 輕工業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還給金을 지급받기까지의 資金負擔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會社

<表 5-5> 定額還給의 所要日數

(單位：個，日)

	企業數	原材料 輸入 ~ 製造 및 輸出	製造 및 輸出 ~ 還給申請	還給申請 ~ 還給金 受領	製造 및 輸出 ~ 還給金 受領	原材料 輸入 ~ 還給金 受領
전 체	122	46.4	39.3	8.0	47.3	93.7
기업규모별						
대 기업	16	50.3	39.5	4.1	43.6	93.9
중소기업	106	45.8	39.3	8.6	47.9	93.7
업 종 별						
경 공 업	40	44.1	36.3	4.8	41.2	85.2
중 공 업	82	47.6	40.7	9.6	50.3	97.8
환 급 유 형 별						
업체별·품목별	36	59.0	38.7	9.1	47.8	106.8
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86	41.2	39.5	7.6	47.1	88.3

運營資金으로 충당해 나가는 경우가 調査對象企業의 78.6%로 가장 많았고, 銀行 등 一般 貸出機關을 이용하는 경우가 19.3%, 私債를 이용하는 경우가 0.6%였다. 그리고 輸入業者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1.5%나 되었다. 이와 같은 資金負擔 解消方法의 이용 정도는 기업규모, 수출액규모, 환급액규모에 따라 큰 차이 없이 대체로 비슷했다. 은행 등 일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利率은 12%였고, 私債의 利率은 그보다 훨씬 높은 20.6%였다.

關稅還給業務와 관련된 年間 平均所要經費는 <表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還給關聯 人件費가 926만원, 所要經費 總額이 1,006만원이었다. 소요경비 총액은 輸出規模가 상대적으로 더 큰 大企業이 2,170만원으로 中小企業의 547만원에 비해 훨씬 많았으나, 輸出額에 대한 所要經費의 비율은 大企業이 0.0057%로 中小企業의 0.0462%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것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重工業이 1,070만원으로 輕工業의 914만원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으나, 輸出額에 대한 所要經費의 비율은 輕工業이 0.0219%로 重工業의 0.0065%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還給額에 대한 所要經費의 비율은 1.01%를 기록하였는데, 中小企業이 1.7%로 大企業의 0.8%보다 높았으며 輕工業이 2.36%로 重工業의 0.84%보다 높았다.

<表 5-6> 關稅還給業務關聯 所要經費

(單位: 個, 萬圓, %)

	企業數	還給關聯 人件費(平均)	所要經費 總額(平均)	賣出額에 대한 所要經費의 比率	輸出額에 대한 所要經費의 比率	還給額에 대한 所要經費의 比率
전 체	465	926	1,006	0.0039	0.0086	1.01
기업규모별						
대 기업	132	1,983	2,170	0.0026	0.0057	0.80
중소기업	332	505	547	0.0164	0.0462	1.70
업종별 ¹⁾						
경공업	181	833	914	0.0052	0.0219	2.36
중공업	281	988	1,070	0.0034	0.0065	0.84

註: 1) 農林水産業 2개 企業과 不動產 및 事業서비스業 1개 企業을 제외함.

<表 5-6>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政府와 銀行의 환금관련 人力 및 費用을 제외한 企業측의 年間 還給費用을 추정해 보자. 本 調查의 대상이 된 母集團의 還給額은 1조 59억원으로 標本企業 還給額 4,811억원의 2.1배이다. 標本企業의 還給關聯 人件費가 연간 43억원이므로 母集團의 還給關聯 人件費는 연간 90억원으로 추정되며, 其他 經費를 포함하면 母集團의 還給關聯 費用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標本企業의 還給拋棄金額이 연간 117억원이므로 母集團의 還給拋棄金額은 연간 246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金融費用 331억원⁷⁾을 포함하면 企業측의 年間 還給費用은 약 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⁸⁾.

6. 關稅還給制度의 評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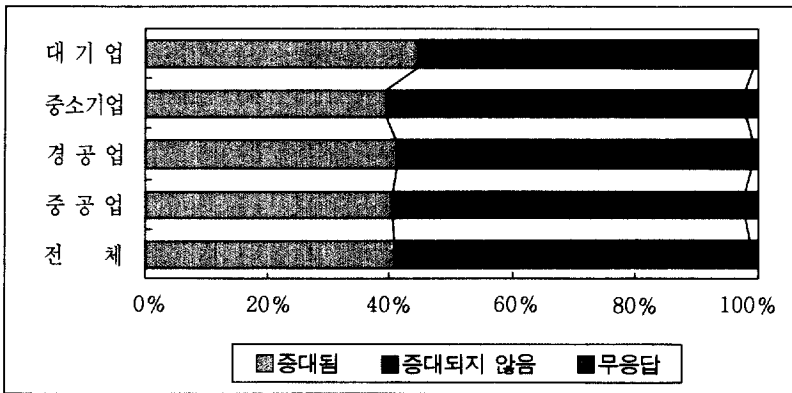
석유나 목재 같은 基礎原材料 외에 기계류와 같은 中間材를 關稅 還給이라는 자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산을 쓰지 않고 수입하여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外國產을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國產財가 없다(39.4%)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國產中間材의 質이 輸入財에 비하여 떨어짐(32.7%), 國產中間材의 價格이 상대적으로 높음(15.9%), 제품의 구매업체가 輸入財 使用을 권장함(7.2%), 關稅還給의 資金負擔이 크지 않음(2.4%) 등의 순이었다. 業種別로는 종이·나무제품업, 요업·토석제품업, 금속제품업, 일반기계업 등의 경우 國產中間材의 質이 輸入財에 비해 떨어진다는 답이 外國產을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國產財가 없다는 답보다 더 많았다.

관세환급제도가 國產原材料의 使用增大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한

-
- 7) 還給額 1조 59억원에 <附表 20>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일반 대출기관으로부터의 借入金 利率 연 12%를 적용하고 平均 還給所要日數를 100일로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 8) 그러나 財政經濟院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企業측의 年間 還給費用은 人件費가 1,598억원, 金融費用이 695억원, 還給暴棄金額이 2,555억원으로 모두 4,8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체는 [圖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1%였으며,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한 업체는 57.2%였다. 關稅還給制度의 목적 중 하나가 국산원재료의 사용 증대이지만, 輸出業體들은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關稅還給制度가 國產原材料의 使用增大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을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國產原材料가 없다는 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산원재료의 質이 떨어짐(19.7%), 國內生産은 原價가 맞지 않음(14.8%), 國內 原材料 供給業體가 적음(7.4%), 구매업체가 原材料 輸入先을 지정함(6.1%), 國內生産量이 부족함(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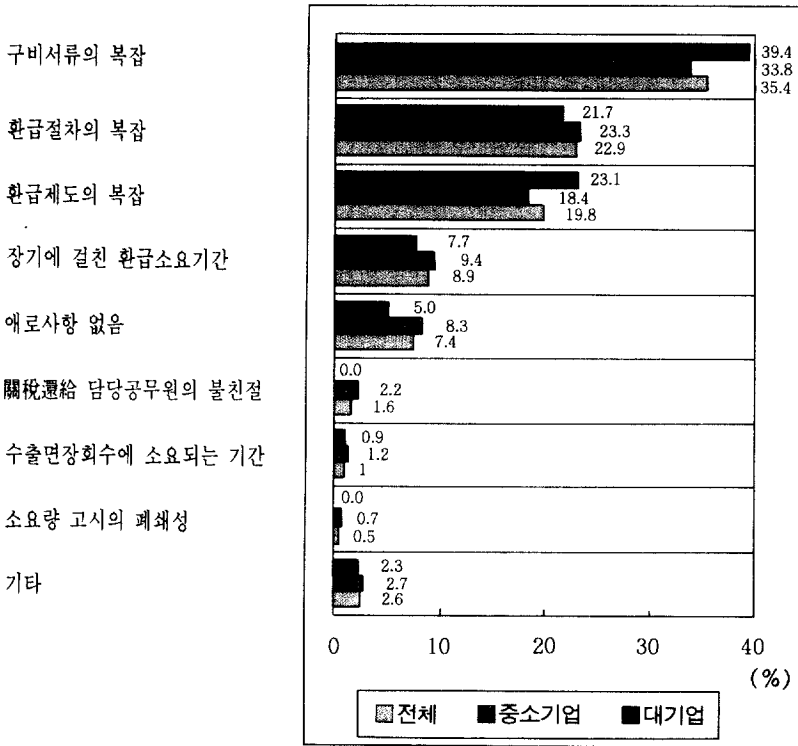
[圖 5-3] 關稅還給制度로 인한 國產原材料 使用의 增大 與否



關稅還給時의 隘路事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圖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具備書類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3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還給申請 등 還給節次의 복잡(22.9%), 많은 제도의 난립으로 인한 制度選擇의 困難 등 還給制度의 복잡(19.8%), 장기에 걸친 還給所要期間(8.9%) 등이 지적되었다.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느끼는 애로사항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業種別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隘路事項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圖 5-4] 關稅還給時的 隘路事項



간이정액환급제도가 還給節次의 簡素化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업체 (크게 도움:41개 업체, 다소 도움:41개 업체)는 82개 업체로 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103개 업체의 79.6%를 차지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簡易定額還給制度가 중소기업을 위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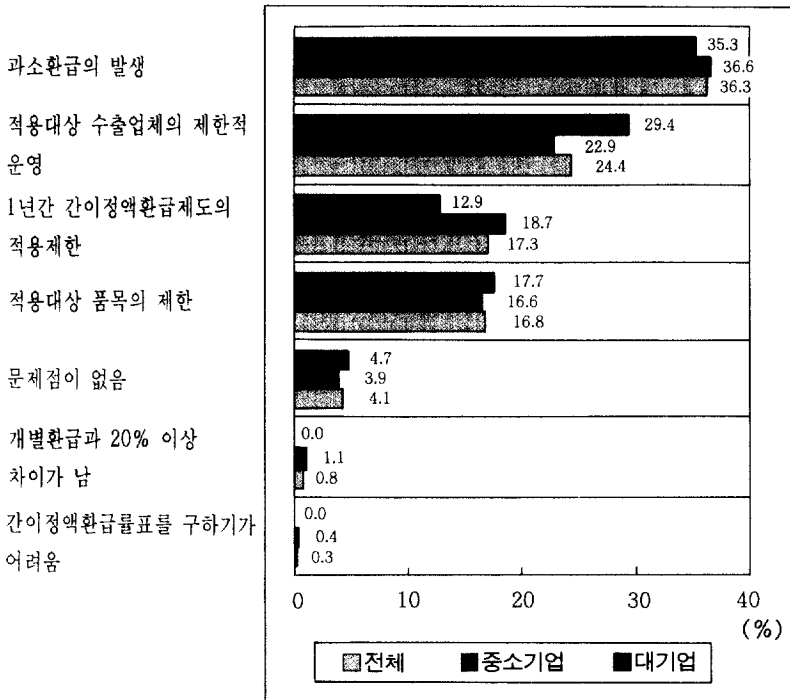
도임에도 불구하고 調査對象 中小企業의 27.8%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實效性이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簡易定額還給制度에 대한 평가는 業種別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其他製造業製品業, 窯業·土石製品業, 金屬製品業, 運送機械業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업체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化學製品業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업체의 54.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輸出額이 적을수록 그리고 還給額이 적을수록 簡易定額還給制度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簡易定額還給制度의 가장 큰 문제점은 [圖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簡易定額還給率表의 단위당 환급금액이 부정확한 데 따른 過少還給의 발생(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第3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過多還給과 過少還給은 簡易定額還給制度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個別企業의 입장에서 보면 過多還給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適用對象 輸出業體의 제한적 운용(24.4%),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1년간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 제한(17.3%), 適用對象 品目の 제한(16.8%) 등의 순이었다.

簡易定額還給率表의 單位當 還給金額이 실제 환급받아야 할 금액에 비하여 몇 %나 過少還給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 簡易定額還給制度를 이용한 적이 있는 기업의 29.9%가 20% 이상 과소환급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은 過少還給되고 있지 않음(17%), 5% 이내(16.3%), 10~14%(15%), 15~19%(11.6%), 6~9%(10.2%)의 순이었다. 결국 簡易定額還給制度를 이용한 적이 있는 企業의 17%만이 過少還給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을 뿐 이 制度를 이용한 적이 있는 企業의 83%는 過少還給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簡易定額還給制度 適用對象企業의 선정기준을 前年度 還給實績總額이 몇 억 원 이하인 업체로 제한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圖 5-5] 簡易定額還給制度의 問題點



는 모든 輸出業體에 적용해야 한다는 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억원(13.5%), 2억원(12.1%), 3억원(9.8%), 5천만원(7.4%), 1억 5천만원(3.3%)의 순이었다. 모든 수출업체에 대해 적용하라는 답은 大企業의 경우도 64.6%에 달하고 있어 현재 中小企業에만 적용되는 簡易定額還給制度의 擴大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수출업체에 대해 적용하라는 답을 한 기업의 비율은 業種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輸出額 規模나 還給額 規模에 따라 서로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定額還給對象이지만 실제로는 個別還給을 받고 있는 품목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답한 기업의 수는 調查對象企業의 14.4%였다. 이 비율은 輕工業이 17.7%로 重工業의 12.4%보다 높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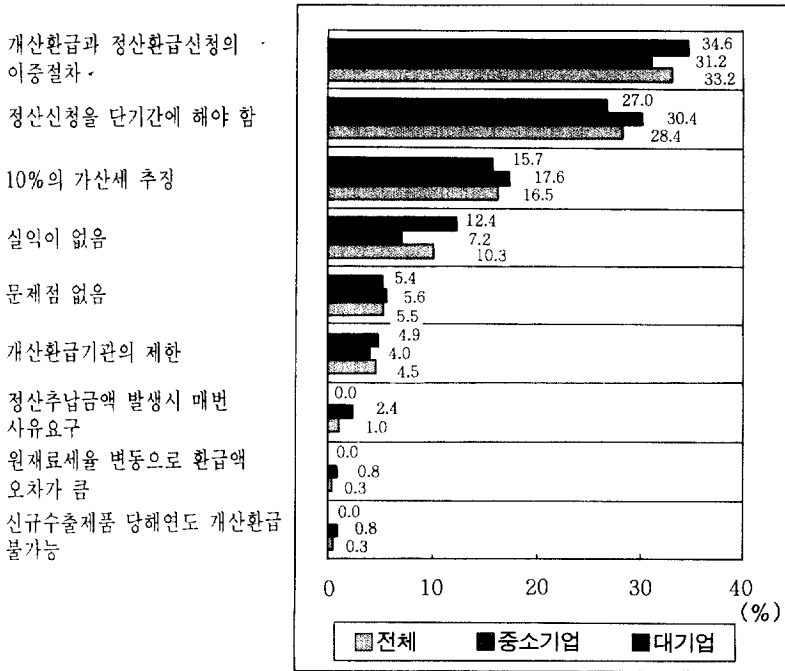
輸出額이 25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이거나 還給額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기업이 다른 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훨씬 높았다. 定額還給對象이지만 個別還給을 받는 이유는 정액환급을 하게 되면 過少還給이 되기 때문(6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환급받기가 쉬움(7.2%), 個別還給과 定額還給과의 차이가 많음(4.3%), 所要量 告示를 안했음(2.9%) 등의 순이었다.

國產原材料의 使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特定物品에 대해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는 個別還給金 支給制限制度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個別還給金 支給制限制度를 현행대로 시행 내지 확대해야 한다는 기업이 49.3% (현행대로 시행 27.2%, 확대 운영 22.1%)였으며, 輸出競爭力 提高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기업이 46%였다. 폐지해야 한다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化學製品業이었으며, 輸出額 2,500만달러 이상 5천만달러 미만인 企業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았다.

先還給·後精算制度가 자금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0.6%의 기업이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함으로써 이 제도의 認知度 내지는 實效性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 주었다. 先還給·後精算制度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44개 업체 중에서 이 제도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 업체는 21개,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한 업체는 17개로 86.4%의 기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先還給·後精算制度의 問題點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圖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概算還給과 精算還給申請의 二重節次(33.2%)를 지적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精算申請을 短期間에 해야 함(28.4%), 소정기간내 정산불이행에 대한 10%의 加算稅 追徵(16.5%), 實益이 없음(10.3%) 등의 순이었다.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인식하고 있는 先還給·後精算制度의 문제점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業種別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圖 5-6] 先還給·後精算制度의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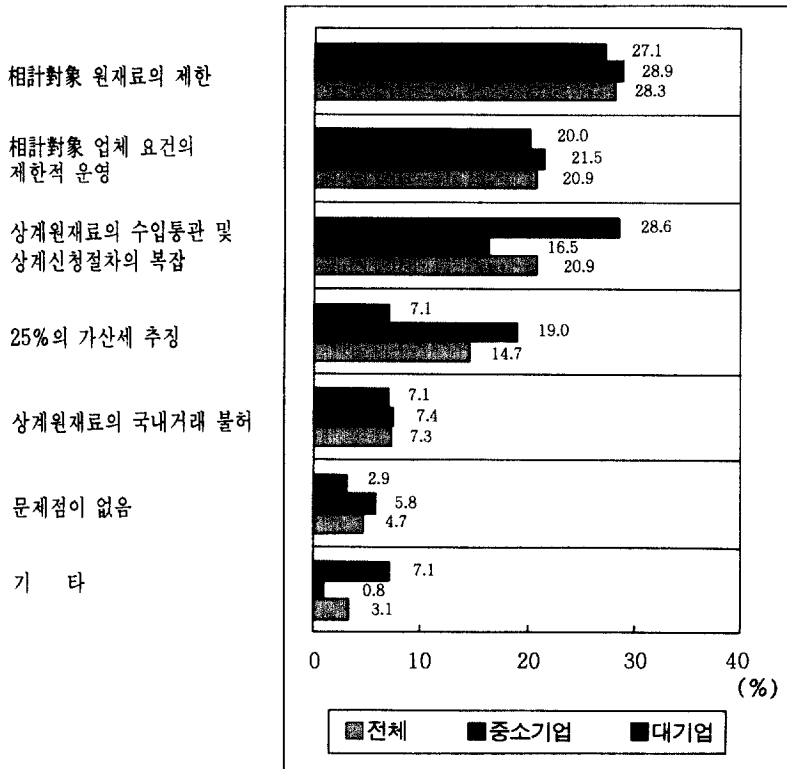
상계제도가 資金負擔 緩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6.6%의 기업이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相計制度의 利用率이 저조한 이유는 第3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계제도가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事前免稅와 비슷해서 國產原材料의 사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實務的인 節次가 번잡하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相計制度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16개 업체 중에서 이 제도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 업체와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한 업체는 각각 6개로 75%의 기업이 肯定的인 評價를 하고 있었다.

한편 109개 업체가 평가한 相計制度의 장점은 관세납부의 불필요로 인한 일체의 資金負擔 解消(67%), 징수·환급의 불필요로 인한

還給附帶費用 등의 節減(22.9%), 對民摩擦의 除去(1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制度를 실제로 이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調查對象 企業 중 불과 16개 기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경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相計制度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圖 5-7]과 같이 국산원재료의 상계대상 불인정 등 相計對象原材料의 제한(28.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相計對象業體要件의 제한적 운영(20.9%), 相計原材料 輸入通關 및 相計申請節次의 복잡(20.9%), 상계원재료의 용도변경시 25%의 加算稅 追徵

[圖 5-7] 相計制度의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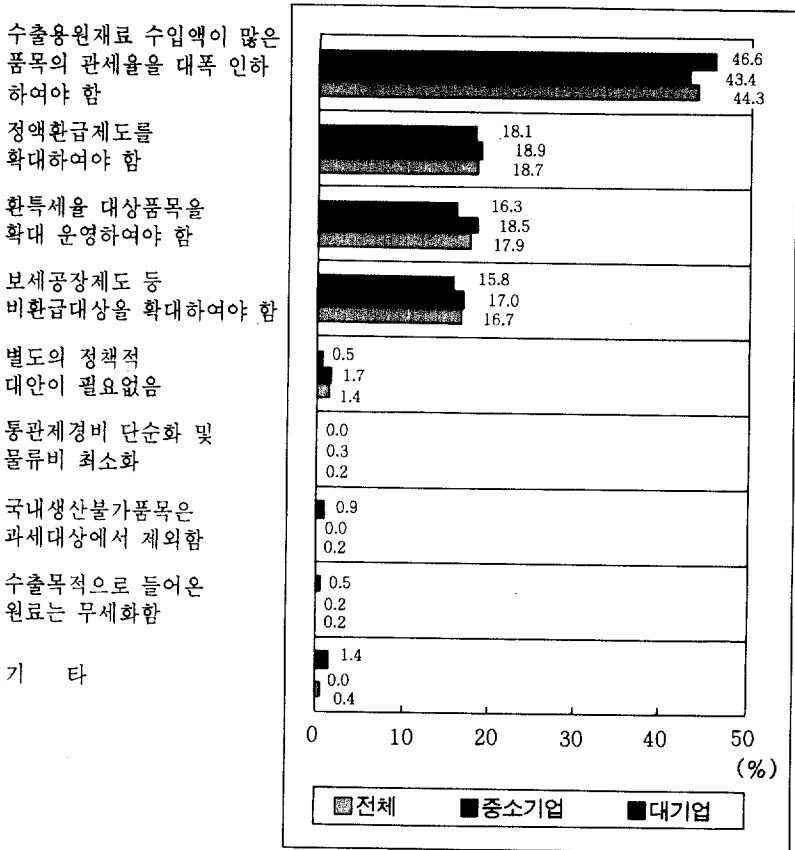
(14.7%), 상계원재료의 國內去來 不許(7.3%) 등이 지적되었다. 大企業의 경우에는 中小企業과 달리 相計原材料 輸入通關 및 相計申請節次의 복잡(28.6%)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業種別로 보더라도 각 업종이 인식하고 있는 相計制度의 問題點은 상당히 달랐으며 輸出額 規模나 還給額 規模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7. 關稅還給制度의 改善方案

關稅還給制度를 축소하면 그 代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圖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用 原材料 輸入額이 많은 품목의 關稅率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다. 즉, 關稅還給制度가 축소된다면 輸出競爭力을 갖기 위해서 關稅率 引下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定額還給制度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8.7%, 還特稅率 對象品目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9%, 保稅工場制度 등 비환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6.7%였다. 이를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業種別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에서는 現行 制度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還特稅率制度를 關稅還給制度 및 保稅工場制度和 비교해 보았다. 먼저 關稅還給制度和 還特稅率制度를 대비해 본 결과, 還特稅率制度가 關稅還給制度에 비해 輸出業務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8%,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9.6%, 그리고 무응답이 12.4%로 나타났다. 還特稅率制度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企業規模나 輸出額 및 還給額의 규모에 따라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還特稅率制度가 關稅還給制度和 비교하여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內需用과 輸出用の 區

[圖 5-8] 關稅還給制度의 代案



分比率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13.6%)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 다음은 서류가 더 복잡할 것임(12.7%), 輸出規模가 별로 크지 않아서 實益이 없음(9.1%), 事後管理가 어려움(6.4%), 還給額이 적음(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業種, 輸出額 및 還給額의 規模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還特稅率制度和 保稅工場制度를 대비해 보면 환특세율제

도가 보세공장제도보다 輸出業務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7.2%,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1.8% 그리고 무응답이 2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율은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는 유사했으나, 業種別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保稅工場制度和 비교할 때 還特稅率制度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內需用과 輸出用的의 구분비율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1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輸出規模가 별로 크지 않아서 實益이 없음(9.7%), 事後管理가 어려움(8.3%) 등의 순이었다.

保稅工場制度의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保稅工場 指定의 擴大(25%)를 바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보세공장 지정의 확대를 바라는 中小企業은 26.8%로 大企業의 21.2%에 비해 조금 높았으며, 重工業은 27.4%로 輕工業의 19.4%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외에도 복잡한 事後管理制度의 簡素化(4.8%), 通關節次의 簡便化(3.8%), 정부의 監查節次 緩和(3.8%), 管理人力의 最少化(3.8%) 등이 보세공장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보다 關稅率 引下가 더 좋다는 응답도 3.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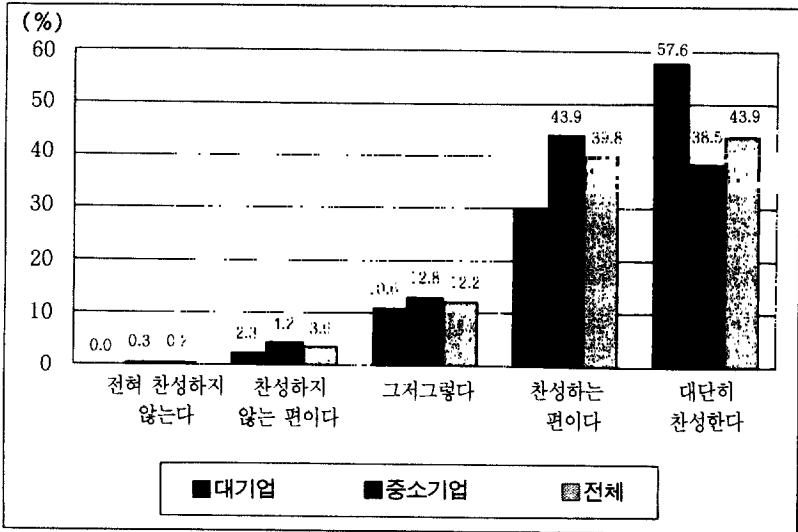
所要量證明制度를 개선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書類의 簡素化라고 답한 기업이 15.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업체가 所要量을 自律管理하도록 함(7.4%), 基準所要量 告示品目を 좀더 늘림(7.4%), 所要量計算 根據를 간소화 함(5.9%), 所要量證明 節次를 간소화 함(3.9%), 實際所要量을 기준으로 함(3.4%) 등을 들었다. 大企業의 경우에는 中小企業과 달리 업체가 所要量을 自律管理하도록 해야 한다는 답이 15.5%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자율적인 誠實申告를 유도하기 위한 補完策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체의 自律管理(8.8%), 고의적으로 성실신고하지 않는 업체를 엄중처벌함(7.5%), 철저한 事後管理(6.3%), 誠實企業體를 우대함(5%), 정기적으로 監查를 시행함(5%) 등의 순으로 응답하

였다.

향후 關稅還給을 書類로 신청하지 않고 關稅還給 電算시스템만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圖 5-9]에 나타난 것처럼 찬성이 83.7%(대단히 찬성함 43.9%, 찬성하는 편임 3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大企業은 대단히 찬성한다는 답이 57.6%로 가장 많은 반면 中小企業은 찬성하는 편이라는 답이 43.9%로 가장 많았다. 또한 1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71.7%와 10억원 이상을 환급받는 기업의 61.6%가 대단히 찬성한다는 답을 했다. 찬성하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고 답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關稅還給業務가 電算化된다면 예상되는 隘路事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電算化 費用 및 資料電送量의 과다(19%)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별도의 인력 필요(9%), 關稅擔當者의 무지(8.7%), 전산시스템의 미비(7.7%) 등의 순이었다.

[圖 5-9] 關稅還給 電算시스템 利用에 대한 意見



關稅還給 電算시스템이 완료되어 還給金の 支給은 은행이 담당하고 還給決定業務는 세관에서 전담하는 業務別 一元化 方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이 88.3%(대단히 찬성함 32.8%, 찬성하는 편임 55.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業務別 一元化方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業務協助 不可(18.2%)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 다음이 決定者와 支給者간의 理解差異로 인한 번거로움(7.3%), 전산시스템이 없는 곳은 불편(5.5%), 稅關業務 過多(3.6%) 등의 순이었으며, 지금까지의 방법이 무난하다는 응답도 20%나 되었다.

국가에서 고시하는 基準所要量과 實際所要量間에 差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답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실제소요량이 기준소요량보다 많다(38.8%), 실제소요량이 기준소요량보다 적다(9.4%)의 순이었다. 實際所要量이 基準所要量보다 많아서 過少還給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소요량으로 환급을 허용한다면 實際所要量으로 還給한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基準所要量으로 還給한다(26.1%), 소요량 격차가 큰 수출품목은 實際所要量으로 환급하고 차이가 적은 수출품목은 基準所要量으로 환급한다(24.2%)의 순이었다.

單位所要量證明書 發給의 改善方案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답이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所要量證明書類의 簡素化(11%), 해당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5%), 해당기관 공무원에 대한 교육(4.3%), 所要量證明機關의 一元化(4%), 신속한 基準所要量 告示(3.3%), 업체의 자율적인 소요량 관리 및 성실신고 인정(2.7%) 등의 다양한 方案이 제시되었다.

基礎原材料納稅證明制度의 改善方案으로는 공급업체가 基礎原材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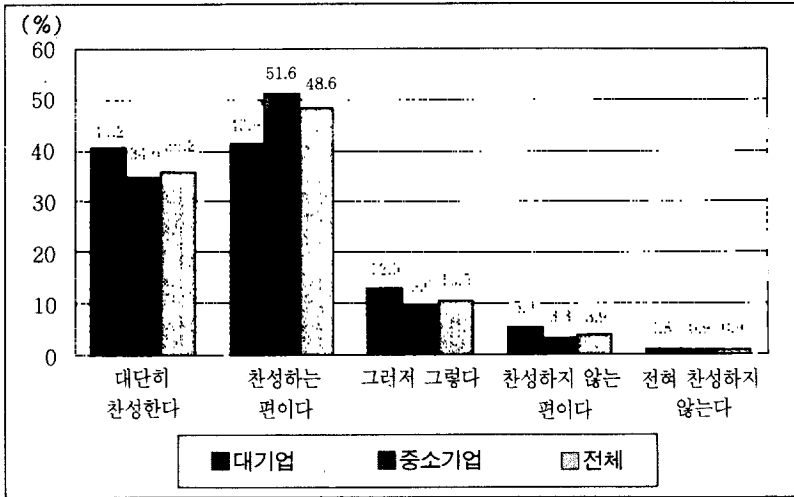
納稅證明書を 자율발급토록 하고 稅關이 이를 사후에 일괄신고하는 申告制度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38.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具備書類를 간소화하여야 함(35.8%),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 및 分割證明書を 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0.9%) 등의 순이었고, 現行 制度에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15.2%나 되었다.

별도의 物的擔保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의 信用을 담보로 수출용원 재료를 수입할 때 關稅를 징수하지 않고 수출 후 還給金을 징수할 稅額에 應對하면서 분기별로 그 차액만을 일괄납부토록 하는 關稅徵收信用猶豫制度⁹⁾의 도입에 대해서 조사대상기업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었다. [圖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한다는 의견이 36.2%, 찬성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48.6%로 조사대상기업의 84.8%가 肯定的인 平價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關稅徵收信用猶豫制度에 찬성하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고 답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事後管理의 어려움(15.5%)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이 분기별 정산시 하는 일의 양이 같음(8.6%), 管理上 問題點(5.2%), 內需用 輸入이 대부분임(5.2%), 미납된 세액을 확인하는 서류가 더 복잡함(3.4%), 輸出用 原材料를 확인하기가 번거로움(3.4%), 복잡한 절차에 비해 還給金이 적음(3.4%) 등의 순이었다.

關稅還給書類 중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서류는 [圖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甲·乙·兵·丁紙(25%)였으며, 그 다음이 未見表(11.9%), 所要量證明書(11.3%), B·L(8.9%), 輸出免狀(8.9%), 輸入免狀(5.4%) 등의 순이었다. 甲·乙·丙·丁紙가 불필요하다고 답을 한 기업은 그 이유로 조건표상에 모두 기재되는 사항임(38.1%),

9) 關稅徵收信用猶豫制度는 수입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종전의 事前免稅制度 및 相計制度和 유사하나, 사후관리절차가 없으므로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에 따른 金融負擔緩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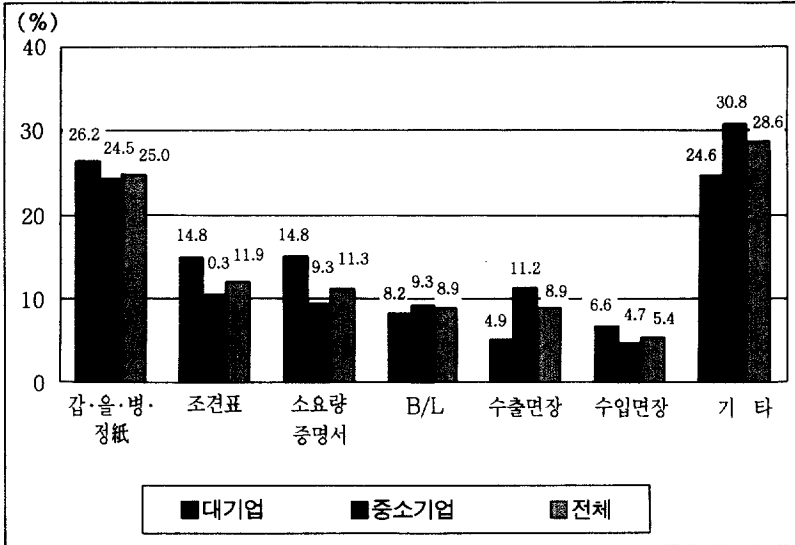
[圖 5-10] 關稅徵收信用猶豫制度에 대한 評價



다른 서류에 포함되므로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음(26.2%), 個別還給計算書를 제출하므로 불필요함(11.9%) 등을 들었다. 早見表가 불필요하다고 답을 한 기업은 다른 서류에 포함되므로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음(40%), 個別還給計算書를 제출하므로 불필요함(10%), 업무가 복잡해짐(10%)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所要量證明書가 불필요하다고 답을 한 기업은 그 이유로 업무가 복잡해짐(15.8%), 다른 서류에 포함되므로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음(10.5%), 이미 고시된 품목은 所要量證明書가 미비되어도 됨(10.5%), 輸出免狀으로 충분함(10.5%) 등을 들었다.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상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제도의 비중을 살펴보면 輸出履行期間 1年과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가 각각 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輸出免狀의 還給申請要件 制限, 所要量證明制度, 簡易定額還給制度, 先還給·後精算制度가 각각 14.2%씩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행기간 1년이 불필요하다고 답을 한 기업은 그 이유로 直輸入이 아닐 경우 履行期向을 넘

[圖 5-11] 關稅還給書類 중 不必要한 書類



기기 쉬움(33.3%), 輸出企業의 還給損失이 발생함(33.3%), 1년 6개월로 일괄적으로 정하면 효과적임(33.3%)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가 불필요하다고 답을 한 기업은 한정된 업체에만 적용가능함(33.3%),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33.3%), 還給金을 個別還給制度보다 적게 책정함(33.3%)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關稅還給制度의 改編을 위한 건의사항을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書類作成의 簡便化(8.2%)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關稅還給節次의 축소(6.9%), EDI의 조기 실시(6.3%), 稅關公務員의 자세 전환(5.7%)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함께 關稅還給制度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第3節 實態調查 結果 要約

本 調查에서는 關稅還給制度의 利用現況과 각 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았다¹²⁾.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關稅還給制度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簡易定額還給制度,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 一般個別還給制度, 先還給·後精算制度, 先支給·後審査制度 그리고 相計制度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關稅還給制度의 종류가 너무 많다. 이에 따라 개별업체의 입장에서는 制度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政府에서는 還給業務 處理費用을 절감할 수 있는 定額還給制度의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調查對象企業 중에서 定額還給制度를 이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26.3%에 불과하며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도 미미한 실정이다. 정액환급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액환급률표의 單位當 還給金額이 부정확하여 過少還給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還給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書類가 너무 많고 還給節次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에 따라 關稅還給과 관련하여 企業이 지불해야 하는 直接費用과 政府와 銀行이 지불해야 하는 間接費用을 합한 社會的 費用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本章 第2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直接費用만 하더라도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은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調查結果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 관세환급이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한다고 답한 기업은

12) 그러나 本 調查의 標本이 母集團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41.1%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57.2%에 달하는 기업들은 關稅還給이 原材料의 國産化를 촉진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調査對象企業의 44.3%는 關稅還給制度를 축소할 경우 그 대안으로 輸出用 原材料 輸入額이 많은 품목의 關稅率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의 대안은 定額還給制度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현재 中小企業에만 적용되고 있는 簡易定額還給制度를 모든 企業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현재 유명무실한 還特稅率制度의 對象品目を 확대·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세번째 대안이었으며, 保稅工場 指定을 확대하는 등 保稅工場制度를 확대·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네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第 6 章 主要國의 關稅還給制度

第1節 WTO協約과 還給制度

1. 序論

WTO협정문 중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일반협정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禁止, 相計可能, 許容補助金으로 나누어 회원국의 보조금지급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關稅還給의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1994년도 GATT 제16조(주 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보조금협정 부속서 1부터 3까지에 의하면 동류상품(the like product)에 부과되는 관세나 내국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만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부 제1조 보조금의 정의 주1).

따라서 WTO협정 이후 특정성을 가진 보조금지급이 점차 제한되면서 대산업정책으로서의 관세정책은 그 중요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關稅還給制度에서는 동류의 상품에서 발생한 關稅 또는 內國稅額만큼 징수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관행을 허용함으로써 환급제도 운용의 탄력성도 보장되었다. 本章에서는 환급과 관련된 보조금 부속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國際 還給制度의 運用實態와 함께 우리나라 환급제도의 개선방향을 논한다.

2. WTO 還給制度

환급과 직접 관련된 부속서의 내용은 수출금예시목록인 부속서 1의 (g), (h), (i)항과 투입요소의 정의에 대한 부속서 그리고 代替還

給制度를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3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부속서 1의 (g)항에 따르면 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同種商品의 生産 및 流通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간접세의 면제나 환불은 보조금으로 간주한다. 전단계 누적간접세에 대하여도 (h)항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유예 포함) 다만 폐기물을 참작한 수출품에 투입된 생산요소에 전단계 누적간접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초과치를 인정하되 同項의 규정은 附加價值稅나 이를 대체하는 國境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기의 항목이 間接稅의 免除 또는 還拂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i)항은 관세환급 규정으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한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輸入課徵金을 초과하는 輸入課徵金의 還拂이나 免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체환급제도(substitution drawback)를 허용하고 있는 본 규정은 기업이 수입원 자재 대신 이와 同質·同性(the same quality and characteristics)의 국산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대체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2에서는 생산요소로서 생산과정에 사용된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요소, 에너지, 연료와 기름과 촉매제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부속서 3은 代替還給制度에 관한 규정으로 회원국이 수입요소에 원래 부과되는 수입과징금을 초래하는 범위에서의 과다환급은 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 대체환급의 규모를 제한하였고 국산재가 대체할 수입재의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WTO협약의 특성상 關稅讓許表에서 양허한 關稅率 引下 이외에는 産業別로 關稅率適用에 차별을 둘 수가 있다. 또한 환급의 규모도 수입과징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을 하거나 혹은 국산재에 대하여 환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관세정책이 對産業政策으로 쓰여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러한 WTO협정을 염두에 두고 제2절에서는 주요 경쟁국가의 환급정책을 살펴본다.

第2節 臺灣의 還給制度

1. 概要

臺灣은 1951년 紙帽出洋退還原料紙捻絲進口稅施行法(수출밀짚모자의 원료인 수입종이끈)을 효시로 1955년 輸出品還給辦法을 제정, 關稅還給制度를 전면 실시하였고 1982년의 修正外銷品沖退原料稅損施行法 등을 19차례 수정·보완하면서 현재 外銷品沖退原料稅損辦法을 시행하고 있다¹⁾.

환급제도는 沖·退稅制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沖稅는 우리나라 상계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원자재 수입시 부과세액을 수입업체별로 기장하고, 대응수출을 이행할 경우에는 소장하는 데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수출을 하지 않으면 관세를 추징하는 제도이다. 退稅는 우리나라의 환급제도와 비슷한 제도로서 원자재를 수입 통관할 때 관세를 납부하고 대응수출을 이행한 연후에 그 관세를 돌려 받는 제도이다.

<表 6-1>에는 연도별 대만의 수입실적과 관세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1995년 대만의 平均名目關稅率과 實績關稅率은 각각 8.64%, 4.5%이었으며 관세율은 1980년대에 들어와 10% 미만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4.5%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관세수입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1년 18.3%에서 1994년 9.2%로 감소하였다.

대만 환급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관세율이 5% 이하인 수입재의 경우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국산원재료가 존재하거나 국내산업의 생산량이 총수

1) 대만의 수출지원제도는 還給制度和 保稅工場 그리고 科學產業工團(新竹科學工業園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감면제도의 규모는 1985년 21억대만달러(NT\$)에서 1994년 3억 7천만NT\$로 그 비중이 미미하다.

요의 80%를 초과할 경우 수입사실의 여부에 상관없이 國內原資材를 기초로 還給額을 정한다. 따라서 이는 대체환급과 동일한 제도로 국산재를 이용하는 수출업체가 환급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대만정부는 향후 관세정책의 목표로서 關稅率 引下, 貨物通關의 自動化, 還給制度 廢止 및 保稅工場 促進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表 6-1> 年度別 臺灣의 輸入規模와 關稅額 比較

(單位：億대만달러, %)

	關稅額 (A)	輸入額 (B)	稅收入 (C)	實績關稅率 (A/B)	關稅占有率 (A/C)
1956	12	28	59	42.53	20.33
1961	18	77	96	23.77	18.75
1966	41	214	173	19.22	23.76
1971	91	640	407	14.15	22.26
1976	291	2,567	1,218	11.33	23.88
1981	578	7,732	3,160	7.46	18.34
1982	563	7,405	3,381	7.61	16.66
1983	556	7,310	3,423	7.60	16.23
1984	676	8,757	3,834	7.72	17.64
1985	669	8,475	3,948	7.89	16.94
1986	638	8,324	4,018	7.67	15.89
1987	763	10,219	4,615	7.47	16.53
1988	786	12,827	5,580	6.13	14.08
1989	894	14,186	6,774	6.30	13.28
1990	819	13,952	8,447	5.87	9.69
1991	793	15,999	7,997	4.95	9.91
1992	884	17,257	9,676	5.12	9.13
1993	999	19,424	10,044	5.14	9.56
1994	1,029	20,957	11,243	4.91	9.16

註：臺灣의 年度別 對美달러 換率은 각각 37.8(1981), 39.9(1985), 26.2(1989), 26.3(1995)임.
 資料：Chia Sheng Wu and Shui Chi Chuang, "Design and Operation of Duty Drawback System", Depart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1995.

2. 沖·退稅制度의 運用現況

<表 6-2>에 의하면 1985년의 沖·退稅額은 263억대만달러로 전체 관세징수액의 약 38%에 달하였으나 이후 關稅率 引下와 還給對象 輸入物品의 縮小 등으로 1994년에는 沖·退稅가 관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그 비율은 2.3%에 그쳤으며, 1995년 현재는 41억 7천만억대만달러이다. 1984년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 이하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수입재(3,917개 품목)에 대하여 환급을 불허함으로써 환급액이 감소하였고 현재 약 1,100개의 품목이 沖·退稅를 적용 받고 있다. 그리고 신청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한 건당 沖·退稅額은 2만 3천대만달러(1994년)에 불과하지만 특이한 것은 신청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沖·退稅의 세목별 구성비율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

<表 6-2> 沖·退稅 規模와 關稅 등 稅入

(單位: 億대만달러, %, 건)

	關稅 등 稅入 (A)	沖·退稅 (B)	沖·退稅 比率 (B/A)	沖·退稅 申請件數	沖·退稅 申請業體數
1985	691	263	38.10	540,411	58,349
1986	783	204	26.04	543,921	68,265
1987	896	207	23.05	646,753	72,181
1988	1,044	146	13.96	555,323	74,268
1989	1,155	73	6.31	306,696	77,870
1990	1,085	50	4.61	209,022	76,945
1991	1,095	42	3.80	173,833	79,360
1992	1,316	41	3.12	183,049	79,631
1993	1,448	38	2.59	153,005	81,685
1994	1,525	35	2.30	150,679	—
1995	—	42	—	159,101	—

註: 關稅 등 稅入은 關稅와 貨物稅를 包含함.
資料: 臺灣 財政部, 『關務年報』, 1994.

년에 1.4%에 불과하며 각 연도 비율은 <表 6-3>과 같다. 輸出額對比 沖·退稅 比率이 감소하는 것은 관세율 인하와 더불어 국산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沖稅도 退稅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정부가 還給制度를 事前免稅에서 수출 후 환급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관세율 5% 이하의 수입재는 환급을 불허한다는 원칙은 臺灣 還給制度의 특징으로 대만산업이 그만큼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결과의 반증이라 하겠다.

<表 6-3> 沖·退稅와 輸出額

(單位: 億대만달러, %)

	沖·退稅 (A)	沖稅		退稅		輸出額(B) (십억대만달러)	沖·退稅比率 (A/B)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90	50	21	42.22	29	57.56	1,802.8	2.8
1991	42	17	40.11	25	59.89	2,140.4	2.0
1992	41	14	33.06	28	66.96	2,047.9	2.0
1993	38	15	39.93	23	60.07	2,235.1	1.7
1994	35	10	29.28	25	70.72	2,456.2	1.4
1995	42	10	23.37	32	76.63	2,950.4	1.4

資料: 臺灣 財政部.

産業別 沖·退稅 構成은 <表 6-4>에 나타나 있다. 1981년의 경우 직물과 플라스틱이 전체 沖·退稅 241억 9,200만대만달러의 37%를 차지하였으나 이들 비중이 1994년에는 2.2%로 크게 하락하고 기계부품의 비중이 6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관세율 5% 이하 품목에 대하여 환급을 불허함으로써 沖·退稅의 절대규모도 감소하여 1981년 당시의 약 14.5%에 불과하다.

<表 6-4> 産業別 沖·退稅額

(單位：件, 百萬대만달러, %)

	還給 件數	織物		電子機器		플래스틱		機械部品		기타		合計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1981	683,527	4,371	18	3,895	16	4,705	19	7,553	31	3,668	16	24,192	100
1982	686,257	4,443	17	3,752	15	4,673	18	8,798	34	4,122	16	25,788	100
1983	745,087	3,724	17	2,483	11	3,765	17	7,341	33	4,666	22	21,979	100
1984	592,249	3,304	12	2,899	10	5,353	19	8,653	30	8,426	29	28,635	100
1985	540,411	2,218	9	3,012	11	4,058	15	10,026	38	7,000	27	26,314	100
1986	543,921	1,322	7	2,657	13	2,213	11	9,058	44	5,138	25	20,388	100
1987	646,753	1,031	5	3,304	16	1,589	8	9,111	44	5,622	27	20,657	100
1988	555,323	391	3	2,318	16	854	6	7,467	51	3,546	24	14,576	100
1989	306,696	135	2	1,886	26	168	2	3,218	44	1,877	26	7,284	100
1990	209,022	117	2	1,121	22	46	1	2,449	49	1,267	25	5,000	100
1991	173,833	118	3	744	18	41	1	2,320	56	941	22	4,164	100
1992	183,049	121	3	626	15	32	1	2,474	60	859	21	4,112	100
1993	153,005	90	2	490	13	17	1	2,354	63	800	21	3,751	100
1994	150,679	70	2	385	11	9	0.2	2,313	66	733	21	3,510	100

資料：Chia Sheng Wu and Shui Chi Chuang, "Design and Operation of Duty Drawback System", Depart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1995.

沖·退稅의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表 6-5>와 같은데 臺灣 關稅司가 전산을 통한 회계감사의 자동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1995년 현재는 환급소요일수가 8.5일로 축소되었다.

<表 6-5> 沖·退稅 徵收比率과 還給所要日數

(單位：%, 日)

	沖·退稅	關稅	상항건설비	貨物稅	還給 所要日數
1990	50	49	0.2	27.5	16.7
1991	42	41	0	25.1	14.4
1992	41	41	0	24.1	17.6
1993	38	37	0	27.7	16.6
1994	35	35	0	30.0	13.1
1995	42	41	0	60.7	8.5

資料：臺灣 財政部.

3. 外銷品沖退原料稅損辦法

대만 관세법 제36조와 제4조는 각각 수출품 제조시 사용된 輸入原資材에 부과된 關稅와 貨物稅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外銷品沖退原料稅損辦法(이하 沖·退稅法)은 환급절차와 규정을 정하고 있다. 환급신청자는 沖稅의 경우 완제품의 생산자이거나 수입업자이어야 하며 退稅는 수입 또는 수출업자로서 輸出·入免狀 복사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財政部가 정한 환급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수입업체가 아닌 업체가 沖·退稅를 신청할 때에는 수입자로부터의 동의를서를 첨부해야 한다. 輸入免狀이 필요한 수입재는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6개월씩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수입면장이 법으로 면제된 수입재는 수출 후 6개월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臺北 關稅總局의 還給課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환급액의 0.5%에 해당하는 환급신청비가 부과되고 沖稅의 경우에는 수입시 신청비를 지불해야 한다. 환급신청서가 접수된 후 전산상을 통한 수출·입 사실확인 및 재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환급여부가 결정된다.

4. 還給額算定

沖·退稅에 따른 환급액은 ① 經濟部 產業開發局이 인정하는 基準所要量 ② 輸出量에 대한 從量沖·退稅 ③ 輸出價格에 대한 從額沖·退稅 ④ 實際所要量の 네가지 방법으로 산출되는데 FOB 수출가격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산출방법의 적용순서는 從量·額 沖·退稅가 우선이며 상기의 산출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소요량방식을 채택하는데 源資材消滅量의 추정이 필요하지 않은 수출품은 실제소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가. 基準所要量

일반적인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經濟部가 인정한 基準所要量(原料核退標準이라고 함)이 同種業體에 적용되며 특정업체에 적용되는 소요량은 그 기한이 3년이다. 그리고 수출품 생산업체는 기준소요량이 적용되는 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源資材所要量表를 수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경제부로 제출하여 당국이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환급액은 단위당 所要量 輸出量(또는 重量) 단위당 納付稅額으로 결정되어진다.

나. 從量 沖·退稅 基準

財政府는 경제부가 추정하는 소요 원자재량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률을 환산하여 환급액을 결정한다.

- ① 환급액 = 수출수량 × 정액환급률 (=단위당 평균소요량 세율)
- ② 종량제는 원칙적으로 소수의 원자재로 단순한 공정과정이 요구되는 제품에 적용되는데 주로 철강·고무·화학제품·통조림·목제품·가죽·신발·종이·사무용품·유리·수송기기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다. 從額 沖·退稅 基準

재정부는 경제부가 추정하는 소요 원자재량과 관세청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균 환급률을 결정하여 환급액을 결정한다.

- ① 평균환급률 = 단위당 환급액/단위당 평균 FOB 수출가격(일정 항목과 기간내)
- ② 환급액 = FOB 수출액 × 평균환급률
- ③ 종액제는 다수의 원자재로 복잡한 생산과정을 거치는 TV세트·냉장고·에어컨·전화기·자전거·테니스라켓·신발류와 같은 수출품에 적용되는데 수출가격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는 것이 특이하다.

이와 같이 수출품의 가격이나 수량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는 從

量·額 沖·退稅은 환금액 산정과 행정절차가 간편하고 생산업체는 환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生産費用과 出庫價格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 實際所要量

수출이 이루어진 후의 환급신청은 상기의 還給方式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생산마모량의 계산이 필요없고 제품의 수출이 사전에 관세당국에 신고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實際所要量을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5. 國產源資材의 保護

外銷品沖退原料稅損辦法 第9條는 국내 원자재 산업을 보호하고 다단계 산업체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從量·從額制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첫째, 從量·從額制가 적용되는 수출품의 경우 所要原資材의 輸入이 다변화되어 있고 그 종류가 다양하며 良質의 국산 기초원재료(fundamental raw inputs)가 적당한 가격에서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면 환금액은 수입사실의 인정이 없이 가장 기초가 되는 國產 原材料에 기준하여 산출된다.

둘째, 국내 원자재 산업의 生産能力이 國內需要의 80%를 초과할 경우 이러한 산업에 기준하여 수입사실의 인정이 없이 平均還給率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還給率이 상기의 두 가지로 결정된 후 국내원자재 생산이 감소하거나 매출가격이 국제시장가격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하여 基準所要量(原料核退標準) 方法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의 조치는 일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환금액의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입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여 실제로 국산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환금액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代替還給制度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6. 沖稅制度

還給業體는 수입건별로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는 擔保나 保證(재정부가 인정하는 정부공채나 유가증권, 受信機關의 보증 또는 자기보증)을 제공하여 記帳申請을 하면 수입지 세관은 記帳限度額의 초과유무를 확인하고 輸入免狀을 발급함과 동시에 臺北稅關에 면장사본을 송부하여 業體別·原資材別로 記帳카드에 전산입력한 후 일정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自行擔保制度는 輸出用 原材料의 수입시 관세 등의 납부를 유보하는 대신 關稅價權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데 수신기관의 보증담보의 경우 보증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므로 일정 자격을 갖춘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명의를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自行擔保 發行은 지난 2년 평균 수출실적이 6천만대만달러이거나 沖·退稅 금액이 3천만대만달러이거나 대만 관세법 제1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와 유사한 수출 또는 沖·退稅 실적이 있고 50만대만달러 이상의 탈세가 없는 업체가 할 수 있다. 自行擔保를 신청하는 업체는 수출면장과 지방국세청이 발급한 회계감사증서와 담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과학기술업체 또는 產業促進法 제8조에 해당하는 투자 창업투자사업도 自行擔保 發行을 허가한다.

특수한 사정(水災, 火災 등 不可抗力에 의하여 생산시설이 파괴되거나 수입국의 국내사정 등)에 의하여 수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臺北稅關에 연장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허용기간은 6개월이고 2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대응수출이 법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猶豫된 關稅 등과 함께 輸入稅가 기장된 날로부터 납세일까지 猶豫輸入稅額의 0.05%가 매일 체납비로 가산된다.

沖稅된 수입재에 부과될 수입세를 납부하지 않고 國內 消費로 전

환할 경우 재정부는 체납비는 물론 수출 loan의 延長取消와 輸入許可도 停止할 수 있다. 환급원자재의 명칭·규격·성분 등이 原料核退標準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低價의 원료를 기준하여 환급액이 결정되고 이러한 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환급액을 30% 할인하여 지급하고 있다.

過大·過少還給이 발견될 경우 세관은 이를 시정할 수 있는데 시한의 규정이 없으며 국내 제조·가공단계의 복잡다기화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乘離 및 直接的 連繫의 곤란이 발생함에 따라 沖稅節次の 시행이 어려워져 점차 退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퇴세의 신청권자는 수입자, 제조 가공자, 수출자이며 만일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 중 일방이 타방에게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第3節 濠洲의 關稅還給制度

1. 概要

호주 관세제도상 수출지원은 關稅還給과 輸出關稅讓許制度(TEXCO: Tariff Export Concession Scheme)로 나뉘어지는데 濠洲 關稅還給制度의 주요한 특징은 환급신청자가 자율적으로 환급액을 산정하며 이를 뒷받침할 서류의 제출 없이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급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한다. 또한 호주는 환급절차의 전산화가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로서 DBACS(Drawback Accounting and Computing System)라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환급신청서의 입력 이후 還給申請의 適正性 確認 및 承認, 支拂節次

를 半自動化하고 있다.

TEXCO는 수입자가 관세청과 협의한 일정 기간 내에 원자재를 수입 가공한 연후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와 판매세를 수입시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원자재수입 후 동종의 국산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납부된 關稅 등을 환급하여 주는 代替還給制度도 존재한다.

1994년 5월 호주정부는 『고용과 성장에 관한 백서 : 일하는 나라』(White Paper on Employment and Growth : Working Nation)라는 백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단순화된 환급절차, TEXCO에서의 담보철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급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만약 허위로 환급 또는 TEXCO 혜택을 받으면 수혜금액의 2배 내지 5배 이하의 벌금이 추정되고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오판하게 할 경우에는 관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TEXCO 이행조건을 위반할 경우 TEXCO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2. 還給 및 減免制度 利用現況

<表 6-6>은 연도별 환급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 연도 수출액 대비 환급비율은 약 0.3%를 유지하고 있다. 輸出關稅讓許(TEXCO)의 규모는 <表 6-7>에서 보듯이 5,200만호주달러로 수출액의 약 0.2%에 달하여 관세양허(TCOs)나 酒精(Concessional Spirit)에 대한 양허규모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관세양허는 1995년의 경우 1994년 환급액의 약 14배에 이르고 있는데 환급액이 작은 이유가 호주의 평균관세율이 낮아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호주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한 關稅讓許나 關稅支援에 익숙해 있음을 나타낸다.

<表 6-6> 年度別 關稅還給額

(單位：百萬호주달러)

	1992/93	1993/94	1994/95	1995/96 9월~12월
還給額	77.8	77.8	83.9	36.9

資料：Australian Customs Service.

<表 6-7> 制度別 關稅減免額 內譯

(單位：百萬호주달러)

	TCOs	Cheese & Curd Quota	TEXCO	Poicy By-Laws	TCF	Concessional Spirits	Overseas Assembly Provisions
1994년 11월~12월	170.69	1.71	9.22	31.63	22.21	78.48	0.93
1995년	1,193.24	11.75	51.1	158.18	143.68	710.23	8.81

註：TCO는 Tariff Concession Scheme, TCF는 Textile, Clothing & Footwear Import Credit Scheme을 뜻함.

資料：Australian Customs Service.

상기의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의 일례로서 호주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입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을 施行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약 5억호주달러로 關稅還給額과 輸出讓許額의 약 4배에 달하고 있다(<表 6-8> 참조).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과하고 호주의 자동차산업은 과도한 국내보호와 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은 뒤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表 6-8> 自動車産業計劃에 의한 關稅減免額

(單位：百萬호주달러)

	15% 控除制度	輸出促進制度
1991	267.9	161.1
1992	257.0	418.1
1993	289.0	275.4
1994	315.7	209.0

註：減免額은 '自動車産業을 위한 2000년까지의 行政合意(Administrative Arrangements to the Year 2000 for the Automotive Arrangement)'를 意味함.

資料：Australian Customs Service.

3. 還給制度

호주 관세법상 환급요건을 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者라면 누구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우선 관세청에 환급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환급청구는 수출 후 1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자는 수출 전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還給申請 意思를 통보하여 세관이 수출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환급신청서 외에 세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다만 관련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 세관의 요청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은 선적건 수별로 하거나 최근 12개월의 수출실적을 합하여서도 가능하며 환급액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환급액의 계산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① 船積貨物別 算定(Shipment by Shipment Method) : 輸入資料에 입각하여 실제관세 등 납부액을 계산한다.
- ② 代表的 船積貨物 基準 (Representative Shipment Method) : 수출물품 한 단위당 관세 등의 액수를 還給申請書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선적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계산하거나 여러 수입선적을 평균하여 추산하는 방법이며 산정된 소요량은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초로 적용된 수출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원자재를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생산자에게 간편한 방법으로 호주 관세청은 이 제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③ 還給轉嫁額 算定(Imputation Method) : 수출업자가 수입원자재의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환급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關稅價額(Custom Value)’에 해당 수입재의 관세율을 곱하여 환급액을 계산하며 이때 관세가액은 $0.3 \times P$ (=수출업자가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할 때 지불한 가격)이다. 그리고 還給轉嫁額 算定 적용대상은 호주 국내에서 매입된 100% 수입재이어야 한다(‘fully imported’). 신청자는 수입면장번호를 수입자로부터 확보하거나 수입자로부터 해당제품이 수입재로서 관세 등을 납부하고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신청액이 국내소비를 위하여 수입될 때와 납부한 세액보다 클 때에는 실제 수입 자료에 기초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WTO협정이 양허하고 있는 代替還給制度를 이용하여 自國産業을 보호하고 있다. 즉, 호주에서 환급 또는 TEXCO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수입한 후 이를 국산원자재로 대체한 경우 還給 내지 關稅免除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수입재와 국산재는 동일(identical)하여야 한다.

4. 關稅讓許制度(TEXCO)

수입업자는 사전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성격, 수출계획, 기한 등을 서류로 신청하여야 한다. 과거의 수출실적을 기초로 하여 관세청이 관세면제를 허용하는데 1994년 6월 이후에는 신규 수출업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990년에는 12개월 내에 수출하거나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관세청과 합의된 기한내 수출하면 되고, 제 3자가 수출을 이행할 경우에도 신청자인 수입자가 원자재 수입 후 製造·加工·輸出에 관한 證憑資料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수입원자재가 내수용으로 전환되면 28일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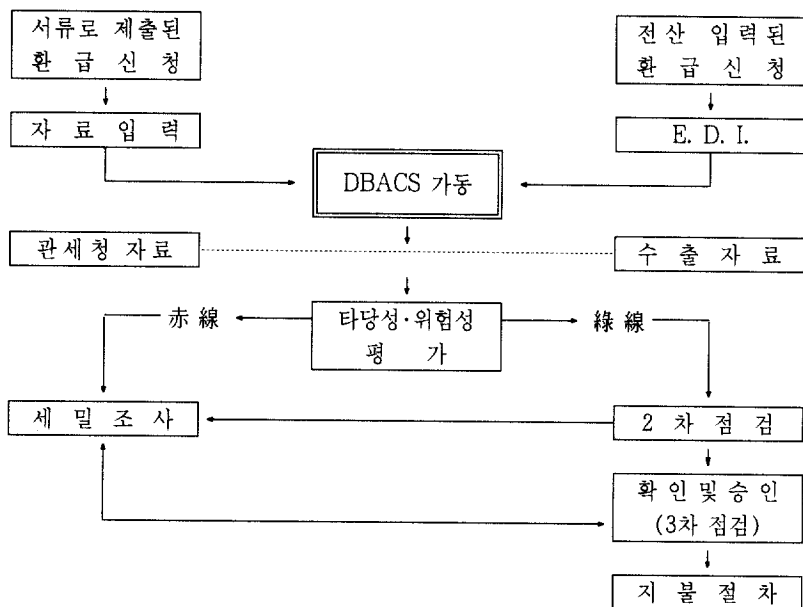
5. 還給節次

DBACS(Drawback Accounting and Computing System)는 환급신청서를 입력한 후 환급신청의 적정성 확인 및 승인, 지불절차를 자동화하는 일련의 전산체제를 의미하는데 환급신청은 최소한 2명의 세관원(서류신청시에는 3명)이 심사를 하며 성실성이 인정되는 신청은 신속하게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전산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환급이 허용된 사례의 2%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허위 또는 과다 환

급신청을 가려내는 危險管理(Risk Management) 프로그램으로 적정성을 검토한다.

[圖 6-1]은 DBACS에 의한 환급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류 또는 전산으로 제출된 환급신청의 내용이 DBACS에 입력되면 신청자의 과거 還給行態, 輸出·入 事實 또는 審査官의 判斷 등에 의하여 세밀조사가 요구되는 신청은 赤線으로 회부되어 자세한 조사를 받고 이외는 綠線으로 회부되어 다시 점검을 받은 후 환급승인을 받는다. 적선으로 회부되는 신청서는 전체 환급건수의 약 30~40%인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 書類審査나 實地調査를 받으며, 細密調査나 2次點檢을 통과한 신청서도 환급을 승인하는 담당관의 결정에 따라 다시 세밀조사를 받도록 하여 환급절차에서의 오류나 부정을 방지하고 있다.

[圖 6-1] DBACS에서의 還給節次



第4節 美國의 關稅還給制度

1. 概要

美國政府는 수출물품에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첫째는 關稅還給制度로 ‘Title 19 United States Code Chapter 4 (Tariff Act of 1930) Section 1313’에서 국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99%를 수출자 등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海外貿易地域(Foreign Trade Zone)는 우리나라 수출자유 지역과 유사한 제도로 관세납부에 의한 자금부담이 없고 미국 내로 완제품을 반입할 때 완제품과 부분품 중 낮은 관세율과 원산지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美 전역에 약 500개의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은 保稅工場(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s)이 있으나 미국에서는 유용되고 있지 않고 약 10여개의 공장이 있을 뿐이며 마지막으로 臨時 輸入保稅工場(Temporary Importation Bonds)은 수입일로부터 1년 내에 재수출할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미국 관세율표 H.S. 9812, 9813, 9814에 명기된 물품을 대상으로 일시 수입품, 여성 의류 모델, 광고제품 등 17종이 있다.

2. 還給制度 概觀

미국은 일찍이 1789년 ‘The First Tariff Act of the United States’을 제정하면서 還給制度를 수용해 왔고 현재는 ‘Title 19 U. S. Code의 Chapter 4(Tariff Act of 1930) Section 1313’에 환급 근거를 두고 ‘Part 19 Customs Regulation Section 191’에 그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원자재 성격별로 美國의 還給制度를 구분하면 수입재를 대상으로 하는 同一還給(Direct Identification Drawback)과 국산재가 수입재를 대체하는 경우 환급하는 代替還給(Substitution Drawback) 등으로 나눌 수 있다. 同一還給은 '19 USC 1313(a)'에 명시된바, 수입재를 사용하여 수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재를 원상태로 수출할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며, 代替還給은 '19 USC 1313(b)'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원자재를 매입한 후 3년 이내 수입재와 同種·同質의 국산재를 혼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출이 이루어질 때는 비록 수입재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로 만약 수입재와 동일한 성격(fungible)의 제품이 원상태로 수출될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²⁾. 代替還給 신청시 대체할 수입재와 국산재의 세부사항을 세관에 통보하고 이밖에 환급절차는 同一還給과 대체로 유사하다.

還給制度를 製造形態別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製造品還給(Manufacturing Drawback) : 수입원자재가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을 때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전형적인 환급형태로서 호주와 마찬가지로 관세청과 還給契約(Drawback Contract)을 맺은 후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 ② 原狀態還給(Same Condition Drawback) : 수입재가 원상태로 수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수출이 되면 환급을 해준다.
- ③ 返納品還給(Rejected Merchandise Drawback) : 수입시 손상되거나 견본·규격에 맞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서류의 복잡성으로 原狀態還給이 대신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환급을 청구하려면 원자재 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輸入原資材나 代替國產財를 사용하여 수출하고(원상태 수출은 3년) 수출 후 3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금이 지불된 후에는 3년간 관

2) 美 關稅法에서는 동일한 성격(fungible)의 물품이란 商業慣行上 동일하고 (identical) 교환가능한(interchangeable) 상품으로 동일한 성격의 제품은 항상 同種·同質의 물품이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런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환급금액은 납부한 관세의 99%인데 1%는 환급수수료로 징수되고 있으며(One Percent Rule) 환급신청 후 9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성실업체는 환급신청시 담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세관은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지급하는데 전체 환급의 절반 정도가 迅速還給을 받고 있다. 환급금이 지불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신청자는 異議申請을 할 수 있고 관세청은 환급금액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미국 관세청은 환급절차의 전산화를 1994년 10월에 착수하여 1996년 5월 현재 약 36%의 환급금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1997년 10월까지 전산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급신청시 서류조사 외에 현장조사는 확률적 표본에 의하여 시행되며 현재까지 약 15%의 수출품이 실제 조사를 받았다.

1995년 還給類型別 實績은 <表 6-9>에 표기되어 있는데 代替還給이 전체환급의 59%이며 수입원상대 수출인 原狀態還給이 4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환급액은 약 5억 2천만 달러로 수입액과 관세징수액 대비 환급비중은 각각 0.07%, 2.3%로 그 비율이 낮는데 이는 평균관세율이 3.2%이고 국산화가 비교적 잘 되어있는 이유로 생각된다. 原狀態還給의 還給比重이 큰 까닭은 製造品還給과는 달리 原狀態還給은 환급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 그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表 6-9> 類型別 還給額(1995)

(單位: 百萬달러, %)

同一 還給	製造品還給	3.6 (6.9)
	原狀態還給	176 (33.8)
代替 還給	製造品還給	250 (48.1)
	原狀態還給	58 (11.2)
合 計		520(100.0)

資料: United States Customs Service.

미국 관세청은 공식적으로 환급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1984~1995년도 관세평가보고서(Customs Performance Report : Fiscal Year 1986(FY86))라는 자료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관세 대비 각각 환급률이 3.8, 3%에 이르고 있다(<表 6-10>). 수출액 대비 비율은 동 기간에 0.12, 0.11%로 환급비율이 매우 미약한 데 이는 관세율이 낮고(3.7, 3.8%) 또한 중간재수입이 적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表 6-10> 美國 關稅徵收額과 還給額 規模(FY84-86)

	還給額 (百萬달러)	還給件數 (건)	平均還給額 (달러)	關稅 (10億달러)	輸入額 (10億달러)	關稅 對比 還給率(%)
FY84	488.3	39,154	12,500	11.8	368.7	3.8
FY85	419.6	40,824	10,300	12.5	343.6	3.0

資料 : U.S. Customs Service, *Customs Performance Report : Fiscal Year 1986(FY86)*, 1987.

참고로 관세와 수입과 관련통계가 <表 6-11>에 나타나 있는데 미국의 실질관세율이 1975년 이후 급소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세를 납부한 수입건수와 환급건수는 <表 6-12>에 수록되어 있는데 건수를 기준으로한 환급비율은 약 0.7%에 머물고 있으면 연도별로도 비율의 변화가 없다.

<表 6-11> 年度別 輸入額과 關稅徵收額

(單位：億달리, %)

	總輸入額	關稅納付 輸入額	關稅徵收額	平均關稅率	物品稅
1970	398	259	26	6.5	—
1975	965	655	38	3.9	—
1980	2,440	1,330	75	3.1	—
1981	2,590	1,827	89	3.4	7
1982	2,423	1,665	87	3.6	7
1983	2,567	1,733	94	3.7	7
1984	3,230	2,200	120	3.7	7
1985	3,436	2,375	131	3.8	8
1986	3,687	2,469	133	3.6	8
1987	4,021	2,699	139	3.5	8
1988	4,371	2,854	151	3.4	8
1989	4,680	3,116	161	3.4	8
1990	4,906	3,294	163	3.3	8
1991	4,831	3,154	162	3.4	10
1992	5,251	3,305	172	3.3	—
1993	5,749	3,389	183	3.2	—
1994	6,633	—	203	3.1	—
1995	7,435	—	—	—	—

資料：U.S. Bureau of Census, *Statistical Abstracts of the U.S.*, No. 1331, 1995.U.S. Customs Service, *U.S. Customs Update*, 各年度.

<表 6-12> 輸入과 還給件數

(單位：件)

	關稅納付 輸入件數	非關稅 輸入件數	還給件數	其 他	總輸入件數
81	3,986,118	1,446,173	28,890	20,120,757	25,581,938
82	4,737,166	1,419,753	35,965	19,918,051	26,110,935
83	4,201,206	1,617,990	38,938	21,172,629	27,030,763
84	4,951,575	1,881,941	39,154	23,429,871	30,302,541
85	24,722,354	1,912,131	40,824	5,620,855	32,296,164
86	5,658,812	2,036,790	42,883	25,636,590	33,375,075
87	6,033,017	2,444,315	41,677	25,378,087	33,897,096
88	6,792,743	2,658,131	43,781	32,742,586	42,237,241
89	6,849,578	2,748,459	45,512	37,610,107	47,253,656
90	6,691,348	2,800,262	47,065	43,082,333	52,621,008
91	6,315,646	2,787,919	50,685	57,737,676	66,891,926
92	6,497,484	2,800,262	47,065	43,590,035	52,934,846

資料：U.S. Customs Service, *U.S. Customs Update*, 各年度.

3. 還給節次

관세환급대상자는 수출품 제조자의 유보가 없으면 수출자이며 제조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製造品還給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關稅廳과 환급계약(Drawback Contract)을 맺어 환급신청자가 법적 준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급계약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계약(General Contract)과 개별계약(Specific Contract)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이용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일반계약은 환급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美 관세청이 다수의 생산자가 유사한 생산공정을 통하여 수출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 품목을 선정하여 關稅報(Customs Bulletin)에 고시하고 수출업자가 이 제도의 이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15년이다. 일반계약의 대상품목은 오렌지주스, 계당, 원당, 직물, 철강, 원유, 전자기기 부분품 등이 있다.

일반계약을 신청하지 않는 한 환급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생산자는 물론 중간단계를 포함한 모든 업체가 환급제안서(Drawback Proposal)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개별계약(Specific Contract)이라 하고 세관의 승인일로부터 15년간 유효하며 환급제안서에서 생산업자는 제조과정에 대한 묘사와 환급법규와 관련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還給申請時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 ① 稅關樣式 331(Customs Form 331)上的 還給申請書(Drawback Entry)
- ② 還給提案書(Drawback Proposal) : 환급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 ③ 輸出通知書(Notice of Export) : 수출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세관의 승인이 있는 수출통지서가 필요한데 행정편의상 담보를 제공

하고 세관의 讓許 下에 수출개요(Exporter's Summary)로 대체할 수도 있다.

- ④ 製造記錄 概要書(Abtract of Manufacturing Records) : 환급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요약을 발췌·기록하는 서류
- ⑤ 貨物引渡 證明書(Certificate of Delivery) : 수출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 필요하다.
- ⑥ 製造證明書(Certificate of Manufacturer) : 수입재가 相異한 제조업체에서 다단계 가공을 거칠 때마다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소요량에 대한 결정은 환급계약시 제조업체가 작성한 명세서(Schedule)에 있는 단위당 소요량이나 제조기록 개요서에 기입되는 총소요량에 의하며 이밖에 代替還給을 제외한 환급신청자는 제조공장 허가번호, 제조일, 원자재 수량, 수출품량, 손모율, 부산물 등에 대한 회계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 환급과 관련된 보완서류를 제3자가 보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3자는 관련서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代替還給 申請者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① 대체할 輸入材나 還給對象 製品의 품명과 대체하는 同種·同質 제품의 양을 기록해야 한다.
- ② 대체할 수입재를 入手한 후 3년 이내에 생산에 투입하였고 同 기간에 수출품을 제조하였다는 사실과 대체할 수입재를 수입한 후 5년 이내에 수출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NAFTA 환급규정을 신설하여 캐나다로 수출되는 물품에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멕시코로의 수출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타국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들여와 물품을 제조한 뒤 이들 국가로 수출할 때 수입원료에 부과되는 관세와 완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중 낮은 관세를 환급하여 준다('Lesser of the Two' rule).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의 경우는 上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완전 환급이 가능하므로 타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이 억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海外貿易地域(Foreign Trade Zone)

海外貿易地域은 국제무역 증진을 위하여 1934년 6월 18일 'Foreign Trade Zone Act'의 입법으로 도입된 제도로 시행세칙은 'Part 146 Customs Regulation'에 마련되어 있다. 海外貿易地域은 보세공장과는 달리 여러 업체가 共同으로 사용하여 관세의 부담 없이 외국 물품을 수입 또는 보관, 조립, 가공, 제조 등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가공된 물품은 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각 회사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Subzone을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美國 내에는 Subzone을 포함하여 500개 이상의 海外貿易地域이 있고 수출입업자에게도 편리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表 6-13>에 나타나 있듯이 1994년 海外貿易地域 내에서 수출된 물품의 총액은 약 174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4%에 달하는 실정이다.

<表 6-13> 海外貿易地域 內에서의 輸出額

(單位: 10億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輸出額	11.59(2.94)	10.48(2.47)	11.65(2.60)	11.65(2.51)	17.36(3.39)

註: () 안은 總輸出額 對比 比率임.

資料: U.S. Customs Service.

海外貿易地域은 주정부나 회사 등이 신청·설치하는데 설치장소는 항만 또는 그 부근이며 Subzone은 각 회사별로 이루어지는데 설치장소는 위치와 관계가 없다. 허가기관은 海外貿易地域委員會(Foreign Trade Zone Board)와 세관으로 海外貿易地域 내에서의 물품반입과 반출은 세관의 감독을 받는데 1986년 이후에는 현장감

독대신 회계방식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는 무역지역의 운영, 반입물품의 성격·보관 그리고 기록방식에 대한 서류와 담보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시에는 등록비와 함께 매년 운영비를 세관에 지불해야만 한다.

수입재로서 海外貿易地域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부품과 완제품의 관세율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완제품의 稅番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아 섬유제품을 제외한 물품은 쿼터면제와 원산지 표시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海外貿易地域로 반입된 제품은 수출로 인정받아 환급이 가능한데 반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移轉確認書(Notice of Transfer)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인 修理作業 또는 다른 貿易地域으로의 이전 이외에는 물품의 반출시 관세 등을 지불해야 한다.

第5節 日本의 還給制度

1. 概要

일본의 경우 원재료의 80% 이상이 관세·무세적용품목이며 부과되는 경우에도 평균관세율이 1% 이내이다. 또한 <表 6-14>에 나타나 있듯이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제도는 보세공장으로 1993년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반출된 규모는 전체 수출의 8.8%에 달한다. 다만 제조·유통과정에서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조건이 미비한 경우 輸出戻稅制度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제도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³⁾.

3) 이밖에도 수입 당시 수출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환급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戻稅에 관한 법률적 규정은 관세정률법 제19조에서 수출화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품 중 특정한 물품이 수입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2년 이내에 특정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환불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제1, 제2에서는 대상 수출품목과 수입원료품을 지정하고 환불액도 정한다.

<表 6-14> 日本 保稅工場 및 戻稅 利用度

(單位: %, 억엔)

	保稅工場 搬出額	輸出額 對比 比 率	戻 稅 額	輸出額 對備 比 率	實効關稅率
1974	20,043	12.4	0.9	0.006	2.7
1975	21,433	13.0	1.0	0.006	2.9
1978	27,070	13.2	0.4	0.002	4.1
1979	26,786	11.9	0.4	0.002	3.1
1984	55,945	13.9	0.4	0.001	2.5
1985	56,884	13.6	0.5	0.001	2.6

資料: 김중호·김홍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 면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대학 조세문제연구소, 1986.

일본 대장성, 『재정금융통계월보: 관세특집』, 1994. 10.

1970년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正稅 별표 제1항에 의거, 환급대상 5개 수출품목과 수출화물제조에 사용되는 수입원료품 및 환급액을 정하고 수입허가서, 소요원재료의 수량 등 수출화물과 수입원료품과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 관세를 전액 환불하고 있다. 또한 正稅 별표 제2에 따르면 74개 수출품목에 대하여는 還拂率을 적용한다.

還拂率은 특정의 수출품에 대하여 國內總生産量과 輸入量과의 關係(수입의존도) 또는 표준적인 소요량 계산에 의해 당해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평균적 수입원료품의 사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으로 戻稅率을 적용하여 戻稅額이 수출화물의 수량기준과 가격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의존도가 낮으면 낮은 戻稅率이 적용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액환급률 책정시 국산화율을 고려하

는 제도와 비슷하여 국산재대신 수입원료를 사용하면 납부한 관세액보다 적은 환급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상물품으로는 증유, 염료 방적사, 철강재, 알루미늄 또는 가공품, 전자부품 등이 있다.

日本 還給制度의 특징은 수입의존도가 낮으면 還拂率도 낮고 수입원료와 수출품의 관계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별표2 품목 제외) 還拂節次가 간소하다. 또한 1993년의 경우 戻稅率이 수출가액의 0.003%로 이는 관세율이 원료에 대하여 무세 또는 저율이 적용되고 수출시 보세공장이 주로 이용되며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⁴⁾.

2. 還給節次

輸出戻稅의 적용을 받는 수출품은 세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제조를 거쳐 수출이 되어야 하고 그 대상은 별표 1, 2의 수출화물로 동 표에서 정하고 있는 輸入原料나 또는 별표 제3의 中間原料品을 그 공장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기업은 서류작성 비용을 감안, 최종공정의 위탁을 한 기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배려하고 있고 조합제조공장도 戻稅申請이 가능하다. 戻稅에 관한 제조공장 승인신청서에는 소재지, 기한, 제조할 수출품, 예정수량, 환급대상 원료, 입수경로 등을 수록한다.

환급은 분기별로 하고 각 분기 종료후 2개월 내에 세관에 환불신청서, 수출허가서(제조자), 수출신고서사본과 화물제조증명서(수출자나 조합인 경우)를 제출한다. 별표1 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기장에 수입품, 품명, 수량, 투입날짜, 수입허가서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輸入許可書나 輸入原材料 納稅必證明書를 제출한다.

日本 關稅定率法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과세

4) 1993년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表 6-14>에서 보듯이 3.6%이며 석탄, 양모, 면화, 선강, 강괴 등 중요원자재의 경우 대부분 무세가 적용된다(석유는 잠정관세 2.5%).

원료품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課稅原料品과 內國貨物을 함께 사용하여도 關稅還拂이 가능하다. 즉, 국산품을 원료로 대체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보세공장에서 기한 내에 외국주문을 충족할 수 없어 부득이 동종의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면 향후 6개월 이내 수입되는 외국원료에 대하여 사용된 국산재 수량만큼 관세부담을 면제하는 代替免除制度가 있다(관세정률법 제19조의 2 제12항).

第6節 國內·外 還給制度의 比較

WTO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관세 등의 환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그 이용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表 6-15>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수출액 대비 환급률이 1.5%로 비교 대상국가 중 그 비율이 제일 높다. 환급률이 높은 이유는 물론 관세율이 높거나 국산화비율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출에 대한 지원으로 표에 나타나 있는 국가들이 해외무역지구(미국), TEXCO(호주) 또는 보세공장(일본) 등 關稅免除地域을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세공장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關稅徵收와 還給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를 피하고 환급으로 인한 資金費用負擔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활용이 필요한 제도이다.

<表 6-15> 國家別 實效關稅率과 輸出 對比 還給比率

(單位：%)

	한국(1994)	일본(1993)	미국(1995)	대만(1994)
관세율	4.2	3.6	3.1	4.9
환급률(수출대비)	1.5	0.003	0.09	0.11

註：관세율은 관세징수액/수입액임.

보세공장은 물론 관세의 납부에 따른 자금비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급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국산화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환급제도와 같은 關稅支援制度는 輸出增大에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⁵⁾. 더욱이 WTO 협정이 국산원료를 수입원료 대신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동질의 수입재에 부과되는 수입과징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國産化는 代替還給制度를 통하여 지원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상기 표의 국가들이 대체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국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5년 정부의 관세 등에 대한 환급특례법 改正案에서 6개월간 관세를 유예하고 수출후 정산하도록 한 것은 還給制度를 수출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還給制度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산화를 이용하고 있거나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同制度가 서류준비 등의 행정비용이 상당하여 수출업체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급절차를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하여 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5)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한 경제정책의 도구가 한 가지 목표를 지향하여야 왜곡이 없다는 이론이 있다.
- 6) 다만 이 경우 재정부담이 정부에 있는 반면 환급제도에서는 자금비용을 수출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국산화 지원의 효율성을 비교하면 대체환급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제도이다(제II장 참조).

第7章 關稅還給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第1節 關稅還給制度의 問題點

1. 關稅還給制度의 亂立

現行 關稅還給制度는 第3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簡易定額還給制度,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 一般個別還給制度, 先還給·後精算制度, 先支給·後審査制度 등의 협의의 환급제도와 相計制度, 還給에 갈음하는 稅率引下制度를 포함하는 광의의 환급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關稅還給制度가 난립하게 된 것은 기존의 關稅還給制度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한다. 1975년에 關稅還給制度가 처음 시행될 당시만 해도 少額簡易定額還給制度와 個別還給制度로 비교적 단순하게 운영되었으나, 그후 이 제도들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현재와 같은 制度의 亂立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먼저 定額還給制度의 경우를 살펴보자. 定額還給制度는 무엇보다도 還給節次가 간단하여 환급에 따르는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975년부터 모든 輸出品에 대한 定額還給化를 목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균개념에 의해 산출된 定額還給額이 개별 輸出物品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輸入時 納付稅額과 일치하지 않아 이로 인해 過多·過少還給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問題點이 대두되었다. 過少還給은 기업측에서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우며, 過多還給은 政府의 입장에서 볼 때 關稅還給制度의 왜곡이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定額還給制度에 대

한 전면 개편을 단행하여 1985부터 이를 簡易定額還給制度和 副材料定額還給制度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簡易定額還給制度는 그 적용대상을 少額輸出物品에 한정함으로써 過多·過少還給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少額輸出物品의 경우 관세환급액이 많지 않아 定額還給을 실시하더라도 과다·과소환급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도입된 部材料定額還給制度도 환급액이 많으면서 품목수가 적은 主材料는 個別還給으로 정확한 환급을 기하고, 환급액이 적으면서도 품목수가 많은 副材料에 대해서만 定額還給을 실시함으로써 과다·과소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제도였다.

그러나 副材料定額還給制度는 主材料和 副材料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여전히 過少還給이 발생됨에 따라 업계의 호응이 부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를 도입하여 副材料定額還給制度를 대체하게 되었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는 각 업체의 제조장 단위로 해당 업체가 수입한 原材料의 平均納付稅額과 輸出物品에 사용한 原材料所要量에 의하여 定額還給率을 책정하므로 매우 합리적인 制度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도 원재료별 평균세액산출내역서 등 복잡한 定額還給率 產出資料를 연 2회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여전히 過少還給이 발생됨에 따라 이용이 부진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個別還給制度의 경우를 살펴보자. 個別還給制度는 수출 물품 제조에 소요된 原材料의 품명·규격별로 수입시의 納付稅額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합산하므로 具備書類와 還給節次가 복잡하고 還給金을 지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先還給·後精算制度는 관세환급신청시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기업의 資金負擔을 완화하고자 1984年 關稅還給制度의 전면 개편시 도입되었다. 同 制度는 수출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輸出免狀 등 수

출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확인되면 關稅廳長이 정하는 금액을 우선 환급해 주고 3個月 이내에 個別還給申請書類를 작성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先還給·後精算制度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출업체에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세관장이 인정하는 誠實輸出業體에서 제출한 개별환급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즉시 還給申請金額을 우선 지급한 후 還給額의 적정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先支給·後審査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關稅還給制度의 問題點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분적으로 改善하려는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關稅還給制度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企業의 입장에서 보면 過多還給을 받을 수 있거나 還給金을 지급받는 데 장기간이 걸리지 않는 制度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狹義의 關稅還給制度만 해도 다섯 종류에 달해 輸出企業이 이 제도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關稅還給制度의 난립은 다음과 같은 問題를 야기한다. 企業의 입장에서는 關稅還給制度 중에서 자기 企業에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것인데, 그 결과 선호되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定額還給制度는 환급절차가 간단하여 환급에 따르는 社會的 費用을 最少化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制度로 간주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過少還給의 문제점 때문에 定額還給制度의 이용도는 미미한 편이고 주로 個別還給制度가 선호되고 있다.

2. 關稅還給節次의 複雜

現行 關稅還給制度는 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書類가 너무 많고 還給節次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問題點이 있다. 이에 따라

關稅還給과 관련하여 企業이 지불해야 하는 直接費用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크며, 여기에 政府와 銀行이 지불해야 하는 間接費用까지 포함하면 關稅還給에 따른 社會的 費用은 실로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

환급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表 7-1>에 요약되어 있다. 簡易定額還給制度의 경우는 具備書類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還給申請書에 輸出免狀 등의 還給對象輸出 證明書類와 還給額 計算明細書를 첨부하면 된다.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의 경우는 여기에 原材料 輸入時 納付稅額 證明書類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재료 수입시의 납부세액 증명서류는 輸入免狀,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 輸入免狀分割證明書, 平均稅額證明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個別還給制度의 경우는 具備書類가 상당히 많다. 우선 簡易定額還給制度和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를 이용할 경우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 所要量 證明書類와 早見表가 더 필요하다. 소요량 증명서류는 所要量證明申請書, 所要量證明書, 所要量計算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조건표는 여러 장의 輸出免狀을 모아 個別還給方法에 의해 關稅還給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표로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原材料의 量을 파악하고 이를 어느 輸入免狀 등에 첨부하여 還給額을 산출하였는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關稅還給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이들 具備書類 중 일부 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른 서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第5章의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實態調査 結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不必要한 書類를 작성하는데 많은 時間과 人力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表 7-1> 還給申請時 具備書類

	구 비 서 류
간이정액환급제도	① 환급신청서(갑·을·정) ② 환급대상수출 증명서류 - 수출면장 - 선(기)적사항신고 ③ 환급액계산명세서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① 환급신청서(갑·을·정) ② 환급대상수출 증명서류 - 수출면장 - 선(기)적사항신고 ③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 증명서류 - 수입면장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분증 포함) } 선택 - 수입면장분할증명서 - 평균세액증명서 ④ 환급액계산명세서
개별환급제도	① 환급신청서(병) ② 환급대상수출 증명서류 - 수출면장 - 선(기)적사항신고 ③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 증명서류 - 수입면장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분증 포함) } 선택 - 수입면장분할증명서 - 평균세액증명서 ④ 환급액계산명세서 ⑤ 소요량증명서류 ⑥ 조건표

關稅還給의 節次는 [圖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 있다. 특히 所要量證明書 發給, 還給具備書類 準備, 還給金算出 및 還給申請書 作成 등의 과정에서 具備書類와 節次의 복잡함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圖 7-1] 還給節次圖

절 차	주 요 업 무	담 당 부 서
수 면 출 허	• 해외 반출여부 최종확인	세관수출과
↓		
선 적	• 세관의 선적확인 또는 선박회사의 M/R 발급	세관감시과, 선박업체
↓		
원 재료 소 요 량 계	• 선적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와 그 수량을 산출	수출업체
↓		
소 요 량 증 명 서 발	• 수출물품별 소요량 확정	세관, 시·도지사, 외국환은행
↓		
환 급 구 비 서 류 준	• 관세환급신청 구비서류 준비 - 수출면장(선적확인) - 수입면장 - 소요량증명서 - 국내거래관계 서류 - 기타서류 • 구비서류의 유효성 확인	수출업체
↓		
환 급 금 산 출 및 환 급 신 청 서 작 성	• 소요원재료별 수입시 세액 산출 • 환급신청서 작성 • 환급금 산출 증명서류사본 작성 및 첨부	수출업체
↓		
환 급 신 청 및 수		수출업체→환급기관
↓		
환 급 금 심 사 결	• 업체의 환급신청사항 적정여부 확인	세관, 환급은행
↓		
전 산 입 력		세관, 환급은행
↓		
지 급 지 시 서 작		세관, 환급은행
↓		
지 급 지 시		세관, 환급은행
↓		
환 급 금 수 령		한국은행, 환급은행

이에 따라 환급을 받기까지 <表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輸出을 한 후 還給金을 지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先還給·後精算의 경우가 가장 빨라서 34.9일이 걸리며, 一般個別還給이 가장 늦어서 57.1일이 걸린다. 輸入일을 기준으로 還給金을 지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先還給·後精算의 경우가 역시 가장 빨라 70.3일이 걸리며,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이 가장 늦어 106.8일이 걸린다.

<表 7-2> 還給申請 所要日數 (單位: 日)

	원재료 수입~ 제조 및 수출	제조 및 수출~ 환급신청	환급신청~ 환급금 수령	원재료 수입~ 환급금 수령
간이정액환급	41.2	39.5	7.6	88.3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59.0	38.7	9.1	106.8
일반개별환급	48.7	47.0	10.1	105.8
선환급·후정산	35.4	29.7	5.2	70.3
선지급·후심사	55.2	37.3	8.3	100.8

이로 인해 第5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輸出企業이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還給關聯 人件費 90억원, 其他經費 8억원, 還給拋棄金額 246억원, 그리고 金融費用 331억원을 합해 연간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政府와 銀行이 환급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는 社會的 費用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진다.

이와 같이 輸出企業이 還給金을 지급받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것이 수출기업의 資金負擔 增加要因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오히려 關稅還給制度의 본래 목적인 輸出支援效果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具備書類 및 還給節次를 簡素化함으로써 還給人力을 최소화함은 물론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還給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關稅還給制度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國家에 의한 所要量管理體制 維持

所要量은 輸出物品의 제조에 소요된 原材料의 量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實量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損耗量을 합한 개념이다. 輸出物品의 제조에 소요된 原材料의 種類와 量을 확인하는 과정을 所要量管理라고 한다. 關稅還給制度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原材料가 수입되는 때에 납부한 關稅를 還給하는 제도이므로 所要量管理는 關稅還給業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所要量管理制度는 國家가 담당하고 있다는 問題點이 있다.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原材料의 種類와 量은 輸出業體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所要量證明機關이 각종 자료를 제시받아 所要量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還給節次가 복잡해지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現行 所要量管理制度를 살펴보자. 還給을 받는 데 필요한 所要量證明書類에는 所要量證明書, 所要量計算書 그리고 所要量證明申請書 등이 있는데, 還給을 받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하나의書類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한다.

所要量證明書는 수출물품 제조업체의 신고에 의하여 所要量證明機關이 수출 이행에 필요한 原材料의 量을 계산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서류로서 現行 所要量管理制度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原材料의 所要量을 가장 잘 알고 있는 輸出業體가 이를 잘 알지 못하는 所要量證明機關으로부터 소요량을 증명받아야 한다는 問題點이 있다. 또한 所要量證明書發給機關과 基準所要量 告示機關이 너무 많아 전체적인 所要量管理體系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所要量證明書 發給機關은 수출품목이 基準所要量 告示品目인지의 여부에 따라 <表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라지며, 基準所要量 告示機關도 수출물품의 품목에 따라 <表 7-4>에서 보는 바와 달라진다.

<表 7-3> 所要量證明書 發給機關

基準所要量 告示品目	非 告 示 品 目
稅關長 및 外國換銀行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中央行政機關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구 : 임업연구원장 } 상공자원부장관의 • 기타품목 : 공업진흥청장 } 관장품목 - 國立工業技術院長, 地方工業技術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인천 - 신청인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 및 工業振興廳長이 지정하는 市長·郡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 특별시(1), 직할시(5) • 도 : 경기도 등 9개 • 시·군 : 성남, 안산, 부천, 천안, 구미, 울산, 여천, 마산, 창원, 진주, 경기북부출장소 - 輸出自由地域管理所長(마산, 이리) 및 西部地域工業團地管理工團理事長 - 각 稅關長(제조장 관할 세관) - 外國換銀行長(단, 수출면장 등에 소요원재료의 규격과 수량이 표시된 비고시품목으로서 단위실량만으로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註 : 基準所要量 告示品目과 非告示品目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非告示品目에 대한 所要量證明書 發給機關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表 7-4> 基準所要量 告示機關

輸 出 品	告 示 機 關
공산품(석유류제품 포함)	공업진흥청장
농산품(농약포함)	국립농산물검사소장, 국립잠사소장, 농촌진흥청축산시험장 및 농업기술연구소장,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
수 산 물	수산청장, 국립수산물검사소장
임 산 물	산림청장, 임업시험장장
의 약 품	보건복지사회부 장관, 국립보건원장

所要量計算書는 수출업체에서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原材料의 量을 스스로 계산하고 확인한 서류이다. 所要量證明機關에서의 소유량증명은 輸出免狀 등에 이미 명시된 原材料의 單位實量을 근거로

하여 基準所要量 및 輸出數量을 계산한 것을 단순히 비교하고 확인하는 데 그친다고 판단하고 所要量申告制度의 일종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 經濟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民間自律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므로 所要量證明制度도 빠른 시일 내에 所要量申告制度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所要量計算書의 發給業體는 <表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되어 있다.

<表 7-5> 所要量計算書 發給業體

所要量계산서의 종 류	所要량자체관리기업 발급 所要量계산서	所要량계산서발급업체 발급 所要量계산서	실제사용량신고기업 발급 所要量계산서
발급 업체	공업진흥청장 지정	공업진흥청장 지정	세관장 지정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생산수율비 교표 등재업체 · 전년도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업체 	所要량자체관리규정을 제정한 수출업체	모든 수출업체 신청가능
발급대상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생산수율 신고품목 	고시품목	비고시품목
적용 소요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수율 신고품 목 : 실제소요량 · 생산수율미신고 품목 중 고시품목 : 기준소요량 	기준소요량 고시상의 기준소요량	실제소요량

所要量證明申請書는 수출물품 제조업체에서 작성하여 환급신청시 환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所要量證明書에 갈음하는 서류이다. 이 제도는 所要量證明機關에서 하는 所要量證明節次를 생략하고 還給機關이 所要量證明節次와 還給節次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告示品目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과 같은 所要量管理制度는 너무 복잡하고 過多·過少還給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政府와 企業 모두 많은 費用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위장수출, 수출물품의 단위실량책정 등 관세환급상의 주요 요소에 대

한 사전확인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아직도 所要量管理를 國家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民間自律化를 지향해 가는 經濟基調에 역행하는 것이다¹⁾.

第2節 關稅還給制度의 政策目標와 改善方向

1. 輸出支援과 國產化

1997年 改編 以前 關稅還給制度下에서는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수입원재료를 사용·수출할 경우 관세 등을 환급하고 있었다. 1995년의 경우 환급액 규모는 약 1조 2천 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수출액의 1.28%에 달하는 규모로서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특히 수출업체는 1조 2천억원에 상당하는 자금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에 따른 金融費用은 약 330억원 내지는 4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환급수속에 따른 각종 還給費用을 감안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700억원 정도에 달하리라는 예상이며 미환급되는 관세 등과 기타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關稅還給制度로 인한 社會的 費用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關稅還給制度는 輸入原料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세환급제도가 수입원재료 사용에 대한 金融費用을 촉발하여 국산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기의 환급비용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제도를 통하여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이러한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原材料 및 中間材의 輸入依存度가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WTO協定에서는 회원국이 讓許한

1) 박상태(1996) p. 239.

관세 이외에 각국의 관세정책에 대하여 그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는 補助金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國產原料에 대한 代替還給制度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WTO협정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定性 있는 補助金을 금지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關稅政策의 產業政策的 役割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關稅還給制度를 포함한 關稅支援制度가 무역정책과 국내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리라고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關稅支援制度의 政策的 重要性을 고려하여 환급을 포함한 관세지원제도의 經濟的 效果를 理論的으로 분석하고 그 運用現況 및 우리나라 中間材 輸入依存度の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保稅工場類의 關稅免除制度나 關稅還給制度가 輸出補助金과 같은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輸出支援에 기여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관세지원제도가 수입원료에 부과된 관세로 인한 生産費用 引上效果를 제지할 뿐만 아니라 國內消費에 대하여 消費稅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로 말미암아 수출업체의 收益性이 증대됨은 물론 국내자원이 환급이 없을 때보다 수출생산에 더 많이 유입되고 內需減縮에 따른 여유분의 생산재가 수출에 투입되는 효과를 관세환급제도가 유발한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還給金이 總輸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90년 당시 2.59%에 달하였고 이후 關稅率引下豫示制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1995년에는 총수출액의 1.28%를 차지하고 있어 환급금이 수출업체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원자재 국산화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분석결과가 회의적이다. 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산원료의 생산증대는 이미 이에 대한 關稅賦課로 달성되었고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산화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 關稅免除는 輸入原料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

하기 이전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동시에 관세부과 및 면제로 인한 행정비용만 유발하므로 關稅를 零稅率로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세환급과 같은 관세감면제도는 국산화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實效性이 의문시된다.

그 이유는 國產化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中間材産業의 경우 관세환급에 따른 保護效果가 還給費用에 正比例하므로 환급절차가 간소화되면 될수록 중간재의 국내생산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환급비용이 클수록 수출은 감소하고 환급비용이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還給費用에 상당한 比率을 제외한 關稅率 輕減이 社會的 費用을 제거하고 國庫에도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 더 우월한 제도이다. 더욱이 기초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수출하는 업체는 生産所要期間이 장기간이므로 동종의 單純加工業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金融費用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세환급제도는 生産工程期間이 짧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國內 附加價値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傾斜關稅率 構造의 효과를 감소할 수 있다.

한편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수출업체로부터의 설문조사는 상기의 주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우선 수출용원료 수입액이 많은 품목의 關稅率을 引下하거나 차선택으로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 즉 還特稅率의 適用對象을 확대·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제도의 확충도 관세환급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앞에서 논의된 國產化 정도에 따라 輸出用 輸入原料 또는 全體 輸入原料에 대하여 關稅率을 輕減하여 주는 제도가 각종 환급비용을 유발하는 관세환급제도에 비하여 더 바람직한 제도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第4章에서는 上記의 理論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中間材 輸入依存度의 變化(1980~1993년)를 검토하고 關稅率政策과 關稅還給制度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시행된 1983년 이후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1980년 당시 24.2%에서 1993년

23.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重工業의 輸入依存度는 동 기간에 4.8%나 떨어져서 1993년 현재 20.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中間材 輸入(國內需要 對比)의 감소는 정부와 민간경제부문에서 여러 방면에 걸친 지속적인 국산화 노력에 기인함은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關稅率引下豫示制 施行으로 中間材와 完製品의 關稅率隔差를 0.1%로 축소함으로써 1985년 이후 국내자원이 중간재산업에 유입되도록 한데 그 일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관세율인하예시제로 중간재산업의 관세율이 상당히 감소하여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할 기회가 발생하였으나 완제품의 관세율은 더욱 인하되었고 따라서 완제품의 수입은 증가함에 따라서 중간재로 자원이 유입될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환언하면 비록 중간재를 포함한 평균관세율은 떨어졌지만 中間材와 完製品間의 相對的 保護隔差가 緩和됨으로써 국내자원이 이전보다는 중간재산업으로 더 많이 유입될 동기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같은 기간에 關稅還給制度는 존속되어 왔고 또한 關稅率 引下와 함께 還給節次의 簡素化로 金融 및 還給費用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관세환급제도보다는 관세율인하예시제로 인하여 中間材의 國產化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의 均等關稅率體制를 통하여 中間材의 國產化를 유도하고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하여 수출산업에 의한 자금 및 환급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수출증대를 촉진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관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사료된다.

1996년 단행되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關稅還給制度 改編案은 事後精算制度의 導入으로 수출지원의 강화와 함께 企業自律의 所要量證明制度로 환급비용을 줄이고 과다·과소환급 또는 미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되었다. 第4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未還給額의 規模는 1993년에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還給對象 輸出을 기준으로 한 미환급액은 1993년 현재 약 500억원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출품에 體化되지 않아 WTO協定上 환급이 不許된 연료와 음식료품 등의 消費財와 消耗品을 포함하고 또한 總輸出을 基準으로 한 未還給額도 2,6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는 1990년에 비하면 약 800억원 감소한 수치로서 上記의 還給不許額이 固定的 費用이고 또한 그 규모도 수출증대와 함께 증가함을 고려하면 1993년의 미환급액은 還給對象 輸出에 의거한 未還給額에 근접하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중공업과 비교할 때 경공업에서의 미환급액이 상당하고 수출대비 미환급률은 더욱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경공업내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改正案이 중소기업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定額還給率表의 告示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균 환급액 이외에도 平均納付稅額을 기초로 還給率表를 작성하도록 하여 還給對象品目の 확대와 精確한 還給額 산출을 유도한 것은 바람직한 개선방안인데 실제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國產化가 定着되지 않은 產業에서는 관세환급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고 국산화가 진척된 경우라도 관세환급제도는 관세부과 이후 면제에 따른 금융 및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國產化에 대한 實效性도 의문시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산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선진 제국에서는 原資材에 대하여 낮은 關稅率을 유지하고 선택적으로 保稅工場이나 輸出自由地域과 같은 關稅免除制度를 중점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關稅還給制度도 관세지원제도의 고유한 목적인 輸出支援에 중점을 둘 필요가 대두되었고, 다행히도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관세환급제도는 이러한 정책목표에 초점을 둔 정책선회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2. 1997年 還特法 改正의 改善內容

1997년 還特法 改正案은 事後精算制度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기업자율의 所要量證明으로 정부의 사전적 통제를 가급적 완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이 밖에도 第1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복잡다기한 각종 관세환급제도와 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급비용을 절감하고 미환급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데 개편안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還特法 改正案 第5條 제2項에 의거한 事後精算制度란 原材料 輸入業體가 신청하는 경우 業體別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별의 익월 말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관세 등과 지급보류된 환급금을 동시에 精算하는 제도로서 관세가 猶豫되는 최대기한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수출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수출업체의 경우 納期를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半期로, 그리고 중소기업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에 의하여 그 납기를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개월까지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規則 第4條)²⁾.

따라서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되는 업체가 지켜야 할 관세 등의 최종 納付期限, 즉 마감일은 동일하지만 輸入申告日에 따라 그 納付期間은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후정산업체가 신청하여 결정되는 환급금은 그 결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일괄납부기간 익월 15일의 精算申告까지 그 지급이 보류되는 것이 이번 개정 환특법의 특징이며(法 第16條 第3項) 다만 사후정산업체가 아닌 환급신청업

2) 한편 수출용 수입원재료의 관세 등 納期가 장기간임을 이용하여 內需用임에도 불구하고 輸出用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정산결과 일괄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지급보류된 환급액보다 많은 등 관세 등의 일괄납부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職權精算對象으로 한다(令 第8條, 規則 第8條).

체는 환급신청시 즉시환급이 가능하다(鄭在完, 1997). 事後精算制度를 적용하는 수출용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담보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원칙적으로 일괄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한 금액의 擔保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法 第6條 第1, 2項).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내 다단계거래시 內國信用狀 등에 의한 공급도 수출로 인정하고 사후정산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法 第5條 第3項). 이는 기초원재료를 수입·가공함으로써 國內 生産의 附加價値를 높이고 中間材産業과 中小企業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성격의 거래를 환급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다만 국내 다단계거래에 대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려면 수많은 중소기업과 거래단계에 대한 전산처리가 필요하므로 그 시행시기는 관세청장이 차후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사후정산업체가 국내업체에게 수출용 수입원재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物品代金에 포함하여 되돌려 받아야 하며 最終輸出者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다단계거래시 수입원료를 국내에서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업체는 사후정산제도의 혜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하루바삐 다단계거래시에도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환급절차의 전산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事後精算制度는 현행법상 概算還給制度나 先還給後精算制度和 달리 그 대상이 모든 還給申請에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환급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사후정산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자금부담과 금융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事後精算을 위한 行政節次를 최대한 간편하게 함으로써 未還給 또는 過小還給되는 事例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정산제도의 施行結果와 利用度에 따라 당해 제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다양한 각종 관세환급제도를 정리하고 단순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還特法の 개정 以前에는 환급금산출에 사용되는 소요량은 정부가 그 소요량을 계산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同法 第10條에서 기업자율의 所要量證明書 發給을 인정하여 환급금산출에 필요한 原材料所要量 計算을 환급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정부는 사후 관리하도록 하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國立技術品質院이 고시하는 基準所要量이나 非告示品目は 서류심사에 의한 所要量 策定에 근거하여 세관장, 시도지사 등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제도가 복잡하고 과다·과소환급이 발생하였는데 改正案에서는 기업이 실제 사용한 소요량에 의하여 원자재 사용량을 산출함으로써 과다·과소환급을 억제하고 소요량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게 하였다³⁾.

다만 同種·同質의 물품이 반복수출되고 일정량의 원자재가 사용될 경우 관세청장이 최근 3년간의 平均所要量을 기반으로 標準所要量을 책정 고시하되 관세율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급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法 第10條 第2項). 따라서 환급신청자에게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標準所要量을 적용하거나 스스로 작성한 所要量을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환급금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자체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는 영세중소업자는 1998년 6월 30일까지 현행의 소요량

3) 사후정산제도 및 기업자율적인 소요량 관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전산화를 통한 수출입 및 소요량·기납중관리가 필수적인바, 본 개정안은 EDI시스템 등 환급제도의 전산화를 입법화하여 환급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還給法 第15條). 그리고 성실한 기업자율의 소요량관리를 위하여 위법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을 포함하였다(同法 第23條).

-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요량증명서나 기납증을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련서류의 보관의무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法 附則 第5條).

한편 基礎原材料 納稅證明書의 발급을 성실업체나 關稅士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 가공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 등 納付稅額의 증명을 위하여 稅關長이 발부하는 기납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업체나 관세사가 발급하여 환급업무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환급신청자와 수출품의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신청은 수출품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작성된 所要量計算書에 준거하여야 한다(令 第11條 第3項). 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의 약 26%가 수출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과거 수출이행기간은 1년 6개월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2년으로 연장하여 기한경과로 미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法 第9條 第1項).

이 밖에도 還給所要期間의 단축을 통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先還給 後審査制度를 확대하였는데 특히 還給節次의 전산화를 통하여 수출입 사실유무 환급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을 電算確認하고 사후에 일괄 심사함으로써 10여일에 달하는 환급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후심사의 조사기간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환급제도의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法 14條, 令 第2條 第2項). 또한 定額還給率表制度를 改善하여 수출업자도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平均還給額 이외에 平均納付稅額을 기초로 還給率表를 작성하도록 하여 환급대상 품목의 확대와 정확한 환급액 산출을 유도하였다(令 第16條 第1項). 이는 중소기업이 환급인력 부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定額還給率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동 개정안은 선진제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代替還給制度를 導入하여 국산화정책에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

第3條 2項). 대체환급제도란 수입원재료와 同種·同質의 國產原材料를 사용하여 생산된 수출품에 대하여 관세 등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WTO협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3억달러로 全體 還給額의 60%)·호주·일본 등에서도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國產原材料의 輸入原材料 代替를 인정하는데 다만 總還給額이 關稅徵收額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시행내용에 따라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듯 代替還給制度는 잘 활용된다면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산재에 대한 일종의 補助金 役割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中間材産業의 育成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단계로 볼 때 중요한 정책목표인바, 國際法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동 제도를 이용하여 成長潛在力이 있는 中間材産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還特法에서의 '國產原材料로 생산한 輸出物品에 대하여 이와 同一한 輸入原材料에 납부한 關稅 등을 환급할 수 있다'를 국제관례에 맞추어 '輸入原材料를 代替하여'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미국은 同時使用, WTO 및 호주는 代替性을 강조한다).

이번 還給特例法의 개정은 1975년 환특법 제정 이래 전면개정的方式으로 진행되어 第1節에서 제시된 관세환급제도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事後精算制度의 적용으로 관세납부를 유예하고 환급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代替還給制度의 도입으로 원재료의 국산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기업자율의 所要量證明과 이용도가 부진한 업체별·품목별 定額還給의 廢止 그리고 平均所要量의 自律的 申請 등으로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환급을 유도함으로써 수출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다만 附加價值稅도 관세 등과 함께 일

팔납부하도록 하지 못한 점과 국내 다단계거래에 대한 事後精算을 즉각 적용하지 못한 점 등이 차후 關稅還給制度의 改善事例로 존속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도 환급업무의 전산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事後精算制度의 實際 施行時 신속한 행정절차를 동반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고유한 목적인 수출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擔保管理나 一括納付 등에 따른 還給節次의 複雜性으로 수출업체들이 당해 제도의 이용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당국은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向後 關稅還給制度의 改善方向

1997년 7월 1일 이후에는 關稅還給時 事後精算制度로 인하여 수출업체는 자금비용을 최대 6개월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原料輸入後 還給까지의 平均所要期間이 100여일임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수출업체는 관세환급에 따른 자금부담과 금융비용이 면제되어 관세 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국내 다단계거래에도 앞으로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된다면 關稅免除效果는 상당하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는 그 고유한 목적인 수출지원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 본 개정안의 특색이라 하겠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환급제도가 輸出補助金과 같이 수출증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국산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고 오히려 輸出業體에게 金利費用과 資金負擔 등의 還給費用만 부담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정책전환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수한 제도와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대가 신속하고 단순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民間經濟의 利用度가 미미하여 無用之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還給節次를 簡素化하는 일도 제도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 절에서 제기된 각종 관세환급제도의 난립과 환급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정부

주도의 所要量管理制度는 관세환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환급절차를 가급적이면 단순화하고 기업자율의 소요량증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국내 다단계거래시 이에 대한 事後精算을 즉각 적용하지 못하여 생산과정에서 다단계거래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기존의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의 개편에 이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당국의 실행과제는 하루빨리 還給業務의 電算化를 이룩하는 일이다. 이는 다단계거래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단계거래의 사후정산을 가급적이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전술한 대로 사후정산제도의 시행으로 복잡해진 담보관리와 일괄납부 등을 고려할 때 새로이 도입된 事後精算制度의 成功 與否는 還給節次의 簡素化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산화 및 증빙서류의 단순화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와 관련된 제비용을 절감함으로써 事後精算制度의 利用度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한편 1997년 환급특례법의 개편으로 우리나라 關稅還給制度가 最善의 關稅支援制度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선진제국이 原資材에 대하여 低率의 관세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保稅工場이나 自由貿易地區(free trade zone)를 이용하여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원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마련된 代替還給制度는 납부된 관세액 이내에서 特定商品의 國產化에 일종의 補助金役割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臺灣의 경우에는 1988년 이후 關稅率 5% 이하의 輸入財에 대한 還給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대만이 지속적인 貿易黑字를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정책 변화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당 규모의 무역적자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 대만과 달리 貿易收支

를 희생하면서까지 중간재산업을 육성할 수 없으며 또 인위적으로 중간재산업을 保護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代替還給制度를 통하여 簡略한 還給節次를 유지할 수 있고 이와 함께 中間材 國產化에도 유용한 제도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中間材産業이 일정단계까지 성장하게 되면 第2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關稅免除나 還給制度는 원자재 국산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을 유발하고 國產化에 대한 經濟的 效果는 還給이 留保된 比率에 正比例하게 됨으로써 비생산적인 社會的 費用을 擔保로 한 국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차라리 關稅率을 환급비용을 고려하여 一定比率 輕減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증대나 국내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관세환급제도보다 더욱 우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관세지원제도를 입안함에 있어서 關稅賦課에 따른 福祉效果와 非效率性을 함께 고려하여 천연자원과 같이 국산화가 불가능한 原資材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低率의 關稅率을 도입하고 關稅還給制度의 縮小를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成長潛在力이 큰 中間材産業의 경우 정부가 선별적으로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되 수출지원을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輸出入自由地域이나 保稅工場 등의 關稅支援制度和 代替還給制度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WTO협약이 特定的인 補助金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關稅政策은 비록 平均關稅率이 關稅讓許에 따라 점차 인하된다 하더라도 對産業政策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더욱이 덤핑防止 關稅制度나 原產地 規定 등을 통하여 선진국이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국제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관세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이 恣意的으로나 政治的 壓力에 의하여 關稅率政策을 운용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다만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資本市場의 不完全性(market

imperfection)이 존재하거나 재산권의 명확한 규정이 불가능한 戰略産業에 대하여는 保護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해당산업의 수입재나 국산재를 원료로 하는 수출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가를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關稅支援制度 중에서도 關稅還給制度나 保稅工場은 輸出支援에, 그리고 代替還給制度는 國產化政策에 중요한 産業支援制度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關稅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선별적인 지원정책을 유지하려면 關稅率政策을 중심축으로 하되 上記의 지원제도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논의가 輸入依存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산화를 위하여 關稅政策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주장은 아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貿易自由化를 통한 輸出爲主의 經濟成長政策을 유지하는 한 輸出原料에 대한 輸入依存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값싸고 품질 좋은 輸入中間材를 통하여 輸出이 촉진될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輸入을 통하여 여유의 국내자원이 成長潛在力이 있는 産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關稅還給制度를 통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資金負擔을 加重시켜 원재료와 중간재의 국산화를 달성한다는 두 가지 政策目標은 사실 서로 相衝되는 課題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향후에도 국산화가 遙遠한 輸入原材料에 대하여 관세환급제도로 금융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수출증대를 저해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關稅還給制度 개편이 국산화보다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政策 旋回라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中間材와 投資財의 國產化는 關稅率引下豫示制 이후 技術集約的인 機械 및 器機産業에서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均等關稅率體制를 계속 유지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中間材와 投資財產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關稅還給制度는 輸出促進에, 그리고 關稅率體制는 國產化에 초점을 맞추어 政策手段과 政策目標가 명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第8章 要約 및 結論

1997년 7월 1일 이후에는 개정된 關稅還給特例法이 전면 시행된다. 개편안은 事後精算制度의 도입으로 還給費用의 節減을 통한 輸出競爭力 強化와 企業自律의 所要量證明을 중심으로 關稅還給制度의 簡素化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원재료 수입업체는 최대한 6개월간 수입원자재에 대한 關稅 등을 猶豫받아 원자재수입 후 수출까지 資金費用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改編 以前 關稅還給制度下에서는 이러한 全面的인 關稅猶豫制度가 존재하지 않아 1995년 당시 總還給額은 약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이에 상당한 資金負擔과 金融費用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還給比重은 수출액의 약 1.3%에 달하여 관세환급제도가 輸出産業의 收益性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였다.

원래 관세환급제도는 輸入原料에 대한 關稅 등을 還給함으로써 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세환급제도가 輸入原材料 使用에 대한 金融費用을 촉발하여 國產財 使用을 促進하기 위한 目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즉, 상기의 막대한 환급비용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原資材와 中間材의 國產化가 貿易收支 改善과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였으므로 관세환급제도에 의존하여 이들 제품의 국산화를 촉진하려는 정책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WTO체제에서는 회원국이 讓許한 關稅 이외에는 각국의 關稅政策에 대하여 그 自律性을 인정하여 關稅還給制度도 補助金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반면 補助金協定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定性 있는 補助金을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WTO체제가 貿易自由化를 위하여 각종 非關稅障壁도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점차 관세를 제외한 기타 무역장벽과 보조금을 규제하려는 대외적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서 關稅還給制度를 포함한 關稅政策의 産業政策的 役割은 상대적으로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關稅政策의 重要性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關稅還給制度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하고 國際的 比較와 資料分析을 통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第2章에서 還給을 포함한 關稅支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理論的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第4章에서는 우리나라 中間材 輸入依存度의 變化와 産業別 關稅還給制度의 利用度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關稅還給制度와 輸入構造의 聯關性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第3章에서는 關稅還給制度의 變遷過程과 運用現況을 제시하였고 第5章에서는 관세환급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企業實態調査를 분석하여 그 問題點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밖에도 第6章의 國際比較를 통하여 선진국의 관세환급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關稅支援制度의 發展方向을 논하였다.

第2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關稅還給制度를 포함한 關稅支援制度는 輸出補助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출지원에 기여한다. 이는 관세지원제도가 수입원료에 부과된 關稅로 인한 生産費用 引上效果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國內消費에 대하여 消費稅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로 말미암아 수출업체의 收益性이 증대됨은 물론 國內生産이 증대하고 內需減縮에 따른 여유 생산품이 수출에 투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은 輸出額 對比 還給比重이 1990년 당시 약 2.6%에 달하였고 이후 關稅率引下豫示制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1995년에는 1.3%에 상당하여 관세환급이 輸出業體의 收益性에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原資材 國産化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분석 결과가 매우 懷疑의이다. 왜냐하면 國産化 比率이 낮은 原資材産業에서는 국산원료의 생산증대는 이미 이에 대한 關稅賦課로 달성되었고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하여만 관세가 免除 또는 輕減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輸出用 輸入原料에 대하여만 關稅를 減免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산화 비율이 높은 원재료의 경우 수출용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면제는 關稅賦課로 인한 生産增大 效果를 무효화하고 오히려 관세로 인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므로 關稅를 零稅率로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환급과 같은 關稅輕減은 국산화에 최소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實效性이 의문시된다. 이는 國産化가 還給率에 正比例하고 이외에도 行政費用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관세환급으로 야기되는 국산화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全體 輸入原料에 대한 還給費用을 고려한 關稅率輕減은 관세환급제도와 똑같은 국산화효과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환급비용을 국가재정으로 환수하고 관세율인하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관세환급제도는 과도한 金融費用을 야기하여 生産工程期間이 짧은 産業의 발전을 촉진하고 國內 附加價値의 增大를 목적으로 하는 傾斜關稅率構造의 效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第3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關稅還給制度는 일반적으로 輸出用 原材料를 製造·加工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좁은 의미의 關稅還給制度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相計制度和 還給에 갈음하는 稅率引下制度까지도 포함한다.

關稅還給制度는 환급액의 산출주체에 따라 크게 定額還給制度和 個別還給制度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定額還給制度는 관세청장이

미리 정하여 놓은 定額還給率表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을 소요원재료 수입시의 納付稅額으로 간주하여 환급하는 제도로서 적용범위에 따라 簡易定額還給制度와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로 나누어진 다. 이 제도는 個別還給制度에 비해 환급신청서류의 작성 및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관세환급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수출업체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個別還給制度는 수출업체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받은 관세를 소요량증명서 및 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환급받는 제도이다. 個別還給制度에는 一般個別還給制度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先還給·後精算制度, 先支給·後審査制度 등이 있다. 個別還給方法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還給額 計算이 정확하여 過多·過少還給 問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關稅還給額을 계산할 때 확인사항이 많아 還給額 計算業務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關稅還給制度의 類型別 還給實績을 살펴보면 政府가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定額還給制度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定額還給制度의 확대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1996年の 경우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은 전체 환급액의 5.4%에 불과하며 전체환급액의 대부분인 94.6%가 個別還給制度에 의해 환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 777억원 중에서 簡易定額還給制度에 의한 환급액은 688억원으로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에 의한 환급액 89억원보다 훨씬 많다.

個別還給制度에 의한 還給實績을 살펴보면 一般個別還給制度에 의한 환급실적이 아직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환급절

차를 간소화한 先還給·後精算制度和 先支給·後審査制度가 一般個別還給制度를 상당부분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1996年の 一般個別還給制度에 의한 환급실적은 6,779억원으로 전체 個別還給實績 1조 3,580억원의 49.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985년부터 시행된 先還給·後精算制度에 의한 환급실적이 3,430억원으로 25.3%를 차지하였다. 先支給·後審査制度에 의한 환급실적은 전체 個別還給實績의 24.8%인 3,371억원으로 개별환급제도 중에서 이용실적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先支給·後審査制度가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利用實績이 저조하다기보다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第5章에서 關稅還給制度의 利用現況과 각 제도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467개의 輸出企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關稅還給制度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簡易定額還給制度,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 一般個別還給制度, 先還給·後精算制度, 先支給·後審査制度 그리고 相計制度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關稅還給制度의 종류가 너무 많다. 이에 따라 個別業體의 입장에서는 制度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還給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書類가 너무 많고 還給節次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에 따라 關稅還給과 관련하여 會社가 지불해야 하는 直接費用과 政府와 銀行이 지불하는 間接費用을 합한 社會的 費用이 매우 크다. 셋째,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還給은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調查結果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 關稅還給이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한다고 답한 企業은 41.1%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關稅還給制度를 축소할 경우 그 대안으로 調查對象企業의 44.3%가 輸出用 原材料 輸入額이 많은 품목의 關稅率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의 대안이 定額還給制度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현재 中小企業에만 적용되고 있는 簡易定額還給制度를 모든 企業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현재 유명무실한 還特稅率制度의 對象品目を 확대·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세번째 대안이었으며, 保稅工場 指定을 확대하는 등 保稅工場制度의 확대·운영이 네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시행된 1983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中間材 輸入依存度(國內需要 對比)의 變化를 살펴보면 수입의존도는 1980년 당시 24.2%에서 1993년 23.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產業別로는 重工業의 (中間材) 輸入依存도가 같은 기간에 4.8%나 떨어져서 1993년 당시 20.3%에 달하고 있고 輕工業에서는 輸入依存도가 무려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993년, 16.9%). 또한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투자재의 경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重工業 中間材와 投資財 輸入依存度の 減少는 물론 정부와 기업의 다방면에 걸친 국산화 노력과 지원정책에 기인하는데 관세율 정책과 관련하여 논하면 關稅率引下豫示制가 중공업 중간재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均等關稅率體制의 施行으로 中間材와 完製品의 關稅率 隔差가 1982년 당시 평균 7.7%에 달하던 것이 1990년과 1993년에는 각각 0.5%와 0.1%로 축소됨에 따라서 제1차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시작된 1983년 이후 국내자원이 중간재산업으로 대거 유입될 여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중간재와 완제품에 대한 相對的 保護水準의 變化는 이들 製品의 相對價格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의하여 국내자원이 중간재산업으로 이동할 기회를 촉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세율의 변화는 경공업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지만 이는 基本關稅率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잦은 調整關稅의 運用으로 경공업에서는 관세율격차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張權鎬, 1997). 그리하여 1980년과 1993년 사이에 수입의존도는 消費財產業과 輕工業의 中間材産業에서 증가하고 重工業

의 中間材産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자원이 중공업에서도 중간재산업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에 關稅還給制度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또한 關稅率引下와 還給節次の 簡素化로 還給費用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관세환급제도 보다는 관세율인하예시제로 인하여 中間材의 國產化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均等關稅率體制를 통하여 中間材의 國產化를 촉진하고 關稅還給制度를 개선하여 수출산업에 의한 자금 및 환급비용을 축소함으로써 輸出支援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關稅政策이 지향해야할 政策方向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1997년 關稅還給制度의 改編으로 企業自律의 所要量證明制度가 도입되어 還給節次가 簡素化되었고 이에 따라서 각종 행정비용과 과다·과소환급되는 사례 그리고 미환급되는 사례가 감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었다. 還給實態調査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는 각종 환급제도의 난립과 복잡다기한 환급절차 그리고 정부주도의 소요량관리제도로 인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에게 환급수속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未還給額의 規模가 상당하리라고 예상되어 왔는데 다행히 第4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규모는 최근 많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還給對象輸出을 기준으로 한 미환급액은 1993년 당시 약 500억원에 불과하고 總輸出을 기준으로 한 미환급액은 2,6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환급되지 않는 연료와 음식료품 등의 消費財와 消耗品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韓國銀行의 産業聯關表에 나타난 輸入投入係數는 內需와 輸出에 관한 平均的인 投入係數임에 비하여 수입원료가 실제로는 수출품에 집중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총수출보다는 환급대상 수출을 기준한 추정환급액이 실제환급액에 근접하고 있다는 판단이며 이는 미환급액이 1993년 당시 약 500억원에 달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위에서 언급된 總輸出基準의 ‘理想的인’ 最大還給額이 1990년에 비하면 약 800억원 감소하였는데 還給不許額이 固定的費用이며 그 규모도 수출증대와 함께 증가함을 고려하면 1993년의 미환급액은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重工業과 비교할 때 輕工業에서 추정된 未還給額이 상당하고 또한 輸出額에 대비한 未還給比率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관세환급제도로 인한 부담이 경공업에 편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中小企業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따라서 1997년 關稅還給制度의 改編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定額還給制度를 개선하여 還給對象品目の 擴大와 정확한 還給額 算出을 유도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변화인데 施行 方案에서도 실제로 中小企業이 이 제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政府가 企業自律의 所要量證明書 發給을 인정하여 기업이 실제 사용한 소요량에 의하여 원자재 사용량을 산출함으로써 과다·과소환급을 억제하고 소요량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고 先還給·後審査制度를 확대하는 등 복잡다기한 還給節次를 簡素化하여 미환급액이 최소한도로 줄 수 있도록 한 것도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關稅還給制度의 改編案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변화는 事後精算制度로서 수출업체는 앞으로 자금비용을 최대 6개월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原料輸入後 還給까지의 平均所要期間이 100여 일임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수출업체는 환급에 따른 자금부담이 없어 關稅免除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내 다단계 거래에서도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된다면 關稅免除效果는 상당하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는 그 고유한 목적인 輸出支援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 본 改正案의 特色이라 하겠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급제도가 輸出補助金과 같이 수출확대에 큰 영향

을 줄 수 있는 반면 국산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고 오히려 輸出業體에게 金利費用과 資金負擔 등의 還給費用을 부담하게 하여 불필요한 社會的 費用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改正案이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의 폐단을 감안하여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전환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개편안은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代替還給制度를 우리나라에서도 導入하여 향후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국산화정책에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체환급제도는 國產原材料의 輸入原材料 代替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WTO협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호주·일본 등에서도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總還給額이 關稅徵收額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시행 내용에 따라 보조금과 같이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還給節次를 대폭 簡素化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WTO체제가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환급제도를 활용하여 전략산업, 특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中間材産業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의된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가 最善의 關稅支援制度로 탈바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還給節次의 電算化 未備로 국내 다단계거래에 대한 事後精算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사후정산제도의 실제운영에 있어서 일괄납부와 담보관리 등 복잡다기한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근본적으로는 선진제국이 原資材에 대하여 低率의 關稅率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保稅工場이나 自由貿易地區(free trade zone)를 이용하여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臺灣의 경우 중간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1988년 이후부터는 關稅率 5% 이하의 輸入財에 대한 還給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물론 대만이 지속적인 貿易黑字

를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정책변화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분간 상당 규모의 무역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가 대만과 달리 무역수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중간재산업을 육성할 수 없으며 또 人爲的으로 중간재산업을 保護할 필요도 없다.

특히 中間材産業이 일정단계까지 성장하게 되면 第2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關稅免除나 關稅還給은 原資材의 國產化에 크게 도움이 되는 制度가 아니다. 오히려 비생산적인 사회비용을 유발하고 國產化 效果는 환급이 留保된 比率에 正比例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關稅率을 一定比率 輕減하는 것이 관세환급제도보다 더욱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關稅賦課에 따른 福祉效果와 資源配分の 非效率性을 고려하여 국산화가 불가능한 原資材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低率의 關稅率을 도입하고 關稅還給制度를 縮小하여야 한다. 다만 성장잠재력이 큰 중간재산업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關稅를 통한 保護政策을 유지하되 수출지원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관세환급제도를 대신하여 선진국과 같이 輸出入自由地域이나 保稅工場制度를 활용할 수 있다.

WTO체제하에서는 特定的인 補助金이 규제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關稅政策은 비록 平均關稅率이 關稅讓許에 따라 점차 인하된다 하더라도 對産業政策으로서의 그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非關稅障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반면 덤핑防止關稅制度나 原產地規定 등 關稅政策을 통한 差別的 貿易政策은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전술한대로 우리 정부는 국제협상에서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서라도 관세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이 恣意的으로나 政治的 壓力에 의하여 關稅率政策을 운용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다만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資本市場의 不完全성이 존재하거나 財產權의 명확한 規定이 불가능한 戰略産業에 대하여는 關稅를 賦課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당해 산업제품을 원료로 하는

輸出産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가를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關稅還給制度나 保稅工場은 輸出支援에, 그리고 代替還給制度는 國産化에 중요한 産業支援制度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關稅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선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 現行 關稅率體系를 중심축으로 하여 대체환급제도와 보세공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금 강조한다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높은 輸入依存度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關稅政策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輸出 爲主의 經濟成長政策을 유지하려면 輸出原料에 대한 輸入依存度는 높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값싸고 품질 좋은 中間材 輸入을 통하여 輸出이 촉진될 수 있다면 그리고 輸入을 통하여 여유의 국내자원이 成長潛在力이 뛰어난 産業에 투입될 수 있다면 이러한 자원배분을 초래하는 정책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效率的 政策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關稅還給制度에서 수출지원과 더불어 수출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원재료 및 중간재의 국산화를 달성하려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國産化를 유도하기보다는 非效率的인 資源配分을 야기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근본적으로 당해 제도는 원자재의 국산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政策手段이 아니었다.

따라서 1997년도 關稅還給制度의 改編內容이 國産化보다 輸出競爭力 強化에 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政策旋回라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본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中間材와 投資財의 國産化는 關稅率引下豫示制 이후 重工業의 中間材, 특히 技術集約的인 産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均等關稅率體制의 基調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市場機能에 의하여 國內資源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中間材와 投資財產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關稅還給制度는 輸出促進에, 그리고 關稅率體制

는 國產化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춤으로써 명확한 政策目標에 대하여 합리적인 政策手段이 동원되는 政策의 明瞭性和 一貫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關稅廳, 『稅關年鑑』, 各年度.
- _____, 『世界貿易機構 協定文』, 1995.
- _____, 電算資料.
- 金鍾湖·金鍾善,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課稅負擔免稅制度에 관한 研究』, 稅務大學 租稅問題研究所, 1986.
- 金珍洙·安鍾錫, 『經濟與件的 變化와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 研究報告書 94-03, 韓國租稅研究院, 1994.
- 朴相泰, 『關稅制度의 運營現況과 改善方向』, 政策報告書 96-04, 韓國租稅研究院, 1996.
- 俞正鎬, 『韓·臺·日의 輸入依存構造 比較』, 韓國開發研究院, 1995.
- 俞正鎬·洪聖薰·李在鎬, 『產業保護와 誘因關係의 歪曲』, 研究報告書 93-02, 韓國開發研究院, 1993.
- 李廷永·柳時律, 「關稅還給節次 簡素化 方案 < I >」, 『The Customs Journal』, 1990.
- _____, 「關稅還給節次 簡素化 方案 < II >」, 『The Customs Journal』, 1991.
- 李正吉, 『關稅還給業務』, 韓國財政經濟研究所, 1995.
- 張槿鎬, 『關稅率 政策의 長期的 改善方向』, mimeo, 韓國租稅研究院, 1997.
- 鄭在完, 「'97 關稅還給制度 改編內容 解說(上)」, 『關稅』, 1997.
- _____, 「'97 關稅還給制度 改編內容 解說(下)」, 『關稅』, 1997.
- 通商產業部, 內部資料.
- 韓國關稅研究所, 『關稅政策課題의 理解』, 調查資料 94-6, 1994.
- _____, 『알기쉬운 關稅還給業務』, 1995.
- 韓國貿易協會, 『關稅還給制度의 改善方向-輸出企業의 說問 및 實態

- 調査를 中心으로』, 1989.
- 韓國銀行, 『1993年 産業聯關表』, 1996.
- _____, 『80-85-90年 接續不變産業聯關表 作成概要』, 1994.
- _____, 電算資料.
- 韓弘烈,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 財政部 關稅司·關稅總局 編印, 『關務年譜(1994年)』, 1994.
- 財政部 租稅委員會 編印, 『中華民國財政(1994年)』, 1994.
- 經濟部 投資業務處, 『外銷品沖退原料稅損辦法』, 1995.
- Australian Customs Service, *Australian Customs Notice*, Various Years.
- _____, *Drawback Accounting and Computing System(DBACS)*, 1996.
- _____, “Duty Drawback and Tariff Export Concession (TEXCO) Schemes,”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s & Technology, 1994.
- Lee, Jong-Wha, “Capital Goods Import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8, 1995, pp. 91~110.
- Lucas, Robert E. Jr.,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Vol. 61, No. 2, March 1993, pp. 251~272.
- Panagariya, Arvind, “Input Tariffs, Duty Drawbacks and Tariff Refo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2, 1992.
- U.S. Customs Service, *Customs Drawback Program*, 1996.
- _____, *Customs Performance Report*, 1987.
- _____, *Foreign Trade Zone Regulation*, mimeo, 1996.
- _____,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1994.

_____, *NAFTA Drawback Instructions*, mimeo, 1996.

_____, *U.S. Customs Update*, 1990, 1992.

Wu, Chia-Shengg and Shui-Chi Chuang, "Design and Operation of Duty Drawback Systems," Depart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s, 1995.

4.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명(수출액수기준) : _____

H.S. 10단위 분류번호 :

--	--	--	--	--	--	--	--

5. 가장 중요한 수출용 수입원재료명 : _____

H.S. 10단위 분류번호 :

--	--	--	--	--	--	--	--

6. 1994년도에 수입원자재나 중간재로 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액수는 전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환급받지 못하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수용 제품은 제외)

(1) 환급받지 못한 관세액수(94년도) : _____ 원

(2) 환급받지 못한 주요 사유 : 1) _____
2) _____

7. 귀사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지 않고 타회사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중간재를 구입하여 수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사용된 중간원재료 매입액수와 전가세액(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세액)은 1994년 기준으로 대략 얼마나 되었다고 추정하십니까?

매입액수 _____ 원

전가세액 _____ 원

8. 귀사에서는 수출 또는 국내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이나 기납 증을 받기 위한 1994년도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평균세액증명서, 수입면장 등의 이용건수와 그 금액(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 초 원 재 료 납 세 증 명 서 : 이용건수 _____ 건 액수 _____ 원

평 균 세 액 증 명 서 : 이용건수 _____ 건 액수 _____ 원

수입면장(분할증명서 포함) : 이용건수 _____ 건 액수 _____ 원

II. 수출현황과 환급유형별 이용실태

아래의 자료는 수출규모에 따른 환급실적과 각종 환급제도의 이용도를 통계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귀사가 이용하고 있는 제도의 해당란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귀사에서 1994년도에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출하였습니까?

(1) 전량 수출하였다

(2) 그렇지 않다

9-1. 그러면 판매내역을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구 분	백 분 율 (%)
수 출	%
로 컬 공 급	%
내 수 판 매	%
기타 (무엇? _____)	%
합 계	100%

10. 기업현황(매출액, 수출액, 수입액 등은 꼭 기재된 화폐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연 도		
	1992	1993	1994
매 출 액	원	원	원
*순 이 익	원	원	원
수 출 액	달러	달러	달러
*환 급 액	원	원	원
*양도(기납증발급)세액	원	원	원
- 내수용수입액	달러	달러	달러
- 수출용수입액	달러	달러	달러
수 입 액(합계)	달러	달러	달러

주 : 1. 순이익-법인세 공제전 당해연도 순이익

2. 환급액-관세 등 제반 소비세를 포함한 총환급액

11. 수출면장금액별 수출건수 비율

(기준연도 : 1994년)

수출면장건당 수출금액	수출건수		
	정액환급건수	개별환급건수	계
5만달러 이하			
5만달러 ~ 10만달러			
10만달러 ~ 20만달러			
20만달러 이상			
합계			

12. 환급유형별 이용실태

(기준연도 : 1994년)

환급유형 I	환급유형 II	환급신청건수	환급금액
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합계		
개별환급	개산선환급		
	선지급·후심사		
	일반개별환급		
	합계		
총	계		

※ 내국 신용장에 의해 로컬공급한 실적을 포함

III. 관세환급관련 소요일수와 경비

아래는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등의 세금을 환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각종 경비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3. 환급신청 빈도수 : 월평균 _____ 회

(연평균 _____ 회 : 환급신청 빈도수가 월 1회 이하인 경우는 연평균으로 기재하시오)

14. 귀사의 경우 관세환급신청을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세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까?

- (1) 회사에서 전부 직접 신청·처리하고 있다(대부분 직접 처리)
- (2) 직접 신청·처리하는 것이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많다(직접 처리 > 관세사 의뢰)
- (3) 직접 신청·처리하는 것과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거의 같다(직접 처리 = 관세사 의뢰)
- (4)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많다(직접 처리 < 관세사 의뢰)
- (5) 관세사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고 있다(대부분 관세사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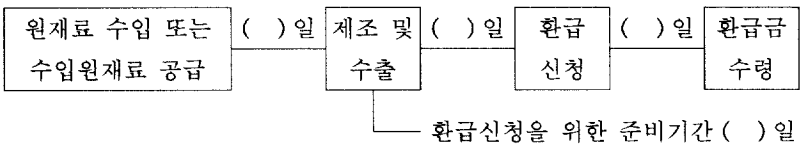
14-1. (직접 처리하는 경우만) 그러면 관세환급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래 중에서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 (1) 관세환급금을 PC로 계산하고 신청서를 PC로 타자쳐서
- (2) 관세환급금을 PC로 계산하고 신청서를 타자기로 타자해서
- (3) 관세환급금을 PC로 계산하고 신청서를 손으로 써서
- (4) 관세환급금을 손으로 계산하고 신청서를 타자기로 타자해서
- (5) 관세환급금을 손으로 계산하고 신청서를 손으로 써서

15. 개별환급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문 17로 가시오

15-1. 개별환급을 받기까지의 소요일수를 적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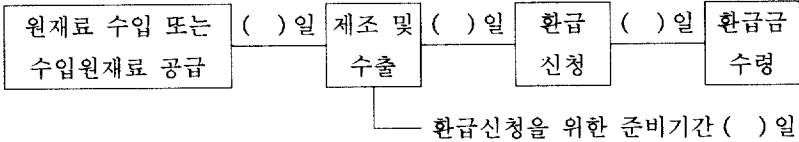
16. 개별환급 소요일수는 다음 중 어떤 환급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것입니까?

- (1) 개산선환급
- (2) 선지급·후심사
- (3) 일반개별환급

17. 정액환급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문 19로 가시오

17-1. 정액환급을 받기까지의 소요일수를 적어 주십시오.



18. 정액환급 소요일수는 다음 중 어떤 환급유형을 기준한 것입니까?

- (1)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2) 간이정액환급

19. 관세환급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기까지의 자금부담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일반 회사운영자금으로 충당한다.
 (2) 은행 등 일반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다. 그 이자율은 대략 _____ % 이다.
 (3) 사채 등으로 충당한다. 그 이자율은 대략 _____ % 이다.
 (4) 수입자가 대신 부담한다.
 (5) 기타 _____

20. 연간 관세환급업무와 관련된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항목별로 적어 주십시오.

- 환급관련 인건비	원
- 관세사 대행 수수료	원
- 기타 경비	원
○ 연간 관세환급 소요경비 총액	원
	수출액의 %

• 관세환급 당사자가 현행 Nego 등 무역관련 업무를 전부 수행할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환급관련 인건비 = 월간평균 환급업무 수행일수 / 30日 × 월간 인건비 × 환급관련 소요인원수 × 12개월

IV. 현행 제도와 관련한 사항

21. 현행 관세환급제도 중 귀사가 이용한 적이 있는 제도 중에서 이용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3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제 1 (), 제 2 (), 제 3 ()
- (1) 個別還給制度(개별환급제도)
 - (2) 少額簡易定額還給制度(소액간이정액환급제도)
 - (3)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 (4) 先還給·後精算制度(선환급·후정산제도)
 - (5) 相計制度(상계제도)
 - (6) 平均稅額證明書制度(평균세액증명서제도)
22. 관세환급을 받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제 1 (), 제 2 ()
- (1) 많은 제도의 난립으로 인한 제도선택의 곤란 등 환급제도의 복잡
 - (2) 환급신청 등 환급절차의 복잡
 - (3) 소요량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복잡
 - (4) 장기에 걸친 환급소요기간
 - (5) 기타 (무엇? 구체적으로 _____)
 - (6) 애로사항 없음
23.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198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장상계제도가 귀사의 자금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도움이 되었다 (2) 다소 도움이 되었다
 - (3) 거의 도움이 안 되었다 (4) 이용한 적이 없다
24.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198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장상계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관세납부 불필요로 인한 일체의 자금부담 해소
 - (2) 징수·환급의 불필요로 인한 환급부대비용 등의 절감
 - (3) 과다·과소환급에 따른 대민마찰의 제거

25. 그러면 기장상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제 1 (), 제 2 ()
- (1) 국산가능원재료의 상계대상 불인정 등 상계대상원재료의 제한
 - (2) 상계대상업체 요건의 제한적 운영
 - (3) 상계원재료의 용도변경시 25%의 가산세 추정
 - (4) 상계원재료의 국내거래 불허
 - (5) 상계원재료 수입통관 및 상계신청절차의 복잡
 - (6) 기타 (무엇? _____)
 - (7) 문제점이 없음
26.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환급·후정산제도가 귀사의 자금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도움이 되었다 (2) 다소 도움이 되었다
 - (3) 거의 도움이 안 되었다 (4) 이용한 적이 없다
27. 수출면장만으로 전년도 평균환급액의 100%를 우선 지급하여 주고 있는 선환급·후정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제 1 (), 제 2 ()
- (1) 개산환급 후 정산신청을 단기간 내(3~6개월)에 해야 하는 어려움
 - (2) 개산환급과 정산환급신청의 이중절차
 - (3) 소정기간내 정산불이행에 대한 10%의 가산세 추정
 - (4) 개산환급기관의 제한
 - (5) 환급액이 적어서 개산환급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없다
 - (6) 기타 (무엇? _____)
 - (7) 문제점이 없음
28. 소액수출물품의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198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귀사의 환급절차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도움이 되었다 (2) 다소 도움이 되었다
 - (3) 거의 도움이 안 되었다 (4) 이용한 적이 없다

29. 그러면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제 1 (), 제 2 ()

- (1) 적용대상 수출업체(전년도 총환급실적이 1억원 이하인 업체)의 제한적 운영
- (2)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단위당 환급금액의 부정확으로 인한 과소환급의 발생
- (3) 간이정액환급비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1년간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 제한
- (4) 간이정액환급제도 대상품목의 제한
- (5) 기타 (무엇? _____)
- (6) 문제점이 없음

30.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전년도 환급실적 총액이 몇 억원 이하인 업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 (1) 5천만원
- (2) 1억원
- (3) 1억 5천만원
- (4) 2억원
- (5) 3억원
- (6) 모든 수출업체에 적용

31.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단위당 환급금액이 실제 환급받아야 할 금액에 비하여 몇 %나 '과소환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1) 과소환급되지 않고 있다
- (2) 5% 이내
- (3) 6~9%
- (4) 10~14%
- (5) 15~19%
- (6) 20% 이상
- (7) 이용한 적이 없다

32. 정액환급대상이나 과소환급 등으로 실제 개별환급을 받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문 33으로 가시오

32-1.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3. (모든 응답자 해당) 석유나 목재와 같은 기초원재료 외에 기계류와 같은 중간재를 관세환급이라는 자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산재 대신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2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 제 1 (), 제 2 ()

- (1) 국산중간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 (2) 국산중간재의 질이 수입재에 비하여 그 수준이 떨어진다
- (3) 관세환급의 자금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다
- (4) 수입재의 관세부담이 원래 작다
- (5) 제품의 구매업체가 수입재 사용을 권장한다
- (6) 수입하고 있는 외국산중간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국산재가 없다
- (7) 기타 (무엇? _____)

34. 관세환급제도의 목적은 원자재 수입시 자금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국산 원재료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관세환급제도로 인하여 국산원재료 사용이 증대되었다고 보십니까?

- (1) 국산원재료 사용이 증대되었다 → 문 35로 가시오
- (2) 국산원재료 사용이 증대되지 않았다

34-1. (증대되지 않은 경우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5. 국산원재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특정물품에 대하여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개별환급금 지급제한제도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 (1)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 (2) 현행 수준 정도로 존속하여야 한다
- (3) 국산원재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V.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

36. (모든 응답자 해당) 만약 정부에서 관세환급제도를 축소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제 1 (), 제 2 ()

- (1) 保稅工場制度(보세공장제도) 등 비환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 (2) 수출용원재료 수입액이 많은 품목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 (3) 還特稅率(환특세율) 대상품목을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 (4) 기타 (무엇? _____)
- (5) 별도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없다

환특세율이란 수입원자재의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쓰여질 경우 실제 관세율을 총수입 중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로 조정하여 적용함으로써(즉, 실질관세율=명목관세율×내수용수입/총수입) 관세환급의 절차를 생략하여 환급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는 제도입니다.

37. 이 제도가 관세환급제도나 보세공장제도와 비교할 때 귀사의 수출업무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별로 안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7-1. 관세환급제도와 비교할 때 환특세율제도는 수출업무에

- (1) 도움이 되었다 —————> 문 37-3으로 가시오
- (2) 도움이 되지 않았다

37-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7-3. (모든 응답자 대상) 보세공장제도와 비교할 때 환특세율제도는 수출업무에

- (1) 도움이 되었다 —————> 문 38로 가시오
- (2) 도움이 되지 않았다

37-4.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8. (모든 응답자 대상) 귀사가 관세환급제도 대신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면 이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1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39. 소요량증명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39-1. 소요량증명제도 개선방안

39-2. 자율적인 '성실신고'의 보완책

관세청에서는 1997년 하반기부터 전산에 의한 관세환급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환급신청시 수출입면장 제출 생략 및 각종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고 수출업체는 사무실에서 EDI 방식으로 직접 관세청에 환급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디스켓에 수록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토록 하여 세관에 나오지 않고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된 관세환급의 세관심사를 컴퓨터에 의해 수출입 사실 및 수출입면장의 이중사용 확인 등 기본 요건만을 확인하도록 하고 소요량 등 컴퓨터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부정환급 등의 우려가 있는 업체만을 선별하여 사후에 심사토록 하는 표본확인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정확한 관세환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40. 앞으로는 관세환급을 서류로 하지 않고 관세환급 전산시스템만을 이용하게 된다면 귀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 대단히 찬성한다
- (4) 찬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2)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 (1)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40-1. 모든 관세환급업무가 전산화된다면 귀사의 경우 어떤 어려움이 예상됩니까? 3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1) _____
- (2) _____
- (3) _____

41.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이 완료되어 컴퓨터로 환급신청하게 될 경우 환급금 지급은 은행이 담당하고 환급결정업무는 세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5) 대단히 찬성한다
- (4) 찬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2)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 (1)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41-1.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3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1) _____
- (2) _____
- (3) _____

42. 현행 기준소요량은 수출물품의 평균소요량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고시한 것인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소요량은 귀사의 실제소요량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1) 실제소요량이 기준소요량보다 낮다(실제소요량 < 기준소요량)
 - (2) 실제소요량과 기준소요량의 차이가 거의 없다(실제소요량 ≈ 기준소요량)
 - (3) 실제소요량이 기준소요량보다 높다(실제소요량 > 기준소요량)
43. 만일에 귀사의 경우 실제소요량이 기준소요량보다 많아서 과소환급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1) 실제소요량으로 환급을 허용한다면 실제소요량으로 환급한다
 - (2) 소요량의 격차가 큰 수출품목은 실제소요량으로 환급하고 차이가 적은 수출품목은 기준소요량으로 환급한다
 - (3) 기준소요량으로 환급한다
44.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않은 비교시품목은 시·도지사 등 소요량증명기관으로부터 단위소요량증명서(단위실량 책정내역)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1) _____
 - (2) _____
45. 현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회사는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다 바람직하게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공급업체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자율발급토록 하고 세관이 사후 일괄신고하는 신고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 (2) 현행 제도에 별 애로사항이 없다
 - (3)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
 - (4) 기타 (무엇? _____)

관세청에서는 별도의 물품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의 신용을 담보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수출 후 환급금을 징수할 세액에 충당하면서 분기별로 그 차액만 일괄납부하는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업체의 전년도 환급액과 신용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책정된 담보액 한도 내에서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고, 관세환급신청에 의한 관세환급금은 납부하지 않았던 세액에 충당토록 한다.
- 일정기간(분기)별로 미납세액과 관세환급금 총당금액을 확인하여 관세환급금을 초과하는 미납세액만을 납부토록 한다.

이 제도는 수입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점에서는 종전의 사전면세제도 및 상계제도와 유사하나, 사후관리절차가 없어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수출용원재료 수입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6. 별도의 물적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의 신용을 담보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수출 후 환급금을 징수할 세액에 충당하면서 분기별로 그 차액만 일괄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귀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5) 대단히 찬성한다
- (4) 찬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2)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 (1)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46-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1) _____
- (2) _____

47. 관세환급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모두 적어 주시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불필요한 서류명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48.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도가 있다면 모두 적어 주시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불필요한 제도명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49. 관세환급제도의 개편을 위한 귀사의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간편하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附錄 II.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實態調查 結果

<附表 1> 關稅還給 專擔部署의 有無

(단위 : 개, %)

		기업수	있다	없다
기업규모	대기업	132	22.7	77.3
	중소기업	335	3.6	96.4
	전체	467	9.0	91.0
업종	농림수산업	2	0.0	100.0
	경공업	181	7.7	92.3
	음식료품	12	0.0	100.0
	섬유·가죽제품	147	8.8	91.2
	종이·나무제품	7	0.0	100.0
	기타 제조업제품	15	6.7	93.3
	중공업	283	9.9	90.1
	화학제품	82	12.2	87.8
	석유·석탄제품	3	0.0	100.0
	요업·토석제품	5	0.0	100.0
	계1차금속	21	4.8	95.2
	금속제품	20	5.0	95.0
	일반기계	23	8.7	91.3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1.0	89.0
	정밀기기	14	7.1	92.9
	운송기계	15	13.3	9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100.0
	전체	467	9.0	91.0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1.1	98.9
	250만~500만달러	73	1.4	98.6
	500만~1,000만달러	71	5.6	94.4
	1,000만~2,500만달러	107	3.7	96.3
	2,500만~5,000만달러	41	9.8	90.2
	5,000만~1억달러	32	18.8	81.3
	1억달러 이상	53	41.5	58.5
	전체	467	9.0	91.0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2.8	97.2
	1천만~5천만원	121	0.8	99.2
	5천만~1억원	60	1.7	98.3
	1억~10억원	177	7.9	92.1
	10억원 이상	73	34.3	65.7
	전체	467	9.0	91.0

<附表 2> 關稅還給業務用 컴퓨터의 種類

(단위: 개, %)

		기업수	대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PC급 (W/S 포함)	컴퓨터 (PC) 없다
기업규모	대기업	132	31.1	15.9	49.2	3.8
	중소기업	335	3.9	14.9	61.2	20.0
	전체	467	11.6	15.2	57.8	15.4
업종	농림수산업	2	0.0	0.0	50.0	50.0
	경공업	181	5.0	16.0	54.7	24.3
	음식료품	12	25.0	16.7	50.0	8.3
	섬유·가죽제품	147	3.4	16.3	55.1	25.2
	종이·나무제품	7	14.3	14.3	28.6	42.9
	기타 제조업제품	15	0.0	13.3	66.7	20.0
	중공업	283	15.9	14.8	59.7	9.5
	화학제품	82	14.6	13.4	64.6	7.3
	석유·석탄제품	3	33.3	33.3	33.3	0.0
	요업·토석제품	5	40.0	0.0	40.0	20.0
	제1차금속	21	19.1	9.5	52.4	19.1
	금속제품	20	5.0	15.0	65.0	15.0
	일반기계	23	34.8	13.0	39.1	13.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1.0	14.0	66.0	9.0
	정밀기기	14	28.6	14.3	50.0	7.1
	운송기계	15	13.3	40.0	46.7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100.0	0.0
전체	467	11.6	57.8	57.8	15.4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1.1	7.8	62.2	28.9
	250만~500만달러	73	4.1	11.0	67.1	17.8
	500만~1,000만달러	71	4.2	9.9	62.0	23.9
	1,000만~2,500만달러	107	6.5	17.8	63.6	12.2
	2,500만~5,000만달러	41	14.6	19.5	61.0	4.9
	5,000만~1억달러	32	18.8	34.4	43.8	3.1
	1억달러 이상	53	52.8	20.8	26.4	0.0
	전체	467	11.6	15.2	57.8	15.4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2.8	8.3	55.6	33.3
	1천만~5천만원	121	5.8	9.9	62.8	21.5
	5천만~1억원	60	1.7	16.7	61.7	20.0
	1억~10억원	177	7.9	18.1	62.2	11.9
	10억원 이상	73	42.5	19.2	37.0	1.4
	전체	467	11.6	15.2	57.8	15.4

<附表 3> 關稅選給業務 擔當社員數

(단위: 개, 명)

		기업수	전산직사원	일반사원	담당사원 총수
기업규모	대기업	132	0.4	1.9	2.3
	중소기업	335	0.1	1.3	1.4
	전체	467	0.2	1.5	1.7
업종	농림수산업	2	0.0	1.5	1.5
	경공업	181	0.2	1.6	1.6
	음식료품	12	0.1	1.3	1.4
	섬유·가죽제품	147	0.2	1.4	1.6
	종이·나무제품	7	0.1	1.1	1.3
	기타 제조업제품	15	0.3	1.3	1.6
	중공업	283	0.2	1.5	1.7
	화학제품	82	0.2	1.6	1.8
	석유·석탄제품	3	0.7	2.0	2.7
	요업·토석제품	5	0.2	1.4	1.6
	제1차금속	21	0.1	1.4	1.5
	금속제품	20	0.3	1.3	1.6
	일반기계	23	0.2	1.9	2.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0.2	1.5	1.7
	정밀기기	14	0.4	1.1	1.6
	운송기계	15	0.5	1.7	1.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1.0	1.0
전체	467	0.2	1.5	1.7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0.1	1.2	1.3
	250만~500만달러	73	0.1	1.3	1.4
	500만~1,000만달러	71	0.1	1.3	1.4
	1,000만~2,500만달러	107	0.2	1.3	1.4
	2,500만~5,000만달러	4	0.2	1.6	1.8
	5,000만~1억달러	3	0.3	1.7	2.0
	1억달러 이상	53	0.7	2.7	3.2
	전체	467	0.2	1.5	1.7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0.2	1.2	1.3
	1천만~5천만원	121	0.1	1.2	1.3
	5천만~1억원	60	0.1	1.3	1.4
	1억~10억원	177	0.2	1.4	1.6
	10억원 이상	73	0.6	2.4	2.8
	전체	467	0.2	1.5	1.7

<附表 4> 還給받지 못한 關稅額(1994)

(단위: 개, 백만원)

		기업수	평 균	총 액
기업규모	대기업	65	95.9	6,233.6
	중소기업	189	29.4	5,552.8
	전체	254	46.4	11,786.4
업 종	농림수산업	0	0	0
	경공업	112	35.8	4,012.9
	음식료품	4	1.3	5.3
	섬유·가죽제품	95	37.8	3,592.2
	종이·나무제품	3	1.2	3.5
	기타 제조업제품	10	41.2	411.9
	중공업	142	54.7	7,773.5
	화학제품	43	70.4	3,028.5
	석유·석탄제품	0	0	0
	요업·토석제품	1	15.0	15.0
	제1차금속	8	22.4	179.0
	금속제품	11	59.4	653.8
	일반기계	9	157.3	1,415.4
	전기 및 전자기기	59	37.7	2,222.9
	정밀기기	5	5.8	29.2
	운송기계	6	38.3	229.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
	전체	254	46.4	11,786.4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39	9.4
250만~500만달러		42	26.2	1,101.3
500만~1,000만달러		39	47.5	1,851.2
1,000만~2,500만달러		63	27.5	1,731.7
2,500만~5,000만달러		26	36.3	944.4
5,000만~1억달러		14	56.3	788.0
1억달러 이상		31	161.4	5,002.3
전체		254	46.4	11,786.4
환 금 액		1천만원 미만	12	8.6
	1천만~5천만원	56	13.4	748.7
	5천만~1억원	33	54.2	1,787.6
	1억~10억원	111	32.0	3,549.6
	10억원 이상	42	133.3	5,597.3
	전체	254	46.4	11,786.4

<附表 5> 選給받지 못한 主要 事由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시효기간 경과, 절차복잡	인력 부족	기준 소요량 과소/과대	면장 기업의 잘못	면장 미회수	기업 중 미수령	HS 번호 기재 상이	부일치	규격 불일치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65	93	16.1	3.2	2.2	1.1	4.3	2.2	1.1	2.2	2.2	65.6
	중소기업	190	254	21.3	3.9	3.9	3.9	2.4	2.8	3.2	2.8	2.8	53.1
	전체	255	347	19.9	3.7	3.5	3.2	2.9	2.6	2.6	2.6	2.6	56.5
업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114	156	21.8	5.1	3.8	3.8	3.8	3.2	3.2	5.1	5.1	44.9
	음식료품	4	4	25.0	0.0	0.0	0.0	0.0	0.0	0.0	0.0	0.0	75.0
	섬유·가죽제품	97	136	19.9	5.2	3.7	4.4	3.7	3.7	3.7	4.4	5.9	45.6
	종이·나무제품	3	4	50.0	0.0	25.0	0.0	25.0	0.0	0.0	0.0	0.0	0.0
	기타 제조업체품	10	12	33.3	8.3	0.0	0.0	0.0	0.0	0.0	16.7	0.0	41.7
	중공업	141	191	18.3	2.6	3.1	2.6	2.1	2.1	2.1	0.5	0.5	66.0
	화학제품	43	59	18.6	3.4	1.7	5.1	1.7	0.0	5.1	1.7	0.0	62.7
	요업·토석제품	1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제1차금속	8	1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80.0
	금속제품	11	17	11.8	11.8	0.0	0.0	5.9	11.8	0.0	0.0	5.9	52.9
	일반기계	9	11	0.0	0.0	9.1	9.1	9.1	0.0	0.0	0.0	0.0	72.7
	전기 및 전자기기	58	77	22.1	1.3	3.9	1.3	1.3	1.3	1.3	0.0	0.0	67.5
	정밀기기	5	6	16.7	0.0	16.7	0.0	0.0	16.7	0.0	0.0	0.0	50.0
	운송기계	6	1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8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255	347	19.9	3.7	3.5	3.2	2.9	2.6	2.6	2.6	2.6	56.5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40	53	22.6	5.7	5.7	3.8	0.0	3.8	5.7	0.0	0.0	52.8
	250만~500만달러	42	51	25.5	2.0	5.9	3.9	0.0	2.0	2.0	5.9	2.0	51.0
	500만~1,000만달러	39	53	30.2	9.4	1.9	3.8	1.9	1.9	1.9	1.9	0.0	47.2
	1,000만~2,500만달러	63	89	18.0	3.4	2.3	2.3	3.4	2.3	3.4	4.5	6.7	53.9
	2,500만~5,000만달러	26	37	5.4	2.7	2.7	5.4	5.4	5.4	0.0	0.0	2.7	70.3
	5,000만~1억달러	14	20	5.0	0.0	0.0	5.0	15.0	5.0	5.0	0.0	0.0	65.0
	1억달러 이상	31	44	20.5	0.0	4.6	0.0	2.3	0.0	0.0	2.3	2.3	68.2
	전체	255	347	19.9	3.7	3.5	3.2	2.9	2.6	2.6	2.6	2.6	56.5
환급액	1천만원 미만	12	17	17.7	11.8	0.0	0.0	0.0	0.0	5.9	0.0	5.9	58.8
	1천만~5천만원	56	72	25.0	5.6	2.8	4.2	1.4	2.8	1.4	5.6	4.2	47.2
	5천만~1억원	33	44	22.7	4.6	4.6	0.0	0.0	9.1	2.3	2.3	2.3	52.3
	1억~10억원	112	154	18.2	3.3	3.9	4.6	4.6	1.3	3.9	2.0	2.0	56.5
	10억원 이상	42	60	16.7	0.0	3.3	1.7	3.3	1.7	0.0	1.7	1.7	70.0
	전체	225	347	19.9	3.7	3.5	3.2	2.9	2.6	2.6	2.6	2.6	56.5

<附表 6> 中間原材料 買入額 및 轉嫁稅額(1994)

(단위: 개, 백만원)

		매 입 액			전가세액		
		기업수	평 균	총 액	기업수	평 균	총 액
기업규모	대기업	81	22,675.8	1,836,736.2	81	665.8	53,928.3
	중소기업	184	3,991.3	734,408.1	179	156.2	27,953.7
	전체	265	9,702.4	2,571,144.3	260	314.9	81,882.0
업 종	농림수산업	0	0	0	0	0	0
	경공업	112	4,223.0	472,972.6	109	350.8	38,234.4
	음식료품	4	1,317.5	5,270.0	4	82.5	330.0
	섬유·가죽제품	96	4,697.5	450,962.0	94	395.0	37,131.4
	종이·나무제품	1	0.6	0.6	0	0	0
	기타 제조업제품	11	1,521.8	16,740.0	11	70.3	773.0
	중공업	153	13,713.5	2,098,171.7	151	289.1	43,647.6
	화학제품	39	21,407.4	834,890.0	39	379.1	14,783.0
	석유·석탄제품	1	19,500.0	19,500.0	1	77.0	77.0
	요업·토석제품	1	2,580.0	5,160.0	2	252.0	504.0
	제1차금속	12	10,451.7	125,420.0	12	384.7	4,616.0
	금속제품	10	13,764.0	137,640.0	10	74.9	749.0
	일반기계	11	9,425.9	103,685.2	11	611.6	6,727.4
	전기 및 전자기기	64	5,105.9	326,780.0	62	161.9	10,035.6
	정밀기기	8	276.3	2,210.0	8	11.1	89.0
	운송기계	6	90,481.1	542,886.5	6	1,011.1	6,066.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	0	0	0
전체	265	9,702.4	2,571,144.3	260	314.9	81,882.0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39	4,080.3	159,131.0	38	48.5	1,842.4
	250만~500만달러	35	2,940.0	102,896.5	34	174.2	5,923.6
	500만~1,000만달러	38	2,376.1	90,290.6	36	200.5	7,218.0
	1,000만~2,500만달러	67	4,565.5	305,891.0	67	165.4	11,081.6
	2,500만~5,000만달러	26	3,933.5	102,270.0	25	163.9	4,097.0
	5,000만~1억달러	20	7,110.8	142,215.2	20	241.0	4,819.4
	1억달러 이상	40	41,711.3	1,668,450.0	40	1,172.5	46,900.0
	전체	265	9,702.4	2,571,144.3	260	314.9	81,882.0
환 금 액	1천만원 미만	14	688.6	9,640.0	12	10.6	127.0
	1천만~5천만원	56	3,119.1	174,671.6	54	67.4	3,637.3
	5천만~1억원	36	1,923.9	69,260.0	36	51.8	1,865.0
	1억~10억원	101	4,450.9	449,537.5	102	238.0	24,278.3
	10억원 이상	58	32,207.5	1,868,035.2	56	928.1	51,974.4
	전체	265	9,702.4	2,571,144.3	260	314.9	81,882.0

<附表 7> 關稅還給을 위한 各種 證明書 利用件數 및 金額

(단위: 개, 건, 백만원)

기업 규모	기초원재료납입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기업 수	이용건수		액 수		기업 수	이용건수		액 수		
		평균	합 계	평균	합 계		평균	합 계	평균	합 계	
대기업	101	631	63,743	696	70,315	5	839	4,197	2,646	13,230	
중소기업	246	234	57,532	217	53,389	11	16	180	172	1,896	
전체	347	349	121,275	356	123,704	16	274	4,377	945	15,126	
업종	농림수산업	0	0	0	0	0	0	0	0	0	
	경공업	138	293	40,386	155	21,341	5	794	3,989	408	2,040
	음식료품	6	72	431	142	854	0	0	0	0	0
	섬유·가죽제품	121	321	38,815	159	19,230	4	994	3,974	507	2,027
	종이·나무제품	2	67	133	18	37	0	0	0	0	0
	기타 제조업제품	9	112	1,007	136	1,220	1	15	15	13	13
	중공업	209	387	80,889	490	102,363	11	35	388	1,190	13,086
	화학제품	61	646	39,404	807	49,252	3	29	88	92	276
	석유·석탄제품	0	0	0	0	0	0	0	0	0	0
	요업·도석제품	5	180	900	969	4,845	0	0	0	0	0
	제1차금속	18	321	5,780	481	8,664	0	0	0	0	0
	금속제품	12	132	1,582	123	1,478	0	0	0	0	0
	일반기계	15	162	2,429	136	2,034	0	0	0	0	0
	전기 및 전자기기	80	369	29,485	420	33,570	8	38	300	1,601	12,810
	정밀기기	9	24	216	117	1,050	0	0	0	0	0
	운송기계	9	121	1,093	163	1,470	0	0	0	0	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	0	0	0	0	0	0	0
전체	347	349	121,275	356	123,704	16	274	4,377	945	15,126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58	68	3,957	72	4,187	3	31	94	93	278
	250만~500만달러	50	465	23,243	169	8,454	2	7	14	23	45
	500만~1,000만달러	53	162	8,567	91	4,836	3	11	33	91	274
	1,000만~2,500만달러	83	194	16,119	382	31,671	1	12	12	30	30
	2,500만~5,000만달러	34	177	6,011	162	5,497	1	15	15	50	50
	5,000만~1억달러	25	749	18,726	405	10,134	2	62	123	709	1,418
	1억달러 이상	44	1,015	44,652	1,339	58,925	4	1,022	4,086	3,258	13,031
	전체	347	349	121,275	356	123,704	16	274	4,377	945	15,126
환급액	1천만원 미만	16	46	730	63	1,013	0	0	0	0	0
	1천만~5천만원	84	194	16,313	120	10,082	5	11	56	62	309
	5천만~1억원	44	109	4,793	125	5,488	1	12	12	40	40
	1억~10억원	142	271	38,466	141	20,083	5	42	211	105	527
	10억원 이상	61	1,000	60,973	1,427	87,037	5	820	4,098	2,850	14,250
	전체	347	349	121,275	356	123,704	16	274	4,377	945	15,126

<附表 7>의 繼續

기업 규모	기업 수	수 입 면 장				합 계					
		이용건수		액 수		이용건수		액 수			
		평균	합 계	평균	합 계	평균	합 계	평균	합 계		
대기업	112	736	82,457	20,657	2,313,562	129	1,166	150,397	18,582	2,397,107	
중소기업	261	184	48,081	739	192,879	322	329	105,793	771	248,163	
전체	373	350	130,538	6,720	2,506,440	451	568	256,190	5,865	2,645,271	
업 종	농림수산업	2	32	64	2,424	4,848	2	32	64	2,424	4,848
	경공업	143	225	32,239	229	32,802	172	445	76,614	327	56,183
	음식료품	11	69	763	233	2,561	12	100	1,194	285	3,415
	섬유·가죽제품	114	267	30,462	257	29,306	140	523	73,251	361	50,563
	종이·나무제품	5	60	300	43	214	6	72	433	42	251
	기타 제조업제품	13	55	714	55	721	14	124	1,736	140	1,954
	중공업	227	433	98,235	10,876	2,468,790	277	648	179,512	9,329	2,584,240
	화학제품	67	228	15,302	23,885	1,600,301	82	668	54,794	20,120	1,649,830
	석유·석탄제품	2	238	475	23,750	47,500	2	238	475	23,750	47,500
	요업·토석제품	5	461	2,305	1,658	8,289	5	641	3,205	2,627	13,134
	계1차금속	15	171	2,571	6,898	103,474	21	398	8,351	5,340	112,138
	금속제품	17	82	1,401	597	10,145	19	157	2,983	612	11,623
	일반기계	18	951	17,112	6,149	110,682	22	888	19,541	5,123	112,716
	전기 및 전자기기	80	606	48,490	6,746	539,653	97	807	78,275	6,042	586,033
	정밀기기	13	111	1,442	1,749	22,742	13	128	1,658	1,830	23,792
운송기계	10	914	9,136	2,600	25,998	15	682	10,229	1,831	27,46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	1	6	6	1	1	1	6	6	
전체	373	350	130,538	6,720	2,506,440	451	568	256,190	5,865	2,645,271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62	123	7,617	230	14,271	86	136	11,668	218	18,736
	250만~500만달러	52	102	5,310	180	9,344	69	414	28,567	259	17,843
	500만~1,000만달러	56	162	9,078	90	5,018	69	256	17,678	147	10,128
	1,000만~2,500만달러	97	159	15,461	1,486	144,186	105	301	31,592	1,675	175,887
	2,500만~5,000만달러	36	219	7,899	370	13,322	40	348	13,925	472	18,869
	5,000만~1억달러	26	783	20,364	1,156	30,043	32	1,225	39,213	1,300	41,595
	1억달러 이상	44	1,473	64,809	52,051	2,290,256	50	2,271	113,547	47,244	2,362,212
	전체	373	350	130,538	6,720	2,506,440	451	568	256,190	5,865	2,645,271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28	36	1,016	104	2,908	32	55	1,746	123	3,922
	1천만~5천만원	80	51	4,054	124	9,927	117	175	20,423	174	20,318
	5천만~1억원	53	86	4,566	162	8,562	59	159	9,371	239	14,090
	1억~10억원	154	260	40,051	1,147	176,672	173	455	78,728	1,140	197,282
	10억원 이상	58	1,394	80,851	39,800	2,308,371	70	2,085	145,922	34,424	2,409,658
	전체	373	350	130,538	6,720	2,506,440	451	568	256,190	5,865	2,645,271

<附表 8> 1994年度 生産製品的 全量輸出 與否

(단위: 개, %)

		기업수	전량 수출하였다	그렇지 않다
기업규모	대기업	132	6.8	93.2
	중소기업	335	21.2	78.8
	전체	467	17.1	82.9
업종	농림수산업	2	100.0	0.0
	경공업	181	28.7	71.3
	음식료품	12	8.3	91.7
	섬유·가죽제품	147	29.3	70.8
	종이·나무제품	7	0.0	100.0
	기타 제조업제품	15	53.3	46.7
	중공업	283	9.2	90.8
	화학제품	82	3.7	96.3
	석유·석탄제품	3	0.0	100.0
	요업·토석제품	5	0.0	100.0
	제1차금속	21	0.0	100.0
	금속제품	20	0.0	100.0
	일반기계	23	17.4	82.6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6.0	84.0
	정밀기기	14	21.4	78.6
	운송기계	15	0.0	10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100.0
전체	467	17.1	82.9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18.9	81.1
	250만~500만달러	73	20.6	79.5
	500만~1,000만달러	71	25.4	74.7
	1,000만~2,500만달러	107	16.8	83.2
	2,500만~5,000만달러	4	12.2	87.8
	5,000만~1억달러	3	15.6	84.4
	1억달러 이상	53	3.8	96.2
	전체	467	17.1	82.9
	환금액	1천만원 미만	36	19.4
1천만~5천만원		121	23.1	76.9
5천만~1억원		60	23.3	76.7
1억~10억원		177	13.6	86.4
10억원 이상		73	9.6	90.4
전체		467	17.1	82.9

<附表 9> 生産製品の 販賣内譯

(단위 : 개, %)

		기업수	수 출	로컬공급	내수판매	기 타
기업규모	대기업	123	29.67	21.39	48.61	0.33
	중소기업	261	34.27	28.96	35.83	0.26
	전체	384	32.79	26.56	39.92	0.28
업 종	농림수산업	0	0.00	0.00	0.00	0.00
	경공업	127	41.63	27.36	29.87	0.15
	음식료품	10	22.59	4.31	72.67	0.00
	섬유·가죽제품	103	42.80	32.55	23.28	0.18
	종이·나무제품	7	13.61	9.21	77.17	0.00
	기타 제조업제품	7	79.57	2.00	18.43	0.00
	중공업	256	28.46	25.98	45.07	0.35
	화학제품	79	30.12	24.36	44.93	0.59
	석유·석탄제품	3	33.33	2.00	64.67	0.00
	요업·토석제품	5	12.76	35.80	51.44	0.00
	제1차금속	21	19.44	29.01	51.26	0.29
	금속제품	20	39.67	9.83	50.51	0.00
	일반기계	19	26.25	14.32	59.43	0.00
	전기 및 전자기기	83	28.20	35.97	34.94	0.46
	정밀기기	11	37.26	15.18	47.55	0.01
	운송기계	15	19.42	20.70	59.88	0.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20.00	80.00	0.00	0.00
전체	384	32.79	26.56	39.92	0.28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71	20.21	26.62	52.06	0.35
	250만~500만달러	58	28.52	31.29	38.34	0.30
	500만~1,000만달러	52	38.89	27.13	33.07	0.38
	1,000만~2,500만달러	89	36.38	26.11	37.17	0.35
	2,500만~5,000만달러	36	34.75	26.05	38.84	0.36
	5,000만~1억달러	27	26.17	23.08	50.75	0.00
	1억달러 이상	51	44.83	23.45	31.66	0.06
	전체	384	32.79	26.56	39.92	0.28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28	26.99	16.36	55.89	0.18
	1천만~5천만원	92	23.01	27.73	48.71	0.25
	5천만~1억원	46	33.12	29.74	37.03	0.11
	1억~10억원	152	37.65	26.15	34.95	0.48
	10억원 이상	66	37.48	28.08	34.38	0.05
	전체	384	32.79	26.56	39.92	0.28

<附表 10> 調查對象企業의 現況(1994)

(단위 : 개, 백만원, 백만달러(수입·수출액))

		매출액		순이익		수출액		수입액		환급액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기업 규모	대기업	129	845,767	130	13,838	132	485	123	155	132	2,718
	중소기업	333	33,431	331	1,337	335	15	293	10	335	322
	전체	462	260,252	461	4,862	467	148	416	53	467	999
업 종	농림수산업	2	5,850	2	25	2	7	2	1	2	2,403
	경공업	179	175,886	180	2,499	181	53	157	36	181	388
	음식료품	12	225,592	12	3,934	12	28	12	116	12	205
	섬유·가죽제품	146	190,125	145	2,516	147	61	126	30	147	443
	종이·나무제품	7	99,114	7	3,101	7	14	7	61	7	62
	기타 제조업제품	14	23,179	14	880	15	17	12	7	15	146
	중공업	280	316,794	280	6,424	283	210	256	64	283	1,278
	화학제품	81	367,427	81	4,680	82	287	70	38	82	1,092
	석유·석탄제품	3	3,843,333	3	111,900	3	2,581	3	1,923	3	1,562
	요업·토석제품	5	197,640	5	5,392	5	104	5	26	5	1,311
	제1차금속	20	141,030	21	-144	21	45	19	46	21	1,591
	금속제품	20	128,175	20	1,657	20	33	16	25	20	1,129
	일반기계	23	359,200	22	16,234	23	51	23	82	23	1,045
	전기 및 전자기기	99	246,118	99	3,402	100	224	91	28	100	1,465
	정밀기기	14	52,686	14	2,577	14	13	14	5	14	919
	운송기계	15	511,567	15	19,789	15	154	15	130	15	1,43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39,000	1	-3,450	1	20	1	6	1	13	
전체	462	260,252	461	4,862	467	148	416	53	467	999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89	28,092	88	544	90	1	80	10	90	163
	250만~500만달러	73	65,759	73	363	73	3	62	12	73	135
	500만~1,000만달러	70	20,036	70	885	71	7	61	5	71	187
	1,000만~2,500만달러	106	77,654	106	4,817	107	17	95	21	107	393
	2,500만~5,000만달러	41	184,744	41	2,689	41	35	39	54	41	486
	5,000만~1억달러	32	169,350	32	2,601	32	72	31	27	32	1,141
	1억달러 이상	51	1,770,755	51	27,471	53	1,185	48	318	53	6,234
	전체	462	260,252	461	4,862	467	148	416	53	467	999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36,475	36	660	36	3	31	4	36
1천만~5천만원		119	75,584	118	3,571	121	10	104	27	121	27
5천만~1억원		60	23,050	60	888	60	11	52	8	60	73
1억~10억원		176	100,952	176	2,285	177	41	160	25	177	324
10억원 이상		71	1,278,570	71	18,885	73	822	69	211	73	5,500
전체		462	260,252	461	4,862	467	148	416	52	467	999

<附表 11> 輸出免狀金額別 輸出件數 比率

(단위 : 건, %)

	수출면장 건당 수출금액	수 출 건 수					
		정액환급		개별환급		합 계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대 기 업	5만달러 이하	3,887	5.6	65,418	94.4	69,305	42.3
	5만달러~10만달러	3,452	7.7	41,325	92.3	44,777	27.3
	10만달러~20만달러	926	5.5	15,946	94.5	16,872	10.3
	20만달러 이상	410	1.2	32,475	98.8	32,885	20.1
	소 계	8,675	5.3	155,164	94.7	163,839	100.0
중소기업	5만달러 이하	9,558	15.6	51,727	84.4	61,285	65.4
	5만달러~10만달러	1,752	8.1	19,853	91.9	21,605	23.1
	10만달러~20만달러	490	7.4	6,144	92.6	6,634	7.1
	20만달러 이상	292	7.0	3,854	93.0	4,146	4.4
	소 계	12,092	12.9	81,578	87.1	93,670	100.0
전 체	5만달러 이하	13,445	10.3	117,145	89.7	130,590	50.7
	5만달러~10만달러	5,204	7.8	61,178	92.2	66,382	25.8
	10만달러~20만달러	1,416	6.0	22,090	94.0	23,506	9.1
	20만달러 이상	702	1.9	36,329	98.1	37,031	14.4
	소 계	20,767	8.1	236,742	91.9	257,509	100.0

<附表 12> 還給類型別 利用實態

(단위 : 건, 백만원, %)

	환급유형 I	환급유형 II	환급신청건수	환급금액	
대 기 업	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5 (0.0)	2 (0.0)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4,641 (16.3)	1,631 (0.4)	
		소 계	4,646 (16.3)	1,633 (0.4)	
	개별환급	개산선환급	983 (3.4)	74,105 (20.0)	
		선지급·후심사	5,347 (18.8)	30,743 (8.3)	
		일반개별환급	17,539 (61.5)	265,896 (71.7)	
		소 계	23,869 (83.7)	370,744 (99.6)	
	합 계		28,515 (100.0)	372,377 (100.0)	
	중소기업	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1,917 (13.9)	1,972 (1.8)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1,513 (11.0)	4,237 (4.1)
소 계			3,430 (24.9)	6,209 (6.0)	
개별환급		개산선환급	855 (6.2)	4,970 (4.6)	
		선지급·후심사	2,736 (19.9)	23,269 (21.5)	
		일반개별환급	6,756 (49.0)	74,273 (68.8)	
		소 계	10,347 (75.1)	102,512 (95.1)	
합 계			13,776 (100.0)	108,721 (100.0)	
전 체		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1,922 (4.5)	1,974 (0.4)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6,154 (14.6)	5,868 (1.2)
	소 계		8,076 (19.1)	7,842 (1.6)	
	개별환급	개산선환급	1,838 (4.3)	79,075 (16.4)	
		선지급·후심사	8,083 (19.1)	54,012 (11.2)	
		일반개별환급	24,295 (57.4)	340,169 (70.7)	
		소 계	34,216 (80.9)	473,256 (98.4)	
	합 계		42,292 (100.0)	481,098 (100.0)	

註 : () 안은 비율임.

<附表 13> 年間 遷給申請 頻度數

(단위 : 개, %, 회)

		기업 수	1~ 10회	11~ 20회	21~ 30회	31~ 40회	41~ 50회	51회 이상	평균
기업 규모	대기업	131	25.2	32.1	14.5	7.6	6.1	14.5	37.0
	중소기업	334	44.0	30.2	13.8	3.6	3.9	4.5	17.9
	전체	465	38.7	30.8	14.0	4.7	4.5	7.3	23.3
업 종	농림수산업	2	50.0	0.0	0.0	0.0	0.0	50.0	32.0
	경공업	181	44.8	31.5	14.4	2.8	2.2	4.4	15.5
	음식료품	12	58.3	41.7	0.0	0.0	0.0	0.0	7.3
	섬유·가죽제품	147	40.1	33.3	16.3	2.7	2.7	4.8	16.7
	종이·나무제품	7	42.9	14.3	14.3	14.3	0.0	14.3	20.7
	기타 제조업제품	15	80.0	13.3	6.7	0.0	0.0	0.0	7.7
	중공업	281	34.5	30.6	13.9	6.0	5.7	8.9	28.3
	화학제품	80	41.3	30.0	10.0	6.3	6.3	6.3	27.5
	석유·석탄제품	3	0.0	0.0	33.3	0.0	0.0	66.7	80.0
	요업·토석제품	5	0.0	100.0	0.0	0.0	0.0	0.0	12.2
	제1차금속	21	28.6	28.6	19.1	14.3	9.5	0.0	19.2
	금속제품	20	60.0	25.0	5.0	5.0	5.0	0.0	11.2
	일반기계	23	43.5	17.4	13.0	4.4	4.4	17.4	76.3
	전기 및 전자기기	100	23.0	31.0	19.0	7.0	7.0	13.0	27.0
	정밀기기	14	57.1	28.6	14.3	0.0	0.0	0.0	9.6
	운송기계	15	33.3	46.7	6.7	0.0	0.0	6.7	15.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0.0	1.0
	전체	465	38.7	30.8	14.0	4.7	4.5	7.3	23.3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89	65.2	15.7	9.0	3.4	1.1	5.6
250만~500만달러		73	42.5	34.3	13.7	2.7	2.7	4.1	22.1
500만~1,000만달러		71	46.5	28.2	14.1	4.2	1.4	5.6	15.6
1,000만~2,500만달러		106	37.7	38.7	13.2	3.8	3.8	2.8	16.8
2,500만~5,000만달러		41	24.4	46.3	17.1	2.4	0.8	0.0	16.8
5,000만~1억달러		32	15.6	40.6	12.5	12.5	9.4	9.4	58.8
1억달러 이상		53	5.7	20.8	22.6	9.4	11.3	30.2	48.4
전체		465	38.7	30.8	14.0	4.7	4.5	7.3	23.3
환 금 액		1천만원 미만	35	74.3	11.4	5.7	0.0	2.9	5.7
	1천만~5천만원	120	57.5	21.7	9.2	5.0	1.7	5.0	18.5
	5천만~1억원	60	45.0	38.3	11.7	0.0	0.0	5.0	17.1
	1억~10억원	177	31.1	41.2	14.7	5.1	5.1	2.8	19.4
	10억원 이상	73	4.1	23.3	26.0	9.6	12.3	24.7	51.7
	전체	465	38.7	30.8	14.0	4.7	4.5	7.3	23.3

<附表 14> 關稅還給申請 擔當者

(단위 : 개, %)

		기업수	대부분 직접 처리	직접 처리> 관세사 의뢰	직접 처리= 관세사 의뢰	직접 처리< 관세사 의뢰	대부분 관세사 의뢰
기업 규모	대기업	132	99.2	0.8	0.0	0.0	0.0
	중소기업	335	91.6	0.6	0.9	1.8	5.1
	전체	467	93.8	0.6	0.6	1.3	3.6
업 종	농림수산업	2	50.0	0.0	0.0	0.0	50.0
	경공업	181	92.2	1.1	1.1	2.2	3.3
	음식료품	12	91.7	0.0	0.0	0.0	8.3
	섬유·가죽제품	147	91.8	1.4	1.4	2.7	2.7
	종이·나무제품	7	100.0	0.0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93.3	0.0	0.0	0.0	6.7
	중공업	283	95.1	0.4	0.4	0.7	3.5
	화학제품	82	95.1	0.0	1.2	1.2	2.4
	석유·석탄제품	3	10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5	100.0	0.0	0.0	0.0	0.0
	제1차금속	21	95.2	4.8	0.0	0.0	0.0
	금속제품	20	85.0	0.0	0.0	0.0	15.0
	일반기계	23	87.0	0.0	0.0	0.0	13.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98.0	0.0	0.0	1.0	1.0
	정밀기기	14	100.0	0.0	0.0	0.0	0.0
	운송기계	15	93.3	0.0	0.0	0.0	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전체	467	93.8	0.6	0.6	1.3	3.6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90	85.6	1.1	0.0	1.1
250만~500만달러		73	95.9	1.4	0.0	0.0	2.7
500만~1,000만달러		71	94.4	0.0	0.0	2.8	2.8
1,000만~2,500만달러		107	92.5	0.9	1.9	2.8	1.9
2,500만~5,000만달러		41	100.0	0.0	0.0	0.0	0.0
5,000만~1억달러		32	100.0	0.0	0.0	0.0	0.0
1억달러 이상		53	98.1	0.0	1.9	0.0	0.0
전체		467	93.8	0.6	0.6	1.3	3.6
환 금 액		1천만원 미만	36	83.3	0.0	2.8	2.8
	1천만~5천만원	121	91.7	0.8	0.0	0.0	7.4
	5천만~1억원	60	98.3	0.0	0.0	0.0	1.7
	1억~10억원	177	93.8	0.6	1.1	2.8	1.7
	10억원 이상	73	98.6	1.4	0.0	0.0	0.0
	전체	467	93.8	0.6	0.6	1.3	3.6

<附表 15> 關稅選給申請書 作成方法

(단위: 개, %)

		기업수	PC로 계산 PC로 작성	PC로 계산 작성기로 작성	PC로 계산 손으로 작성	손으로 계산 PC로 작성	손으로 계산 작성기로 작성	손으로 계산 손으로 작성	컴퓨터로 계산 컴퓨터로 자동출력
기업 규모	대기업	132	66.7	8.3	0.0	0.0	22.0	0.8	2.3
	중소기업	319	29.5	8.2	1.3	0.6	57.4	1.9	1.3
	전체	451	40.4	8.2	0.9	0.4	47.0	1.6	1.5
업 종	농림수산업	1	0.0	100.0	0.0	0.0	0.0	0.0	0.0
	경공업	176	34.7	6.8	0.6	0.0	54.5	2.3	1.1
	음식료품	11	27.3	9.1	0.0	0.0	63.6	0.0	0.0
	섬유·가죽제품	143	35.7	6.3	0.7	0.0	55.9	1.4	0.0
	종이·나무제품	7	42.9	0.0	0.0	0.0	42.9	4.3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26.7	13.3	0.0	0.0	40.0	6.7	13.3
	중공업	273	44.0	8.8	1.1	0.7	42.5	1.1	1.8
	화학제품	80	46.3	10.0	2.5	0.0	41.3	0.0	0.0
	석유·석탄제품	3	66.7	0.0	0.0	0.0	0.0	0.0	33.3
	요업·토석제품	5	80.0	0.0	0.0	0.0	20.0	0.0	0.0
	제1차금속	21	71.4	0.0	0.0	0.0	28.6	0.0	0.0
	금속제품	17	23.5	17.7	0.0	0.0	58.8	0.0	0.0
	일반기계	20	55.0	10.0	0.0	5.0	30.0	0.0	0.0
	전기 및 전자기기	99	35.4	6.1	0.0	0.0	52.5	2.0	4.0
	정밀기기	14	28.6	21.4	7.1	7.1	28.6	7.1	0.0
	운송기계	14	57.1	14.3	0.0	0.0	28.6	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0.0	0.0
전체	451	40.4	8.2	0.9	0.4	47.0	1.6	1.5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80	17.5	7.5	0.0	0.0	71.3	3.8	0.0
	250만~500만달러	71	22.5	12.7	2.8	0.0	60.6	1.4	0.0
	500만~1,000만달러	69	26.1	8.7	2.9	0.0	59.4	1.5	1.5
	1,000만~2,500만달러	105	44.8	4.8	0.0	1.9	46.7	1.0	1.0
	2,500만~5,000만달러	41	51.2	12.2	0.0	0.0	31.7	2.4	2.4
	5,000만~1억달러	32	65.6	12.5	0.0	0.0	18.8	0.0	3.1
	1억달러 이상	53	84.9	3.8	0.0	0.0	5.7	0.0	5.7
	전체	451	40.4	8.2	0.9	0.4	47.0	1.6	1.5
환 금 액	1천만원 미만	32	9.4	3.1	0.0	0.0	84.4	3.1	0.0
	1천만~5천만원	113	23.0	8.9	1.8	0.0	63.7	1.8	0.9
	5천만~1억원	59	44.1	5.1	0.0	0.0	49.2	1.7	0.0
	1억~10억원	174	40.8	10.3	1.2	1.2	44.8	1.2	0.6
	10억원 이상	73	76.7	6.9	0.0	0.0	8.2	1.4	6.9
	전체	451	40.4	8.2	0.9	0.4	47.0	1.6	1.5

<附表 16> 個別還給申請 與否

(단위 : 개, %)

		기업수	있다	없다
기업규모	대기업	132	99.2	0.8
	중소기업	335	88.4	11.6
	전체	467	91.4	8.6
업종	농림수산업	2	100.0	6.4
	경공업	181	93.4	6.6
	음식료품	12	100.0	0.0
	섬유·가죽제품	147	93.9	6.1
	종이·나무제품	7	71.4	28.6
	기타 제조업제품	15	93.3	6.7
	중공업	283	90.1	9.9
	화학제품	82	92.7	7.3
	석유·석탄제품	3	100.0	0.0
	요업·토석제품	5	100.0	0.0
	제1차금속	21	90.5	9.5
	금속제품	20	90.0	10.0
	일반기계	23	87.0	13.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87.0	13.0
	정밀기기	14	92.9	7.1
	운송기계	15	93.3	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00.0	0.0
	전체	467	91.4	8.6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77.8
250만~500만달러		73	83.6	16.4
500만~1,000만달러		71	93.0	7.0
1,000만~2,500만달러		107	98.1	1.9
2,500만~5,000만달러		41	97.6	2.4
5,000만~1억달러		32	100.0	0.0
1억달러 이상		53	100.0	0.0
전체		467	91.4	8.6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77.8	22.2
	1천만~5천만원	121	81.8	18.2
	5천만~1억원	60	91.7	8.3
	1억~10억원	177	97.2	2.8
	10억원 이상	73	100.0	0.0
	전체	467	91.4	8.6

<附表 17> 個別還給의 所要日數

(단위: 개, 일)

		기업수	원재료 수입~및 제조 수출	제조 및 수출~ 환급신청	환급신청 수령	원재료 수입~ 환급금 수령	제조 및 수출~ 환급금 수령	환급신청 준비기간
기업 규모	대기업	130	64.5	47.8	8.3	119.8	55.8	18.7
	중소기업	296	42.0	44.5	10.5	96.9	54.9	14.8
	전체	426	48.9	45.5	9.8	103.9	55.2	16.0
업 종	농림수산업	2	25.5	15.5	5.5	46.5	21.0	13.5
	경공업	168	49.0	43.0	8.1	98.3	49.7	17.9
	음식료품	11	69.5	45.1	5.3	110.3	46.6	14.3
	섬유·가죽제품	138	43.8	41.0	6.7	91.4	47.6	18.0
	종이·나무제품	5	58.0	50.0	26.6	134.6	76.6	37.2
	기타 제조업제품	14	80.4	58.7	17.4	143.7	63.4	13.1
	중공업	255	49.0	47.2	8.3	107.9	58.8	14.8
	화학제품	76	51.0	46.1	0.7	106.7	55.7	13.4
	석유·석탄제품	3	29.0	45.0	4.7	78.7	49.7	20.7
	요업·토석제품	5	39.0	53.6	12.0	104.6	65.6	19.0
	제1차금속	19	46.2	32.1	13.5	91.7	45.6	9.8
	금속제품	18	50.0	69.7	8.6	128.3	78.3	15.3
	일반기계	20	57.8	62.8	9.9	130.5	72.7	21.8
	전기 및 전자기기	87	41.3	42.9	13.4	97.7	56.3	15.9
	정밀기기	13	84.2	55.9	11.5	151.6	67.4	11.0
	운송기계	14	51.4	39.8	4.6	108.6	57.2	12.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45.0	90.0	7.0	142.0	97.0	15.0	
전체	426	48.9	45.5	9.8	103.9	55.2	16.0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70	43.6	45.2	9.5	98.3	54.7	18.4
	250만~500만달러	61	40.8	42.5	10.9	93.9	53.1	14.1
	500만~1,000만달러	66	37.5	45.9	8.4	91.8	54.3	14.7
	1,000만~2,500만달러	104	56.3	45.5	11.6	112.4	56.7	14.9
	2,500만~5,000만달러	40	48.8	45.9	11.0	105.7	56.9	14.2
	5,000만~1억달러	32	58.4	46.8	9.3	114.5	56.1	19.5
	1억달러 이상	53	59.1	48.0	6.5	113.6	54.5	18.2
전체	426	48.9	45.5	9.8	103.9	55.2	16.0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28	39.2	48.1	8.0	95.4	56.1	26.7
	1천만~5천만원	98	45.7	41.7	9.3	95.6	50.4	12.8
	5천만~1억원	55	45.5	64.2	11.5	121.2	75.7	16.5
	1억~10억원	172	49.3	41.4	10.9	101.6	52.3	14.5
	10억원 이상	73	58.5	45.2	7.4	111.1	52.6	19.5
	전체	426	48.9	45.5	9.8	103.9	55.2	16.0
환 급 유 형	개산선환급	14	35.4	29.7	5.2	70.4	34.9	34.6
	선지급·후집사	39	55.2	37.3	8.3	100.8	45.6	13.7
	일반개별환급	373	48.7	47.0	10.1	105.5	56.9	15.6
	전체	426	48.9	45.5	9.8	103.9	55.2	16.0

<附表 18> 定額還給申請 與否

(단위 : 개, %)

		기업수	있다	없다
기업규모	대기업	132	12.1	87.9
	중소기업	335	31.9	68.1
	전체	467	26.3	73.7
업종	농림수산업	2	0.0	100.0
	경공업	181	22.1	77.9
	음식료품	12	0.0	100.0
	섬유·가죽제품	147	22.5	77.6
	종이·나무제품	7	28.6	71.4
	기타 제조업제품	15	33.3	66.7
	중공업	283	29.3	70.7
	화학제품	82	20.7	79.3
	석유·석탄제품	3	0.0	100.0
	요업·토석제품	5	20.0	80.0
	제1차금속	21	28.6	71.4
	금속제품	20	25.0	75.0
	일반기계	23	30.4	69.6
	전기 및 전자기기	100	38.0	62.0
	정밀기기	14	35.7	64.3
	운송기계	15	26.7	73.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100.0
	전체	467	26.3	73.7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41.1	58.9
	250만~500만달러	73	43.8	56.2
	500만~1,000만달러	71	31.0	69.0
	1,000만~2,500만달러	107	15.0	85.1
	2,500만~5,000만달러	41	17.1	82.9
	5,000만~1억달러	32	12.5	87.5
	1억달러 이상	53	9.4	90.6
	전체	467	26.3	73.7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41.7	58.3
	1천만~5천만원	121	38.8	61.2
	5천만~1억원	60	38.3	61.7
	1억~10억원	177	16.9	83.1
	10억원 이상	73	11.0	89.0
	전체	467	26.3	73.7

<附表 19> 定額還給의 所要日數

(단위 : 개, 일)

		기업수	원재료 수입~ 제조 및 수출	제조 및 수출~ 환급신청	환급신청 ~환급금 수령	원재료 수입~ 환급금 수령	제조 및 수출~ 환급금 수령	환급신청 준비기간
기업 규모	대기업	16	50.3	39.5	4.1	93.9	43.6	6.5
	중소기업	106	45.8	39.3	8.6	93.7	47.9	12.7
	전체	122	46.4	39.3	8.0	93.7	47.3	11.9
업 종	농림수산업	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40	44.1	36.3	4.8	85.2	41.2	16.4
	섬유·가죽제품	33	43.4	35.2	5.4	84.0	40.6	18.8
	종이·나무제품	2	30.0	60.0	2.0	92.0	62.0	6.5
	기타 제조업제품	5	54.0	34.0	2.2	90.2	36.2	4.2
	중공업	82	47.6	40.7	9.6	97.8	50.3	9.7
	화학제품	16	78.4	48.5	7.2	134.1	55.7	5.5
	요업·토석제품	1	17.0	1.0	1.0	19.0	2.0	20.7
	제1차급속	6	15.2	22.8	6.8	44.8	29.7	1.0
	급속제품	5	96.0	107.6	4.2	207.8	111.8	3.4
	일반기계	7	50.7	42.4	10.3	103.4	52.7	15.9
	전기 및 전자기기	38	31.1	31.1	13.0	75.1	44.1	9.3
	정밀기기	5	69.0	44.0	4.6	117.6	48.6	6.8
	운송기계	4	44.8	47.5	4.5	96.8	52.0	15.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0	0.0	0.0	0.0	0.0	0.0	
전체	122	46.4	39.3	8.0	93.7	47.3	11.9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37	38.8	40.8	10.6	90.2	51.5	19.6
	250만~500만달러	31	49.4	43.0	8.9	101.2	51.9	10.9
	500만~1,000만달러	22	35.8	42.9	6.2	84.9	49.1	9.9
	1,000만~2,500만달러	16	71.3	24.9	3.5	99.6	28.4	5.2
	2,500만~5,000만달러	7	25.0	47.1	12.4	84.6	59.6	4.1
	5,000만~1억달러	4	99.3	23.8	5.0	128.0	28.8	5.3
	1억달러 이상	5	39.8	36.6	2.0	78.4	38.6	6.4
	전체	122	46.4	39.3	8.0	93.7	47.3	11.9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15	51.3	50.7	10.1	112.1	60.7	32.6
	1천만~5천만원	46	38.0	40.9	9.3	88.2	50.1	12.6
	5천만~1억원	23	36.8	36.7	8.5	81.9	45.1	5.1
	1억~10억원	30	64.8	37.1	6.1	108.0	43.2	7.0
	10억원 이상	8	44.1	24.8	2.9	71.8	27.6	6.1
	전체	122	46.4	39.3	8.0	93.7	47.3	11.9
환 급 유 형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36	59.0	38.7	9.1	106.8	47.8	12.6
	간이정액환급	86	41.2	39.5	7.6	88.2	47.1	11.5
	전체	122	46.4	39.3	8.0	93.7	47.3	11.9

<附表 20> 關稅還給時까지의 資金負擔 解決方法

(단위:개, %)

기업 규모	기업수	일반회사 운영자금 으로 충당	일반 대출기관 에서 차입		사채 등으로 충당		수입업자가 대신 부담	
			이자율	이자율	이자율	이자율		
대기업	132	75.8	23.5	13.0	0.0	-	0.8	
중소기업	335	79.7	17.6	11.4	0.9	20.6	1.8	
전체	467	78.6	19.3	12.0	0.6	20.6	1.5	
업종	농림수산업	2	100.0	0.0	-	0.0	-	0.0
	경공업	181	75.1	22.7	-	1.1	-	1.1
	음식료품	12	83.3	16.7	11.0	0.0	-	0.0
	섬유·가죽제품	147	74.8	22.5	11.5	1.4	24.9	1.4
	종이·나무제품	7	85.7	14.3	13.0	0.0	-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66.7	33.3	11.6	0.0	-	0.0
	중공업	283	80.6	17.3	-	0.4	-	1.8
	화학제품	82	79.3	17.1	13.0	1.2	12.0	2.4
	석유·석탄제품	3	66.7	33.3	17.0	0.0	-	0.0
	요업·토석제품	5	80.0	20.0	12.0	0.0	-	0.0
	제1차금속	21	76.2	23.8	11.9	0.0	-	0.0
	금속제품	20	80.0	20.0	12.9	0.0	-	0.0
	일반기계	23	87.0	8.7	14.5	0.0	-	4.4
	전기 및 전자기기	100	82.0	17.0	11.5	0.0	-	1.0
	정밀기기	14	78.6	21.4	12.3	0.0	-	0.0
운송기계	15	80.0	13.3	11.0	0.0	-	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00.0	0.0	-	0.0	-	0.0	
전체	467	78.6	19.3	12.0	0.6	20.6	1.5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82.2	13.3	11.4	0.0	-	4.4
	250만~500만달러	73	79.5	19.7	12.0	0.0	-	1.4
	500만~1,000만달러	71	76.1	19.7	12.2	2.8	12.9	1.4
	1,000만~2,500만달러	107	77.6	20.6	11.4	0.9	36.0	0.9
	2,500만~5,000만달러	41	80.5	19.5	11.4	0.0	-	0.0
	5,000만~1억달러	32	78.1	21.9	11.4	0.0	-	0.0
	1억달러 이상	53	75.5	24.5	13.9	0.0	-	0.0
	전체	467	78.6	19.3	12.0	0.6	20.6	1.5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83.3	11.1	12.6	0.0	-	5.6
	1천만~5천만원	121	81.8	14.9	11.1	0.0	-	3.3
	5천만~1억원	60	76.7	21.7	11.0	0.0	-	1.7
	1억~10억원	177	76.8	22.0	12.0	1.1	24.9	0.0
	10억원 이상	73	76.7	21.9	13.4	1.4	12.0	0.0
	전체	467	78.6	19.3	12.0	0.6	20.6	1.5

<附表 21> 關稅還給業務關聯 所要經費

(단위 : 개, 만원, %)

		기업수	환급관련 인건비	관세사 대행 수수료	기타 경비	소요경비 총액	매출액에 대한 소요경비 의 비율	수출액에 대한 소요경비 의 비율
기업 규모	대기업	132	1,983	30	157	2,170	0.0026	0.0057
	중소기업	332	505	8	32	547	0.0164	0.0462
	전체	465	926	15	67	1,006	0.0039	0.0086
업 종	농림수산업	2	300	10	3	313	0.0535	0.0567
	경공업	181	833	21	56	914	0.0052	0.0219
	음식료품	12	532	2	26	560	0.0025	0.0254
	섬유·가죽제품	147	911	21	66	998	0.0052	0.0207
	종이·나무제품	7	274	25	8	307	0.0031	0.0278
	기타 제조업제품	15	573	64	13	650	0.0280	0.0485
	중공업	281	988	9	75	1,070	0.0034	0.0065
	화학제품	82	873	12	95	980	0.0027	0.0043
	석유·석탄제품	3	3,557	0	0	3,557	0.0009	0.0017
	요업·토석제품	5	366	0	26	392	0.0020	0.0048
	제1차금속	20	988	0	102	1,090	0.0077	0.0307
	금속제품	19	719	3	51	772	0.0060	0.0297
	일반기계	23	1,023	15	84	1,123	0.0031	0.0279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085	11	71	1,168	0.0047	0.0066
	정밀기기	14	429	0	5	433	0.0082	0.0422
	운송기계	15	1,476	0	70	1,546	0.0030	0.012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360	0	0	360	0.0092	0.0228
전체	465	926	15	67	1,006	0.0039	0.0086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89	402	2	12	417	0.0148	0.5287
	250만~500만달러	73	283	5	21	309	0.0047	0.1306
	500만~1,000만달러	71	502	19	34	555	0.0277	0.1005
	1,000만~2,500만달러	107	678	7	47	731	0.0094	0.0545
	2,500만~5,000만달러	41	1,035	4	64	1,102	0.0060	0.0399
	5,000만~1억달러	31	1,262	0	125	1,386	0.0082	0.0244
	1억달러 이상	53	3,459	75	279	3,813	0.0022	0.0041
	전체	465	926	15	67	1,006	0.0039	0.0086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36	153	1	14	168	0.0046	0.0710
	1천만~5천만원	120	429	4	24	490	0.0065	0.0621
	5천만~1억원	60	508	3	25	536	0.0233	0.0618
	1억~10억원	176	751	12	57	820	0.0081	0.0254
	10억원 이상	73	2,873	55	227	3,154	0.0025	0.0049
	전체	465	926	15	67	1,006	0.0039	0.0086

<附表 22> 關稅還給制度 중 利用回數가 많은 制度

(단위: 개, %)

		기업수	빈도수	개별환급 제도	소액 간이정액 환급제도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 제도	선환급· 후정산 제도	상계제도	평균세액 증명서 제도
기업 규모	대기업	132	179	72.6	5.0	4.5	8.9	6.2	2.8
	중소기업	335	427	67.7	18.7	7.7	4.2	0.7	0.9
	전체	467	606	69.1	14.7	6.8	5.6	2.3	1.5
업 종	농림수산업	2	2	100.0	0.0	0.0	0.0	0.0	0.0
	경공업	181	229	72.9	15.3	3.9	3.9	2.6	1.3
	음식료품	12	15	80.0	0.0	0.0	6.7	13.3	0.0
	섬유·가죽제품	147	184	73.9	14.7	4.4	3.3	2.2	1.6
	종이·나무제품	7	7	71.4	28.6	0.0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23	60.9	26.1	4.4	8.7	0.0	0.0
	중공업	283	374	66.6	14.4	8.6	6.7	2.1	1.6
	화학제품	82	103	72.8	8.7	10.7	3.9	3.9	0.0
	석유·석탄제품	3	3	10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5	6	83.3	0.0	16.7	0.0	0.0	0.0
	제1차금속	21	26	69.2	15.4	7.7	3.9	3.9	0.0
	금속제품	20	26	69.2	15.4	3.9	11.5	0.0	0.0
	일반기계	23	33	60.6	9.1	12.1	15.2	0.0	3.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35	61.5	20.0	8.9	6.7	0.0	3.0
	정밀기기	14	20	65.0	20.0	0.0	5.0	5.0	5.0
	운송기계	15	22	63.6	13.6	4.6	9.1	9.1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	100.0	0.0	0.0	0.0	0.0	0.0
전체	467	606	69.1	14.7	6.8	5.6	2.3	1.5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90	113	59.3	27.4	8.9	3.5	0.0	0.9
	250만~500만달러	73	98	61.2	24.5	10.2	3.1	0.0	1.0
	500만~1,000만달러	71	93	69.9	16.1	10.8	3.2	0.0	0.0
	1,000만~2,500만달러	107	126	81.0	9.5	2.4	4.0	1.6	1.6
	2,500만~5,000만달러	41	52	76.9	7.7	3.9	7.7	3.9	0.0
	5,000만~1억달러	32	41	78.1	2.4	7.3	7.3	2.4	2.4
	1억달러 이상	53	83	63.9	2.4	3.6	14.5	10.8	4.8
	전체	467	606	69.1	14.7	6.8	5.6	2.3	1.5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36	44	56.8	30.0	9.1	2.3	0.0	2.3
	1천만~5천만원	121	154	64.3	25.3	7.8	1.3	0.7	0.7
	5천만~1억원	60	85	63.5	23.5	7.1	5.9	0.0	0.0
	1억~10억원	177	215	78.1	7.0	6.5	5.6	1.4	1.4
	10억원 이상	73	108	67.6	1.9	4.6	13.0	9.3	3.7
	전체	467	606	69.1	14.7	6.8	5.6	2.3	1.5

<附表 23> 關稅還給時的 隘路事項

(단위: 개, %)

		기 업 수	빈 도 수	구비 서류의 복잡	환급 절차의 복잡	환급 제도의 복잡	장기에 걸친 환급소 요기간	예로 사항 없음	면세환급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	수출면장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량 고지의 명확성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132	221	39.4	21.7	23.1	7.7	5.0	0.0	0.9	0.0	2.3
	중소기업	335	553	33.8	23.3	18.4	9.4	8.3	2.2	1.2	0.7	2.7
	전체	467	774	35.4	22.9	19.8	8.9	7.4	1.6	1.0	0.5	2.6
업 종	농림수산업	2	3	33.3	33.3	0.0	0.0	33.3	0.0	0.0	0.0	0.0
	경공업	181	291	32.0	19.6	19.9	11.0	10.7	2.4	2.1	0.7	1.7
	음식료품	12	20	50.0	10.0	30.0	0.0	5.0	5.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147	233	30.5	19.7	19.3	11.2	12.0	2.2	2.6	0.9	1.7
	종이·나무제품	7	13	15.4	23.1	38.5	7.7	7.7	7.7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25	40.0	24.0	8.0	20.0	4.0	0.0	0.0	0.0	4.0
	중공업	283	478	37.4	24.7	19.9	7.7	5.2	1.0	0.4	0.4	3.1
	화학제품	82	137	38.7	24.8	18.3	6.6	4.4	0.7	1.5	0.7	4.4
	석유·석탄제품	3	5	0.0	40.0	40.0	2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5	7	14.3	14.3	14.3	14.3	42.9	0.0	0.0	0.0	0.0
	제1차금속	21	33	21.2	21.2	30.3	9.1	18.2	0.0	0.0	0.0	0.0
	금속제품	20	34	35.3	23.5	23.5	8.8	2.9	0.0	0.0	0.0	5.9
	일반기계	23	38	50.0	13.2	18.4	7.9	5.3	2.6	0.0	0.0	2.6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74	37.9	25.9	19.0	9.2	4.0	1.2	0.0	0.6	2.3
	정밀기기	14	24	37.5	33.3	20.8	4.2	0.0	4.2	0.0	0.0	0.0
운송기계	15	26	46.2	30.8	15.4	0.0	0.0	0.0	0.0	0.0	7.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2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467	774	35.4	22.9	19.8	8.9	7.4	1.6	1.0	0.5	2.6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90	146	36.3	23.3	17.8	6.9	9.6	2.1	0.0	1.4	2.7
	250만~500만달러	73	118	35.6	26.3	19.5	4.2	9.3	2.5	0.0	0.9	1.7
	500만~1,000만달러	71	118	31.4	24.6	17.8	12.7	5.9	1.7	2.5	0.0	3.4
	1,000만~2,500만달러	107	179	34.1	21.8	18.4	11.7	7.8	0.6	2.2	0.6	2.8
	2,500만~5,000만달러	41	67	38.8	16.4	23.9	10.5	6.0	3.0	0.0	0.0	1.5
	5,000만~1억달러	32	55	34.6	25.5	21.8	5.5	5.5	1.8	1.8	0.0	3.6
	1억달러 이상	53	91	39.6	20.9	24.2	8.8	4.4	0.0	0.0	0.0	2.2
	전체	467	774	35.4	22.9	19.8	8.9	7.4	1.6	1.0	0.5	2.6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36	59	37.3	28.8	22.0	0.0	6.8	3.4	0.0	0.0	1.7
	1천만~5천만원	121	195	33.9	23.1	19.5	6.7	9.7	1.5	2.1	1.0	2.6
	5천만~1억원	60	98	34.7	24.5	17.4	9.2	10.2	2.0	1.0	0.0	1.0
	1억~10억원	177	300	35.3	22.0	20.0	11.3	5.0	1.3	0.7	0.7	3.7
	10억원 이상	73	122	37.7	20.5	20.5	10.7	7.4	0.8	0.8	0.0	1.6
	전체	467	774	35.4	22.9	19.8	8.9	7.4	1.6	1.0	0.5	2.6

<附表 24> 相計制度의 資金負擔 緩和 程度

(단위: 개, %)

		기업수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거의 도움이 안되었다	이용한 적이 없다
기업규모	대기업	132	3.8	3.8	1.5	90.9
	중소기업	335	0.3	0.3	0.6	98.8
	전체	467	1.3	1.3	0.9	96.6
업종	농림수산업	2	0.0	0.0	0.0	100.0
	경공업	181	1.7	1.7	0.0	96.7
	음식료품	12	8.3	8.3	0.0	83.3
	섬유·가죽제품	147	1.4	1.4	0.0	97.3
	종이·나무제품	7	0.0	0.0	0.0	100.0
	기타 제조업제품	15	0.0	0.0	0.0	100.0
	중공업	283	1.1	1.1	1.4	96.4
	화학제품	82	1.2	2.4	1.2	95.1
	석유·석탄제품	3	0.0	0.0	0.0	100.0
	요업·토석제품	5	0.0	0.0	0.0	100.0
	제1차금속	21	4.8	0.0	0.0	95.2
	금속제품	20	0.0	0.0	0.0	100.0
	일반기계	23	0.0	0.0	0.0	100.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0.0	0.0	1.0	99.0
	정밀기기	14	0.0	7.1	7.1	85.7
	운송기계	15	6.7	0.0	6.7	8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0.0	100.0
전체	467	1.3	1.3	0.9	96.6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0.0	0.0	2.2	97.8
	250만~500만달러	73	0.0	0.0	0.0	100.0
	500만~1,000만달러	71	0.0	0.0	0.0	100.0
	1,000만~2,500만달러	107	0.0	1.9	0.0	98.1
	2,500만~5,000만달러	41	2.4	2.4	0.0	95.1
	5,000만~1억달러	32	0.0	3.1	0.0	96.9
	1억달러 이상	53	9.4	3.8	3.8	83.0
	전체	467	1.3	1.3	0.9	96.6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0.0	0.0	2.8	97.2
	1천만~5천만원	121	0.8	0.0	0.8	98.4
	5천만~1억원	60	0.0	0.0	0.0	100.0
	1억~10억원	177	0.0	1.7	0.0	98.3
	10억원 이상	73	6.9	4.1	2.7	86.3
	전체	467	1.3	1.3	0.9	96.6

<附表 25> 相計制度의 長點

(단위: 개, %)

		기업수	자금부담 해소	환급부대 비용 절감	대민마찰 제거
기업규모	대기업	40	75.0	12.5	12.5
	중소기업	69	62.3	29.0	8.7
	전체	109	67.0	22.9	10.1
업종	농림수산업	0	0.0	0.0	0.0
	경공업	39	66.7	28.2	5.1
	음식료품	4	75.0	25.0	0.0
	섬유·가죽제품	30	63.3	33.3	3.3
	종이·나무제품	1	10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4	75.0	0.0	25.0
	중공업	70	67.1	20.0	12.9
	화학제품	21	81.0	9.5	9.5
	석유·석탄제품	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2	50.0	50.0	0.0
	제1차금속	3	66.7	0.0	33.3
	금속제품	5	40.0	40.0	20.0
	일반기계	3	66.7	33.3	0.0
	전기 및 전자기기	28	64.3	21.4	14.3
	정밀기기	4	50.0	25.0	25.0
	운송기계	4	75.0	25.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0	0.0	0.0
	전체	109	67.0	22.9	10.1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13	92.3	0.0
250만~500만달러		17	82.4	17.7	0.0
500만~1,000만달러		9	44.4	22.2	33.3
1,000만~2,500만달러		30	43.3	40.0	16.7
2,500만~5,000만달러		12	50.0	41.7	8.3
5,000만~1억달러		7	85.7	0.0	14.3
1억달러 이상		21	85.7	14.3	0.0
전체		109	67.0	22.9	10.1
환급액	1천만원 미만	7	100.0	0.0	0.0
	1천만~5천만원	23	56.5	34.8	8.7
	5천만~1억원	10	70.0	20.0	10.0
	1억~10억원	43	53.5	27.9	18.6
	10억원 이상	26	88.5	11.5	0.0
	전체	109	67.0	22.9	10.1

<附表 26> 相計制度의 問題點

(단위: 개, %)

		기 업 수	빈 도 수	상계대상 원재료의 제한	상계대상 업체 요건의 제한적 운영	상계원재료 수입통관 및 상계신청 절차의 복잡	25%의 가산세 추징	상계원 재료의 국내거래 불허	문제점 없음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40	70	27.1	20.0	28.6	7.1	7.1	2.9	7.1
	중소기업	69	121	28.9	21.5	16.5	19.0	7.4	5.8	0.8
	전체	109	191	28.3	20.9	20.9	14.7	7.3	4.7	3.1
업 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39	67	25.4	14.9	23.9	19.4	6.0	7.5	3.0
	음식료품	4	6	16.7	16.7	50.0	0.0	0.0	16.7	0.0
	섬유·가죽제품	30	51	29.4	11.8	19.6	19.6	7.8	7.8	3.9
	종이·나무제품	1	2	50.0	0.0	0.0	50.0	0.0	0.0	0.0
	기타 제조업체품	4	8	0.0	37.5	37.5	25.0	0.0	0.0	0.0
	중공업	70	124	29.8	24.2	19.4	12.1	8.1	3.2	3.2
	화학제품	21	37	27.0	21.6	24.3	5.4	10.8	5.4	5.4
	석유·석탄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2	2	50.0	0.0	0.0	0.0	0.0	50.0	0.0
	제1차금속	3	5	40.0	20.0	20.0	0.0	20.0	0.0	0.0
	금속제품	5	10	20.0	20.0	10.0	30.0	0.0	0.0	20.0
	일반기계	3	5	20.0	40.0	20.0	20.0	0.0	0.0	0.0
	전기 및 전자기기	28	51	31.4	23.5	21.6	11.8	9.8	2.0	0.0
	정밀기기	4	7	28.6	42.9	0.0	28.6	0.0	0.0	0.0
	운송기계	4	7	42.9	28.6	14.3	14.3	0.0	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09	191	28.3	20.9	20.9	14.7	7.3	4.7	3.1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13	23	26.1	30.4	13.0	13.0	13.0	4.4	0.0
	250만~500만달러	17	31	25.8	19.4	16.1	19.4	12.9	3.2	3.2
	500만~1,000만달러	9	15	13.3	40.0	20.0	20.0	0.0	6.7	0.0
	1,000만~2,500만달러	30	51	27.5	17.7	25.5	17.7	3.9	7.8	0.0
	2,500만~5,000만달러	12	22	31.8	22.7	13.6	9.1	9.1	9.1	4.5
	5,000만~1억달러	7	11	27.3	9.1	36.4	18.2	9.1	0.0	0.0
	1억달러 이상	21	38	36.8	15.8	23.7	7.9	5.3	0.0	10.5
	전체	109	191	28.3	20.9	20.9	14.7	7.3	4.7	3.1
	환 금 액	1천만원 미만	7	12	25.0	16.7	25.0	0.0	16.7	16.7
1천만~5천만원		23	39	23.1	23.1	10.3	20.5	10.3	10.3	2.6
5천만~1억원		10	18	22.2	22.2	16.7	22.2	11.1	5.6	0.0
1억~10억원		43	77	28.6	23.4	23.4	16.9	3.9	2.6	1.3
10억원 이상		26	45	35.6	15.6	26.7	6.7	6.7	0.0	8.9
전체		109	191	28.3	20.9	20.9	14.7	7.3	4.7	3.1

<附表 27> 先選給·後精算制度의 資金負擔 緩和 程度

(단위 : 개, %)

		기업수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거의 도움이 안 되었다	이용한 적이 없다
기업규모	대기업	132	9.9	2.3	0.8	87.1
	중소기업	335	2.4	4.2	1.5	91.9
	전체	467	4.5	3.6	1.3	90.6
업종	농림수산업	2	0.0	50.0	0.0	50.0
	경공업	181	2.8	2.8	1.1	93.4
	음식료품	12	8.3	0.0	0.0	91.7
	섬유·가죽제품	147	2.7	2.0	0.7	94.6
	종이·나무제품	7	0.0	0.0	0.0	100.0
	기타 제조업제품	15	0.0	13.3	6.7	80.0
	중공업	283	5.7	3.9	1.4	89.0
	화학제품	82	4.9	1.2	0.0	93.9
	석유·석탄제품	3	0.0	0.0	0.0	100.0
	요업·토석제품	5	0.0	0.0	0.0	100.0
	제1차금속	21	4.8	0.0	0.0	95.2
	금속제품	20	5.0	10.0	0.0	85.0
	일반기계	23	13.0	8.7	0.0	78.3
	전기 및 전자기기	100	5.0	4.0	4.0	87.0
	정밀기기	14	0.0	7.1	0.0	92.9
	운송기계	15	13.3	6.7	0.0	8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0.0	100.0
전체	467	4.5	3.6	1.3	90.6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2.2	2.2	2.2	93.3
	250만~500만달러	73	2.7	1.4	1.4	94.5
	500만~1,000만달러	71	1.4	5.6	2.8	90.1
	1,000만~2,500만달러	107	3.7	2.8	0.0	93.5
	2,500만~5,000만달러	41	0.0	9.8	2.4	87.8
	5,000만~1억달러	32	6.3	3.1	0.0	90.6
	1억달러 이상	53	18.9	3.8	0.0	77.4
	전체	467	4.5	3.6	1.3	90.6
환금액	1천만원 미만	36	2.8	2.8	0.0	94.4
	1천만~5천만원	121	0.8	0.8	1.7	96.7
	5천만~1억원	60	3.3	8.3	3.3	85.0
	1억~10억원	177	2.8	4.5	1.1	91.5
	10억원 이상	73	16.4	2.7	0.0	80.8
	전체	467	4.5	3.6	1.3	90.6

< 表 28 > 先還給·後精算制度의 問題點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계산환급과 정산환급 신청의 이종절차	정산 신청을 단기간에 해야 함	10%의 가산세 추정	실익이 없음	문제점 없음	계산환급 기관의 제한	정산추납 금액 발생 시 매번 사용 요구	원재료세출 변동으로 환급액 오차가 큼	신규수출 제품 당해 연도 계산 환급 불가
기업 규모	대기업	73	125	31.2	30.4	17.6	7.2	5.6	4.0	2.4	0.8	0.8
	중소기업	108	185	34.6	27.0	15.7	12.4	5.4	4.9	0.0	0.0	0.0
	전체	181	310	33.2	28.4	16.5	10.3	5.5	4.5	1.0	0.3	0.3
업종	농림수산업	1	2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68	118	32.2	27.1	19.5	8.5	5.1	6.8	0.8	0.0	0.0
	음식료품	6	8	0.0	12.5	25.0	25.0	25.0	12.5	0.0	0.0	0.0
	섬유·가죽제품	52	91	33.0	27.5	22.0	6.6	4.4	5.5	1.1	0.0	0.0
	종이·나무제품	1	2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9	17	47.1	29.4	0.0	11.8	0.0	11.8	0.0	0.0	0.0
	중공업	112	190	33.7	28.9	14.7	11.6	5.8	3.2	1.1	0.5	0.5
	화학제품	28	49	38.8	32.7	14.3	10.2	4.1	0.0	0.0	0.0	0.5
	석유·석탄제품	2	3	0.0	33.3	0.0	33.3	33.3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1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제1차금속	4	7	42.9	28.6	14.3	0.0	14.3	0.0	0.0	0.0	0.0
	금속제품	6	11	18.2	36.4	18.2	18.2	0.0	9.1	0.0	0.0	0.0
	일반기계	9	17	35.3	29.4	17.7	5.9	5.9	5.9	0.0	0.0	0.0
	전기 및 전자기기	49	82	32.9	26.8	14.6	11.0	6.1	4.9	2.4	0.0	1.2
	정밀기기	6	10	40.0	30.0	20.0	10.0	0.0	0.0	0.0	0.0	0.0
	운송기계	7	10	30.0	20.0	10.0	30.0	10.0	0.0	0.0	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81	310	33.2	28.4	16.5	10.3	5.5	4.5	1.0	0.3	0.3	
수출액	250만달러미만	30	51	33.3	17.7	15.7	23.5	5.9	3.9	0.0	0.0	0.0
	250만~500만달러	23	39	25.6	28.2	20.5	12.8	2.6	10.3	0.0	0.0	0.0
	500만~1,000만달러	21	35	37.2	28.6	8.6	11.4	8.6	5.7	0.0	0.0	0.0
	1,000만~2,500만달러	40	66	39.4	28.8	15.2	6.1	9.1	1.5	0.0	0.0	0.0
	2,500만~5,000만달러	20	34	29.4	26.5	17.7	11.8	5.9	5.9	2.9	0.0	0.0
	5,000만~1억달러	14	27	29.6	40.7	22.2	7.4	0.0	0.0	0.0	0.0	0.0
	1억달러 이상	33	58	32.8	32.8	17.2	1.7	3.5	5.2	3.5	1.7	1.7
	전체	181	310	33.2	28.4	16.5	10.3	5.5	4.5	1.0	0.3	0.3
환급액	1천만원 미만	11	20	40.0	30.0	0.0	25.0	0.0	5.0	0.0	0.0	0.0
	1천만~5천만원	40	65	26.2	21.5	15.4	23.1	10.8	3.1	0.0	0.0	0.0
	5천만~1억원	23	39	33.3	33.3	12.8	7.7	2.6	10.3	0.0	0.0	0.0
	1억~10억원	65	110	36.4	26.4	20.0	6.4	6.4	3.6	0.9	0.0	0.0
	10억원 이상	42	76	32.9	34.2	18.4	2.6	2.6	4.0	2.6	1.3	1.3
	전체	181	310	33.2	28.4	16.5	10.3	5.5	4.5	1.0	0.3	0.3

<附表 29> 簡易定額選給制度의 選給節次 簡素化 程度

(단위 : 개, %)

		기업수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거의 도움이 안되었다	이용한 적이 없다	무응답
기업규모	대기업	132	0.8	4.6	2.3	92.4	0.0
	중소기업	335	11.9	10.5	5.4	71.9	0.3
	전체	467	8.8	8.8	4.5	77.7	0.2
업종	농림수산업	2	0.0	0.0	0.0	100.0	0.0
	경공업	181	6.6	9.9	4.4	79.0	0.0
	음식료품	12	0.0	0.0	0.0	100.0	0.0
	섬유·가죽제품	147	6.1	9.5	4.8	79.6	0.0
	종이·나무제품	7	14.3	14.3	14.3	57.1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13.3	20.0	0.0	66.7	0.0
	중공업	283	10.2	8.1	4.6	76.7	0.4
	화학제품	82	3.7	3.7	6.1	86.6	0.4
	석유·석탄제품	3	0.0	0.0	0.0	100.0	0.0
	요업·토석제품	5	20.0	0.0	0.0	80.0	0.0
	계1차금속	21	9.5	4.8	4.8	81.0	0.0
	금속제품	20	5.0	20.0	0.0	75.0	0.0
	일반기계	23	8.7	4.4	4.4	82.6	0.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6.0	11.0	5.0	67.0	1.0
	정밀기기	14	14.3	14.3	7.1	64.3	0.0
	운송기계	15	13.3	6.7	0.0	8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0.0	100.0	0.0
전체	467	8.8	8.8	4.5	77.7	0.2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12.2	20.0	4.4	62.2	1.1
	250만~500만달러	73	20.6	12.3	4.1	63.0	0.0
	500만~1,000만달러	71	9.9	8.5	8.5	73.2	0.0
	1,000만~2,500만달러	107	6.5	2.8	1.9	88.8	0.0
	2,500만~5,000만달러	41	0.0	9.8	4.9	85.4	0.0
	5,000만~1억달러	32	3.1	0.0	6.3	90.6	0.0
	1억달러 이상	53	0.0	1.9	3.8	94.3	0.0
	전체	467	8.8	8.8	4.5	77.7	0.2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8.3	27.8	0.0	61.1	2.8
	1천만~5천만원	121	18.2	13.2	5.0	63.6	0.0
	5천만~1억원	60	21.7	8.3	8.3	61.7	0.0
	1억~10억원	177	1.1	5.1	5.1	88.7	0.0
	10억원 이상	73	1.4	1.4	1.4	95.9	0.0
	전체	467	8.8	8.8	4.5	77.7	0.2

<附表 30> 簡易定額還給制度의 問題點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과소환급의 발생	적용대상 수출업체의 제한적 운영	1년간 간의 정액환급 제도의 적용 제한	적용대상 품목의 제한	문제점 없음	개별환급과 20% 이상 차이가 남	간이정액환급표를 구하기가 어려움
기업 규모	대기업	48	85	35.3	29.4	12.9	17.7	4.7	0.0
	중소기업	163	284	36.6	22.9	18.7	16.6	3.9	1.1
	전체	211	369	36.3	24.4	17.3	16.8	4.1	0.8
업 종	농림수산업	1	1	0.0	100.0	0.0	0.0	0.0	0.0
	경공업	79	136	36.8	25.0	17.6	14.0	5.9	0.0
	음식료품	3	5	20.0	20.0	20.0	20.0	20.0	0.0
	섬유·가죽제품	62	107	40.2	25.2	15.9	13.1	4.7	0.0
	종이·나무제품	4	7	28.6	14.3	14.3	28.6	14.3	0.0
	기타 제조업제품	10	17	23.5	29.4	29.4	11.8	5.9	0.0
	중공업	131	232	36.2	23.7	17.2	18.5	3.0	1.3
	화학제품	31	56	32.1	28.6	19.6	16.1	0.0	3.6
	석유·석탄제품	1	1	0.0	0.0	0.0	100.0	0.0	0.0
	요업·토석제품	2	4	25.0	25.0	25.0	25.0	0.0	0.0
	제1차금속	7	13	30.8	23.1	15.4	23.1	7.7	0.0
	금속제품	8	16	37.5	18.8	18.8	25.0	0.0	0.0
	일반기계	9	15	26.7	20.0	6.7	20.0	20.0	6.7
	전기 및 전자기기	59	103	38.8	23.3	19.4	15.5	2.9	0.0
	정밀기기	7	12	50.0	33.3	0.0	16.7	0.0	0.0
운송기계	7	12	41.7	8.3	16.7	33.3	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전체	211	369	36.3	24.4	17.3	16.8	4.1	0.8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51	89	38.2	18.0	22.5	14.6	5.6	0.0
	250만~500만달러	38	65	38.5	21.5	15.4	16.9	4.6	3.1
	500만~1,000만달러	33	56	35.7	23.2	26.8	12.5	1.8	0.0
	1,000만~2,500만달러	41	75	28.0	32.0	16.0	21.3	2.7	0.0
	2,500만~5,000만달러	13	21	42.9	19.1	4.8	19.1	9.5	4.8
	5,000만~1억달러	11	21	42.9	23.8	4.8	23.8	4.8	0.0
	1억달러 이상	24	42	38.1	33.3	11.9	14.3	2.4	0.0
	전체	211	369	36.3	24.4	17.3	16.8	4.1	0.8
환금액	1천만원 미만	18	32	37.5	18.8	18.8	18.8	3.1	0.0
	1천만~5천만원	66	114	31.6	20.2	22.8	17.5	7.9	0.0
	5천만~1억원	35	57	43.9	21.1	14.0	15.8	3.5	1.8
	1억~10억원	59	108	35.2	27.8	17.6	15.7	1.9	1.9
	10억원 이상	33	58	39.7	32.8	8.6	17.2	1.7	0.0
	전체	211	369	36.3	24.4	17.3	16.8	4.1	0.8

<附表 31> 簡易定額還給制度 適用對象企業의 選定基準

(단위: 개, %)

		기업수	5천만원	1억원	1억 5천만원	2억원	3억원	모든 수출 업체에 적용
기업 규모	대기업	48	4.2	16.7	0.0	0.0	12.6	64.6
	중소기업	167	8.4	12.6	4.2	15.6	8.4	50.9
	전체	215	7.4	13.5	3.3	12.1	9.8	54.0
업 종	농림수산업	1	0.0	0.0	0.0	0.0	0.0	100.0
	경공업	81	4.9	14.8	4.9	6.2	9.9	59.3
	음식료품	3	0.0	0.0	0.0	0.0	0.0	100.0
	섬유·가죽제품	65	6.2	18.5	4.6	6.2	6.2	58.5
	종이·나무제품	3	0.0	0.0	0.0	33.3	0.0	66.7
	기타 제조업제품	10	0.0	0.0	10.0	0.0	40.0	50.0
	중공업	133	9.0	12.8	2.3	15.8	9.8	50.4
	화학제품	32	9.4	12.5	0.0	9.4	12.5	56.3
	석유·석탄제품	1	0.0	10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2	0.0	0.0	0.0	0.0	0.0	100.0
	제1차금속	7	0.0	0.0	14.3	14.3	14.3	57.1
	금속제품	9	11.1	11.1	11.1	33.3	11.1	22.2
	일반기계	9	11.1	33.3	0.0	11.1	11.1	33.3
	전기 및 전자기기	60	10.0	8.3	1.7	15.0	6.7	58.3
	정밀기기	7	0.0	14.3	0.0	57.1	0.0	28.6
	운송기계	6	16.7	33.3	0.0	0.0	33.3	1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0	0.0	0.0	0.0	0.0	0.0
전체	215	7.4	13.5	3.3	12.1	9.8	54.0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50	12.0	18.0	2.0	8.0	54.0	54.0
	250만~500만달러	39	5.1	20.5	5.1	18.0	2.6	48.7
	500만~1,000만달러	34	5.9	5.9	5.9	26.5	8.8	47.1
	1,000만~2,500만달러	43	7.0	4.7	4.7	14.0	9.3	60.5
	2,500만~5,000만달러	13	7.7	15.4	0.0	0.0	23.1	53.9
	5,000만~1억달러	12	0.0	8.3	0.0	0.0	25.0	66.7
	1억달러 이상	24	8.3	20.8	0.0	0.0	16.7	54.2
	전체	215	7.4	13.5	3.3	12.1	9.8	54.0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18	5.6	11.1	0.0	11.1	5.6	66.7
	1천만~5천만원	67	13.4	19.4	3.0	11.9	4.5	47.8
	5천만~1억원	35	5.7	14.3	8.6	20.0	14.3	37.1
	1억~10억원	62	4.8	4.8	3.2	14.5	11.3	61.3
	10억원 이상	33	3.0	18.2	0.0	0.0	15.2	63.6
	전체	215	7.4	13.5	3.3	12.1	9.8	54.0

<附表 32> 簡易定額還給率表의 單位當 還給金額의 過少還給 比率

(단위 : 개, %)

		기업수	과소환급되지 않고 있다	5% 이내	6~ 9%	10~ 14%	15~ 19%	20% 이상	이용한 적어 없다
기업 규모	대기업	43	11.6	9.3	7.0	2.3	14.0	4.7	51.2
	중소기업	169	11.8	11.8	7.1	12.4	6.5	24.9	25.4
	전체	212	11.8	11.3	7.1	10.4	8.0	20.8	30.7
종 업	농림수산업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86	4.7	9.3	7.0	12.8	9.3	20.9	36.0
	음식료품	3	33.3	0.0	0.0	0.0	0.0	0.0	66.7
	섬유·가죽제품	69	4.4	10.1	5.8	11.6	8.7	24.6	34.8
	종이·나무제품	4	0.0	0.0	0.0	25.0	0.0	25.0	50.0
	기타 제조업제품	10	0.0	10.0	20.0	20.0	20.0	0.0	30.0
	중공업	126	16.7	12.7	7.1	8.7	7.1	20.6	27.0
	화학제품	30	16.7	20.0	3.3	0.0	10.0	16.7	33.3
	석유·석탄제품	1	0.0	0.0	0.0	0.0	0.0	0.0	100.0
	요업·토석제품	2	50.0	0.0	0.0	0.0	0.0	0.0	50.0
	제1차금속	6	33.3	0.0	0.0	0.0	0.0	33.3	33.3
	금속제품	10	30.0	0.0	0.0	10.0	0.0	10.0	50.0
	일반기계	10	20.0	10.0	0.0	0.0	0.0	30.0	40.0
	전기 및 전자기기	54	11.1	11.1	14.8	11.1	11.1	22.2	18.5
	정밀기기	8	12.5	25.0	0.0	50.0	0.0	0.0	12.5
	운송기계	5	20.0	20.0	0.0	0.0	0.0	6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212	11.8	11.3	7.1	10.4	8.0	20.8	30.7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49	14.3	12.2	10.2	10.2	12.2	26.5	14.3
	250만~500만달러	42	14.3	14.3	9.5	14.3	4.7	23.8	19.1
	500만~1,000만달러	38	5.3	15.8	5.3	10.5	7.9	23.7	31.6
	1,000만~2,500만달러	39	7.7	7.7	5.1	12.8	5.1	18.0	43.6
	2,500만~5,000만달러	14	28.6	0.0	7.1	7.1	0.0	14.3	42.9
	5,000만~1억달러	10	20.0	10.0	0.0	0.0	30.0	10.0	30.0
	1억달러 이상	20	5.0	10.0	5.0	5.0	5.0	10.0	60.0
	전체	212	11.8	11.3	7.1	10.4	8.0	20.8	30.7
	단 위 액	1천만원 미만	20	5.0	20.0	20.0	10.0	5.0	20.0
1천만~5천만원		67	19.4	16.4	4.5	11.9	7.5	22.4	17.9
5천만~1억원		37	8.1	8.1	8.1	16.2	10.8	27.0	21.6
1억~10억원		62	11.3	6.5	6.5	8.1	4.8	21.0	41.9
10억원 이상		26	3.9	7.7	3.9	3.9	15.4	7.7	57.7
전체		212	11.8	11.3	7.1	10.4	8.0	20.8	30.7

<附表 33> 定額還給對象品目 중 實際 個別還給을 받고 있는 品目の 有無
(단위: 개, %)

		기업수	있다	없다
기업규모	대기업	132	6.8	93.2
	중소기업	335	17.3	82.7
	전체	467	14.4	85.6
업종	농림수산업	2	0.0	100.0
	경공업	181	17.7	82.3
	음식료품	12	16.7	83.3
	섬유·가죽제품	147	19.1	80.9
	종이·나무제품	7	0.0	100.0
	기타 제조업제품	15	13.3	86.7
	중공업	283	12.4	87.6
	화학제품	82	14.6	85.4
	석유·석탄제품	3	0.0	100.0
	요업·토석제품	5	0.0	100.0
	계1차금속	21	4.8	95.2
	금속제품	20	15.0	85.0
	일반기계	23	13.0	87.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2.0	88.0
	정밀기기	14	14.3	85.7
	운송기계	15	13.3	8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100.0
전체	467	14.4	85.6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11.1	88.9
	250만~500만달러	73	30.1	69.9
	500만~1,000만달러	71	21.1	78.9
	1,000만~2,500만달러	107	12.2	87.8
	2,500만~5,000만달러	41	4.9	95.1
	5,000만~1억달러	32	15.6	84.4
	1억달러 이상	53	0.0	100.0
	전체	467	14.4	85.6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11.1	88.9
	1천만~5천만원	121	13.2	86.8
	5천만~1억원	60	30.0	70.0
	1억~10억원	177	15.3	84.7
	10억원 이상	73	2.7	97.3
	전체	467	14.4	85.6

<附表 34> 定額還給對象이지만 個別還給을 받은 理由

(단위 : 개, %)

		기업 수	빈도 수	정액환급을 하계 되면 과소 환급됨	환급 받기가 쉬움	개별환급과 정액환급과 의 차이가 많음	소요량 고시를 안했음	수출물품의 특성상 수입원자재의 단가가 높음	정액환급으로 정산시 20% 이상 차액이 발생함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9	9	55.6	11.1	11.1	22.2	0.0	0.0	0.0
	중소기업	58	60	66.7	6.7	33.3	0.0	3.3	3.3	16.7
	전체	67	69	65.2	7.2	4.3	2.9	2.9	2.9	14.5
업 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32	33	63.6	9.1	3.0	3.0	6.1	0.0	15.2
	음식료품	2	2	50.0	0.0	0.0	5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28	29	65.3	10.3	3.5	0.0	6.9	0.0	13.8
	종이·나무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2	2	50.0	0.0	0.0	0.0	0.0	0.0	50.0
	중공업	35	36	66.7	5.6	5.6	2.8	0.0	5.6	13.9
	화학제품	12	13	61.5	0.0	7.7	7.7	0.0	7.7	15.4
	석유·석탄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1	1	100.0	0.0	0.0	0.0	0.0	0.0	0.0
	금속제품	3	3	66.7	33.3	0.0	0.0	0.0	0.0	0.0
	일반기계	3	3	100.0	0.0	0.0	0.0	0.0	0.0	0.0
	전기 및 전자기기	12	12	58.3	8.3	8.3	0.0	0.0	8.3	16.7
	정밀기기	2	2	100.0	0.0	0.0	0.0	0.0	0.0	0.0
운송기계	2	2	50.0	0.0	0.0	0.0	0.0	0.0	5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67	69	65.2	7.2	4.3	2.9	2.9	2.9	14.5	
수출 액	250만달러 미만	10	10	60.0	10.0	0.0	10.0	0.0	10.0	10.0
	250만~500만달러	22	23	69.6	0.0	4.4	0.0	4.4	4.4	17.4
	500만~1,000만달러	15	16	62.5	18.8	0.0	0.0	0.0	0.0	18.8
	1,000만~2,500만달러	13	13	69.2	0.0	7.7	7.7	7.7	0.0	7.7
	2,500만~5,000만달러	2	2	100.0	0.0	0.0	0.0	0.0	0.0	0.0
	5,000만~1억달러	5	5	40.0	20.0	20.0	0.0	0.0	0.0	20.0
	1억달러 이상	0	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67	69	65.2	7.2	4.3	2.9	2.9	2.9	14.5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4	5	40.0	0.0	0.0	20.0	20.0	0.0	20.0
	1천만~5천만원	16	16	62.5	6.3	6.3	0.0	0.0	6.3	18.8
	5천만~1억원	18	18	83.3	5.6	0.0	0.0	0.0	0.0	11.1
	1억~10억원	27	28	64.3	10.7	3.6	3.6	3.6	3.6	10.7
	10억원 이상	2	2	0.0	0.0	50.0	0.0	0.0	0.0	50.0
	전체	67	69	65.2	7.2	4.3	2.9	2.9	2.9	14.5

<附表 35> 中間材를 輸入하여 使用하는 理由

(단위 : 개, %)

기업 규모	기업 수	빈 도 수	외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국산재가 없음	비하여 떨어짐	높음	상용 권장함	있음	빈대 속담	기타	
대기업	121	209	42.6	34.0	13.4	5.7	1.9	1.9	0.5	
중소기업	321	567	38.3	32.3	16.8	7.8	2.7	1.9	0.4	
전체	442	776	39.4	32.7	15.9	7.2	2.4	1.9	0.4	
업 종	농림수산업	2	3	66.7	33.3	0.0	0.0	0.0	0.0	0.0
	경공업	168	290	36.9	31.4	17.6	9.0	2.8	2.4	0.0
	음식료품	8	12	33.3	33.3	33.3	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138	239	36.0	30.5	17.6	10.0	3.4	2.5	0.0
	종이·나무제품	7	14	35.7	42.9	21.4	0.0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25	48.0	32.0	8.0	8.0	0.0	4.0	0.0
	중공업	271	482	40.7	33.6	14.9	6.2	2.3	1.7	0.6
	화학제품	76	136	42.7	33.1	16.9	3.7	2.2	0.7	0.7
	석유·석탄제품	3	4	50.0	0.0	0.0	0.0	25.0	25.0	0.0
	요업·토석제품	5	9	33.3	44.4	0.0	22.2	0.0	0.0	0.0
	제1차금속	17	27	55.6	37.0	3.7	0.0	3.7	0.0	0.0
	금속제품	20	36	25.0	36.1	16.7	8.3	5.6	8.3	0.0
	일반기계	23	41	43.9	46.3	4.9	2.4	2.4	0.0	0.0
	전기 및 전자기기	98	178	38.8	33.2	16.3	7.9	1.1	1.7	1.1
	정밀기기	14	22	40.9	22.7	31.8	4.6	0.0	0.0	0.0
	운송기계	15	29	44.8	24.1	13.8	13.8	3.5	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	100.0	0.0	0.0	0.0	0.0	0.0	0.0
전체	442	776	39.4	32.7	15.9	7.2	2.4	1.9	0.4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84	147	38.1	29.3	17.0	10.2	3.4	1.4	0.7
	250만~500만달러	69	126	42.1	31.0	19.8	4.8	0.8	1.6	0.0
	500만~1,000만달러	67	113	40.7	32.7	17.7	6.2	1.8	0.9	0.0
	1,000만~2,500만달러	103	180	38.9	33.9	12.8	8.3	3.3	2.2	0.6
	2,500만~5,000만달러	39	65	33.9	32.3	18.5	7.7	4.6	3.1	0.0
	5,000만~1억달러	29	54	37.0	33.3	18.5	9.3	0.0	1.9	0.0
	1억달러 이상	51	91	42.9	38.5	8.8	3.3	2.2	3.3	1.1
	전체	442	776	39.4	32.7	15.9	7.2	2.4	1.9	0.4
환 급 액	1천만원 미만	35	65	8.5	32.3	21.5	3.1	4.6	0.0	0.0
	1천만~5천만원	115	203	41.4	27.6	16.8	8.4	3.9	1.5	0.5
	5천만~1억원	55	96	36.5	36.5	13.5	10.4	0.0	3.1	0.0
	1억~10억원	166	287	37.6	34.5	15.7	7.7	2.1	2.1	0.4
	10억원 이상	71	125	43.2	34.4	13.6	4.0	1.6	2.4	0.8
	전체	442	776	39.4	32.7	15.9	7.2	2.4	1.9	0.4

< 表 36 > 關稅還給制度로 인한 國產原材料 使用의 增大 與否

(단위: 개, %)

		기업수	증대되었다	증대되지 않았다	무응답
기업규모	대기업	132	44.7	54.6	0.8
	중소기업	335	39.7	58.2	2.1
	전체	467	41.1	57.2	1.7
업종	농림수산업	2	50.0	50.0	0.0
	경공업	181	41.4	57.5	1.1
	음식료품	12	8.3	91.7	0.0
	섬유·가죽제품	147	44.9	53.7	1.4
	종이·나무제품	7	28.6	71.4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40.0	60.0	0.0
	중공업	283	40.6	57.2	2.1
	화학제품	82	36.6	62.2	1.2
	석유·석탄제품	3	0.0	100.0	0.0
	요업·토석제품	5	80.0	20.0	0.0
	제1차금속	21	33.3	61.9	4.8
	금속제품	20	40.0	60.0	0.0
	일반기계	23	47.8	47.8	4.4
	전기 및 전자기기	100	43.0	54.0	3.0
	정밀기기	14	42.9	57.1	0.0
	운송기계	15	40.0	6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00.0	0.0	0.0
전체	467	41.1	57.2	1.7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33.3	60.0	6.7
	250만~500만달러	73	35.6	63.0	1.4
	500만~1,000만달러	71	40.9	59.2	0.0
	1,000만~2,500만달러	107	41.1	58.9	0.0
	2,500만~5,000만달러	41	51.2	48.8	0.0
	5,000만~1억달러	32	40.6	56.3	3.1
	1억달러 이상	53	54.7	45.3	0.0
	전체	467	77.1	57.2	1.7
환금액	1천만원 미만	36	38.9	58.3	2.8
	1천만~5천만원	121	33.9	64.5	1.7
	5천만~1억원	60	38.3	58.3	3.3
	1억~10억원	177	42.9	55.9	1.1
	10억원 이상	73	52.1	46.6	1.4
	전체	467	41.1	57.2	1.7

<附表 37> 國產原材料 使用이 增大하지 않는 理由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국산 원재료가 없음	국산재의 질이 떨어짐	국내 생산은 원가가 맞지 않음	국내 원재료가 공급업체가 적음	구매업체가 원재료 수입선을 지정함	국내 생산량이 부족함	수입 및 국산원자재 간에 큰 차이가 없음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72	84	38.1	14.3	15.5	13.1	4.8	3.6	1.2	9.5
	중소기업	197	226	33.7	21.7	14.6	5.3	6.6	3.1	1.8	13.3
	전체	269	310	34.8	19.7	14.8	7.4	6.1	3.2	1.6	12.3
업종	농림수산업	1	1	100.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106	118	25.4	16.9	16.9	7.6	11.0	6.8	3.4	11.9
	음식료품	11	12	33.3	16.7	8.3	16.7	0.0	25.0	0.0	0.0
	섬유·가죽제품	81	90	21.1	16.7	18.9	7.8	12.2	4.4	4.4	14.4
	종이·나무제품	5	6	33.3	16.7	33.3	0.0	0.0	16.7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9	10	50.0	20.0	0.0	0.0	20.0	0.0	0.0	100.0
	중공업	162	191	40.3	21.5	13.6	7.3	3.1	1.0	0.5	12.6
	화학제품	51	61	45.9	16.4	14.8	11.5	0.0	1.6	1.6	8.2
	석유·석탄제품	3	3	100.0	0.0	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1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13	14	42.9	14.3	14.3	21.4	0.0	0.0	0.0	7.1
	금속제품	12	15	40.0	13.3	13.3	13.3	0.0	0.0	0.0	80.0
	일반기계	11	12	66.7	16.7	8.3	0.0	0.0	0.0	0.0	8.3
	전기 및 전자기기	54	63	27.0	27.0	15.9	1.6	9.5	1.6	0.0	17.5
	정밀기기	8	11	45.5	36.4	0.0	0.0	0.0	0.0	0.0	18.2
	운송기계	9	11	27.3	36.4	18.2	9.1	0.0	0.0	0.0	9.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269	310	34.8	19.7	14.8	7.4	6.1	3.2	1.6	12.3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56	65	41.5	20.0	9.2	4.6	6.2	0.0	1.5	16.9
	250만~500만달러	46	54	29.6	20.4	22.2	7.4	3.7	3.7	3.7	9.3
	500만~1,000만달러	42	46	23.9	23.9	21.7	6.5	4.4	2.2	2.2	15.2
	1,000만~2,500만달러	63	71	38.0	18.3	8.5	8.5	11.3	4.2	1.4	9.9
	2,500만~5,000만달러	20	24	45.8	12.5	16.7	8.3	4.2	4.2	0.0	8.3
	5,000만~1억달러	18	20	40.0	15.0	20.0	5.0	0.0	10.0	0.0	10.0
	1억달러 이상	24	30	26.7	23.3	13.3	3.3	6.7	3.3	0.0	13.3
	전체	269	310	34.8	19.7	14.8	7.4	6.1	3.2	1.6	12.3
환급액	1천만원 미만	22	25	40.0	20.0	8.0	0.0	8.0	0.0	0.0	24.0
	1천만~5천만원	78	91	29.7	22.0	17.6	9.9	3.3	5.5	2.2	9.9
	5천만~1억원	35	39	53.8	25.6	7.7	2.6	2.6	0.0	0.0	7.7
	1억~10억원	100	113	30.1	15.9	16.8	8.0	9.7	2.7	2.7	14.2
	10억원 이상	34	42	38.1	19.1	14.3	9.5	4.8	4.8	0.0	9.5
	전체	269	310	34.8	19.7	14.8	7.4	6.1	3.2	1.6	12.3

<附表 38> 個別還給金 支給制限制度의 評價

(단위: 개, %)

		기업수	폐지하여 야 한다	존속하여 야 한다	확대 운영 하여야 한다	무응답
기업규모	대기업	132	46.2	27.3	22.7	3.8
	중소기업	335	46.0	27.2	21.8	5.1
	전체	467	46.0	27.2	22.1	4.7
업종	농림수산업	2	50.0	0.0	0.0	50.0
	경공업	181	47.5	27.6	20.4	4.4
	음식료품	12	33.3	33.3	16.7	16.7
	섬유·가죽제품	147	49.0	26.5	21.1	3.4
	종이·나무제품	7	42.9	14.3	28.6	14.3
	기타 제조업제품	15	46.7	40.0	13.3	0.0
	중공업	283	45.2	27.2	23.3	4.2
	화학제품	82	52.4	23.2	19.5	4.9
	석유·석탄제품	3	33.3	33.3	0.0	33.3
	요업·토석제품	5	0.0	40.0	60.0	0.0
	제1차금속	21	38.1	28.6	23.8	9.5
	금속제품	20	40.0	20.0	35.0	5.0
	일반기계	23	43.5	39.1	17.4	0.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47.0	25.0	25.0	3.0
	정밀기기	14	28.6	50.0	14.3	7.1
	운송기계	15	46.7	26.7	26.7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0.0	100.0
전체	467	46.0	27.2	22.1	4.7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50.0	23.3	22.2	4.4
	250만~500만달러	73	43.8	23.3	24.7	8.2
	500만~1,000만달러	71	38.0	35.2	21.1	5.6
	1,000만~2,500만달러	107	38.3	32.7	24.3	4.7
	2,500만~5,000만달러	41	58.5	22.0	14.6	4.9
	5,000만~1억달러	32	53.1	18.8	28.1	0.0
	1억달러 이상	53	54.7	26.4	17.0	1.9
	전체	467	46.0	27.2	22.1	4.7
환금액	1천만원 미만	36	36.1	25.0	36.1	2.8
	1천만~5천만원	121	47.1	29.8	16.5	6.6
	5천만~1억원	60	46.7	25.0	21.7	6.7
	1억~10억원	177	46.3	26.0	23.7	4.0
	10억원 이상	73	48.0	28.8	20.6	2.7
	전체	467	46.0	27.2	22.1	4.7

<附表 39> 關稅還給制度의 代案

(단위 : 개, %)

기업 규모	기업 수	빈도 수	수출용 원재료 수입액이 많은 품목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함	장외관급 제도를 확대하여야 함	환류세용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함	보세공장 제도 등을 비관급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함	별도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 없음	동관 제경비 단속 및 물류비 최소화	국내 생산분가품은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	수출목적의 수입품은 관세료는 면세화함	기타
			수출용 원재료 수입액이 많은 품목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함	장외관급 제도를 확대하여야 함	환류세용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함	보세공장 제도 등을 비관급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함	별도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 없음	동관 제경비 단속 및 물류비 최소화	국내 생산분가품은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	수출목적의 수입품은 관세료는 면세화함	
대기업	132	221	46.6	18.1	16.3	15.8	0.5	0.0	0.9	0.5	1.4
중소기업	335	583	43.4	18.9	18.5	17.0	1.7	0.3	0.0	0.2	0.0
전체	467	804	44.3	18.7	17.9	16.7	1.4	0.2	0.2	0.2	0.4
업종	농림수산업	2	3	66.7	0.0	0.0	33.3	0.0	0.0	0.0	0.0
	경공업	181	311	44.7	19.0	16.7	17.0	1.9	0.3	0.3	0.0
	음식료품	12	20	45.0	20.0	10.0	25.0	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147	252	44.8	18.7	17.1	16.7	2.0	0.4	0.4	0.0
	종이·나무제품	7	11	45.5	18.2	18.2	9.1	9.1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28	42.9	21.4	17.9	17.9	0.0	0.0	0.0	0.0
	중공업	283	488	43.9	18.6	18.9	16.2	1.0	0.2	0.2	0.4
	화학제품	82	136	45.6	16.2	22.1	14.0	0.7	0.0	0.0	0.7
	석유·석탄제품	3	5	20.0	40.0	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5	8	50.0	12.5	25.0	12.5	0.0	0.0	0.0	0.0
	제1차금속	21	34	52.9	14.7	11.8	17.7	2.9	0.0	0.0	0.0
	금속제품	20	34	47.1	23.5	11.8	17.7	0.0	0.0	0.0	0.0
	일반기계	23	40	45.0	20.0	10.0	22.5	2.5	0.0	0.0	0.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83	41.5	18.0	20.2	17.5	1.1	0.6	0.6	0.6
	정밀기기	14	21	47.6	23.8	14.3	14.3	0.0	0.0	0.0	0.0
	운송기계	15	27	33.3	25.9	29.6	11.1	0.0	0.0	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2	50.0	0.0	0.0	50.0	0.0	0.0	0.0	0.0
전체	467	804	44.3	18.7	17.9	16.7	1.4	0.2	0.2	0.2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160	42.5	26.3	13.8	16.3	0.6	0.6	0.0	0.0
	250만~500만달러	73	129	45.0	17.1	22.5	13.2	2.3	0.0	0.0	0.0
	500만~1,000만달러	71	123	46.3	14.6	18.7	16.3	3.3	0.8	0.0	0.0
	1,000만~2,500만달러	107	174	46.0	14.9	15.5	21.3	0.6	0.0	1.2	0.6
	2,500만~5,000만달러	41	68	42.7	17.7	17.7	19.1	2.9	0.0	0.0	0.0
	5,000만~1억달러	32	56	44.6	19.6	23.2	12.5	0.0	0.0	0.0	0.0
	1억달러 이상	53	94	41.5	20.2	19.2	14.9	0.0	0.0	0.0	1.1
	전체	467	804	44.3	18.7	17.9	16.7	1.4	0.2	0.2	0.2
관급액	1천만원 미만	36	69	43.5	24.6	17.4	14.5	0.0	0.0	0.0	0.0
	1천만~5천만원	121	211	45.0	20.4	16.1	17.5	0.5	0.5	0.0	0.0
	5천만~1억원	60	107	41.1	16.8	21.5	20.6	0.0	0.0	0.0	0.0
	1억~10억원	177	287	45.3	16.4	17.8	16.0	3.1	0.4	0.7	0.4
	10억원 이상	73	130	43.9	19.2	18.5	14.6	0.8	0.0	0.0	0.8
	전체	467	804	44.3	18.7	17.9	16.7	1.4	0.2	0.2	0.2

<附表 40> 關稅還給制度和 比較한 還特稅率制度의 評價

(단위: 개, %)

		기업수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무응답
기업규모	대기업	132	56.8	33.3	9.9
	중소기업	335	58.5	28.1	13.4
	전체	467	58.0	29.6	12.4
업종	농림수산업	2	100.0	0.0	0.0
	경공업	181	53.6	32.0	14.4
	음식료품	12	41.7	50.0	8.3
	섬유·가죽제품	147	53.1	32.0	15.0
	종이·나무제품	7	42.9	42.9	14.3
	기타 제조업제품	15	73.3	13.3	13.3
	중공업	283	60.4	28.3	11.3
	화학제품	82	56.1	30.5	13.4
	석유·석탄제품	3	33.3	33.3	33.3
	요업·토석제품	5	80.0	20.0	0.0
	제1차금속	21	57.1	42.9	0.0
	금속제품	20	55.0	25.0	20.0
	일반기계	23	39.1	39.1	21.7
	전기 및 전자기기	100	70.0	20.0	10.0
	정밀기기	14	78.6	21.4	0.0
	운송기계	15	46.7	46.7	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00.0	0.0	0.0
	전체	467	58.0	29.6	12.4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61.1	23.3
250만~500만달러		73	54.8	28.8	16.4
500만~1,000만달러		71	53.5	36.6	9.9
1,000만~2,500만달러		107	58.9	26.2	15.0
2,500만~5,000만달러		41	53.7	36.6	9.8
5,000만~1억달러		32	62.5	34.4	3.1
1억달러 이상		53	62.3	30.2	7.6
전체		467	58.0	29.6	12.4
환금액	1천만원 미만	36	58.3	22.2	19.4
	1천만~5천만원	121	61.2	22.3	16.5
	5천만~1억원	60	51.7	36.7	11.7
	1억~10억원	177	56.5	32.2	11.3
	10억원 이상	73	61.6	32.9	5.5
	전체	467	58.0	29.6	12.4

<附表 41> 關稅選給制度와 比較할 때 選特稅率制度가 도움이 되지 않는 理由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내수용과 수출용의 구분비율이 일정치 않음	서류가 더 복잡할 것임	수출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서 실익이 없음	사후 관리가 어려움	환급액이 적음	수입원자재 대부분이 내수용에 공여되었음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39	40	25.0	12.5	7.5	7.5	2.5	2.5	42.5
	중소기업	68	70	7.1	12.9	10.0	5.7	5.7	4.3	54.3
	전체	107	110	13.6	12.7	9.1	6.4	4.5	3.6	50.0
업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45	47	8.5	10.6	10.6	6.4	6.4	4.3	53.2
	음식료품	5	5	20.0	0.0	20.0	0.0	0.0	0.0	52.6
	섬유·가죽제품	36	38	7.9	13.2	7.9	7.9	7.9	2.6	55.3
	종이·나무제품	2	2	0.0	0.0	0.0	0.0	0.0	50.0	50.0
	기타 제조업제품	2	2	0.0	0.0	50.0	0.0	0.0	0.0	50.0
	중공업	62	63	17.5	14.3	7.9	6.3	3.2	3.2	47.6
	화학제품	23	23	13.0	13.0	13.0	0.0	8.7	0.0	52.2
	석유·석탄제품	1	1	0.0	0.0	0.0	0.0	0.0	0.0	100.0
	요업·토석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7	7	14.3	14.3	14.3	0.0	0.0	14.3	42.9
	금속제품	2	2	50.0	0.0	0.0	0.0	0.0	50.0	0.0
	일반기계	8	8	37.5	0.0	0.0	25.0	0.0	0.0	37.5
	전기 및 전자기기	13	13	15.4	23.1	0.0	15.4	0.0	0.0	46.2
	정밀기기	3	4	0.0	50.0	25.0	0.0	0.0	0.0	25.0
	운송기계	5	5	20.0	0.0	0.0	0.0	0.0	0.0	8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07	110	13.6	12.7	9.1	6.4	4.5	3.6	50.0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18	19	10.5	0.0	21.1	5.3	5.3	5.3	52.6
	250만~500만달러	14	14	0.0	21.4	0.0	0.0	7.1	0.0	71.4
	500만~1,000만달러	19	19	5.3	10.5	10.5	10.5	5.3	5.3	52.6
	1,000만~2,500만달러	23	24	12.5	16.7	12.5	8.3	4.2	8.3	37.5
	2,500만~5,000만달러	12	13	15.4	23.1	0.0	7.7	0.0	0.0	53.8
	5,000만~1억달러	7	7	57.1	14.3	14.3	0.0	0.0	0.0	14.3
	1억달러 이상	14	14	21.4	7.1	0.0	7.1	7.1	0.0	57.1
	전체	107	110	13.6	12.7	9.1	6.4	4.5	3.6	50.0
	환급액	1천만원 미만	5	5	0.0	0.0	20.0	20.0	0.0	20.0
1천만~5천만원		18	18	11.1	5.6	22.2	0.0	5.6	5.6	50.0
5천만~1억원		17	18	16.7	11.1	5.6	5.6	11.1	5.6	80.0
1억~10억원		46	48	8.3	16.7	6.3	6.3	2.1	2.1	58.3
10억원 이상		21	21	28.6	14.3	4.8	9.5	4.8	0.0	38.1
전체		107	110	13.6	12.7	9.1	6.4	4.5	3.6	50.0

<附表 42> 保稅工場制度和 比較한 還特稅率制度의 評價

(단위 : 개, %)

		기업수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무응답
기업규모	대기업	132	56.1	24.2	19.7
	중소기업	335	57.6	20.9	21.5
	전체	467	57.2	21.8	21.0
업종	농림수산업	2	100.0	0.0	0.0
	경공업	181	52.5	26.0	21.5
	음식료품	12	33.3	33.3	33.3
	섬유·가죽제품	147	53.7	25.2	21.1
	종이·나무제품	7	28.6	57.1	14.3
	기타 제조업제품	15	66.7	13.3	20.0
	중공업	283	59.7	19.4	20.9
	화학제품	82	53.7	22.0	24.4
	석유·석탄제품	3	33.3	33.3	33.3
	요업·토석제품	5	80.0	0.0	20.0
	제1차금속	21	61.9	19.1	19.1
	금속제품	20	55.0	25.0	20.0
	일반기계	23	43.5	30.4	26.1
	전기 및 전자기기	100	68.0	14.0	18.0
	정밀기기	14	78.6	14.3	7.1
	운송기계	15	46.7	26.7	2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00.0	0.0	0.0
전체	467	57.2	21.8	21.0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56.7	20.0	23.3
	250만~500만달러	73	60.3	16.4	23.3
	500만~1,000만달러	71	54.9	23.9	21.1
	1,000만~2,500만달러	107	57.0	21.5	21.5
	2,500만~5,000만달러	41	51.2	29.3	19.5
	5,000만~1억달러	32	56.3	31.3	12.5
	1억달러 이상	53	62.3	18.9	18.9
	전체	467	51.2	21.8	21.0
환금액	1천만원 미만	36	55.6	16.7	27.8
	1천만~5천만원	121	56.2	20.7	23.1
	5천만~1억원	60	51.7	26.7	21.7
	1억~10억원	177	59.3	19.8	20.9
	10억원 이상	73	58.9	27.4	13.7
	전체	467	57.2	21.8	21.0

<附表 43> 保稅工場制度와 比較할 때 選特稅率制度가 도움이 되지 않는 理由
(단위 : 개, %)

		기업 수	빈도 수	내수용과 수출용의 구분비율이 일정치 않음	수출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서 실익이 없음	사후 관리가 어려움	남는 알뜰에 대해서만 수출할 것임	수입이 거의 없음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26	26	19.2	7.7	7.7	15.4	7.7	3.9	38.5
	중소기업	46	46	13.0	10.9	8.7	2.2	4.4	6.5	54.3
	전체	72	72	15.3	9.7	8.3	6.9	5.5	5.5	48.6
업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32	32	12.5	9.4	6.3	6.3	0.0	12.5	53.1
	음식료품	4	4	25.0	0.0	0.0	25.0	0.0	0.0	50.0
	섬유·가죽제품	24	24	8.3	8.3	4.2	0.0	0.0	16.7	62.5
	종이·나무제품	3	3	33.3	0.0	33.3	33.3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1	1	0.0	100.0	0.0	0.0	0.0	0.0	0.0
	중공업	40	40	17.5	10.0	10.0	7.5	10.0	0.0	45.0
	화학제품	13	13	23.1	7.7	0.0	7.7	7.7	0.0	53.8
	석유·석탄제품	1	1	0.0	0.0	0.0	0.0	0.0	0.0	100.0
	요업·토석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3	3	33.3	33.3	0.0	33.3	0.0	0.0	0.0
	금속제품	3	3	33.3	0.0	0.0	33.3	0.0	0.0	33.3
	일반기계	5	5	0.0	0.0	40.0	0.0	0.0	0.0	60.0
	전기 및 전자기기	10	10	10.0	0.0	20.0	0.0	30.0	0.0	40.0
	정밀기기	2	2	0.0	50.0	0.0	0.0	0.0	0.0	50.0
	운송기계	3	3	33.3	33.3	0.0	0.0	0.0	0.0	33.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72	72	15.3	9.7	8.3	6.9	5.5	5.5	48.6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15	15	13.3	20.0	6.7	6.7	0.0	6.7	46.7
	250만~500만달러	7	7	0.0	14.3	0.0	0.0	0.0	0.0	85.7
	500만~1,000만달러	10	10	10.0	10.0	20.0	0.0	0.0	0.0	60.0
	1,000만~2,500만달러	16	16	12.5	6.3	12.5	18.8	6.3	12.5	31.3
	2,500만~5,000만달러	10	10	30.0	0.0	10.0	10.0	10.0	0.0	40.0
	5,000만~1억달러	5	5	20.0	20.0	0.0	0.0	40.0	20.0	0.0
	1억달러 이상	9	9	22.2	0.0	0.0	0.0	0.0	0.0	77.8
	전체	72	72	15.3	9.7	8.3	6.9	5.6	5.6	48.6
환금액	1천만원 미만	4	4	0.0	25.0	25.0	25.0	0.0	0.0	25.0
	1천만~5천만원	16	16	18.8	18.8	6.3	18.8	0.0	0.0	37.5
	5천만~1억원	11	11	18.2	0.0	0.0	0.0	0.0	9.1	72.7
	1억~10억원	26	26	11.5	7.7	11.5	0.0	7.7	11.5	50.0
	10억원 이상	15	15	20.0	6.7	6.7	6.7	13.3	0.0	46.7
	전체	72	72	15.3	9.7	8.3	6.9	5.5	5.5	48.6

<附表 45> 所要量證明制度의 改善方案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서류의 간소화	업체가 소요량을 자율관리하도록 함	기준소요량 고서품목을 좀 더 늘림	소요량 계산근거를 간소화 함	소요량 증명절차를 간소화 함	실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함	실제 공평상 소요량을 일치하도록 함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71	71	7.0	15.5	5.6	2.8	2.8	2.8	1.4	62.0
	중소기업	133	133	20.3	3.0	8.3	7.5	4.5	3.8	3.8	48.9
	전체	204	204	15.7	7.4	7.4	5.9	3.9	3.4	2.9	53.4
업종	농림수산업	1	1	0.0	0.0	0.0	0.0	0.0	0.0	0.0	100.0
	경공업	60	60	10.0	6.7	11.7	1.7	3.3	8.3	8.3	50.0
	음식료품	4	4	25.0	50.0	0.0	0.0	0.0	0.0	0.0	25.0
	섬유·가죽제품	50	50	4.0	2.0	12.0	2.0	4.0	10.0	10.0	56.0
	종이·나무제품	3	3	33.3	33.3	0.0	0.0	0.0	0.0	0.0	33.3
	기타 제조업제품	3	3	66.7	0.0	33.3	0.0	0.0	0.0	0.0	0.0
	중공업	142	142	17.6	7.8	5.6	7.7	4.2	1.4	0.7	54.9
	화학제품	38	38	15.8	2.6	5.3	5.3	0.0	0.0	0.0	71.1
	석유·석탄제품	3	3	0.0	0.0	0.0	0.0	0.0	0.0	0.0	100.0
	요업·토석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8	8	0.0	25.0	0.0	0.0	25.0	0.0	0.0	50.0
	금속제품	9	9	44.4	0.0	0.0	11.1	11.1	0.0	0.0	33.3
	일반기계	11	11	9.1	27.3	0.0	18.2	0.0	0.0	0.0	45.5
	전기 및 전자기기	59	59	17.0	6.8	6.8	8.5	6.8	3.4	1.7	50.4
	정밀기기	5	5	20.0	0.0	20.0	20.0	0.0	0.0	0.0	40.0
	운송기계	9	9	33.3	11.1	11.1	0.0	0.0	0.0	0.0	44.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204	204	15.7	7.4	7.4	5.9	3.9	3.4	2.9	53.4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41	41	19.5	4.9	7.3	4.9	4.9	4.9	2.4	51.2
	250만~500만달러	24	24	12.5	4.2	0.0	0.0	8.3	0.0	4.2	50.0
	500만~1,000만달러	26	26	15.4	0.0	3.9	11.5	3.9	3.9	11.5	45.8
	1,000만~2,500만달러	47	47	19.1	8.5	14.9	4.3	0.0	4.3	0.0	48.9
	2,500만~5,000만달러	16	16	6.3	12.5	6.3	6.3	0.0	6.3	6.3	56.3
	5,000만~1억달러	19	19	15.8	10.5	0.0	5.3	5.3	5.3	0.0	57.9
	1억달러 이상	31	31	6.4	12.9	9.7	0.0	6.5	0.0	0.0	64.5
	전체	204	204	15.7	7.4	7.4	5.9	3.9	3.4	2.9	53.4
판매액	1천만원 미만	14	14	21.4	0.0	0.0	21.4	7.1	7.1	7.1	35.7
	1천만~5천만원	51	51	23.5	5.9	5.9	2.0	5.9	0.0	2.0	54.9
	5천만~1억원	24	24	25.0	0.0	8.3	4.2	0.0	0.0	8.3	54.2
	1억~10억원	68	68	8.9	8.8	7.4	8.8	2.9	7.4	2.9	52.9
	10억원 이상	47	47	10.6	12.8	10.6	2.1	4.3	2.1	0.0	57.4
	전체	204	204	15.7	7.4	7.4	5.9	3.9	3.4	2.9	53.4

<附表 46> 自律的인 誠實申告의 補完策

(단위 : 개, %)

		기업 수	빈도 수	상호신뢰 및 자율관리	교의적으로 상설신고처 없는 업체는 엄중처벌	출제한 사후관리	성실기업제 우대	정기적인 감사 시행	업체의 Part List를 단위 실량으로 인정	소요량 고시의 효율적 책정과 관련 범위의 완화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34	34	2.9	5.9	5.9	5.9	2.9	2.9	67.6	
	중소기업	46	46	13.0	8.7	6.5	4.4	6.5	4.4	52.2	
	전체	80	80	8.8	7.5	6.3	5.0	5.0	3.8	58.8	
업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21	21	23.8	9.5	4.8	9.5	0.0	4.8	47.6	
	음식료품	3	3	33.3	0.0	0.0	33.3	0.0	0.0	33.3	
	섬유·가죽제품	15	15	20.0	13.3	6.7	6.7	0.0	0.0	53.3	
	종이·나무제품	2	2	50.0	0.0	0.0	0.0	0.0	0.0	50.0	
	기타 제조업제품	1	1	0.0	0.0	0.0	0.0	0.0	100.0	0.0	
	중공업	59	59	3.4	6.8	6.8	3.4	6.8	5.1	5.1	62.7
	화학제품	19	19	5.3	5.3	10.5	5.3	10.5	0.0	0.0	63.2
	석유·석탄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2	2	0.0	0.0	0.0	50.0	0.0	0.0	0.0	50.0
	금속제품	3	3	0.0	0.0	0.0	0.0	33.3	33.3	0.0	33.3
	일반기계	9	9	11.1	11.1	22.2	0.0	0.0	11.1	11.1	33.3
	전기 및 전자기기	20	20	0.0	10.0	0.0	0.0	0.0	5.0	10.0	75.0
	정밀기기	1	1	0.0	0.0	0.0	0.0	0.0	0.0	0.0	100.0
운송기계	5	5	0.0	0.0	0.0	0.0	20.0	0.0	0.0	8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80	80	8.8	7.5	6.3	5.0	5.0	5.0	3.8	58.8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14	14	7.1	21.4	7.1	0.0	7.1	0.0	0.0	57.1
	250만~500만달러	12	12	16.7	16.7	8.3	0.0	0.0	8.3	8.3	41.7
	500만~1,000만달러	10	10	0.0	0.0	10.0	10.0	0.0	10.0	0.0	70.0
	1,000만~2,500만달러	13	13	7.7	7.7	0.0	7.7	7.7	7.7	7.7	53.8
	2,500만~5,000만달러	7	7	14.3	0.0	14.3	14.3	14.3	0.0	0.0	42.9
	5,000만~1억달러	7	7	14.3	0.0	0.0	0.0	0.0	0.0	0.0	85.7
	1억달러 이상	17	17	5.9	0.0	5.9	5.9	5.9	5.9	5.9	64.7
	전체	80	80	8.8	7.5	6.3	5.0	5.0	5.0	3.8	58.8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	3	0.0	0.0	0.0	0.0	33.3	0.0	0.0	66.6
	1천만~5천만원	18	18	5.6	22.2	0.0	5.6	0.0	5.6	0.0	61.1
	5천만~1억원	9	9	33.3	11.1	0.0	0.0	11.1	0.0	11.1	33.3
	1억~10억원	28	28	7.1	3.6	14.3	3.6	3.6	7.1	3.6	57.1
	10억원 이상	22	22	4.6	0.0	4.6	9.1	4.6	4.6	4.6	68.2
	전체	80	80	8.8	7.5	6.3	5.0	5.0	5.0	3.8	58.8

<附表 47> 關稅還給 電算시스템 利用에 대한 意見

(단위: 개, %)

		기업수	전혀 찬성 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찬성하는 편이다	대단히 찬성한다	무응답
기업규모	대기업	132	0.0	2.3	10.6	29.6	57.6	0.0
	중소기업	335	0.3	4.2	12.8	43.9	38.5	0.3
	전체	467	0.2	3.6	12.2	39.8	43.9	0.2
업종	농림수산업	2	0.0	0.0	0.0	0.0	100.0	0.0
	경공업	181	0.6	5.0	14.4	46.4	33.1	0.6
	음식료품	12	0.0	0.0	33.3	33.3	33.3	0.0
	섬유·가죽제품	147	0.7	6.1	12.2	46.9	33.3	0.7
	종이·나무제품	7	0.0	0.0	0.0	71.4	28.6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0.0	0.0	26.7	40.0	33.3	0.0
	중공업	283	0.0	2.8	11.0	36.0	50.2	0.0
	화학제품	82	0.0	3.7	12.2	36.6	47.6	0.0
	석유·석탄제품	3	0.0	0.0	0.0	0.0	100.0	0.0
	요업·토석제품	5	0.0	0.0	0.0	40.0	60.0	0.0
	제1차금속	21	0.0	0.0	14.3	38.1	47.6	0.0
	금속제품	20	0.0	0.0	25.0	45.0	30.0	0.0
	일반기계	23	0.0	0.0	0.0	43.5	56.5	0.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0.0	4.0	11.0	32.0	53.0	0.0
	정밀기기	14	0.0	7.1	7.1	35.7	50.0	0.0
	운송기계	15	0.0	0.0	6.7	40.0	53.3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0.0	0.0	100.0	0.0
	전체	467	0.2	3.6	12.2	39.8	43.9	0.2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0.0	4.4	12.2	41.1	42.2	0.0
	250만~500만달러	73	0.0	6.9	8.2	48.0	37.0	0.0
	500만~1,000만달러	71	0.0	1.4	22.5	49.3	26.8	0.0
	1,000만~2,500만달러	107	0.9	2.8	10.3	39.3	46.7	0.0
	2,500만~5,000만달러	41	0.0	2.4	19.5	39.0	36.6	2.4
	5,000만~1억달러	32	0.0	0.0	3.1	40.6	56.3	0.0
	1억달러 이상	53	0.0	5.7	7.6	15.1	71.7	0.0
	전체	467	0.2	3.6	12.2	39.8	43.9	0.2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0.0	8.3	13.9	38.9	38.9
1천만~5천만원		121	0.0	1.7	10.7	45.5	42.2	0.0
5천만~1억원		60	0.0	8.3	21.7	36.7	33.3	0.0
1억~10억원		177	0.6	1.7	11.9	43.5	42.4	0.0
10억원 이상		73	0.0	5.5	6.9	24.7	61.6	1.4
전체		467	0.2	3.6	12.2	39.8	43.9	0.2

<附表 48> 關稅還給業務가 電算化될 경우 豫想되는 어려움

(단위 : 개, %)

		기업 수	빈도 수	전산화 비용과다/자료전송량 과다	별도의 인력 필요	관세 담당자의 부지	전산 시스템 미비	환급관련 DB관리/프로그램 이해와 실행	자료 전송 시 오류 발생으로 인한 지연	소프트웨어 구입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55	93	12.9	8.6	5.4	6.5	2.2	2.2	1.1	61.3
	중소기업	141	217	21.7	9.2	10.1	8.3	3.2	2.3	2.8	42.4
	전체	196	310	19.0	9.0	8.7	7.7	2.9	2.3	2.3	48.1
업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83	132	19.7	8.3	12.9	6.1	3.0	2.3	2.3	45.5
	음식료품	5	8	25.0	25.0	12.5	12.5	0.0	0.0	0.0	25.0
	섬유·가죽제품	69	113	21.2	8.0	12.4	5.3	3.5	2.7	2.7	44.2
	종이·나무제품	2	4	0.0	0.0	25.0	0.0	0.0	0.0	0.0	75.0
	기타 제조업제품	7	7	0.0	0.0	14.3	14.3	0.0	0.0	0.0	71.4
	중공업	113	178	18.5	9.6	5.6	9.0	2.8	2.2	2.2	50.0
	화학제품	36	57	22.8	7.0	14.0	10.5	7.0	1.8	5.3	31.6
	석유·석탄제품	1	2	0.0	0.0	0.0	0.0	0.0	0.0	0.0	100.0
	요업·토석제품	1	1	0.0	0.0	0.0	0.0	0.0	0.0	0.0	100.0
	제1차금속	7	9	11.1	22.2	0.0	0.0	0.0	11.1	0.0	55.6
	금속제품	11	19	15.8	10.5	0.0	10.5	0.0	0.0	0.0	63.2
	일반기계	7	11	18.2	18.2	0.0	0.0	0.0	9.1	9.1	45.5
	전기 및 전자기기	43	67	17.9	7.0	3.0	10.5	1.5	1.5	0.0	56.7
	정밀기기	3	6	16.7	16.7	0.0	0.0	0.0	0.0	0.0	66.7
	운송기계	4	6	16.7	0.0	0.0	16.7	0.0	0.0	0.0	6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96	310	19.0	9.0	8.7	7.7	2.9	2.3	2.3	48.1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33	52	26.9	15.4	7.7	9.6	0.0	0.0	1.9
250만~500만달러		32	47	27.7	17.0	12.8	4.3	2.1	0.0	2.1	34.0
500만~1,000만달러		33	49	20.4	8.2	14.3	16.3	6.1	0.0	4.1	30.6
1,000만~2,500만달러		41	66	16.7	7.6	10.6	7.6	3.0	4.6	1.5	48.5
2,500만~5,000만달러		20	29	10.3	6.9	0.0	6.9	3.5	6.9	3.5	62.1
5,000만~1억달러		9	17	11.8	0.0	5.9	0.0	5.9	0.0	5.9	70.6
1억달러 이상		28	50	12.0	2.0	4.0	4.0	2.0	4.0	0.0	72.0
전체		196	310	19.0	9.0	8.7	7.7	2.9	2.3	2.3	48.1
환금액	1천만원 미만	15	22	36.4	9.1	4.6	9.1	0.0	0.0	4.6	36.4
	1천만~5천만원	43	59	22.0	11.9	17.0	11.9	1.7	1.7	0.0	33.9
	5천만~1억원	32	51	21.6	23.5	5.9	9.8	2.0	0.0	3.9	33.3
	1억~10억원	70	114	15.8	5.3	8.8	7.0	3.5	3.5	3.5	52.6
	10억원 이상	36	64	14.1	1.6	4.7	3.1	4.7	3.1	0.0	68.8
	전체	196	310	19.0	9.0	8.7	7.7	2.9	2.3	2.3	48.1

<附表 49> 關稅還給 電算化時 還給業務 分擔方案에 대한 評價

(단위 : 개, %)

		기업수	전혀 찬성 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찬성하는 편이다	대단히 찬성한다	무응답
기업규모	대기업	132	0.8	3.8	6.1	44.7	43.9	0.8
	중소기업	335	0.9	1.5	9.6	59.7	28.4	0.0
	전체	467	0.9	2.1	8.6	55.5	32.8	0.2
업종	농림수산업	2	0.0	0.0	0.0	50.0	50.0	0.0
	경공업	181	1.1	2.2	10.5	59.1	27.1	0.0
	음식료품	12	0.0	0.0	8.3	50.0	41.7	0.0
	섬유·가죽제품	147	1.4	2.7	10.2	59.2	26.5	0.0
	종이·나무제품	7	0.0	0.0	14.3	71.4	14.3	0.0
	기타 제조업제품	15	0.0	0.0	13.3	60.0	26.7	0.0
	중공업	283	0.7	2.1	7.4	53.4	36.0	0.3
	화학제품	82	0.0	1.2	3.7	53.7	40.2	1.2
	석유·석탄제품	3	0.0	0.0	0.0	0.0	100.0	0.0
	요업·토석제품	5	0.0	0.0	20.0	40.0	40.0	0.0
	제1차금속	21	0.0	4.8	4.8	57.1	33.3	0.0
	금속제품	20	0.0	10.0	10.0	45.0	35.0	0.0
	일반기계	23	0.0	0.0	13.0	52.2	34.8	0.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2.0	2.0	10.0	53.0	33.0	0.0
	정밀기기	14	0.0	0.0	0.0	64.3	35.7	0.0
	운송기계	15	0.0	0.0	6.7	66.7	26.7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0.0	0.0	100.0	0.0
	전체	467	0.9	2.1	8.6	55.5	32.8	0.2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1.1	2.2	6.7	60.0	30.0	0.0
	250만~500만달러	73	0.0	0.0	13.7	64.4	21.9	0.0
	500만~1,000만달러	71	1.4	0.0	8.5	60.6	29.6	0.0
	1,000만~2,500만달러	107	1.9	4.7	5.6	51.4	36.5	0.0
	2,500만~5,000만달러	41	0.0	0.0	12.2	58.5	29.3	0.0
	5,000만~1억달러	32	0.0	0.0	3.1	43.8	53.1	0.0
	1억달러 이상	53	0.0	5.7	11.3	41.5	39.6	1.9
	전체	467	0.9	2.1	8.6	55.5	32.7	0.2
환금액	1천만원 미만	36	0.0	0.0	8.3	66.7	25.0	0.0
	1천만~5천만원	121	1.7	1.7	5.8	61.2	29.8	0.0
	5천만~1억원	60	0.0	1.7	15.0	56.7	26.7	0.0
	1억~10억원	177	1.1	2.3	8.5	56.5	31.1	0.6
	10억원 이상	73	0.0	4.1	8.2	37.0	50.7	0.0
	전체	467	0.9	2.1	8.6	55.5	32.8	0.2

<附表 50> 還給業務 分擔方案에 대해 贊成하지 않는 理由

(단위 : 개, %)

		기업 수	빈도 수	업무월조 불가/이원화	자금까지 방법이 무난	결정자와 지급자간의 이해차이로 인한 번거로움	전산 시스템이 없는 곳은 불편	세관업무 과다	EDI방식은 업체의 인력난을 가중시킴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13	17	17.7	11.8	11.8	5.9	5.9	5.9	70.0
	중소기업	33	38	18.4	23.7	5.3	5.3	2.6	2.6	42.1
	전체	46	55	18.2	20.0	7.3	5.5	3.6	3.6	41.8
업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21	25	16.0	24.0	0.0	12.0	0.0	4.0	44.0
	음식료품	1	1	0.0	0.0	0.0	10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17	21	19.1	23.8	0.0	4.8	0.0	4.8	47.6
	종이·나무제품	1	1	0.0	100.0	0.0	0.0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2	2	0.0	0.0	0.0	50.0	0.0	0.0	50.0
	중공업	25	30	20.0	16.7	13.3	0.0	6.7	3.3	40.0
	화학제품	3	3	33.3	66.7	0.0	0.0	0.0	0.0	0.0
	석유·석탄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1	1	0.0	0.0	0.0	0.0	0.0	0.0	100.0
	제1차금속	2	2	50.0	0.0	0.0	0.0	0.0	0.0	50.0
	금속제품	4	4	25.0	25.0	25.0	0.0	0.0	0.0	25.0
	일반기계	2	3	0.0	0.0	0.0	0.0	33.3	33.3	33.3
	전기 및 전자기기	13	17	17.7	11.8	17.7	0.0	5.9	0.0	47.1
	정밀기기	0	0	0.0	0.0	0.0	0.0	0.0	0.0	0.0
	운송기계	0	0	0.0	0.0	0.0	0.0	0.0	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46	55	18.2	20.0	7.3	5.5	3.6	3.6	41.8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	11	18.2	9.1	9.1	9.1	0.0	0.0	54.5
	250만~500만달러	6	7	14.3	42.9	0.0	0.0	0.0	0.0	42.9
	500만~1,000만달러	7	8	0.0	37.5	0.0	12.5	0.0	0.0	50.0
	1,000만~2,500만달러	11	11	36.4	27.3	18.2	0.0	0.0	0.0	18.2
	2,500만~5,000만달러	4	5	0.0	0.0	0.0	20.0	20.0	20.0	40.0
	5,000만~1억달러	1	1	0.0	0.0	0.0	0.0	0.0	0.0	100.0
	1억달러 이상	8	12	25.0	8.3	8.3	0.0	8.3	8.3	41.7
	전체	46	55	18.2	20.0	7.3	5.5	3.6	3.6	41.8
환금액	1천만원 미만	3	3	0.0	66.7	0.0	0.0	0.0	0.0	33.3
	1천만~5천만원	10	13	7.7	23.1	7.7	15.4	0.0	0.0	46.2
	5천만~1억원	8	9	22.2	11.1	11.1	11.1	0.0	0.0	44.4
	1억~10억원	18	19	21.1	21.1	10.5	0.0	5.3	5.3	36.8
	10억원 이상	7	11	27.3	9.1	0.0	0.0	9.1	9.1	45.5
	전체	46	55	18.2	20.0	7.3	5.5	3.6	3.6	41.8

<附表 51> 基準所要量과 實際所要量の 差異

(단위: 개, %)

		기업수	실제소요량< 기준소요량	실제소요량≧ 기준소요량	실제소요량> 기준소요량	무응답
기업규모	대기업	132	8.3	51.5	36.4	3.8
	중소기업	335	9.9	48.1	39.7	2.4
	전체	467	9.4	49.0	38.8	2.8
업종	농림수산업	2	0.0	100.0	0.0	0.0
	경공업	181	7.7	44.8	46.4	1.1
	음식료품	12	0.0	75.0	25.0	0.0
	섬유·가죽제품	147	8.2	42.9	48.3	0.7
	종이·나무제품	7	14.3	28.6	42.9	14.3
	기타 제조업제품	15	6.7	46.7	46.7	0.0
	중공업	283	10.6	51.2	34.3	3.9
	화학제품	82	11.0	57.3	24.4	7.3
	석유·석탄제품	3	0.0	100.0	0.0	0.0
	요업·토석제품	5	0.0	80.0	20.0	0.0
	제1차금속	21	9.5	66.7	19.1	4.8
	금속제품	20	10.0	55.0	35.0	0.0
	일반기계	23	17.4	47.8	21.7	13.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12.0	40.0	47.0	1.0
	정밀기기	14	0.0	50.0	50.0	0.0
	운송기계	15	6.7	53.3	40.0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100.0	0.0	0.0
	전체	467	9.4	49.0	38.8	2.8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7.8	43.3	41.1
250만~500만달러		73	11.0	43.8	43.8	1.4
500만~1,000만달러		71	8.5	46.5	45.1	0.0
1,000만~2,500만달러		107	12.2	56.1	30.8	0.9
2,500만~5,000만달러		41	12.2	48.8	36.6	2.4
5,000만~1억달러		32	6.3	56.3	34.4	3.1
1억달러 이상		53	5.7	50.9	39.6	3.8
전체		467	9.4	49.0	38.8	2.8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5.6	41.7	50.0
	1천만~5천만원	121	12.4	47.1	34.7	5.8
	5천만~1억원	60	6.7	51.7	40.0	1.7
	1억~10억원	177	10.2	50.3	37.9	1.7
	10억원 이상	73	6.9	50.7	41.1	1.4
	전체	467	9.4	49.0	38.8	2.8

<附表 52> 過少還給의 處理方法

(단위: 개, %)

		기업수	실제소요량 으로 환급한다	소요량 격차에 따라 실제소요량 혹은 기준소요량으로 환급한다	기준소요량 으로 환급한다	무응답
기업규모	대기업	132	47.7	23.5	25.0	3.8
	중소기업	335	45.1	24.5	26.6	3.9
	전체	467	45.8	24.2	26.1	3.9
업종	농림수산업	2	50.0	0.0	50.0	0.0
	경공업	181	39.8	27.6	30.4	2.2
	음식료품	12	58.3	25.0	16.7	0.0
	섬유·가죽제품	147	36.1	28.6	33.3	2.0
	종이·나무제품	7	42.9	14.3	28.6	14.3
	기타 제조업제품	15	60.0	26.7	13.3	0.0
	중공업	283	49.8	22.3	23.0	4.9
	화학제품	82	46.3	22.0	23.2	8.5
	석유·석탄제품	3	10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5	80.0	0.0	20.0	0.0
	제1차금속	21	47.6	28.6	19.1	4.8
	금속제품	20	60.0	20.0	15.0	5.0
	일반기계	23	47.8	26.1	13.0	13.0
	전기 및 전자기기	100	50.0	19.0	29.0	2.0
	정밀기기	14	42.9	21.4	35.7	0.0
	운송기계	15	46.7	46.7	6.7	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100.0	0.0
전체	467	45.8	24.2	26.1	3.9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43.3	21.1	26.7	8.9
	250만~500만달러	73	49.3	28.8	19.2	2.7
	500만~1,000만달러	71	46.5	22.5	26.8	4.2
	1,000만~2,500만달러	107	53.3	18.7	27.1	0.9
	2,500만~5,000만달러	41	43.9	31.7	22.0	2.4
	5,000만~1억달러	32	31.3	31.3	34.4	3.1
	1억달러 이상	53	39.6	26.4	30.2	3.8
	전체	467	45.8	24.2	26.1	3.9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52.8	16.7	25.0	5.6
	1천만~5천만원	121	43.0	26.5	23.1	7.4
	5천만~1억원	60	53.3	21.7	23.3	1.7
	1억~10억원	177	42.9	24.3	29.9	2.8
	10억원 이상	73	48.0	26.0	24.7	1.4
	전체	467	45.8	24.2	26.1	3.9

<附表 53> 單位所要量證明書 發給의 改善方案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복잡한 절차의 개선	소요량 증명서류 간소화	해당 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	해당기관 공무원에 대한 교육	소요량 증명기관 일원화	신속한 기준 소요량 고시	업체의 자율적 소요량 관리, 성실 신고 인정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73	104	15.4	9.6	1.9	2.9	3.9	2.9	3.9	59.6
	중소기업	142	197	13.2	11.7	6.6	5.1	4.1	3.6	2.0	53.8
	전체	215	301	14.0	11.0	5.0	4.3	4.0	3.3	2.7	55.8
업종	농림수산업	1	2	0.0	0.0	0.0	0.0	0.0	0.0	0.0	100.0
	경공업	59	83	19.3	9.6	3.6	3.6	4.8	7.2	0.0	51.8
	음식료품	4	8	12.5	12.5	0.0	12.5	12.5	0.0	0.0	50.0
	섬유·가죽제품	48	66	22.7	7.6	3.0	3.0	4.6	7.6	0.0	51.5
	종이·나무제품	3	5	0.0	40.0	20.0	0.0	0.0	0.0	0.0	40.0
	기타 제조업제품	4	4	0.0	0.0	0.0	0.0	0.0	25.0	0.0	75.0
	중공업	154	215	12.1	11.6	5.6	4.7	3.3	1.9	3.7	57.2
	화학제품	50	68	13.2	11.8	7.4	4.4	4.4	1.5	2.9	54.4
	석유·석탄제품	2	2	0.0	0.0	0.0	0.0	0.0	0.0	0.0	100.0
	요업·토석제품	1	1	0.0	0.0	0.0	0.0	0.0	0.0	0.0	100.0
	제1차금속	10	12	25.0	16.7	0.0	0.0	0.0	0.0	0.0	58.3
	금속제품	7	10	0.0	0.0	0.0	0.0	0.0	0.0	10.0	90.0
	일반기계	11	17	5.9	17.7	5.9	5.9	0.0	0.0	5.9	58.8
	전기 및 전자기기	57	83	13.3	7.2	4.8	6.0	4.8	2.4	3.6	57.8
	정밀기기	6	9	0.0	22.2	22.2	0.0	0.0	11.1	0.0	44.4
	운송기계	10	13	15.4	30.8	0.0	7.7	0.0	0.0	7.7	38.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	0.0	0.0	0.0	0.0	100.0	0.0	0.0	0.0	
전체	215	301	14.0	11.0	5.0	4.3	4.0	3.3	2.7	55.8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37	50	20.0	10.0	2.0	12.0	2.0	4.0	4.0	46.0
	250만~500만달러	40	56	17.9	14.3	7.1	5.4	3.6	5.4	0.0	46.4
	500만~1,000만달러	23	35	17.1	11.4	11.4	2.9	8.6	2.9	0.0	45.7
	1,000만~2,500만달러	49	66	13.6	7.6	7.6	0.0	4.6	1.5	0.0	65.2
	2,500만~5,000만달러	17	24	0.0	12.5	0.0	4.2	4.2	4.2	8.3	66.7
	5,000만~1억달러	15	24	12.5	16.7	0.0	4.2	0.0	4.2	8.3	54.2
	1억달러 이상	34	46	8.7	8.7	2.2	2.2	4.4	2.2	4.4	67.4
	전체	215	301	14.0	11.0	5.0	4.3	4.0	3.3	2.7	55.8
환급액	1천만원 미만	14	19	21.1	10.5	5.3	10.5	0.0	5.3	0.0	47.4
	1천만~5천만원	45	63	19.1	7.9	3.2	6.4	7.9	1.6	3.2	50.8
	5천만~1억원	29	40	20.0	20.0	12.5	2.5	0.0	0.0	0.0	45.0
	1억~10억원	80	108	12.0	8.3	5.6	3.7	4.6	4.6	1.9	59.3
	10억원 이상	47	71	7.0	12.7	1.4	2.8	2.8	4.2	5.6	63.4
	전체	215	301	14.0	11.0	5.0	4.3	4.0	3.3	2.7	55.8

<附表 54> 基礎原材料納稅證明制度의 改善方案

(단위: 개, %)

기업 규모	기업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를 은행에 신청함				전산망을 이용한	업체의 자용에 맡김	간이정액 환급을 실시함	무응답
		마케팅이냐 합	하여야 합	없음	없음				
대기업	132	45.5	39.4	8.3	1.5	0.0	0.8	0.8	3.8
중소기업	335	35.2	34.3	17.9	0.6	0.3	0.0	0.3	11.3
전체	467	38.1	35.8	15.2	0.9	0.2	0.2	0.4	9.2
업종	농림수산업	2	0.0	0.0	50.0	0.0	0.0	0.0	50.0
	경공업	181	37.6	32.0	17.7	1.7	0.0	0.0	10.5
	음식료품	12	58.3	16.7	8.3	0.0	0.0	0.0	16.7
	섬유·가죽제품	147	36.1	34.7	18.4	1.4	0.0	0.0	8.8
	종이·나무제품	7	57.1	14.3	0.0	0.0	0.0	0.0	28.5
	기타 제조업제품	15	26.7	26.7	26.7	6.7	0.0	0.0	13.3
	중공업	283	38.9	38.5	13.4	0.4	0.4	0.4	7.8
	화학제품	82	36.6	39.0	15.9	0.0	0.0	1.2	7.3
	석유·석탄제품	3	33.3	33.3	33.3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5	40.0	20.0	40.0	0.0	0.0	0.0	0.0
	제1차금속	21	38.1	28.6	19.1	4.8	0.0	0.0	9.5
	금속제품	20	35.0	35.0	5.0	0.0	0.0	0.0	20.0
	일반기계	23	56.5	39.1	0.0	0.0	0.0	0.0	4.3
	전기 및 전자기기	100	33.0	48.0	15.0	0.0	0.0	0.0	4.0
	정밀기기	14	42.9	21.4	14.3	0.0	0.0	0.0	21.4
	운송기계	15	66.7	13.3	0.0	0.0	6.7	0.0	13.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467	38.1	35.8	15.2	0.9	0.2	0.2	9.2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35.6	32.2	17.8	1.1	0.0	1.1	12.2
	250만~500만달러	73	38.4	34.3	15.1	2.7	0.0	0.0	9.6
	500만~1,000만달러	71	32.4	39.4	12.7	0.0	1.4	0.0	14.1
	1,000만~2,500만달러	107	34.6	37.4	18.7	0.0	0.0	0.0	9.3
	2,500만~5,000만달러	41	39.0	34.2	19.5	0.0	0.0	0.0	4.9
	5,000만~1억달러	32	53.1	37.5	6.3	0.0	0.0	0.0	3.1
	1억달러 이상	53	47.2	35.9	9.4	1.9	0.0	0.0	3.8
	전체	467	38.1	35.8	15.2	0.9	0.2	0.2	9.2
환급액	1천만원 미만	36	30.6	33.3	22.2	5.6	0.0	0.0	8.3
	1천만~5천만원	121	43.8	27.3	14.1	0.0	0.8	0.8	13.2
	5천만~1억원	60	23.3	45.0	21.7	0.0	0.0	0.0	10.0
	1억~10억원	177	37.9	38.4	14.7	0.0	0.0	0.0	7.9
	10억원 이상	73	45.2	37.0	9.6	2.7	0.0	0.0	5.5
	전체	467	38.1	35.8	15.2	0.9	0.2	0.2	9.2

<附表 55> 關稅徵收信用猶豫制度에 대한 評價

(단위: 개, %)

		기업수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찬성하는 편이다	대단히 찬성한다
기업규모	대기업	132	0.8	5.3	12.9	40.9	40.2
	중소기업	335	0.9	3.3	9.6	51.6	34.6
	전체	467	0.9	3.9	10.5	48.6	36.2
업종	농림수산업	2	0.0	0.0	0.0	0.0	100.0
	경공업	181	0.6	2.2	8.3	52.5	36.5
	음식료품	12	8.3	0.0	8.3	33.3	50.0
	섬유·가죽제품	147	0.0	2.0	8.2	53.1	36.7
	종이·나무제품	7	0.0	0.0	0.0	71.4	28.6
	기타 제조업제품	15	0.0	6.7	13.3	53.3	26.7
	중공업	283	1.1	4.9	12.0	46.3	35.7
	화학제품	82	1.2	2.4	13.4	53.7	29.3
	석유·석탄제품	3	0.0	33.3	33.3	33.3	0.0
	요업·토석제품	5	0.0	0.0	0.0	80.0	20.0
	제1차금속	21	0.0	9.5	19.1	47.6	23.8
	금속제품	20	0.0	5.0	15.0	45.0	35.0
	일반기계	23	0.0	13.0	4.4	39.1	43.5
	전기 및 전자기기	100	2.0	5.0	11.0	40.0	42.0
	정밀기기	14	0.0	0.0	0.0	57.1	42.9
	운송기계	15	0.0	0.0	20.0	40.0	4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0.0	0.0	0.0	100.0	0.0
	전체	467	0.9	3.9	10.5	48.6	36.2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90	2.2	1.1	7.8	53.3	35.6
	250만~500만달러	73	0.0	6.9	9.6	48.0	35.6
	500만~1,000만달러	71	0.0	2.8	14.1	52.1	31.0
	1,000만~2,500만달러	107	0.9	3.7	14.1	44.9	43.0
	2,500만~5,000만달러	41	0.0	9.8	12.2	51.2	26.8
	5,000만~1억달러	32	3.1	3.1	6.3	56.3	31.3
	1억달러 이상	53	0.0	1.9	18.9	37.7	41.5
	전체	467	0.9	3.9	10.5	48.6	36.2
환금액	1천만원 미만	36	0.0	8.3	2.8	47.2	41.7
	1천만~5천만원	121	1.7	2.5	14.1	55.4	26.5
	5천만~1억원	60	0.0	3.3	11.7	50.0	35.0
	1억~10억원	177	0.6	2.8	7.3	49.2	40.1
	10억원 이상	73	1.4	6.9	15.1	35.6	41.1
	전체	467	0.9	3.9	10.5	48.6	36.2

<附表 56> 關稅徵收信用猶豫制度에 대해 贊成하지 않는 理由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사후 관리의 어려움	분기별 정산시 하는 일의 양이 같음	관리상 문제점	내수용 수입이 대부분임	미납된 세액을 확인하는 서류가 더 복잡함	수출용 원재료를 확인 하기가 번거로움	복잡한 절차에 비해 환급금이 적음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20	25	16.0	8.0	8.0	4.0	4.0	0.0	4.0	56.0
	중소기업	32	33	15.2	9.1	3.0	6.1	3.0	6.1	3.0	54.5
	전체	52	58	15.5	8.6	5.2	5.2	3.4	3.4	3.4	55.2
업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15	15	26.7	6.7	0.0	0.0	13.3	6.7	6.7	40.0
	음식료품	2	2	0.0	0.0	0.0	0.0	50.0	0.0	0.0	50.0
	섬유·가죽제품	10	10	20.0	10.0	0.0	0.0	10.0	10.0	10.0	40.0
	종이·나무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3	3	66.7	0.0	0.0	0.0	0.0	0.0	0.0	33.3
	중공업	37	43	11.6	9.3	7.0	7.0	0.0	2.3	2.3	60.5
	화학제품	10	10	10.0	10.0	0.0	0.0	0.0	0.0	0.0	80.0
	석유·석탄제품	2	2	0.0	0.0	0.0	0.0	0.0	0.0	50.0	50.0
	요업·토석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0.0
	계1차금속	4	4	25.0	0.0	0.0	50.0	0.0	0.0	0.0	25.0
	금속제품	1	2	50.0	0.0	0.0	0.0	0.0	0.0	0.0	50.0
	일반기계	4	5	0.0	0.0	40.0	0.0	0.0	0.0	0.0	60.0
	전기 및 전자기기	14	17	11.8	11.8	5.9	5.9	0.0	5.9	0.0	58.8
	정밀기기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운송기계	2	3	0.0	33.3	0.0	0.0	0.0	0.0	0.0	6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52	58	15.5	8.6	5.2	5.2	3.4	3.4	3.4	55.2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7	7	14.3	14.3	0.0	14.3	14.3	0.0	0.0	42.9
	250만~500만달러	7	8	0.0	0.0	12.5	12.5	0.0	0.0	12.5	62.5
	500만~1,000만달러	8	8	12.5	12.5	12.5	0.0	0.0	0.0	0.0	62.5
	1,000만~2,500만달러	9	9	22.2	11.1	11.1	0.0	0.0	22.2	0.0	33.3
	2,500만~5,000만달러	8	9	44.4	11.1	0.0	11.1	11.1	0.0	0.0	22.2
	5,000만~1억달러	4	5	0.0	0.0	0.0	0.0	0.0	0.0	0.0	100.0
	1억달러 이상	9	12	8.3	8.3	0.0	0.0	0.0	0.0	8.3	75.0
	전체	52	58	15.5	8.6	5.2	5.2	3.4	3.4	3.4	55.2
	환급액	1천만원 미만	1	1	0.0	0.0	0.0	0.0	0.0	0.0	0.0
1천만~5천만원		15	16	12.5	12.5	6.3	12.5	6.3	6.3	0.0	43.8
5천만~1억원		5	5	20.0	20.0	0.0	0.0	0.0	0.0	20.0	40.0
1억~10억원		16	17	11.8	5.9	11.8	0.0	5.9	5.9	0.0	58.8
10억원 이상		15	19	21.1	5.3	0.0	5.3	0.0	0.0	5.3	63.2
전체		52	58	15.5	8.6	5.2	5.2	3.4	3.4	3.4	55.2

<附表 57> 關稅還給書類 중 不必要한 書類

(단위: 개, %)

		기업수	빈도수	감/올/ 병/정지	조건표	소요량 증명서	B/L	수출 면장	수입 면장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49	61	26.2	14.8	14.8	8.2	4.9	6.6	24.6
	중소기업	86	107	24.3	10.3	9.3	9.3	11.2	4.7	30.8
	전체	135	168	25.0	11.9	11.3	8.9	8.9	5.4	28.6
업 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44	48	33.3	18.8	2.1	10.4	4.2	4.2	27.1
	음식료품	7	8	0.0	12.5	12.5	50.0	0.0	0.0	25.0
	섬유·가죽제품	34	37	40.5	18.9	0.0	2.7	5.4	5.4	27.0
	종이·나무제품	2	2	50.0	0.0	0.0	0.0	0.0	0.0	50.0
	기타 제조업제품	1	1	0.0	100.0	0.0	0.0	0.0	0.0	0.0
	중공업	91	120	21.7	9.2	15.0	8.3	10.8	5.8	29.2
	화학제품	27	35	25.7	5.7	17.1	2.9	11.4	8.6	28.6
	석유·석탄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1	1	0.0	0.0	0.0	0.0	0.0	0.0	100.0
	제1차금속	7	11	18.2	9.1	0.0	18.2	18.2	9.1	27.3
	금속제품	6	11	18.2	18.2	9.1	18.2	18.2	0.0	18.2
	일반기계	7	10	0.0	0.0	50.0	10.0	0.0	0.0	40.0
	전기 및 전자기기	36	43	27.9	11.6	11.6	7.0	11.6	7.0	23.3
	정밀기기	1	1	0.0	0.0	0.0	0.0	0.0	0.0	100.0
	운송기계	6	8	12.5	12.5	12.5	12.5	0.0	0.0	5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35	168	25.0	11.9	11.3	8.9	8.9	5.4	28.6	
수 출 액	250만달러 미만	21	26	26.9	7.7	3.8	7.7	7.7	7.7	38.5
	250만~500만달러	17	20	30.0	5.0	15.0	0.0	5.0	0.0	45.0
	500만~1,000만달러	17	20	25.0	25.0	10.0	20.0	5.0	0.0	15.0
	1,000만~2,500만달러	33	40	25.0	12.5	10.0	7.5	10.0	5.0	30.0
	2,500만~5,000만달러	13	19	5.3	15.8	21.1	10.5	15.8	5.3	26.3
	5,000만~1억달러	11	15	26.7	0.0	6.7	20.0	6.7	6.7	33.3
	1억달러 이상	23	28	32.1	14.3	14.3	3.6	10.7	10.7	14.3
	전체	135	168	25.0	11.9	11.3	8.9	8.9	5.4	28.6
	환 금 액	1천만원 미만	9	11	27.3	0.0	0.0	9.1	9.1	0.0
1천만~5천만원		31	34	20.6	17.6	11.8	14.7	2.9	2.9	29.4
5천만~1억원		12	17	17.6	5.9	17.6	11.8	17.6	11.8	17.6
1억~10억원		56	70	25.7	11.4	11.4	8.6	10.0	2.9	30.0
10억원 이상		27	36	30.6	13.9	11.1	2.8	8.3	11.1	22.2
전체		135	168	25.0	11.9	11.3	8.9	8.9	5.4	28.6

<附表 58> 關稅還給書類 중 不必要한 書類 및 理由

(단위 : 개, %)

불필요한 서류	이	유	빈도수
갑/을/병/정지			42 (100.0)
		조건표상에 모두 기재되는 사항임	16 (38.1)
		다른 서류에 포함되므로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음	11 (26.2)
		개별환급계산서를 제출하므로 불필요함	5 (11.9)
		기타	10 (23.8)
조건표			20 (100.0)
		다른 서류에 포함되므로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음	8 (40.0)
		개별환급계산서를 제출하므로 불필요함	2 (10.0)
		업무가 복잡해짐	2 (10.0)
		기타	8 (40.0)
소요량증명서			19 (100.0)
		업무가 복잡해짐	3 (15.8)
		다른 서류에 포함되므로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음	2 (10.5)
		이미 고시된 품목은 소요량증명서가 미비되어도 됨	2 (10.5)
		수출면장으로 충분함	2 (10.5)
		기타	10 (52.6)
B/L			15 (100.0)
		수출면장으로 충분함	5 (33.3)
		기타	10 (66.7)
수출면장			15 (100.0)
		환급여부는 세관에서 등록함	2 (13.3)
		수출면장과 수입면장의 일원화가 필요함	2 (13.3)
		관세청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음	2 (13.3)
		B/L에 표기되어 있음	2 (13.3)
		기타	7 (46.7)
수입면장			9 (100.0)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함	2 (22.2)
		기타	7 (77.8)

<附表 59> 關稅選給特例法上 不必要한 制度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수출이행 기간 1년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	수출면장의 환급신청 요건 제한	소요량 증명	간이정액 환급	선환급·후정산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16	22	9.0	0.0	9.0	4.5	4.5	4.5	68.2
	중소기업	23	26	3.8	11.5	0.0	3.8	3.8	3.8	73.1
	전체	39	48	6.3	6.3	4.2	4.2	4.2	4.2	70.8
업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15	17	0.0	5.9	5.9	0.0	0.0	0.0	88.2
	음식료품	4	4	0.0	0.0	0.0	0.0	0.0	0.0	100.0
	섬유·가죽제품	10	12	0.0	8.3	8.3	0.0	0.0	0.0	83.3
	종이·나무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제조업제품	1	1	0.0	0.0	0.0	0.0	0.0	0.0	100.0
	중공업	24	31	9.7	6.5	3.2	6.5	6.5	6.5	61.2
	화학제품	8	9	11.1	0.0	0.0	11.1	0.0	0.0	77.8
	석유·석탄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요업·토석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1	4	0.0	0.0	0.0	0.0	25.0	25.0	50.0
	금속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일반기계	4	5	0.0	20.0	20.0	0.0	0.0	0.0	60.0
	전기 및 전자기기	8	10	10.0	10.0	0.0	10.0	0.0	10.0	60.0
	정밀기기	0	0	0.0	0.0	0.0	0.0	0.0	0.0	0.0
	운송기계	3	3	33.3	0.0	0.0	0.0	33.3	0.0	33.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	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39	48	6.3	6.3	4.2	4.2	4.2	4.2	70.8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4	5	20.0	0.0	0.0	20.0	0.0	0.0	60.0
	250만~500만달러	3	5	0.0	0.0	0.0	0.0	0.0	0.0	100.0
	500만~1,000만달러	8	8	0.0	25.0	12.5	0.0	12.5	12.5	37.5
	1,000만~2,500만달러	6	6	0.0	16.7	0.0	0.0	0.0	0.0	83.3
	2,500만~5,000만달러	3	6	0.0	0.0	0.0	0.0	16.7	16.7	66.7
	5,000만~1억달러	7	7	14.3	0.0	0.0	14.3	0.0	0.0	71.4
	1억달러 이상	8	11	9.1	0.0	9.1	0.0	0.0	0.0	81.8
	전체	39	48	6.3	6.3	4.2	4.2	4.2	4.2	70.8
	환급액	1천만원 미만	1	1	0.0	0.0	0.0	100.0	0.0	0.0
1천만~5천만원		11	12	16.7	8.3	0.0	0.0	8.3	0.0	66.7
5천만~1억원		2	3	0.0	0.0	0.0	0.0	0.0	0.0	100.0
1억~10억원		12	13	0.0	15.4	7.7	0.0	0.0	7.7	69.2
10억원 이상		13	19	5.3	0.0	5.3	5.3	5.3	5.3	73.7
전체		39	48	6.3	6.3	4.2	4.2	4.2	4.2	70.8

<附表 60> 關稅還給特例法上 不必要한 制度 및 理由

(단위: 개, %)

불필요한 제도	이	유	빈도수
수출이행기간 1년			3 (100.0)
	직수입이 아닐 경우 이행기간을 넘기기 쉬움		1 (33.3)
	수출기업의 환급손실이 발생함		1 (33.3)
	1년 6개월로 일괄적으로 정하면 효과적임		1 (33.3)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3 (100.0)
	한정된 업체에만 적용가능함		1 (33.3)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1 (33.3)
	환급금을 개별환급제도보다 적게 책정함		1 (33.3)
수출면장의 환급 신청요건 제한			2 (100.0)
	수출사항을 관세청 전산망으로 확인함		1 (50.0)
	신하증권의 문구는 결제에 대한 업체간의 문제임		1 (50.0)
소요량증명제도			2 (100.0)
	잡은 변동으로 Part List로 대체가능함		1 (50.0)
	복잡하고 작업소요시간이 많이 걸림		1 (50.0)
간이정액환급제도			2 (100.0)
	신청서 간편하나 6개월마다 자료제출이 번거로움		1 (50.0)
	삭제할 필요 없음		1 (50.0)
선환급·후정산제도			2 (100.0)
	서류를 과다하게 작성해야 함		1 (50.0)
	3~6개월 후에 또 환급신청하므로 두 번 신청하게 됨		1 (50.0)

<附表 61> 關稅選給制度의 改善을 위한 建議事項

(단위: 개, %)

		기업 수	빈도 수	서류 작성의 간편화	관세환급 절차의 축소	EDI의 조기 실시	세관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	관세환급 제도 폐지	신속한 환급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73	99	6.1	4.0	10.1	2.0	4.0	1.0	72.7
	중소기업	169	218	9.2	8.3	4.6	7.3	3.2	3.2	64.2
	전체	242	317	8.2	6.9	6.3	5.7	3.5	2.5	66.9
업종	농림수산업	0	0	0.0	0.0	0.0	0.0	0.0	0.0	0.0
	경공업	94	125	7.2	7.2	6.4	10.4	1.6	3.2	64.0
	음식료품	4	5	0.0	0.0	0.0	40.0	0.0	0.0	60.0
	섬유·가죽제품	80	107	7.5	6.5	6.5	10.3	1.9	3.7	63.6
	종이·나무제품	5	7	0.0	14.3	14.3	0.0	0.0	0.0	71.4
	기타 제조업제품	5	6	16.7	16.7	0.0	0.0	0.0	0.0	66.7
	중공업	147	191	8.9	6.8	6.3	2.1	4.7	2.1	69.1
	화학제품	44	57	12.3	5.3	7.0	0.0	1.8	1.8	71.9
	석유·석탄제품	1	1	0.0	0.0	0.0	0.0	0.0	0.0	100.0
	요업·토석제품	0	0	0.0	0.0	0.0	0.0	0.0	0.0	0.0
	제1차금속	8	12	16.7	8.3	8.3	0.0	0.0	8.3	58.3
	금속제품	7	10	10.0	10.0	0.0	0.0	0.0	0.0	80.0
	일반기계	13	18	5.6	5.6	16.7	0.0	11.1	0.0	61.1
	전기 및 전자기기	59	72	5.6	8.3	4.2	5.6	8.3	1.4	66.7
	정밀기기	7	11	9.1	9.1	0.0	0.0	0.0	0.0	81.8
	운송기계	8	10	10.0	0.0	10.0	0.0	0.0	10.0	7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	1	0.0	0.0	0.0	100.0	0.0	0.0	0.0	
전체	242	317	8.2	6.9	6.3	5.7	3.5	2.5	66.9	
수출액	250만달러 미만	48	59	5.1	11.9	3.4	10.2	3.4	3.4	62.7
	250만~500만달러	39	54	13.0	11.1	3.7	3.7	1.9	5.6	61.1
	500만~1,000만달러	35	48	12.5	10.4	6.3	6.3	2.1	2.1	60.4
	1,000만~2,500만달러	53	66	7.6	3.0	7.6	4.6	4.6	3.0	69.7
	2,500만~5,000만달러	15	22	9.1	0.0	9.1	9.1	4.6	0.0	68.2
	5,000만~1억달러	17	23	0.0	8.7	13.0	4.4	13.0	0.0	60.9
	1억달러 이상	35	45	6.7	0.0	6.7	2.2	0.0	0.0	84.4
	전체	242	317	8.2	6.9	6.3	5.7	3.5	2.5	66.9
환급액	1천만원 미만	16	18	11.1	5.6	0.0	16.7	5.6	5.6	55.6
	1천만~5천만원	64	77	7.8	14.3	1.3	11.7	0.0	5.2	59.4
	5천만~1억원	28	37	8.1	2.7	10.8	2.7	0.0	0.0	75.7
	1억~10억원	92	127	8.7	7.1	7.1	3.2	6.3	2.4	65.4
	10억원 이상	42	58	6.9	0.0	10.3	1.7	3.5	0.0	77.6
	전체	242	317	8.2	6.9	6.3	5.7	3.5	2.5	66.9

<국문요약>

關稅還給制度의 經濟的 效果와 改編方向

張槿鎬·金珍珠

關稅還給制度는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소비를 억제하여 輸出補助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國產化 比率이 낮은 原資材産業의 경우 관세환급제도로 인한 國產財 保護效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國產化 比率이 높은 原材料의 경우, 關稅還給은 국산화에 도움이 되지만 國產化가 還給費用과 正比例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關稅率 減免이 효율적 자원배분과 사회적 비용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關稅還給보다 더 우월한 제도로 분석된다.

定額還給制度는 個別還給制度에 비해 환급비용이 적게 소요되나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個別還給은 還給額이 정확하나 還給節次가 복잡하다. 設問調査에 따른 關稅還給制度의 문제점은 關稅還給制度의 種類가 너무 많고 還給節次가 복잡하며 關稅還給이 原材料의 國產化를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 輸入依存度의 變化를 살펴보면 投資財와 重工業 中間材의 輸入依存은 감소하고 輕工業 中間材와 消費財는 증가하였다. 이는 中間材와 完製品의 關稅率 隔差가 감소하면서 국내자원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未還給額은 1993년 당시 약 500억원에 달하고 輕工業과 中小企業에 부담이 편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7년 7월 이후에는 事後精算制度和 企業自律의 所要量證明制度 등의 도입으로 還給節次가 簡素化되고 關稅 등도 최대 6개월간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未還給額이 감소할 것으로 평가된다.

값싸고 품질 좋은 輸入原料를 통하여 輸出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여유의 國內資源이 成長潛在力이 뛰어난 中間材産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현행 均等關稅率體制를 계속 유지하여 國産化를 유도하고 還給節次の 簡素化를 통하여 輸出을 促進하는 政策目標와 政策手段의 一貫性이 필요하다.

<Abstract>

Economic Effect of Duty Drawback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Reform

Chang, Keunho and Jinsoo Kim

The duty drawback system, just like an export subsidy, increases domestic production and reduces the consumption of drawback products. However, the system yields no protective effect on import-competing input industries when such industries are not well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if input industries are competitive, domestic production increases but the effect is very weak as the rate of an output increase depends on the drawback-related expenses. Thus, compared with a duty drawback, a tariff reduction results in a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a lower social cost.

The fixed-amount drawback scheme is less costly in terms of drawback expense but the scheme can cause the under or over-payment of duty refund while the individual drawback scheme produces an opposite effect.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urrent system contains too many different type of drawback schemes as well as very complicated procedures. Also, the drawback is claimed to have an insignificant effect on a domestic output level.

From 1980 to 1993, the ratio of import to domestic demand fell in both investment equipment and manufacturing intermediate input industries. But, in the case of consumer goods

as well as light industry intermediate input, the ratio went up. It seems that the domestic resources moved into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as a result of the closing tariff gap between intermediate input and completed product. The amount of unrefunded duties in 1993 is estimated to be 50 billion won and the burden of under-refund seems to lean heavily toward light industri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 firms. However, after July, 1997, the amount of unrefunded duties is expected to fall because a post-settlement of the drawback account and an autonomous issue of the input requirement certificate are introduced in the new drawback system. In addition, exporters are not required to pay tariff on imported input for the maximum period of 6 months.

Export policy that utilizes cheap and high-quality imported inputs is most desirable since it allows spare resources to be transferred into the intermediate input industries of high-growth potential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consistency between policy objective and the instrument, the uniform tariff system must be directed toward encouraging domestic production while a simplification of the drawback procedure is geared toward bolstering export.